GOVP1200410554

\sim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실적보고서

2002. 4.

작성책	임총괄	유통정책과장	500-1816	
고나가 케이	농림부	유통정책과	행정사무관 이명진	500-1825
작성책임	농수산물 유통공사	기금관리팀	팀장 전원수	790-8015

목 차

1	경영개선 / 3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경영혁신 및 성과관리 노력 의사결정체계와 관리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19
I	사업운영 / 113	
	1. 기금운용계획 대비 집행실적 2. 주요 사업별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15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121
	(1) 정부가격안정사업	
	(2) 가공용수매지원사업	
	(3) 채소수급안정사업	
	(4) 과실수급안정사업	
	(5)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	
	(6) 생산자조직육성지원사업	
	(7) 소비지유통개선사업	
	(8) 종자수급사업	321
	3.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341
	자산운용 / 353	
	1. 자산운용 개요	355
	2. 자산운용 실적	
	3.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4.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5. 자산 관련 자료	393
	+L=171=1 / 40=	



참고자료 / 405

여백

경영개 선

- 1.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 5
- 2. 경영혁신 및 성과관리 노력 / 19
- 3. 의사결정체계와 관리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75

여 백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여 백

지표명

1.1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가 중 치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790-8015)

평 가 내 용

- (1) 1999년도 평가보고서의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과 성과
 - 1999년도 평가보고서의 부문별(종합평가, 사업운영평가, 관리조직평가, 자산관리평가)지적 및 권고사항의 개요와 이에 대한 개선 노력(실태조사·분석, 개선계획 수립을 포함)과 성과
- (2) 2000년도 평가보고서의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노력과 성과
 - 2000년도 평가보고서의 부문별(종합평가, 사업운영평가, 관리조직평가, 자산관리평가)지적 및 권고사항의 개요와 이에 대한 개선 노력(실태조사·분석, 개선계획 수립을 포함)과 성과

평가내용

1.1.1 1999년도 평가보고서의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성과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790-8015)

1. 종합평가 부문

- ◇ 수입농산물 판매차익을 주된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사업이 가격안정사업보다 유통 구조 개선 등 타 사업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 농안기금의 유통구조개선사업비를 축소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분야로의 지원을 확대코자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정
 - 가격안정사업 : ('01당초) 1조 1,234억 (51%) → ('01수정) 1조 4,821억원(66%)
 - 과실·시설채소 수급안정사업 신설: 과실 800억원, 시설채소 480억원
 - 기존의 채소수급안정사업 지원확대 : (당초) 400억원 → (확대) 800억원
 - 유통개선사업: ('01당초) 9,693억원(44.5%) → ('01수정) 6,766억원(30%)
- ◇ 사후적으로 수급불안에 대처하는 사업방식보다는 수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생산면적의 연도별 급·등락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하는 새로운 수급안정제도 실시
 - 유통협약·유통명령제, 자조금제도 도입
 - 농업관측정보 기능의 강화(18품목→24품목)
 - 표본농가 및 모니터 확대 : ('00) 5,800호, 440명 → ('01) 10,000호, 1,000명
 - 기존의 채소수급안정사업 확대(노지채소→시설채소 추가) 및 과실류에도 수급안정제 도입
 - ☞ 성과 :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으로 재배면적 및 출하량을 조절, 계약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가격 폭·등락 시 산지폐기, 비축수매 등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

- ◇ 평가시스템이 사업의 성과기준이 아닌 총량목표 달성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양해야 함
- ▶ 사업성과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책목표 달성** 및 **기금운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실시
 - 정책목표 달성도 : 사업지원기관(농림부 사업·품목별 담당과)이 주관 평가실시
 - 기금운용 성과 : 기금총괄과(농림부 유통정책과)에서 일괄하여 평가실시
 - 기금운용의 성과파악을 위해 평가대상 확대
 - ('00) 18개 사업 149개소 → ('01) 26개 사업 207개소
 - 자율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 본 보고서 1.2.3 지표의 제 1장 '나' 항 및 '다'항 참조
 - **☞ 2001년도 평가단 평가결과** 평가시스템이 바람직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평가받음

2. 사업운영평가 부문

◇ 수출지원사업이 농안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효율 적 관리와 타 사업과의 유기적 관계를 위해 일반회계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수출촉진자금 지원의 성격 및 기본목표

- 농수산물(가공식품) 수출업체에 원료농수산물 수매 용도로 자금을 지원, 해당품목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 및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포장자재비, 물류비 등을 수매자금과 연계. 종합자금형식으로 지원

▶ 수출지원자금은 농안기금의 목적에 부합한 주요사업임

- 수출지원 사업은 농안법 제57조에 의한 자금의 용도에 명시된 기금의 목적 사업임
- 본 기금에 의한 수출지원은 수출용 원료농산물 수매를 통해 산지가격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수급안정사업의 일환임
- 특히 농수산물의 특성상 수급변동에 따라 수출용 원료 농산물 수매량이 달라지므로 경직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 유통개선사업이 본 기금사업 일부로서 수행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며, 일부 사업의 경우 기금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본 기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4조에 의거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설치된 것으로서 유통개선사업은 본연의 목적사업임.
 - 다만, 일반예산과의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본 기금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투자
 - 일반예산 : WTO 규범상 정부보조가 가능한 유통 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서비스 분야
 - 기금투자 : 생산농어가 보호 및 산지가격지지 등의 파급효과가 있는분야
 - 기존의 유통개선사업 군에 속하는 단위사업 검토결과
 -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지원사업, 시장출하촉진지원사업, 직거래매취지원사업, 산지유통센터 매취지원사업 및 수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은 생산조정, 계약재배, 출하조정, 출하촉진, 품질 규제 및 파로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적 가격정책 수단으로 분류
 - 반면, 도매시장건설지원사업비, 무역진홍센터건설지원사업비 등 유통시설확충 지원자금은 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서비스 투자로 예산에 의한 보조가 가능하므로 재원배분의 우선순 위를 최하위로 하는 한편, 2002년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키로 결정
 -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농업관측사업 지원비도 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서비스 투자임을 감안하여 2000년도 예산수정시 전액 지원중단, 농특회계로 이관조치

◇ 민간가격안정 사업자 선정의 경우 선정공고 게재에 응한 신청자를 어떠한 기준에서 평가·선발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유통사업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자의성 개입의 소지가 큼

▶ 민간가격안정사업자 선정기준

0 기본요건

- 저장용수매자금 : 저장시설을 소유, 운영중인자

- 가공용수매자금 : 가공시설 운영중인 자, 단 1차 가공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는 그 원료가

50% 이상 사용되어야 함

- 수출용수매자금 :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를 확보하고 있는 자

- O 신규신청업체 및 기존업체 중 시설능력의 변동이 있는 업체는 현지실사(단 수출업체는 제외)
 - 저장용 : 평당 4톤 기준
 - 가공용 : 1일 8시간, 년 250일 가동 기준
- O 기본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자금배정 기준
 - 수매실적(20%), 매출실적(20%), 수출실적(10%), 수매계획(20%), 자기자본투자율(10%), 기타(20%)
 - 기준항목별 산정결과에 의거 가중배정
- ☞ 신청업체 평가제도 도입(2001년도 지원자금부터),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조치(추가자금 지원 및 실적확인용 제출서류 간소화)
 - 재무적평가기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500점
 - 비재무적평가기준(제품전망,경쟁력,수출실적점유비 등): 500점

▶ 유통사업대상자 선정기준(품목별생산자조직)

- 공동출하실적(40%), 공동출하액비율(20%), 품목별전국협의회 가입비율(20%), 지역협의회결성 (10%), 수범사례(10%)
- 자금배정 기준(아래 기준에 따르며, 배정액 초과시는 가중배분)
 - A 그룹(90점 이상) : 신청액의 100% 기준
 - B 그룹(80~89점) : 신청액의 90% 기준
 - C 그룹(70~79점) : 신청액의 80% 기준

3. 관리조직평가 부문

-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기금 전문가가 없어 기금심의의 전문성이 취약함
- ▶ 기금운영심의회 운영체계 개선 (2001. 3)
 - 운영위원 구성기준 개선
 - 기존의 당연직 위원(10인) 중 3인을 조정, 민간전문가 대표 2인 및 수혜자대표 1인으로 위촉
 - 신규위촉위원 : 농수축산신문발행인 (전정희), 농촌경제연구원 (허길행) 영농조합대표 (정운천)
 - 운영활성화 :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 등 소집회의를 통한 심의원칙방안 정립
 - ☞ 성과 : 의사결정 채계의 자율성·투명성·전문성 강화

4. 자산관리평가 부문

- ◇ 예치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운용가능 자금의 만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예치 대상 상품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운용규정을 개정하여 자금 운용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 예치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운용규정 개정 (2000.6.17)
 - 종전 : 농림수산 사업자금 지원금융기관 **의무 예치**
 - O 개정 : 농림수산 사업자금 지원금융기관 **우선 예치로 완화**

- ▶ 자금운용업무를 기금위탁기관에 위탁(2000.12.15)
 - 종전 : 농림부장관이 자금운용 여부를 결정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자금을 예치관 리하는 **이원화된 자금관리**
 - 개정 : 자금의 운용 및 예치관리업무를 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자금관리업무를 일원화**
 - ☞ 성과 : 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수익성 및 안전성을 제고
- ▶ 예치기관 확대 및 대기자금의 운용을 자금집행시기를 고려한 금융상품의 구분 예치
 - 종전 : 일시여유자금에 한하여 농협중앙회의 월 단위 금융상품에 예치
 - 개선 : 운용대상 기관을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3개 기관으로 확대
 - 대기자금을 지출대기자금과 일시여유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출대기자금은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요구불 상품으로, 일시여유자금은 월 단위 금융상품으로 운용

평가내용

1.1.2 2000년도 평가보고서의 지적 및 권고사항 에 대한 개선 노력과 성과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790-8015)

1. 종합관리 부문

- ◇ 유통구조개선사업은 사업규모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예산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 직함. 장기적으로 생산자조직을 지원하고 생산통제를 통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운 용전략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통하여 가격을 안정시 키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유통개선사업비의 예산사업화 문제는 우선 **현실적인 재원의 한계**로 일반예산에서의 수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원별 투자용도 면에서도 상호 차별성이 있음
 - 일반예산: WTO 규범상 보조가 허용되는 유통 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서비스 분야
 - 기금투자 : 생산, 출하 및 물류 조절 등 정책수단 성격상 생산자 소득보장형 가격지지에 준하는 파급효과가 있어 일반예산에 의한 보조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분야

₩ WTO 규범상의 허용가능 보조

- 생산자·소비자(조직)로부터 이전되지 아니한 순수한 공공재정으로 조성된 재원일 것
- 특히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야 함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의 대안 모색

○ 필요성

- 채소·과실류 등 수익성 작목 위주의 생산집중과 수입량 증가로 수급불안추세 심화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에 의한 가격전략은 초기인프라 구축상태로 중장기적 지원과 경험 필요
- 2001년도부터 채소·과실류의 품목별 생산자조직 지원을 축소하고 보다 간접적 지원방식인 채소·과실류 수급안정제도 위주로 지원방식을 전환
 - ☞ 성과 :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사과·배의 조기 수급안정과 배추, 무, 양파, 대파, 감귤 등의 출하조절로 산지가격을 지지

- ◇ 기금관리가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종자관리소에 이원적으로 위탁되어 있어 기금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미흡함.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기금의 관리뿐만 아니라 대출, 비축 등 직 접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금관리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종자관리소와 유통공사로 이원화된 기금관리체계를 유통공사로 일원화 추진 중
- 기금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한 유통공사 및 종자관리소의 의견 조회(2001.12)
- 2003년도부터 관리일원화를 목표로 관련규정(농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금관리조직을 팀제로 전환 (2001. 8)
 - 기존 : 기금관리처 내의 기금관리부로 편제
 - 개편 : 관리이사 직속의 기금관리팀으로 개편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

2. 사업운영 부문

- ◇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여 기금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수가 너무 많아 운용 효율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2001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 수립시 **사업체계 축소 조정**
- 당초 : 정부가격안정, 민간가격안정, 종자수급관리, 유통시설확충, 산지및소비지유통개선, 유통조성 및 사업조성 등 6개항으로 구성
- 조정 : 기능이 유사한 유통조성 및 사업조성을 통합 총 5개항의 사업체계로 슬림화
- ▶ 2002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 수립시 가격안정사업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품목** 별로 세분화 된 **사업체제를 기능별. 부류별로 통폐합 정비 예정**(2002. 5 ~ 2002. 7)

- ◇ 기금의 사업운용 경향이 농수산물의 가격안정보다는 농가소득을 유지해주는 경향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이것이 기금에서 해야할 적절한 사업인지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 ▶ 농가소득 보장형 가격차보전이나 정부수매의 확대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공급과잉 기조 하에 있는 원예작물류의 생산증가를 유인하여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재 정부담의 가중 등으로 본 기금으로서도 가급적 지양하고 있음
 - 그러나, 채소, 과일 등 시장개방에 의한 공급과잉, 저가격 시대의 가격정책은 수급, 특히 공급측면의 변수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면적조정, 출하량조정, 산지폐기, 품질규제 등) 일정 수준의 가격을 지지하고, 안정을 도모하여 적정한 재생산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함
 - ▶ 따라서 본 기금은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 WTO 규정의 최소허용보조 및 감축대상보조 수준을 준수
 - 가격폭락·폭등을 억제하는 정책
 -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폭락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폭등을 억제할 수 있도록 수급·가격의 균형을 유도
 - 과잉해소를 위한 정책
 - 품목별 시장개방 수준, 상대적 소득차이 등에 따라 작물이 편중 재배됨으로써 많은 채소, 과일류가 공급과잉 기조에 있으므로 과잉해소를 위한 정책이어야 함
 - 가격경쟁력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 채소, 과일류의 경우 수입농산물과 내수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거나, 시설채소 등 수출 농산물의 경우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 효 율화 정책이 필요

- ◇ 시장출하촉진, 직거래매취지원사업 등 소비지유통개선사업의 사업효과 검토 필요
- ▶ 시장출하촉진자금은 지원금액의 2,400% 이상, 직거래매취자금은 250%이상의 사업의무량 이 부과되며 사업실적 미달시는 위약 처분됨에 따라 사업별 목표달성도가 높은 편임
 - 시장출하촉진자금의 지원결과 기존의 농업인에게 15~30일에 걸쳐 출하대금이 지급되던 관행을 당일 결제조치화 함에 따른 대농가 편의성 제고
-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단계가 축소된 결과, 유통마진이 평균 32.6% 축소되었고, 유통비용은 1조4.420억원이 절감됨에 따라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 지불가격 인하효과를 거양

3. 자산운영 부문

- ◇ 운용가능 자금이 요구불 예금과 3개월 정기예금으로 단기운용되고 있어 위탁관리체제 의 조기 정착과 함께 자금운용수단의 다양화 및 수익성 제고 노력이 필요
- ▶ 자금수지계획에 의한 탄력적 자금운용으로 **장기상품의 예치비중 확대**로 수익성 제고

(단위: 백만원, %)

구 분	요구불 상품	3개월 에치	6개월 예치	계
2000년 말	49,653(24.9)	150,000(75.1)		199,653(100.0)
2001년 말 ^{주1}	86,247(36.5)	20,000(8.5)	130,000(55.0)	236,247(100.0)

- ※ 주1: 정부의 2002년도 재정 조기집행방침으로 요구불 비중을 전년보다 다소 확대
- ▶ 자금운용상품 및 거래금융기관의 확대로 신용위험 축소 및 수익성 제고
 - 종전 : 농협중앙회의 확정금리상품인 요구불 예금·3개월 정기예금 중심 운용
 - 개선 : 농협중앙회 확정금리상품 이외 삼성증권의 MMF(기금투자풀의 실적배당상품) 추가 운용
 - ※ 기금투자풀은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주간사(삼성증권·삼성투신운용) 및 운용펀드가 확정되어 신용위험 등에 대한 자체 평가는 생략

- ▶ 자금운용 성과평가 수익률 구분 운용으로 자금운용 효율 제고
 - 기준수익률(기존) : 월별 콜금리 및 3개월 CD물 월별 수익률의 연간 평균
 - 운용자금이 일시 대기성 자금인 점을 고려하여 금융시장 단기실세 대표금리 적용
 - 목표수익률(추가): 3개월 CD의 월말 수익률의 연간 평균 금리
 - 3개월 미만 요구불 예치를 최소화하고 3~6개월 상품 비중을 확대할 경우 달성 가능한 수준
- ▶ 3년 만기 일시상환조건의 **장기차입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만기 2년 앞서 조기상환** 함으로서 금융비용 절감 및 자금운용 효율 제고

▶ 자금운용방식을 부정기 자금운용에서 연중 운용으로 전환하여 운용수익의 대폭 증대

연도별	운용희수	운용상품	운용기간	연운용액	이자수익
1998	2회	CD · RP	3개월 단위	연 800억원	2,849백만원
1999	3회	정기예금	3개월 단위	연 800억원	1,353백만원
2000	2회	정기예금	3개월 단위	연 1,800억원	3,148백만원
2001	연중	예금, MMF	요구불, 3~6 개월	연평잔2,174억원	11,836백만원

2

경영혁신 및 성과관리 노력

여백

지표명 1.2 경영혁신 및 성과관리 노력

가 중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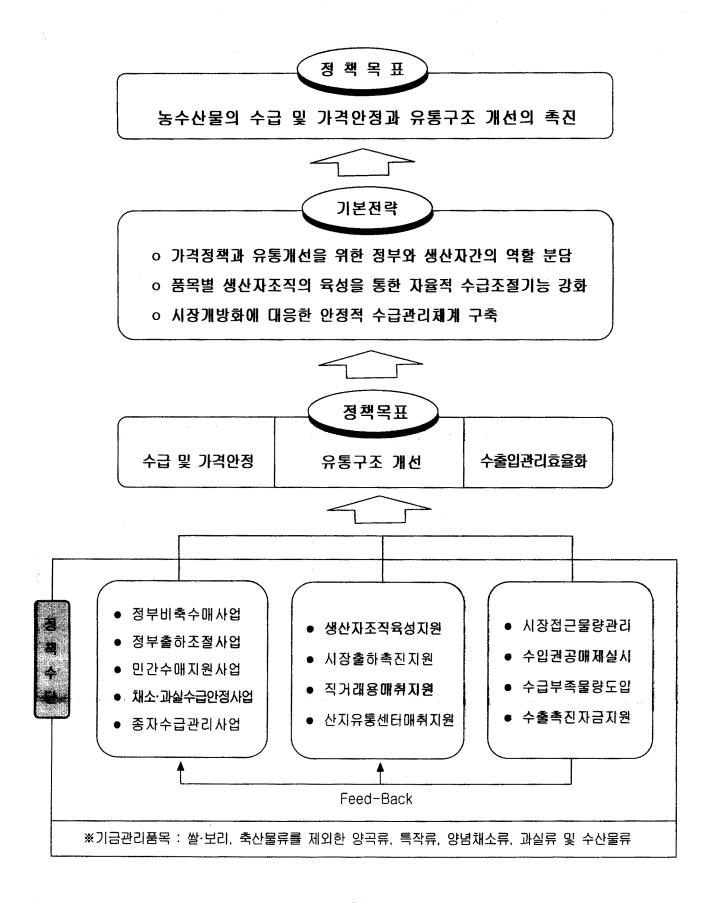
30%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790-8015)

가 내 용 평

- 1.2.1 정책목표 달성과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 1.2.2 기금의 수요와 재원에 관한 예측체계의 합리성 및 중장기 전망에 근거한 재원확보 노력의 적정성
- 1.2.3 기금의 정책목표 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내부 성과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I. 정책관리 방향



Ⅱ. 2001 주요지표별 실적 요약

1. 정책목표 달성과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가. 정책환경의 변화 및 구조적 문제점

- WTO 차기협상의 본격적 진전과 FTA 등 개방화 시책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 여지 는 점차 축소될 전망이므로 원예작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이 농정의 주요과제로 대두
- O **벼 재배 논의 타 작물 전환추세**의 영향으로 원예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음
- 구조적 과잉생산, 외국 농산물 수입증가,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 선호, 외식산업의 성 장 등으로 외국산농산물은 물론 국내산 농산물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의 증가와 농산물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 확산 등 **유통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대처가 요구됨

나, 환경변화에 대응한 가격정책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조직 등 **민간을 통한 가격지지와 안정을 도모**하고 긴급한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의 필요시 정부차원에서 생산자단체와 협력 긴급수급조절대책을 추진
-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격폭락의 억제** 또는 **가격지지를** 위한 정책 추진
- 품목별 시장개방 수준과 상대소득 차이 등에 따라 작물이 편중 재배됨으로 인한 **공급** 과잉 기조의 해소를 위한 정책 강구
- WTO 규정의 최소허용보조 및 감축대상보조 수준을 준수
- 채소, 과실류의 경우 수입농산물과 내수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거나, 시설채소 등 수출 농산물의 경우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 부문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

다.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기능 강화를 위한 운용기조 혁신

ㅇ 정부지원은 간접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

O 운용기조 혁신의 필요성

- 채소, 과일 등 원예작물류의 시장개방화로 공급과잉에 의한 저가격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수급 및 가격안정정책은 특히 공급측면의 변수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재배면적조정, 출하량 조절, 산지폐기, 품질규제 등) 일정수준의 가격을 지지하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만 적정 재생산구조 유지를 통한 수급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임
- O 1단계 혁신: 산지유통개선의 일환으로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 지원
 - 생산조절·출하조절·물류조절 및 수출입조절의 일관 기능을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 ☞ 성과 : 산지유통의 효율화와 자율적 수급조절체계의 인프라 구축, 반면 간접적인 수급
 조절 기능 면에서는 초기단계로 보다 중장기적인 지원과 경험이 필요
- O 2단계 혁신: 정부의 간접지원에 의한 가격안정기능 강화 및 유통개선분야의 지원 축소
 - 수급조절기능이 미흡한 과실류 및 시설채소에 대한 수급안정제도 신설(과실800억, 시설채소480억) 및 노지채소 수급조절능력 제고를 위한 채소수급안정자금 확대지원(400억→800)
 - ☞ 성과 :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사과·배의 조기 수급안정과 배추, 무, 양파, 대파, 감귤 등의 출하조절로 산지가격을지지

◇ 농안기금 일반업체 지원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추진

- 일반업체 지원자금 대출금리(8%) 인하의 필요성
- 일반업체 대출금리(8%)가 최근 중소기업 평균대출금리(7.84%)보다도 높아지면서 메릿 상실
- 민간수매자금 지원 업체들의 대출기피 추세 증가로 민간을 통한 가격안정 기능의 상실이 우려
- 일반업체 지원금리 인하조치
- 1차 인하조치(2001. 5. 15자): 8% → 6.5%
- 2차 인하조치(2001. 11.13) : 6.5% → 5.5%

2. 기금의 수요와 재원에 관한 예측체계의 합리성 및 중장기 전망에 근거 한 재원확보 노력의 적정성

가. 기금의 조성재원별 규모

(단위: 억원)

조성재원별	기금조성 규모							
조정세전별	'98말 누계	' 99	2000	2001	누 계			
총 계	21,648	2,704	3,768	1,789	29,909 (100%)			
ㅇ 정부출연금	1,475		52	*****	1,527 (5.1%)			
ㅇ 재특차입금	940	-288	348	-500	500 (1.7%)			
ㅇ 운용수익금	19,233	2,992	3,368	2,289	27,882(93.2%)			
- 수메비축	-5,273	-156	-205	-417	-6,051			
- 수입비축	22,191	2,431	2,382	1,860	28,864			
- 융자지원	3,636	621	652	656	5,565			
- 기 타	-1,320	96	539	190	-495			

나. 중장기 전망에 근거한 기금재원 확보노력

□ 주 수입원인 국영무역 수입차익금의 지속적인 발생이 가능하여 중장기적 조성확대 전망

- 1차 농산물 협상이 종료하는 2004년까지 확대 조성 지속 가능
- 2차 농산물 협상이 적용되는 2005년 이후는 협상결과에 따라 품목별 조성기여도 차이 발생
 - 가격의 계절진폭이 심한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땅콩은 국내 풍작시 시장접근물량 관리가 어려워지므로 증량 운영(관세인하)시는 기금조성 기여도가 현재보다 저하
 - 기금조성 기여도가 87%(2000말 기준) 수준인 참깨, 콩, 팥의 시장접근물량 증량(관세인하) 시에도 상당수준의 수입차익이 가능하여 기금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2004년도 까지

- o UR 협상결과에 의한 TRQ 관리
- 확대조성추세 지속
- 2004년말 추정조성액: 3조6천억원

2005년도 이후

- WTO 2차 협상결과에 의한 TRQ 관리
- 참깨, 콩, 팥 : 수입차익금 발생으로 기금조성
- 양념류, 땅콩 : 현상유지 또는 조성 저조
- * TRQ (관세할당제, Tariff rate quotas):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수입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을 철폐키 위한 UR 협정의 주요 합의사항임

3. 기금의 정책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동에 대한 내부 성과관리시스템의 적정성

가. 기금운용관리자의 평가관리 시스템 및 운영 성과

○ 평가대상 확대: ('00년)18개사업 149개소→('01년) 26개사업 207개소

○ 평가결과

平 是。	정책목표달성도	자글미운 용 율	사업성장을	사후환리부문
평 균	230%	2.8%	10.8 %	
농협회원조합	157	2.9	20.8	위약금 징구미흡
수협회원조합	136	0.9	5.6	출하실적 확인 미훕
영농조합법인	208	15.6	10.6	사업실적 중복
산지유통인	467		48.2	장부작성 미홉
농협무역(주)	137		△23.0	수출선도금관리 미흡
종합유통센터	158	0.5	8.9	자부담액 미운용
수산물업체	347		4.8	수매실적 증빙 미훕

○ 평가결과에 의거 미흡사례 현지지도(124건), 개선과제 선정(31건) 규정개정 등 방안강구

나. 단위사업별 자체 내부평가시스템 운영 노력

- 운영방법 : 사업실시기관별로 사업정산 시 또는 차기 자금지원 규모 결정 시 등에 평가실시
- 단위사업별 내부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도모
 - 사업성과와 신용도로 구분 평가 : 저장가공용 및 수출용 수매지원사업
 - 평가지표체계 개선 : 도매시장육성 지원사업
 - 평가등급별 자금지원 차등 폭 확대 : 산지유통센터 운영지원자금

다.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 기금운용관리자의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 우수조합(상위 20개소): 1~2억원 무이자 자금지원
- 부진조합(하위 20개소) : 자금지원규모 동결 및 지적사항 개선실태 점검
- 단위사업별 자체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지급율 차등적용, 자금지원한도 확대, 담보취득 완화 등 각 사업별 자체지원용도별 로 다양하게 실시

Ⅲ. 평가내용별 추진실적

평가내용

1.2.1 정책목표 달성과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790-8015)

1. 기금관련 정책목록 및 주요 경제사회지표

가. 기금운용정책 현황

- ◇ 농업정책은 일반적으로 구조개선정책과 가격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구조개선 정책에 농림분야 일반에산(농특회계)이 투입되는 반면, 농안기금은 전적으로 가격정 책에 투입되고 있음
 - o 가격정책 중 주곡(쌀·보리)은 양특회계, 축산물류는 축발기금이 담당하며 그 이외는 본 기금이 전담

□ 주요 품목군별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품목	수급 및 유통특성	정책목표	정책수단
양념채소 (고추, 마늘 양파)	 생산확대 잠재력 큼 영세 다수 농가 분포, 소득작목 단위가치가 높고 저장성 이 있어 분산 출하 정전판매 위주 (마늘, 양파 일부 포전거래) 	 ● 생산조정, 출하조절 및 신선・가공수요 조절로 가격지지 및 안정 ● 민간수입 억제로 국내 가격 유지 및 소득안정 	 ● 관측 ● 채소수급안정사업 - 생산조정: 계약재배 - 출하조절: 산지폐기, 출하시기조절 ● 수요조절: 저장업체 민간수매지원 ● 가격지지: 정부수매
무, 배추 등	 생산시기, 지역집중성 큼 (고랭지배추, 월동배추) 부패성・물류비 부담으로 가격등락 극심 수집상 밭뗴기위주 거래 	●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지지, 수집상 견제(출하시기와 지역 을 조절)	 관측 채소수급안정사업 생산조정 : 계약재배 출하조절 : 산지폐기, 출하시기조절 수요조절 : 가공용 민간수매지원
시설원예작물 (채소, 화훼, 버섯)	● 전업농에 의한 온실재배 ● 작목반 등 기초조직에 의한 공동출하 위주	● 생산 및 출하시기 조절 과 품질고급화로 가격 지지, 농가소득 지지	● 관측 ● 시설채소출하약정사업 ● 공동출하(무조건 수탁), 품질규제, 산지폐기
과 일	영년생 작물로 면적 조정이 곤란농협 계통출하 위주	● 품질 차별화, 신선· 가공·수출 수요조절로 농가소득 지지	 만측(사과, 배, 포도, 단감) 출하약정사업(사과, 배) : 공동출하(수탁,매취), 가격차보전 생산조정 : 감귤 적과 가공・수출용 민간수매 지원

나. 기금관련 주요 경제사회 지표

□ 연평균 생산자물가

(1995=100)

						수 산 품				전 력・	
7	甚	(書料本)	ない書		용 산 식 품	수 산 식 품	비식용 농림수산	광산품	풍산품	学 도시 도시기스	神神스
가	중치	1,000.0	768.2	66.1	57.2	8.7	0.2	4.4	664.9	32.8	231.8
	'70	9.4	9.4	13.3	14.3	4.0	1.2	8.8	8.1	10.1	-
둥	'75 '80	26.6 38.9	26.6 38.9	38.8 24.8	41.2 24.3	32.5 26.0	6.9 30.4	27.0 41.8	22.3 43.2	47.8 62.6	-
	'85	0.8	0.8	5.9	5.6	6.7	1.7	4.9	△ 0.4	0.0	-
	'90	4.1	4.1	14.3	13,2	25.4	2.4	2.1	2.3	△ 5.8	. –
락	'92 '93	2.1 1.5	2.1 1.5	3.4 1.8	3.0 40.5	5.8 2.8	5.3 65.7	0.9 △ 0.1	1.8 1.6	6.9 1.4	-
'	⁹³	2.7	2.7	12.1	12.1	18.7	4 6.6 △	1.5	1.5	0.5	
	'95	4.7	4.7	3.8	4.7	△ 0.9	1.6	0.0	4.9	3.5	-
	'96	3.2	2.2	1.6	0.5	9.3	△ 4.3	0.9	2.2	2.4	6.8
률	'97	3.9	3.2	1.9	1.4	4.4	1.8	1.5	3.4	4.8	5.4
	'98 '99	12.2 △ 2.1	13.6 △2.1	3.9 10.1	4.3 10.5	1.0 7.9	19.1 △ 7.6	7.3 1.1	14.5 △3.3	14.0	8.2
(%)	,00	2.0	2.2	10.1 △ 2.6	43.6	3.5	△ 0.7	2.2	△ 3.3 2.4	0.5 8.5	△ 2.1 1.5
	'01	1.9	1.8	1.0	1.5	△ 1.6	1.0	0.4	1.5	7.3	2.4

□ 연평균 소비자물가

(2000=100)

				∛	苦			A	Ħ	查			11 T
		총자수		}	수신물 공축 산	공 제 품		집 세	공 공 서비스	계인	서비스 외 식	식료품	식료품 이 외
가중	치	1,000.0	450.3	107.4	89.8	342.9	549.7	131.4	150.9	267.4	100.3	271.2	728.8
	'70	16.0	_	_	-		_		-	_	-	21.4	10.2
둥	'75	25.2	-		-		-	-	-		_	31.8	18.5
١	'80	28.7	-	;-ina	-		-		_	-	_	26.7	30.5
	'85	2.5	-	-		_		_	_	-	_	3.7	1.6
	'90	8.6	7.9	11.0	11.2	5.2	9.5	10.5	6.0	14.5	14.3	10.1	7.6
	'92	6.2	4.2	4.1.	3.7	4.2	9.0	7.6	8.4	10.5	10.3	6.2	6.2
락	'93	4.8	3.1	1.6	1.4	3.9	7.1	5.8	7.4	7.7	5.5	3.7	5.3
	'94	6.3	6.1	12.2	12.3	3.1	6.5	3.9	7.1	7.9	6.8	9.4	4.7
	'95	4.5	2,7	2.9	2.9	2.6	6.7	3.8	7.8	7.9	5.5	3.4	5.0
	'96	4.9	3.6	1.8	1.5	4.3	6.3	3.6	6.7	7.6	5.5	. 3.9	5.4
률	'97	4.4	4.2	3.8	4.0	4.3	4.7	3.3	5.1	5.3	3.5	3.9	4.7
=	'98	7.5	9.7	6.1	5.7	11.2	5.2	0.5	9.5	5.2	5.0	8.6	7.0
(3.)	'99	0.8	2.3	7.3	7.5	0.5	△ 0.8	△ 4.1	2.2	△ 1.0	△ 0.9	2.8	0.0
(%)	,00	2.3	1.9	2.0	2.1	1.6	2.9	△ 0.5	7.1	2.0	0.8	0.9	2.9
	′01	4.1	3.5	6.3	6.3	2.6	4.6	4.1	7.5	3.1	1.7	3.5	4.3

□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동향

-1177-11		-1 2 21	지수(19	95=100)	E=1.0.000	4.5.	
지표명	子是	가중치	2002. 1	2001. 1	등락율(%)	기역도	
ㅇ 농가판미	ㅇ 총지수	1000.0	125.3	111.5	12.4	-	
가격지수	- 곡물	323.3	127.2	135.9	△6.4	0.077	
	- 청과물	296.6	105.8	93.7	12.9	2.699	
	- 축산물	322.3	141.9	103.6	37.0	△0.540	
	- 기타농산물	57.8	122.4	110.9	10.4	0.129	
ㅇ 농가구입	ㅇ 총지수	1000.0	144.2	131.9	9.3	_	
가격지수	- 가계용품	524.9	135.5	131.8	2.8	0.218	
	- 농업용품	403.7	154.5	129.6	19.2	△0.028	
	- 농촌임료금	71.4	149.6	145.3	3.0	0.045	

□ 농가교역조건

7 2	2001. 1	2001. 12	2002. 1
농가교역조건(A/B×100)	84.5	85.0	86.9
농가판매가격지수(A)	111.5	122.3	125.3
농가구입가격지수(B)	131.9	143.8	144.2

ㅇ 2002년도 1월 중 농가교역조건은 전년동기 대비 2.4포인트 호전됨

□ 농산물 유통개혁 성과지표

구 분	단위	'96	'97	'98	'99	'00	'01	비 고
□ 농산물생산조정						* Mary		
○ 채소류 재배면적변동률	%	4.4	5.1	4.1	4.7	3.6	4.0	・채소류전체기준
- 양파	%	34.1	32.7	30.1	31.8	19.9		
o 양념류 가격진 폭률	%	87.1	48.4	65.1	56.6	52.2	23.9	· 고추, 마늘, 양파
- 마늘	%	70.4	42.1	52.0	29.4	26.7	38.1	
○ 최저가격예시 품목수	개		-	4	8	10	12	· 계약재배 참여농가 대상
○ 계약재배물량	천톤	232	247(6.5%)	357(45)	408(14)	498(22)	600(20)	
□ 농산물유통구조개선								
ㅇ 농산물 유통마진율	%		56.5	52.2	51.8	52.6	54.1	· 직거래 등 신물류 확산
(기 중 평균)			(40.4)	(39.8)	(38.7)	(40.4)	(43.6)	
- 가을감자	%		50.4	47.2	36.1	37.0	41.8	산지조합 취급비중 확대,
- 봄무	%		78.3	75.0	73.9	67.9	68.6	상장수수료 인하(5%→4),
— н }	%		43.3	38.0	34.8	52.0	44.2	수집상 취급비중 축소 등
ㅇ 농산물직거래비중	%		5	12	15	1 8	23	
- 종합유통센터매출액(청과)	억원		-	1,952	3,183	3,754	5,020	
· 종합유통센터 일평균이	천명			9.0	9.8	12.4	10.9	·'01객당단가(양재) : 78천원
용객								
o 산지유통								
- 공 동출하율	%	32	35	41	50	55	60	· 생산자조직 육성지원 강화
- 공동계산조직수	개	-	123	230(87%)		407(33)	618(51.8)	· 생산자단체기준
- 공동브랜드수	개	-	-		534(585%)	619(16)		· 유통실명표시 강화
- 표준규격출하율	%	10	25	26	30	35	40	
o 도매시장유통	0.	44.4	40.4	40.0	47.5	47 0		
- 도매시장 경유율	%		49.4	48.2	47.5	47.9	44.0	
- 공영도매시장 중 가락 시장 거래액 비중	%	55.8	49.2	46.4	45.3	44.5	41.3	· 가락시장 집중도 완화
- 전자경매실시 도매법인	개	-	-	-		42	63	
- 하역기계화율	%	-	1	2	5	10	15	· 가락동 도매시장기준
ㅇ 농산물생산액중 가공공	%		0.8	0.8	1.2	1.2	1.2	·정부지원 가공공장기준
장 농산물구입에 비중								
□ 농산물수출확대					a de la constante de la consta			
o 신선농축산물수출액	백만\$	620.2		669.1	791.3	550.0	521	
))) <u>L</u> \$)ln &\$.07		00.0	(△0.7%)	(8.7)	(18.3)	(△30.5)	(△5.3)	Amid at more distances
- 신선농축산물수출비중 데기그리스추에	ж ж ж ж ж ж ж ж ж ж ж ж ж ж ж ж ж ж ж		35.1	40.9		35.9	33.0	
- 돼지고기수출액			242(24.7%)	313(29.3)	340.0(8.6)	75(△77.9)		, , , & & (, , ,
- 화훼류수출액	백만\$		5.3(17.8%)	j	19.8(62.3)	28.9(46.0)	31.8(10.0)	돼지고기 수출 중단
- 김치수출액	백만\$	39.1	39.7(1.5%)	43.7(10.1)	78.8(80.3)	78.8(-)	68.7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가율

^{2.} 재배면적 변동률은 5개년 이동평균 값임

2. 중장기 비젼 및 운용전략

가. 중장기 비젼

□ 효율성제고 : 생산자단체·조직의 기능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기능 확보

□ 안정성제고 : 농수산물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안정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 형평성제고: 가격정책과 유통개선을 위한 정부와 생산자간의 역할 분담

산지가격 지지를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

+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나. 중장기 운용전략

단 계	기 간	운 용 전 략
		·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집중적 육성
1 단계	1995~1999	• 생산출하조절제의 정착을 위한 지원(가격차보전 등)과
		자율적인 유통명령제 도입
		• 가격정책, 유통정책, 무역정책간의 연계체제 구축
. ·		• 시설채소·과실류의 수급안정제 도입과 채소수급안정제
2 단계	2000~2004	확대 등 생산자조직의 자율수급조절능력 제고
		• 전국단위 생산자연합회의 결성과 유통명령제의 정착화
		• 생산자 자조금제도의 도입·육성
		·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자율적인 가격안정체제 정착
3 단계	2005년 이후	• 정부가격안정사업은 긴급수급조정과 국영무역 위주로 실시
*		• 생산자조직의 생산출하조정, 산지유통개선, 표준규격화,
	<u> </u>	시장개척 등을 위한 자조금제의 활성화

3. 정책환경의 변화와 구조적인 문제점 및 대응노력

가. 정책환경의 변화 및 구조적 문제점
 □ WTO 차기협상의 본격적 진전과 FTA 등 개방화 시책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 여지는 점차 축소될 전망이므로 원예작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이 농정의 주요과제로 대두
○ 국내 농산물 수요는 정체된 반면, 시장접근물량 증가 및 민간수입 증가로 전반적인 가격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내생산은 채소류, 과실류 등 수익성 작목 위주로 집중되어 수급불안 심화가 예상
○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등 정부가격안정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시장기능에 의한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 추세
□ 벼 재배 논의 타 작물 전환추세의 영향으로 원예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음
○ 10% 생산 증가 시 가격하락률 : 고추 52%, 마늘 23%, 양파 16%
□ 구조적 과잉생산, 외국 농산물 수입증가, 소비자의 고품질·안전농산물 선호, 외식산업의 성장 등으로 외국산농산물은 물론 국내산 농산물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과 안전성, 기호도 측면에서의 차 별화 가 요구됨

변화에 대한 대처가 요구됨

□ 대형유통업체의 증가와 농산물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 확산 등 유통분야의 급속한

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및 노력

가격정책 대응방향

- ◇ WTO 규정의 최소허용보조 및 감축대상보조 수준을 준수
- ◇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사실상 가격폭등 현상은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가격폭락의 억제 또는 가격지지를 위한 정책 추진
- ◇ 품목별 시장개방 수준, 상대소득 차이에 따라 작물이 편중 재배됨으로 인한 공급 과잉 기조의 해소를 위한 정책 강구
- ◇ 생산자단체를 통한 가격지지와 안정을 도모하고 긴급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필요시 정부차원에서 생산자단채와 협력 긴급수급조절대책을 추진
- ◇ 체소, 과실류의 경우 수입농산물과 내수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거나, 시설채소 등 수출농산물의 경우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부문의 효율화 정책을 강구

- □ 수급불안과 가격변동이 심한 원예작물에 대해 산지폐기, 정부수매, 사전시장개입 등 다양한 수급안정대책을 실시하여 가격안정 도모
 - 과잉 우려품목에 대한 사전 수급안정대책 추진
 - 마늘, 양파, 대파 : 유통협약에 의한 산지폐기(34천톤), 정부수매(26천톤) 조기실시
 - ☞ 수급안정대책을 통한 마늘, 양파의 농가소득지지효과 : 2,290억원 규모
 - 과잉생산된 과실류의 가공용수매, 산지폐기 및 정부수매 등 추진 (배4천톤, 감귤 132천톤)
 - 가을배추: 7만톤 산지폐기 ⇒ 평년수준(160만원/5톤) 회복
 - 계약재배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시장교섭능력을 강화
 -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 물량 : ('98) 6% ⇒ ('01) 11%
 - 협동조합 계통출하(원예) 확대 : ('98) 55% ⇒ ('01) 71%

□ 수매, 가공 등 다양한 시장격리조치를 병행하여 수급조절을 뒷받침

- 농안기금 운용계획상의 사업비 중 가격안정사업 비중을 60% 이상으로 유지
- 수급 및 가격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민간수매자금 지원 및 필요시 정부수매 실시
- 가격하락 시 시장개입시기를 정형화하여 가격하락을 사전에 예방
 - 작목별, 작기별 시장개입 정도와 방법을 체계화하여 추진
- 한중 마늘협상에 따른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국내 마늘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여 가격 및 소득안정을 도모

□ 생산자조직화 및 조직간 사업연합방안을 강구하여 대형유통업체의 확대 등 소비지 유통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농가수가 적은 품목부터 전국단위 생산자조직 결성 추진
 - 겨울배추, 고랭지채소(무, 배추, 고추, 피망) 전국 조직화
 - 감귤은 결성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이며 배, 단감도 지속 추진
- 유통활성화 조합을 중심으로 연합판매 등을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등 마케팅분야의 관심 제고
 - 지역조합가 사업연합으로 시장교섭력 강화(안성 13개조합, 강원연합 22개소 등)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제도정비 및 홍보강화
 - 원산지표시제, 안전성조사,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4.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기능 강화를 위한 운용기조 혁신

ㅇ 정부지원은 간접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

□ 운용기조 혁신의 필요성

- 시장개방 이전의 가격정책은 폐쇄경제를 가정하여 가격안정대사업, 정부수매 등과 같은 직접적인 물량조작으로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거양하였으나
- 채소, 과일 등 원예작물류의 시장개방화로 공급과잉에 의한 저가격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수급 및 가격안정정책은 특히 공급측면의 변수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재배면적조정, 출하량 조절, 산지폐기, 품질규제 등) 일정수준의 가격을 지지하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만 적정 재생산구조 유지를 통한 수급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임

□ 1단계 혁신: 산지유통개선의 일환으로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 지원

○ 품목별로 전문화된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조절·출하조절·물류조절 및 수출입조절 의 일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95년도부터 자금을 지원

☞ 기금운용

' 95	'96	' 97	'98	. 666	2000	2001	2002	계
2,915억원	3,888	4,292	3,345	3,507	3,697	3,504	1,605	26,753

☞ 성과 : 산지유통의 효율화와 자율적 수급조절체계의 인프라 구축, 반면 간접적인 수급 조절 기능 면에서는 초기단계로 보다 중장기적인 지원과 경험이 필요

□ 2단계 혁신 : 정부의 간접지원에 의한 가격안정기능 강화 및 유통개선분야의 지원 축소

- 2001년도부터 간접지원 방식인 민간가격안정사업분야의 지원을 확대
 - ☞기금운용 : 수급조절기능이 미흡한 과실류 및 시설채소에 대한 수급안정제도 신설(과 실800억, 시설채소480억) 및 노지채소 수급조절능력 제고를 위한 채소수 급안정자금 확대지원(400억→800억원)
 - ☞ 성과 :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사과・배의 조기 수급안정과 배추, 무, 양파, 대파,
 감귤 등의 출하조절로 산지가격을 지지

◇ 농안기금 일반업체 지원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추진

□ 일반업체 지원자금 대출금리(8%) 인하의 필요성

- 본 기금은 일반업체에 대한 대출금리로서 8%를 부리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중소기업 평균대출금리(7.84%)보다도 높아서 정책자금으로서의 장점을 상실
- 민간저장·가공용 수매자금을 지원 받아온 업체들의 대출 기피 추세가 증가되어 민간 을 통한 가격안정 기능의 상실이 우려

구 분	지원계획(A)	지원실적(B)	미대출(C=A-B)	C/A(%)
'98년도	1,366억원	1,232	134	9.8
'99년도	1,195억원	942	253	21.2
'00년도	1,375억원	809	566	41.1

○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용 수매업자는 수입개방으로 산업환경 면에서 타업종에 비해 불 리하며 최근의 한·중 마늘교역 영향과 과실류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

□ 시중금리 및 재정자금 금리동향

-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98 상반기 이래 하향 안정화 추세
 - 중소기업평균대출금리 : ('98상반기) 16.49% → (2000.11월) 7.84%
- 정책자금 대출금리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
 - 재특자금 : ('98상반기) 10.05% → (2001. 1월) 6.75%
 - 정보화촉진기금 : (2000) 연 6.5% → (2001. 1) 5.75%~6.0

□ 일반업체 지원금리 인하조치

○ 1차 인하조치(2001, 5, 15차): 8% → 6.5%

○ 2차 인하조치(2001. 11.13) : 6.5% → 5.5%

평가내용

1.2.2 기금의 수요와 재원에 관한 예측체계의 합리성 및 중장기 전망에 근거한 재원확보 노력의 적정성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790-8015)

1. 총괄 및 주요 사업별 재무제표

가. 총괄 재무재표

□ 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业 :号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
자 산			
I . 유 동 자 산	1,772,245	1,841,708	1,636,066
1. 당 좌 자 산	1,609,412	1,679,649	1,551,798
가. 현금및현금등가물	287,306	389,586	358,768
나. 단기금융상품	130,000	0	0
다. 단 기 융자금	1,163,225	1,263,607	1,165,003
라. 미 수 금	8,001	4,277	8,626
마. 미 수 수 익	20,845	19,310	19,361
바. 선급비용	35	36	40
사. 선 급 금	0	2,833	O.
2. 쟤 고 자 산	162,833	162,05 9	80,609
가. 비축농수산물	131,491	129,897	80,609
나. 농산물 종 자	29,813	31,574	0
다. 미착농수산물	1,529	588	0 -
3. 기타유동자산	. 0	0	3,659
가. 툭 정 예 금	0	0	3,653
나. 보관유가증권	0	. 0	6
П. 고 정 자 산	1,229,956	982,005	802,871
1. 투 자 자 산	1,125,681	876,760	697,332
가. 장 기 융 자 금	1,124,029	876,758	697,330
나. 출 자 금	1,650	0	0
다. 전 화 가 입 권	2	2	2
2. 유 형 자 산	104,275	105,245	105,539
가. 토 지	72,480	72,480	72,325

(단위 : 백만원)

W. W. M.	2001년도	,2000基基	1999년동일 (1
나. 건 물	34,255	33,780	32,977
(감가상각누계액)	(14,542)	(13,705)	(13,089)
다. 구 축 물	18,146	17,962	17,428
(감가상각누계액)	(9,557)	(8,906)	(8,432)
라. 차 량 운반구	84	624	645
(감가상각누계액)	(61)	(584)	(524)
마. 공기구 비 품	4,875	4,631	5,067
(감가상각누계액)	(1,406)	(1,456)	(1,326)
바. 건설중인자산	0	418	468
자 산 총 계	3,002,201	2,823,713	2,438,937
부 채			
I . 유 동 부 채	11,313	11,686	3,767
1. 미 지 급 금	8,974	9,328	1,697
2. 선 수 금	158	0	0
3. 예 수 금	28	9	5
4. 예 수 보 증 금	1,998	2,110	1,875
5. 미 지 급 비 용	155	239	184
6. 예수유가증권	0	0	6
Ⅱ. 고 정 부 채	50,000	100,000	65,200
1. 장 기 차 입 금	50,000	100,000	65,200
부 채 총 계	61,313	111,686	68,967
자 본			
I. 자 본 금	152,707	152,707	147,500
1. 정 부 출 연 금	152,707	152,707	147,500
Ⅱ. 자 본 잉 여 금	102,956	102,956	92,975
1. 재평가 적립금	65,347	65,347	65,347
2. 기타자본잉여금	37,609	37,609	27,628
Ⅲ. 이 익 잉 여 금	2,685,224	2,456,364	2,129,495
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685,224	2,456,364	2,129,495
(당 기 순 이 익)	228,860	305,404	299,182
자 본 총 계	2,940,888	2,712,027	2,369,970
부채와자본총계	3,002,201	2,823,713	2,438,937

^{※ 2000}년도 이익잉여금에는 기금통합시 인상 및 종자기금 승계분 21,465백만원이 포함됨

□ 손익계산서

3 3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
I. 매출 액	563,852	541,473	590,698
1. 농수산물매출	403,472	427,046	498,949
2. 종 자 매 출	36,850	6,912	0
3. 수입권공매수익	57,928	42,354	29,655
4. 대여이자수익	65,602	65,161	62,094
│ II. 매 출 원 가	317,248	213,663	269,015
1. 농수산물매출원가	256,028	207,322	269,015
2. 종 자 매 출 원 가	37,219	6,341	0
3. 출하조절사업비	10,525	0	0
4. 농수산물처분비	13,476	0	0
Ⅲ. 매 출 총 이 익	246,604	327,810	321,683
Ⅳ. 판매비와일반관리비	38,208	32,509	32,734
1. 사 업 관 리 비	33,210	30,055	30,319
2. 판 매 비	4,998	2,454	2,415
▼. 영 업 이 익	208,396	295,301	288,949
│ VI. 영 업 외 수 익	25,717	13,948	15,167
1. 예 치 금 이 자	21,636	10,775	9,826
2. 농 산 물 구 상 금	1,882	1,288	1,681
3. 유형자산처분이익	. 141	1	4
. 4. 잡 수 익	2,058	1,884	3,656
VII. 영업외비용	5,253	3,845	4,934
1. 지 급 이 자	5,036	3,363	4,716
2. 유형자산처분손실	83	422	178
3. 잡 손 실	134	61	40
Ⅷ. 당 기 순 이 익	228,860	305,404	299,182

나. 사업별(기관별) 재무제표

□ 사업별(기관별) 대차대조표

<1999년도>

)	岩岩等	유통공자 (H) (H)	医管门
자 산			
~ ~ 년 I. 유 동 자 산	1,371,066	265,000	1,636,066
1. 당 좌 자 산	1,367,622	184,176	1,551,798
가. 현금및현금등가물	184,418	174,350	358,768
나. 단 기 융자금	1,165,003	0	1,165,003
다. 미 수 금	0	8,626	8,626
라. 미 수 수 익	18,201	1,160	19,361
마. 선 급 비 용	0	40	40
2. 재 고 자 산	3,444	77,165	80,609
가. 비축농수산물	3,444	77,165	80,609
나. 미 착 상 품	0	0	0
3. 기타 유동자산	0	3,659	3,659
나. 특 정 예 금	0	3,653	3,653
다. 보관유가증권	0	6	6
Ⅱ. 고 정 자 산	802,871	0	802,871
1. 투 자 자 산	697,332	0	697,332
가. 장 기 융 자 금	697,330	0	697,330
나. 전 화 가 입 권	2	0	2
2. 유 형 자 산	105,539	0	105,539
가. 토 지	72,325	0	72,325
나. 건 물	32,977	0	32,977
(감가상각충당금)	(13,089)	(0)	(13,089)
다. 공 작 물	17,428	0	17,428
(감가상각충당금)	(8,432)	(0)	(8,432)
라. 차 량 운반구	645	0	645
(감가상각충당금)	(524)	(0)	(524)
마. 공기구 비 품	5,067	0	5,067
(감가상각충당금)	(1,326)	(0)	(1,326)
바. 건설중인자산	468	0	468

	농람부	유통공사 (비축사업)	합계
Ⅲ. 비축사업조정계정	0	1,632,854	1,632,854
자 산 총 계	2,173,937	1,897,854	4,071,791
부 채			·
	108	3,659	3,767
1. 미 지 급 금	0	1,697	1,697
2. 예 수 금	0	5	5
3. 예 수 보 증 금	0	1,875	1,875
4. 미 지 급 비 용	108	76	184
5. 예수 유가 증권	0	6	6
Ⅱ. 고 정 부 채	65,200	o	65,200
1. 장 기 차 입 금	65,200	0	65,200
Ⅲ. 바축사업조정계정	1,632,854		1,632,854
부 채 총 계	1,698,162	3,659	1,701,821
자 본			
I. 자본 금	147,500	0	147,500
1. 정 부 출 연 금	147,500	0	147,500
II. 자본 양 여 금	92,975	0	92,975
1. 재평가 적립금	65,347	0	65,347
2. 기타자본잉여금	27,628	0	27,628
M. 이 익 잉 여 금	235,300	1,894,195	2,129,495
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35,300	1,894,195	2,129,495
(당기순이익)	35,123	264,059	299,182
자 본 총 계	475,775	1,894,195	2,369,970
부채와자본총계	2,173,937	1,897,854	4,071,791

<2000년도>

과 목	자금지원	정부가격안정	종자보급	합계
- PI -	NONE	0171720	0/1-6	G -17
자 산				
I . 유 동 자 산	1,507,952	302,182	31,574	1,841,708
1. 당 좌 자 산	1,507,952	171,697	0	1,679,649
가. 현금및현금등가물	224,378	165,208	0	389,586
나. 단 기 융자금	1,263,607	0	0	1,263,607
다. 미 수 금	1,917	2,360	0	4,277
라. 미 수 수 익	18,050	1,260	0	19,310
마. 선 급 비 용	0	36	0	36
바. 선 급 금	0	2,833	0	2,833
2. 재 고 자 산	0	130,485	31,574	162,059
가. 비축농수산물	0	129,897	0	129,897
나. 농 산 물 종자	0	0	31,574	31,574
다. 미착농수산물	0	588	0	588
Ⅱ. 고 정 자 산	876,758	105,247	0	982,005
1. 투 자 자 산	876,758	2	0	876,760
가. 장 기 융 자 금	876,758	0	0	876,758
나. 전 화 가 입 권	0	2	0	2
2. 유 형 자 산	0	105,245	0	105,245
가. 토 지	0	72,480	0	72,480
나. 건 물	0	33,780	0	33,780
(감가상각충당금)	(0)	(13,705)	(0)	(13,705)
다. 구 축 물	0	17,962	0	17,962
(감가상각충당금)	(0)	(8,906)	(0)	(8,906)
라. 차 량 운반구	0	624	0	624
(감가상각충당금)	(0)	(584)	(0)	(584)
마. 공기구 비 품	0	4,631	0	4,631
(감가상각충당금)	(0)	(1,456)	(0)	(1.456)
바. 건설중인자산	0	418	0	418

(단위 : 백만원)

)	자금지원	정부가격안정	종자보급	합계
III. 종자회계조정	31,251	1,819,589	0	1,850,840
자 산 총 계	2,415,961	2,227,018	31,574	4,674,553
부 채			0.10	44.000
I. 유 동 부 채	161	11,213	312	11,686
1. 미 지 급 금	0	9,016	312	9,328
2. 예 수 금	0	9	0	9
3. 예 수 보 증 금	161	2,110 78	0	2,110 239
4. 미 지 급 비 용	161	70	U	209
Ⅱ. 고 정 부 채	100,000	0	0	100,000
1. 장 기 차 입 금	100,000	0	0	100,000
Ⅲ. 비축화계조정	1,819,589		31,251	1,850,840
부 채 총 계	1,919,750	11,213	31,563	1,962,526
자 본		,		,
 I. 자 본 금	152,707	0	0	152,707
1. 정 부 출 연 금	152,707	0	0	152,707
Ⅱ. 자 본 잉 여 금	37,609	65,347	0	102,956
1. 재평가 적립금	0	65,347	0	65,347
2. 기타자본잉여금	37,609	0	0	37,609
Ⅲ. 이 익 잉 여 금	305,895	2,150,458	11	2,456,364
1.차기이월이익잉여금	305,895	2,150,458	11	2,456,364
(당 기 순 이 익)	49,130	256,263	11	305,404
자 본 총 계	496,211	2,215,805	11-	2,712,027
부채와자본총계	2,415,961	2,227,018	31,574	4,674,553

<2001년도>

과 목	자금지원	정부가격안정	종자보급	합계
자 산				
I. 유 동 자 산	1,419,808	322,624	29,813	1,772,245
1. 당 좌 자 산	1,419,808	189,604	0	1,609,412
가. 현금및현금등가물	106,247	181,059	0	287,306
나. 단기금융상품	130,000	0	0	130,000
다. 단 기 융자금	1,163,225	0	0	1,163,225
라. 미 수 금	977	7.024	0	8,001
마. 미 수 수 익	19,359	1,486	0	20,845
바. 선 급 비 용	0	35	0	35
2. 재 고 자 산	0	133,020	29,813	162,833
가. 비축농수산물	0	131,491	0	131,491
나. 농 산 물 종자	0	0	29,813	29,813
다. 미착농수산물	0	1,529	0	1,529
Π. 고 정 자 산	1,125,679	104,277	0	1,229,956
1. 투 자 자 산	1,125,679	2	0	1,125,681
가. 장 기 융 자 금	1,124,029	0	0	1,124,029
나. 출 자 금	1,650	0	0	1,650
다. 전 화 가 입 권	0	2	0	2
2. 유 형 자 산	0	104,275	0	104,275
가. 토 지	0	72,480	0	72,480
나. 건 물	0	34,255	0	34,255
(감가상각누계액)	(0)	(14,542)	(0)	(14,542)
다. 구 축 물	0	18,146	0	18,146
(감가상각누계액)	(0)	(9,557)	(0)	(9,557)
라. 차 량 운반구	0	84	0	84
(감가상각누계액)	(0)	(61)	(0)	(61)
마. 공기구 비 품	0	4.875	0	4,875
(감가상각누계액)	(0)	(1,406)	(0)	(1,406)

(단위:백만원)

	자금지원	정부가격안정	종자보급	할게
Ⅲ. 종자회계조정	31,942	1,977,333	0	2,009,275
자 산 총 계	2,577,429	2,404,234	29,813	5,011,476
부 채				
I. 유 동 부 채	68	11,152	93	11,313
1. 미 지 급 금	0	8,885	89	8,974
2. 선 수 금	0	154	4	158
3. 예 수 금	0	28	0	28
4. 예 수 보 증 금	0	1,998	0	1,998
5. 미 지 급 비 용	68	87	0	155
Ⅱ. 고 정 부 채	50,000	0	0	50,000
1. 장 기 차 입 금	50,000	0	0	50,000
Ⅲ. 비축회계조정	1,977,333	0	31,942	2,009,275
부 채 총 계	2,027,401	11,152	32,035	2,070,588
자 본				
I. 자본 금	152,707	0	0	152,707
1. 정 부 출 연 금	152,707	0	0	152,707
п. 자본 양 여 금	37,609	65,347	0	102,956
1. 재평가 적립금	0	65,347	0	65,347
2. 기타자본잉여금	37,609	0	0	37,609
Ⅲ. 이익잉여금	359,711	2,327,735	△2,222	2,685,224
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359,711	2,327,735	△2,222	2,685,224
(당 기 순 이 익)	53,816	177,277	△2,233	228,860
자 본 총 계	550,027	2,393,082	△2,222	2,940,888
부채와자본총계	2,577,429	2,404,234	29,813	5,011,476

□ 사업별(기관별) 손익계산서

<1999년도>

, J. 14	, 海昌井	유통공사 (비축사업)	23
I. 애 출 액	78,913	511,785	590,698
1. 농수산물매출	16,819	482,130	498,949
2. 수입권공매수익	0	29,655	29,655
3. 대여금이자수익	62,094	0	62,094
Ⅱ. 애 출 원 가	23,156	245,859	269,015
Ⅲ. 매 출 총 이 익	55,757	265,926	321,683
IV.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8,667	14,067	32,734
1. 사 업 관 리 비	18,667	11,652	30,319
2. 판 매 비	0	2,415	2,415
V. 영 업 이 익	37,090	251,859	288,949
VI. 영 업 외 수 익	2,927	12,240	15,167
1. 예 치 금 이 자	1,353	8,473	9,826
2. 농산물구상금	0	1,681	1,681
3. 유형자산처분이익	4	0	. 4
4. 기 타 잡 수 익	1,570	2,086	3,656
VII. 영 업 외 비 용	4,894	40	4,934
1. 지 급 이 자	4,716	0	4,716
2. 유형자산처분손실	178	0	178
3. 잡 손 실	0	40	- 40
₩ . 당 기 순 이 익	35,123	264,059	299,182

<2000년도>

1 1 4	자금지원	정부가격안정	종자보급	할 계
I. 매 출 액	65,161	469,400	6,912	541,473
1. 농수산물매출	0	427,046	0,012	427,046
2. 종 자 매 출	0	0	6,912	6,912
3. 수입권공매수익	0	42,354	0	42,354
4. 대여이자수익	65,161	0	0	65,161
II. 애 출 원 가	0	207,322	6,341	213,663
1. 농수산물매출원가		207,322		207,322
2. 종 자 매 출 원 가			6,341	6,341
Ⅲ. 매 출 총 이 익	65,161	262,078	571	327,810
IV.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6,669	15,417	423	32,509
1. 사 업 관 리 비	16,669	13,385	0	30,054
2. 판 매 비	. 0	2,032	423	2,455
V. 영 업 이 익	48,492	246,661	148	295,301
VI. 영 업 외 수 익	3,776	10,072	100	13,948
1. 예 치 금 이 자	3,148	7,627	0	10,775
2. 농 산 물 구 상 금	0	1,288	0	1,288
3. 유형자산처분이익	0	. 1	0	1
4. 기 타 잡 수 익	628	1,156	100	1,884
VII. 영 업 외 비 용	3,138	470	237	3,845
1. 지 급 이 자	3,129	0	234	3,363
2. 유형자산처분손실	0	422	, 0	422
3. 잡 손 실	9	48	3	60
Ⅷ. 당 기 순 이 익	49,130	256,263	11	305,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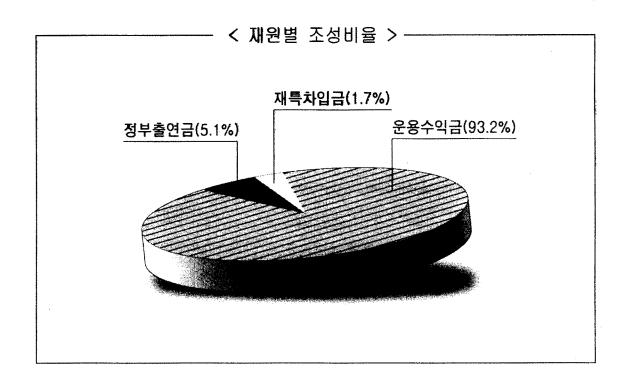
<2001년도>

14 1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지금지원	정부가격안정	答 及史置	化增加
I. 매 출 액	65,722	461,280	36,850	563,852
1. 농수산물매 출	0	403,472	0	403,472
2. 종 자 애 출	0	0	36,850	36,850
3. 수입권공매수익	120	57,808	0	57,928
4. 대여이자수익	65,602	0	0	65,602
Ⅱ. 매 출 원 가	0	280,029	37,219	317,248
1. 농수산물매출원가	0	256,028	0	256,028
2. 종 자 매 출 원 가	0	0	37,219	37,219
3. 출하조절사업비	0	10,525	0	10,525
4. 농수산물처분비	0	13,476	0	13,476
Ⅲ. 매 출 총 이 익	65,722	181,251	△369	246,604
IV.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9,596	16,718	1,894	38,208
1. 사 업 관 리 비	19,596	13,614	0	33,210
2. 판 매 비	0	3,104	1,894	4,998
V. 영 업 이 익	46,126	164,533	△2,263	208,396
VI. 영 업 외 수 익	12,726	12,961	30	25,717
1. 예 치 금 이 자	11,836	9,801	0	21,637
2. 농 산 물 구 상 금	0	1,882	0	1,882
3. 유형자산처분이익	0	141	О	141
4. 잡 수 익	890	1,137	30	2,057
VII. 영 업 외 비 용	5,036	217	0	5,253
1. 지 급 이 자	5,036	0	0	5,036
2. 유형자산처분손실	0	83	0	83
3. 잡 손 실	0	134	0	134
Ⅷ. 당 기 순 이 익	53,816	177,277	△2,233	228,860

2. 기금의 재원구성 및 규모

(단위 : 억원)

조성재원별		71 (글 조 성 규	. 2	
소명세면를	'98말 누계	199	2000	2001	누 계
총 계	21,648	2,704	3,768	1,789	29,909
ㅇ 정부출연금	1,475	-	52		1,527
ㅇ 재특차입금	940	-288	348	-500	500
ο 운용수익금	19,233	2,992	3,368	2,289	27,882
- 수매비축	-5,273	-156	-205	-417	-6,051
- 수입비축	22,191	2,431	2,382	v 1,860	28,864
- 융자지원	3,636	621	652	6 56	5,565
- 기 타	-1,320	96	539	190	-495



3. 기금의 수요와 조성재원의 중·장기 예측채계의 합리성

가. 수요 및 조성재원의 애측채계

□ 추정변수

○ 수요예측 : 사업별 대상품목, 품목별사업규모 및 지원단가

○ 조달예측 : 비축농산물 판매수입, 융자금 회수금, 융자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및 전년이월금

□ 추정변수별 예측기준

추정 변 수	예상 축 기가 준 기가 중
< 수요예측 >	
ㅇ 수매비축사업	- 수매량 : 생산량 및 수요량 추이, 가격안정기여도
	- 수매가격 : 수매하한가격, 예시가격 및 생산자가격지수
ㅇ 수입비축사업	- 도입량 : 연차별 시장접근물량, 수급 및 생산동향
	- 도입단가 : 최근 5개년 평균 도입단가 및 주수입선별 생산동향
ㅇ 융자지원사업	- 지원대상사업 부류별 최근 5개년간의 자금수요 추이, 정책우선순위
< 조달예측 >	
ㅇ 비축농수산물 판매수입	- 판매물량 : 수급 및 가격동향, 보유재고량 및 당해연도 확보물량
	- 판매단가 : 직전 5개년간의 평균판매단가 및 수급·가격동향
ㅇ 융자원금회수	- 융자기관별 지원사업별 대출잔액의 장·단기 상환계획
ㅇ 융자금 이자수입	- 기관별 융자액 : 전년말 융자잔액 + 당해연도 융자계획액 - 당해연도 회수계획액
(기관별 융자액×이율)	- 이율 : 기관별 융자자금별 금리차 가중평균치 적용
ㅇ 기타수입	- 농산물 수입권 매각수입 : 수입권 매각물량 × kg당 매각수입 예상액
	(kg당 매각수입 예상액은 해당품목의 최근연도 kg당 매출이익규모 적용)
	- 기타 경상이전수입 : 직전 5개년간의 평균수준 적용

나. 예측치와 실적치의 차이분석

□ 조달예측 분석

(단위: 억원)

	4 4	계 획(A)	실 최(B)	(B/A)%
	계	22,500	23,606	104.9
	ㅇ 농수산물 판매	5,605	4,822	86.0
2001	ㅇ 융자금 회수	13,435	15,152	112.8
2001	ㅇ 융자금 이자	756	659	87.2
	ㅇ 전년도 이월	2,244	2,244	100.0
	ㅇ 기타수입	460	729	158.5
	2000	21,310	22,463	105.4
	1999	19,240	19,321	100.4

○ 판매수입 부진사유 : 수입권공매량 확대와 경기부진 등에 기인한 비축참깨의 수요감소,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 양념류의 방출 중단 등에 기인

○ 융자금이자수입: 시중금리 하향추세를 감안 일반업체 대출금리 인하조치 결과로 수입 감소

□ 수요예측 분석

(단위: 억원)

	구 분	계 획(A)	실 적(B)	(B/A)%
	계	22,500	23,606	104.9
	ㅇ 수매비축사업	1,474	1,343	91.1
0001	ㅇ 수입비축사업	2,167	1,906	88.0
2001	ㅇ 융자지원사업	17,546	16,621	94.7
	ㅇ기 타	1,313	1,374	104.6
	ㅇ 차 기 이 월	-	2,362	
	2000	21,310	22,463	105.4
	1999	19,240	19,321	100.4

○ 수매비축사업 : 고추 및 수산물류의 전반적인 산지가격 상승으로 수매 미실시 또는 수매량 축소 등으로 당초계획 대비 일부 불용예산 발생

○ 수입비축사업 : 고추·마늘·양파의 공급과잉에 따른 의무수입량 축소와 참깨 수입선 전환 (중국→인도·파키스탄)으로 도입단가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불용예산 발생

4. 중·장기 전망에 근거한 기금재원의 확보 노력

가. 조성여건

□ 기금조성 추이

○ 2001년도 말 기준 기금총조성액(2조 9,909억원) 중 수입비축(국영무역)사업을 통한 잉여금이 총조성액의 96%(2조 8,871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참깨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두, 양념채소류 등의 순으로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수입비축사업의 품목별 조성액 현황 (2001말 기준) >

(단위:억원)

구 분	참 개 :	槽。	팥	卫辛	마늘	양파	기타	계
조성액	19,558	5,115	638	1,034	372	△184	2,338	28,871
(%)	(67.7)	(17.7)	(2.2)	(3.6)	(1.3)	(△0.6)	(8.1)	(100.0)

<수입개방전('89~'94)과 개방후('95~2000)의 수입비축 잉여금 추이 >

(단위:억원)

구 분		ያ <i>ዝ</i>				게 방	4.7	
	′89~′90	'91~'92	'93~'94	계	'95~'9 6	'97~'98	199~2000	계
조성규모	1,758	3,369	4,855	9,982	5,252	3,628	4,820	13,700

□ 향후 시장접근물량 관리계획

- 2004년까지 기존의 국영무역방식 유지 : 고추, 마늘, 양파, 대두, 팥
- 2004년까지 년차별로 수입권공매방식 확대
- 참깨 : 수입계획물량의 50%까지 확대('99년 9.000톤 → 2004년 30.000톤)
- 생강 : 수입계획물량의 100% 전량으로 확대('99년 500톤 → 2004년 1,860톤)
- 땅콩 : 수입계획물량의 100% 전량으로 확대(2000년 1,000톤 → 2004년 4,907톤)
- 2004년 이후 : WTO 차기협상 결과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규모, 관세율 등을 조정

나. 주요 품목별 개방영향 분석 및 차기협상 대책

참 개

□ 시장접근물량 관리현황

- 국내 자급도가 30% 수준에 불과한 수급상 절대부족품목으로서 수요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생산량은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어 부족분을 매년 60~70천톤 추가수입하여 충당
- 1995년 관세화에 의한 시장개방 이후 C/S량은 40%의 저율관세로, 초과분은 종가세 658% 또는 종량세 6,956원/kg(2000년도 기준)의 고율관세가 부과됨
- 시장접근량 수입이행 실적 : 연도별 CMA물량 대비 891%, C/S물량의 97.9% 이행 :

(단위 : 톤, %)

구 분	'96	' 97	'98	'99	2000	2001	계
○ CMA 물량	6,731	6,731	6,731	6,731	6,731	6,731	40,386
○ C/S 물량	69,500	65,200	61,000	61,000	70,000	79,600	406,300
ㅇ 수입이행량	68,496	65,112	54,002	60,345	70,000	77,377	395,332
- 국영무역	67,496	62,112	48,003	51,345	56,500	57,377	342,833
- 수입권공매	1,000	3,000	5,999	9,000	13,500	20,000	52,499
이 이 행율	98.6	99.9	88.5	98.9	100.0	97.2	97.3

□ 개방이후의 수급 및 가격동향

- 도매가격동향: 개방전·후 5개년평균 대비시 국산은 17.3% 상승(8,911→10,451원/kg)하였고,
 수입산은 9.4% 감소(5,387원 → 4,882원/kg)함
- 소비동향: 1인당 연간소비량은 '93년 이후 1.8~2.1kg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식산업 성 장추세를 감안할 때 소비추세는 기존수준 유지 또는 다소 증가가 예상
- 자급률 : 개방전·후 5개년평균 대비시 13% 감소(46% →33%)하고 있으나, 개방영향이라기 보다는 단당 수확량이 적어 소득작목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재배하기 때문임
- 농가소득 : 개방 전·후 5개년 평균 대비 시 28.2% 증가(426천원→546천원)

□ 향후전망 및 대책

- 참깨는 수급상 절대 부족품목이며, 고가품이어서 밀수, 여행자 휴대품, 참깨가루 등으로 년 1만톤 수준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입권공매 확대에 따른 민간수입량이 증가하여 매점·매석에 의한 수급 및 가격조절능력의 저하, 원산지둔갑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시장접근물량의 증량운영을 신중히 검토중임
- 차기협상시 관세는 2004년도의 기준양허관세 수준(630%)으로 유지하고, 취급규모는 증량 운영물량 70천톤 및 여행자휴대품, 밀수, 참깨가루 수입물량 등을 반영하고 국내소비 및 생산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80천톤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

< 참깨 수급전망 >

(단위: 천톤, %)

구 분	'90-'94평균	'95-'99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공급)	75.5	99.1	101.6	118.3	122.2	126.2	130.4	134.8	139.3
이월	5.6	10.9	7.5	7.0	13.0	13.0	13.0	13.0	13.0
생산	30.6	30.1	24.1	31.7	29.5	29.5	29.5	29.5	29.5
수입	39.3	58.1	70.0	79.6	79.7	83.7	87.9	92.3	96.8
(수요)	75.5	99.1	101.6	118.3	122.2	126.2	130.4	134.8	139.3
소비	66.1	91.1	94.0	105.3	109.2	113.2	117.4	121.8	126.3
수출	_	-	0.6	-	-	_		-	-
이월	9.4	8.0	7.0	13.0	13.0	13.0	13.0	13.0	13.0
자급율	46	33	26	30	27	26	25	24	23

* 주 : 소비량은 '95~2000년 평균증가율(3.7%)을, 생산량은 '95~2000년 평균량을 적용

< 참깨 년도별 가격동향 >

(단위 : 원/kg)

구 분 수 입 개 방 이 전					수입개방 이후						
TE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국 산	7,349	7,080	7,979	9,008	11,314	9,635	9,235	10,099	10,284	10,464	10,748
수입산	6,064	5,657	5,443	5,246	4,526	5,362	5,344	4,828	4,235	4,777	4,910

* 주 : 국내산은 한은 조사가격(중품), 수입산은 유통공사 조사가격(중품) 기준임

대 두

□ 시장접근물량 관리현황

- 콩은 식용의 경우 자급율이 30% 내외로 농촌노동력의 감소로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료용을 합할 경우엔 자급율이 10% 이하로 국내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
- 민간의 수입물량은 개방초기에는 고율관세로 인하여 미미하였으나 '98~'99년 국내작황의 부진이 계속되자 콩나물콩 용도로 수입이 급증추세를 나타냄
- 시장접근물량 수입이행 실적 : 수입이행율은 100%이며, 매년 수급부족분을 증량하여 운영중임

(단위: 톤, %)

구 분	'95	'96	' 97	'98	'99	2000	2001
시장접근량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185,787
(중량분포함)	(236,899)	(237,026)	(257,632)	(257,634)	(258,295)	(258,295)	(258,270)
수입이행량	236,899	237,257	257,632	257,634	210,691	256,163	178,044
이 행 율	100	100	100	100	82	99	69

* '99년도 이후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감소 및 유전자콩 논란으로 C/S 증량분 중 일부 미이행

□ 개방이후의 수급 및 가격동향

- 도매가격동향: 개방전·후 5개년평균 도매가격 대비시 63% 상승(1,344원 → 2,193원/kg)함
- 개방 이후의 가격상승은 국내콩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에 기인함
- 자급률: 개방전·후 5개년평균 대비시 6.2% 감소(15.4% → 9.2%)하고 있으며 이는 타작물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소득이 낮고 농촌인구 감소 등의 요인과 함께 개방이후 수입물량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가소득 : 개방전·후 5개년평균 대비시 40% 증가(185천원→260천원/10a)하여 개방 에도 불구, 농가소득액은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개방이후 국영무역방식에 의거 수급상 적정 필요물량만을 유통시켜 생산농가 및 시장에의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로 판단 됨

7 분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생 산 량(천톤)	183	176	170	154	159	160	156	140	116	113
재배면적(천ha)	119	105	117	122	105	98	100	98	87	86
단 수(kg/10ha)	154	168	146	127	152	163	157	144	133	131
농가소득(10a당)	190	204	214	255	280	241	263	351	367	380

□ 향후전망 및 대책

- 콩은 국민 기초식량으로서 국산콩 자급율 제고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영무역을 통하여 국산콩 가격지지를 통한 생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 유도가 필요함
- 대두는 '99년 현재 SSG 고시품목이지만 기준발동 물량이 322,978톤이며 시장접근량 185,787톤 과의 차이만큼의 물량인 137,191톤 이상이 수입되어야 SSG를 발동할 수 있으므로 최근 콩나물콩 등의 용도로 민간수입이 급증(년 1~2만톤)하고 있어도 실효성이 없음
- 민간수입 분의 물량이 무분별하게 저가로 도입되면 국내 콩 생산농가에 영향을 미쳐 생산포기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생산량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기초식량 확보 차원의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됨
- 따라서 SSG 발동기준물량의 변경 및 국내 가격안정용(콩나물콩 용도) 물량을 국내 수요물량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강구와 함께, 차기협상 시 양허관세를 2004년도 수준(487%)으로 유지하고 시장접근량은 2004년 기준 185,787톤에서 개방 후 증량 운 영된 314,500톤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대두 수급전망 >

(단위: 천톤, %)

∵子.※巷	'90-'94碧급	'95-'99考定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공급)	1,464	1,887	1,993	1,915	1,943	1,962	1,972	2,003	2,015
이월	123	209	79	178	185	183	172	182	173
생산	203	154	116	137	158	179	200	221	242
수입	1,138	1,524	1,798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수요)	1,464	1,887	1,993	1,915	1,943	1,962	1,972	2,003	2,015
소비	1,321	1,681	1,815	1,730	1,760	1,790	1,790	1,830	1,850
수출	-	_	-	-	-	-	-	-	_
이월	143	206	178	185	183	172	182	173	165
자급율	15.4	9.2	6.4	7.9	8.9	10.0	11.2	12.1	13.1

고 추

□ 시장접근물량 관리현황

- 기본적으로 국내자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재배면적은 감소추세이나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민간수입량은 개방이후 고율관세로 미미한 편임
- 시장접근물량 수입이행 실적: 94.2%

(단위 : 톤, %)

7 8	'9 5	'96	'97	'98	'99	2000	2001
시장접근량	4,311	4,630	4,950	5,269	5,588	5,908	6,227
수입이헁량	4,311	4,565	3,766	5,213	5,574	3,021	3,648
이 행 율	100	98.6	76.1	98.9	99.7	51.1	58.6

- '97년도이행율이 저조한 것은 '96, '97년도의 생산과잉 때문이며, 2000년도 이행율이 저조한 것은 주수입국의 작황불량 등으로 규격품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임

□ 개방이후의 수급 및 가격동향

- 도매가격동향: 개방전·후 5개년평균 도매가격 대비시 5.6% 상승(5,330원 → 5,643원/kg)함
- 생산량: 개방전·후 5개년평균 대비시 17% 증가(162천톤 → 190천톤)하고 있음
- 자급율: 개방전·후 5개년평균 대비시 3% 증가(96% → 99%)
- 농가소득 : 개방전·후 5개년평균 대비시 9.8% 증가(1,002천원→1,100천원/10a)
- → 수입물량을 국영무역방식에 의거 시장과 최대한 격리시켜서 소득작물로서의 고 추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향후전망 및 대책

- 고추는 양념채소류 중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가장 적은 품목으로서 국내 작황부진 시 가격이 일시에 폭등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접근물량을 수급안정대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차기협상시 관세는 2004년 기준 양허관세 270% 유지 및 시장접근량은 2004년 기준 7,185톤을 CMA로 전환하여 국내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고추 수급전망 >

(단위: 천톤, %)

구 분	'90-'94평균	'95-'99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공급)	172	208	217	213	233	185	212	226	179
이월	8	9	13	10	12	28	8	4	21
생산	162	194	198	197	214	150	197	214	150
수입	2	5	6	6	7	7	7	· 8	8
(수요)	172	204	217	230	233	185	212	226	179
소비	168	192	206	207	204	176	207	204	176
수출	1	1	1	1	1	1	1	1	1
이월	3	12	10	12	28	8	4	21	2
자급율	96	99	96	95	105	85	95	105	85

* 주 : 자급율은 '90~'99 추이감안 상(105%), 중(95%), 하(85%)로 설정 생산량은 '95~'99평균생산량 대비 자급율 기준, 수입량은 년차별 MMA 관리물량 기준

中。沙麦

□ 시장접근물량 관리현황

- 기본적으로 국내자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나, 기상여건과 재배면적 등에 따라 연도별 생산량의 변동이 심한 품목임
- 시장접근물량 수입이행 실적 : 73.7%

(단위 : 톤, %)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시장접근량	8,680	9,323	9,966	10,609	11,252	11,895	12,538
수입이행량	6,668	7,600	9,966	10,609	4,100	11,895	12,533
이 행 율	76.8	81.5	100.0	100.0	36.4	100.0	99.9

□ 개방이후의 수급 및 가격동향

- 도매가격동향: 개방 전·후 5개년평균 도매가격 대비 시 19.2% 상승(1,716원 → 2,045원/kg)
- 생산량 : 개방 전·후 5개년평균 대비 시 3.4% 증가(423.4천톤 → 437.8천톤
- 자급율: 개방 전·후 5개년평균 대비 시 0.5% 증가(98.5% → 99%)
- 농가소득 : 개방 전·후 5개년평균 대비 시 44.9% 증가(1,106천원→1,603천원/10a)

□ 향후전망 및 대책

- 최근 민간에 의한 수입급증으로 마늘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접 근량에서 제외된 냉동마늘이 30%의 저율관세로 지속적인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산 마늘의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
- 2004년 이후 현행의 MMA방식을 CMA로 전환하여 추가 수입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 마늘 수급전망 >

(단위: 천톤, %)

구 분	'90~'94평균	'95-'99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공급)	446.2	459.7	482.0	446.5	496.1	473.9	427.8	489.7	468.1
이월	14.3	5.0	48.0	51.0	10.0	38.1	30.3	2.2	31.6
생산	423.4	437.8	422.0	383.0	473.0	422.0	383.0	473.0	422.0
수입	8.4	16.9	11.9	12.5	13.1	13.8	14.5	14.5	14.5
(수요)	446.2	459.7	482.0	446.5	496.1	473.9	427.8	489.7	468.1
소비	429.8	442.1	427.0	426.0	450.0	439.6	425.6	450.1	439.6
수출	2.0	1.6	4.0	10.0	8.0	4.0	-	8.0	4.0
이월	14.3	15.9	51.0	10.0	38.1	30.3	2.2	31.6	24.5
자급율	98.5	99.0	99.0	90.0	105.0	96.0	90.0	105.0	96.0

* 주 : 자급율은 '90~'99 추이감안 상(105%), 중(96%), 하(90%)로 설정 생산량은 '95~'99평균생산량 대비 자급율 기준, 수입량은 년차별 MMA 관리물량 기준

다. 중장기 조성전망

2004년도 까지

- o UR 협상결과에 의한 TRQ 관리
- 확대조성추세 지속
- 2004년말 추정조성액 : 3조6천억원

2005년도 이후

- o WTO 2차 협상결과에 의한 TRQ 관리
- 참깨, 콩, 팥 : 이익잉여금 발생, 조성에 기여
- 양념류, 땅콩 : 현상유지 또는 조성액 잠식
- * TRQ (관세할당제, Tariff rate quotas):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써 수입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을 철폐키 위한 UR 협정의 주요 합의사항임

□ 2차 농산물협상 결과가 적용되는 2005년 이후 시장접근분야의 전망

O TRQ 물량의 년차별 증량 및 고율관세의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나, 수입국과 수출국의 협상력 여하에 따라 그 정도의 과다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함

□ 2005년 이후의 기금조성 전망에 대한 논거

- 가격의 계절진폭이 심한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땅콩은 국내 풍작 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가 어려워지므로 증량운영(관세인하)시는 결손심화로 기금조성에 기여치 못 할 것임
 - 국내작황의 풍흉반복에 따른 손익상쇄로 현상유지 또는 조성잠식이 예상되나, 기금조성 기여비중이 낮으므로(5%/2000말) 확대조성 추세여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임
- 참깨, 콩, 팥의 기금조성 기여도는 87%(2000말 기준)로 시장접근물량 증량운영(관세인하) 시에도 상당수준의 이익잉여금이 발생, 기금 확대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 참깨의 경우 2000년도 C/S량은 6.731톤이나 63.269톤을 증량 운영하여 오고 있음
 - ◇ 콩은 2000년도 C/S량의 140% 수준으로 증량 운영해 왔고, 수급여건상 2004년도 C/S량의 170%수준까지의 증량운영이 가능함
 - ◇ 팥은 2000년도 기준으로 C/S량 11,961톤이나 18,000톤으로 증량 운영하여 오고 있음

< 수입비축사업을 통한 중장기 기금조성전망액 추정 >

(단위 : 톤, 억원)

普号	子 基	2000岁十岁	2001	2002	2000	2004	2005	2006	才
참 깨	수입량		79,600	79,700	83,700	87,900	92,300	93,000	516,200
참 깨	조성액	18,475	1,660	1,663	1,745	1,832	1,540	1,550	28,465
콩	수입량	2	258,295	258,295	258,295	258,295	314,500	314,500	1,662,180
6	조성액	4,427	: 488	488	488	488	476	476	7,331
팥	수입량		19,000	19,000	19,000	19,000	20,000	20,000	116,000
E	조성액	597	65	65	65	65	55	55	967
기타	수입량		36,651	38,533	40,406	42,297	40,400	40,400	238,687
714	조성액	3,512	31	32	34	35	-	_	3,644
조 성	액계	27,011	2,244	2,248	2,332	2,420	2,071	2,081	40,407

- * 주 1. 조성액 : 수입량×수입물량상품화율×kg당 매출이익
 - 2. 수입물량상품화율 : 참깨 72.0%, 콩 99.5%, 팥 99.5%, 양념류 20.0%
 - 3. kg당 매출이익 :'04년도 까지는 '95~2000의 평균치를, '05년부터는 평균치의 80% 적용 (참깨 2,895원, 콩 190, 팥 346, 고추 2,126, 마늘 354, 양파 △129)
 - 4. 기타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로서 풍흉의 주기적 발생이 상존하므로 TRQ 수준 상향조정시 손익상쇄 등으로 조성증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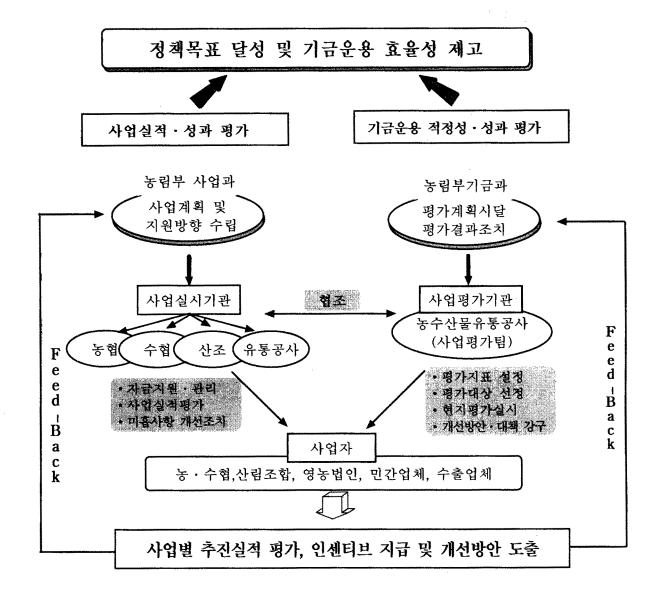
평가내용

기금의 정책목표 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내부 성과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업평가팀(☎792-3593)

농림부 각 사업과에서는 사업실시기관(예; 농협,수협 등)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도 등 외형적인 지표 위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농림부 기금총괄과에서는 유통공사에 사업평가팀을 두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상호보완적 평가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 내부 성과관리시스템 >



1. 정책목표 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 기금운용의 성과를 평가·환류 (Feed-Back)하는 내부 성과관리시스템과 운영실적

가. 기금운용관리자의 평가관리 시스템 및 운영 성과

□ 평가목적

-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의 핵심주체인 산지 생산자조직의 농안기금 운용·관리·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 및 현지 개선지도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 농수산물의 수매, 유통 및 가공 등 일반업체 사업자에게 지원한 기금사업을 평가하여 지원 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으로 기금관리의 내실화 도모

□ 평가대상선정방향

- 기금총괄기관 : 기금운용 규모 및 평가주기 등을 감안하여 평가사업 선정
- 농협회원조합은 사업수(11개) 및 기금운용규모(5,953백만원)가 크므로 매년 평가
- 수협·산림회원조합은 사업수(5개) 및 사업수행조직(80개소)이 적어 격년 평가
- 영농법인 및 일반업체는 영세하므로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별 수시 평가
- 사업평가기관 : 사업자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단위사업의 중복 평가를 배제
- 사업별 자금지원 규모 및 지역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선정

□ 평가대상 확대

○ ('00년) 18개사업 149개소 → ('01년) 26개사업 207개소

子是		700 H			017				
	日	사업수	계소수	대출기관	대 상	사업수	개소수	대출기관	
계		18	149			26	207		
생산자조직	농협회원조합	10	110	농협	농협회원조합	11	100	농협	
사업자	산림조합	2	15	산림조합	수협회원조합	5	33	수협	
	_	_	-		영농조합법인	4	45	농협,공사	
일반업체	산지유통인	1	22	공사	산지유통인	1	12	공사	
사업자	한국냉장	4	1	공사	농협무역	3	1	농협,공사	
	노량진수산	1	1	공사	종합유통센터	1	4	농협	
	_	_	***		수산물업체	2	12	수협	

□ 평가내용

- 평가영역별로 사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
- 지원목적달성도, 자금운용적정성, 사업관리적정성, 사업 성과ㆍ성장성 등

□ 평가결과

구분	정책목표달성도	자금미운용율	사업성장율	사후관리부문
평 균	230%	2.8%	10.8 %	
농협회원조합	157	2.9	20.8	위약금 징구미흡
수협회원조합	136	0.9	5.6	출하실적 확인 미흡
영농조합법인	208	1) 15.6	10.6	사업실적 중복
산지유통인	467	-	48.2	장부작성 미흡
농협무역(주)	137	_	2) △23.0	수출선도금관리 미흡
종합유통센터	158	0.5	8.9	자부담액 미운용
수산물업체	347	_	4.8	수매실적 증빙 미흡

- 1) 영농조합법인의 자금미운용율이 높은 것은 인삼 수출 부진으로 가공원료 매입 부족
- 2) 농협무역(주)의 사업성장율이 감소된 것은 구제역으로 돈육 수출 중단에 기인함

□ 평가결과 조치사항

O 미흡한 사항의 현지지도

子、是	계	농 협 회원조합	수 협 회원조합	영 농 조합법인	산 지 유통인	농 무역(주)	종 합 유통센터	수산물 업 체
미흡사례(건)	124	63	39	6	4	5	5	2

- 사업지원 및 실시기관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평가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인식 공유 및 개선유도
- 미흡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금대출기관에 개선 조치 요청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대정부 건의

구 분	계	농 협 회원조합	수 협 회원조합	영 농 조합법인	산 지 유통인	농 무역(주)	종 합 유통센터	수산물 업 체
개선과제(건)	31	6	4	6	4	5	5	1

□ 추진성과

- 자금의 미운용율 감소로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 농협 회원조합의 미운용율 : ('00) 3.9% → ('01) 2.9%
- 현지지도 실시로 지침의 준수. 정책사업 인식 부여 등 지원목적 달성 유도
- 사업자간 사업수행 능력 비교에 의한 경쟁체재 도입으로 자율적인 사업개선 촉진

나. 사업실시기관의 자체 내부평가시스템 및 운영성과

□ 평가방법

○ 사업실시기관이 사업결과 정산 또는 차기 자금지원 규모 결정 시에 평가실시

□ 내부 성과관리 개선 실적

- 정부비축사업
- 정부비축사업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 ('00년) 75점 → ('01년) 84점
- 과잉생산 농산물 적기 수매 노력 : ('00년) 42,587톤 → ('01년) 69,906톤
- 비축물자 외자구매관계요령 개선 : 9건
- 저장가공수매지원사업
- 사업성과 및 신용 평가 등급세분화 : ('00년) 4등급 → ('01년) 8등급
- 자금지원 대상을 품목별에서 부류별로 확대하여 자금운용의 탄력성 제고
- 도매시장육성지원사업 : 평가지표 체계 개선
- 평가군을 1군과 2군으로 구분하고, 군별 특성지표 신설
- 중점시책 관련지표의 가중치 상향 조정(전자경매, 하역기계화 15점→20점)
- 산지유통센터운영지원사업 : 평가등급에 따라 운영자금 지원한도 차등폭 확대
- A등급 : ('00년) 20억원 → ('01년) 30억원
- F등급: ('00년) 3억원 → ('01년) 자금지원 제외
- 우수농수산물(수출)지원사업
- 평가지표를 사업실적과 신용도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체재 정착
 - (00년) 재무상태, 대출금관리 등 14개 지표로 종합평가 → ('01년) 사업실적 9개 지표, 신용도 13개 지표로 구분 평가
- 사업실적평가(133업체, 4등급 분류)결과에 따라 금리. 자금배정 우대
 - 금리(최우수, 우수업체 : 1.0~0.5% P 대출금리 인하)
 - 자금배정(최우수, 우수업체 : 50~30% 가점 부여, 미흡업체 : 20% 감점)
-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부진업체에 대한 제재 부과로 경쟁 유도
 - ('00년) 평가 불응업체와 평가 부적합업체의 경우 평가를 미실시 → ('01년) 평가불응·부적합업체는 최하등급으로 처리
- □ 평가 대상사업 및 결과: "본 보고서 2.3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참조

다.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

(1) 계량평가제를 도입하여 우수 · 부진사업자를 차등하여 지원

□ 추진배경

- 농안기금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지도 실시만으로는 평가목적 달성에 한계
- ㅇ 사업자의 능력에 따른 차등지원 등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 필요
- □ 평가대상 : 농협 회원조합 수행 100개소의 11개사업

□ 평가지표 설정

- 농안기금지원사업 각 지침 및 전년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지표 및 항목 설정
- 평가지표에 대해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평가대상인 회원조합 의견조사('01. 9.24~9.28)
-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하여 평가지표 확정('01.10, 2)
- 농협회원조합 평가계획 통보 및 현지실사('01.10.8~12.7)

□ 평가지표

- 정책목표 달성도, 자금운용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사업의 성장성 등 4개 분야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영역별 가중치를 적정 배분

□ 평가결과 보상

- 우수조합(상위 20개소) : 1~2억원 무이자 자금지원
- 부진조합(하위 20개소) : 자금지원규모 동결 및 지적사항 개선실태 점검

□ 추진성과

- 기금사업자간 경쟁분위기 조성으로 자율적인 사업 발전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및 제재조치 등 사업자 차등지원에 활용
- 수협 회원조합 등 여타 사업자에 대한 계량평가 확대 실시 추진

(2) 단위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차등지원 설정 운용

□ 추진배경

-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만으로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
- 사업자 능력을 확대하고, 사업자간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차등지원 필요

□ 추진방법

○ 사업실시기관이 사업결과 정산 또는 차기 자금지원 규모 결정시에 평가실시

□ 사업별 평가결과 차등지원 내용

企业的 	차동지원	
SECTION OF A CONTRACT OF	우수사업자	부진사업자
ㅇ 정부비축사업	• 인센티브 지급율 인상	• 인센티브 지급율 축소
o 채소수급안정사업	• 손실대비 운용자금 및	• 자금배정액 삭감지원
	• 조합상호지원기금 지원	77 L 11 6 1 11 L 1 L
o 기자기고기이시어	• 자금배정액에 추가지원	u,
o 저장가공지원사업	• 담보취득 완화	
ㅇ 산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 자금배정액에 추가지원	"
o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	• 지원자금 이자율 인하(0.5~1%)	"
	• 자금배정액에 추가지원	
ㅇ 산지유통센터운영지원사업	자금지원한도 인상	자금지원한도 축소
ㅇ 생산자조직육성지원사업	소요자금 우선배정	우수사업자 배정후 잔액지원
ㅇ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	"
ㅇ 산지농협유통활성화사업	무이자 자금 지원	지원자금 이자율 인상(1~2%)
	자금배정액에 20~30% 추가지원	자금배정액의 50%감액
ㅇ 도매시장육성지원사업	2년연속 우수업체 평가 면제	법인지정 취소 및 합병
	지원자금 이자율 인하(1%)	자금지원 제외

라. 농안기금사업 평가결과의 Feed-Back

(1) 농안기금사업 평가결과의 관련기관 설명회 개최

□ 추진실적

- 대두수매사업 평가회 개최('01.2)
- '01 농협회원조합 농안기금사업 평가결과 설명회('02, 1.30)
- '01 수산물 농안기금사업 평가결과 설명회('01.10.15)

□ 추진성과

○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지원실시기관의 이해 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으로 우수사례 전파 및 지적사항 개선 등 후속 조치 적극 추진

(2) 전년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조치 점검

□ 추진실적

- 점검대상: '00년 평가결과 지적사항이 2개이상인 26개 농협 회원조합
- 점검결과 : 지적사항 65건중 39건 개선(60%)
- 개선 미이행조합(13개소)는 '02년에 점검실시하고, 미이행시 지원자금 감액 등 불이익 조치

□ 추진효과

O 기금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침 준수 인식 제고 및 동일 지적사례 재발 방지

(3)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적인 문제점 개선 추진

□ 목적 : 기금사업 관련 규정·지침증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개선

□ 추진실적

- 정부비축사업의 수매자금 전도시기 개선 등 31개과제 개선방안 검토
-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관련기관 설명('02, 1.30)
- 관계사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의뢰('02, 2.21)

□기대효과

○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정책 지원성과 제고

2. 기금운용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 기금운용 성과지표와 단위사업별 정책목표달성 성과지표를 구분 운용 -

가. 기금운용 성과 측정지표

□ 평가영역 및 내용

○ 정책목표 달성도 : 사업의무달성율, 유통개선 추진실적, 사업실적 규모 등

○ 자금운용 적정성 : 지원자금운용비율, 적기 농가지원 및 자체사업 집행실적 등

○ 사업관리 적정성 : 사업수행을 위한 대농가 안내, 사업지침의 이행 수준 등

○ 사업성과·성장성 : 사업실적 전년대비증가율, 관련실적 전년대비 증가율 등

□ 사업별 성과지표

○ 사업별 공통지표

- 지원자금 대비 실적율, 지원자금 운용비율, 수매 농가·물량·금액증가율·

○ 사업별 특성 성과지표

사 업 명	为과기표	성과분석
정부비축사업	ㅇ 수매계획대비 실적율	산지가격지지율
산지가공육성지원사업	○ 매출액증가율 ○ 농외소득증대 기여도	매출액 증가율 공장가동율증가율
채소수급안정지원사업	○ 계약물량 대비 수매실적율 ○ 사업신청 대비 계약율	수급안정기여도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 공동규격출하촉진지원사업	공동규격출하액 증가율공동규격출하조직원증가율대형유통업체 판매증가율	공동선별실시율
공판장출하촉진지원사업	○ 대금결제자금 활용율○ 상장경매실적증가율○ 출하농가증가율	대금결제자금 활용율 상장경매실적증가율
직거래매취지원사업	ㅇ 대량 수요처 증가수	유통비용절감율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	○ 수출액 증가율 ○ 수출대상처(국가) 증가율	수출액증가율 수매액증가율
수출시설유류대지원사업	수출실적 증가율수출시설재배면적증가율	수출액증가율

나. 단위사업별 정책목표달성의 성과 측정지표

사업명	성과측정지표
□ 정부비축사업	○ 수매계획 대비 실적 ○ 가격안정 기역도
□ 채소수급안정사업	 관내생산면적 대비 계약 비율 신청사업 대비 계약실적 계약실적 대비 출하비율
□ 저장가공지원사업	 수매의무 초과비율 수매실적 증가율 계약수매실적비율 농가 직수매비율 지원자금 배정액 포기비율
□ 산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수매실적 증가율 계약재배 수매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	 ○ 수출신장율 ○ 수매・수출의무달성도 ○ 계약재배 수매실적 ○ 매출액・매출영업이익율 증가율
□ 산지유통센터운영지원사업	산지유통센터 시설활용율산지유통센터 이용 농가수매출액증가율
□ 생산자조직육성지원사업	 공동출하실적 중목별 전문화실적(신청품목/조합출하실적) 중가수매실적 증가율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 공동출하실적 ○ 품목별 전문화실적(신청품목/조합출하실적)
□ 산지농협유통활성화사업	 ○ 공동규격출하 비중 증가율 ○ 공동규격출하 작목조직 확대 ○ 판매사업 실적 성장률 ○ 판매사업 조수익 증가율 ○ 주요품목 출하수수료 증가율 ○ 수출실적・직거래비율 증가율
□ 도매시장육성지원사업	 전자경매 추진실적 전자경매품목수/경매품목수 전자경매량/총거래량 물류체계개선노력(포장규격출하량/반입량) 거래실적 향상도, 선도금 지급비율 매출액 증가율

3. 기금의 운용 성과에 대한 내부평가 보고서

가. 기금운용 성과 평가의 보고서

□ 농협회원조합 농안기금사업평가결과('02. 2)

○ 평가대상 : 농협회원조합 100개소

○ 대상사업 : 정부비축사업, 채소수급안정사업,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 유망품목시장개

척지원사업 등 11개사업

□ 수산물 농안기금사업평가결과('01.10)

○ 평가대상: 45개소(수협회원조합 33, 수산물일반업체 12)

○ 대상사업 : 정부비축사업, 민간수매지원사업, 공판장출하촉진사업 등 5개사업

□ 영농조합법인 농안기금사업평가결과('01.6)

○ 평가대상 : 45개소(농협, 공사가 지원한 영농법인)

○ 대상사업: 산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민간수매지원사업 등 4개사업

□ 산지유통인 농안기금지원사업평가결과('01.8)

○ 평가대상 : 12개소(공사 지원)

○ 대상사업 : 산지유통인출하촉진지원사업

□ 종합유통센터 농안기금사업평가결과('01. 4)

○ 평가대상 : 4개소(농협 지원)

○ 대상사업 :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지원사업

□ 농협무역(주) 농안기금사업('01. 3)

○ 대상사업 : 우수농산물유통지원사업, 유망품목시장개척지원사업

나. 단위사업별 정책목표달성 성과 보고서

□ "본 보고서 2.3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참조

4. 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외부의 분석·평가보고서

가. 산지유통전문조직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 용역 실시('02. 2)

-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실한 산지조직에 저리의 유통종합자금을 중기로 지원하여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여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산지유통전문조직 유통활성 화사업을 추진
- 산지농산물 출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거점조직을 시·군당 2~3개, 전국 300개내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운영
- ㅇ 자금지원

- 지원한도 : 조합당 70억원('02년예산 : 2,000억원)

- 융자조건 : 지원기간 3년거치 일시상환, 이자율 3%

- 지원대상 : 연간매출액 50억원이상이며, 향후 3년이내에 100억원이상 달성 할 수 있는 조합

□ 배 경

○ 기금운용이 전략적인 사업에 집중함으로서 사업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필요

□ 연구기관: 사단법인 농식품연구회

□ 연구기간: '01.11.30~ '02. 2.28

□ 연구내용

- 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 할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선정에 사용될 사전적 평가지표
- 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한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사업성과, 사후관리 및 방향제시에 사용 될 사후적 평가지표
- 정책목표달성의 평가 할 지표를 개발

□ 연구결과

- 유통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에 따른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
- 농협회원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가중치 배분
- 유통활성화사업이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방안
- 상위 조합에 인센티브 지원, 하위조합에 자금회수 등 평가결과 활용 방안 제시
- □ 활용: 2002년 산지유통전문조직 유통활성화사업 평가에 적용

나. 농산물 수급 및 가격정책 추진과 효과 평가(`01.12)

□ 배 경

○ WTO 체재하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가 농산물 수급과 가격에 미친 영향과 불안정 요인을 분석하고 그 동안 추진한 주요 가격정책을 평가함으로써 개방경제 하의 수급조 절 및 가격안정 방안을 모색

□ 평가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WTO 체제하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연구에 포함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정책 추진과 효과 평가를 실시

□ 평가사업 : 채소수급안정사업, 과일계약출하사업, 시설채소 출하조정약정사업

□ 평가내용

○ 적합성 : 정책목표, 문제해결에 적합한 수단 선택

○ 효과성 : 정책목표의 달성도, 정책문제 해결 정도

○ 효율성 : 정책의 비용 효과성

○ 형평성 : 정책 편익/비용의 집단간 공평 배분 정도

○ 수혜자 만족도 : 정책결과의 수혜자 필요, 욕구, 선호, 가치의 반영 정도

□ 평가결과

- 국내가격 유지 및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민간수입 억제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전체 생산량에 대한 계약률, 출하율이 증가하여 가격안정 효과 기대
- 양파, 마늘 등 정부비축과 민간수매지원사업이 소득/비용효과 2.2~4.5배 추정
- 계약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계약기간을 3년이상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규모화 및 효율화를 도모

□ 활 용

- 품목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단 및 사업방식 개발
- 품목 부류별 수급 및 가격 정책 방향 정립

5. 내·외부의 성과분석·평가결과를 기금운용에 반영한 실적

가. 기금운용 평가결과 개선과제의 이행실적

사업명	개선 확 체	제도 개선조치
정부비축사업 (수산물)	이 비축김 수매시 소비자 선호규격(김밥용)을 포함- 김 수매규격 : 250g, 270g	○ 김수매규격 확대(230g 추가) - 당초 : 2종 → 개선 3종
	수매시 방생되지 않는 항목 수매부대비 지급 항목에 포함	사업부대비 지급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예) 냉동갈치 : 장내운반비 삭제
	비축수매 수수료가 중도매인(3%)에 비해 수협(2%)이 낮아 사업의욕 저하	○ 수협의 수매수수료 상향 조정- 당초 2.0% → 개선 2.5%
위판장출하 촉진사업	ㅇ 지원자금에 대한 사업의무 불명확	o 위판장의 연간 거래액에 따라 사 업의무 조정 - 지원자금액 기준: 12~24회전
산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자금지원기간이 2년이나 성출하기 수급조절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 매의무이행기간은 1년으로 단축 	대출기간은 2년이내이나, 원료수매는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지원자금 대출전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정 산시기가 부적정	○ 우선 대출 후 자금지원이 사용목적 에 적합하게 현장확인·지도
우수농수산물 지원사업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농업법인의 지원 원요건 미달사업자에게 자금지원 출자금 1억원 미만의 영농조합법인에 자금지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지원시 농림사업실시규정의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제외 - 일반업체의 자본금(5천만원) 보다 높아 형평성으로 개선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자체사업이 사업의무 이행을 적기에 미실시로 수매 효과 미흡	o 자금지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사업 완료 의무화
	o 3개월이내 자금지원으로 농가의 대출금 사용기간이 8~9개월로 저조	○ 정부 차입일로부터 40일이내 농가대 출 완료토록 개선
직거래매취 지원사업	산지 소재 농협회원조합 사업여건악화로 사업의무 미이행 빈발	 산지조합 사업의무 완화 - 읍이하 소재조합 250%→125%

나, 산지유통전문조직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자금 일괄 지원체계 확립

□ 기본구상

- 규격화, 상품화, 물류효율화 등 유통개선에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주도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
- 유통 관련 각종 자금을 통합 지원하여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

□ 지원체계

- 사업자 선정
- 산지농산물 출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거점조직을 시·군당 2~3개, 전국 300개내외 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운영
- 신청자격을 갖춘 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을 결정
- 자금지원
- 지원한도 : 조합당 70억원('02년예산 : 2,000억원)
- 융자조건 : 지원기간 3년거치 일시상환, 이자율 3%
- 사업결과 평가
- 조합의 재량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사업실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책임경영 실시
- 평가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3기관(공사)에 위탁

□ 개선내용

- 지원대상을 농협회원조합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
- 지원자금 규모 : ('00년) 50.000백만원 → ('01) 200.000백만원
- 일반조직에 지원되는 개별자금(7개)를 종합자금(1개)으로 지원
- 일반조직: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자금, 공동규격출하선도금,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 가공공장수매지원자금, 공판장출하촉진자금, 직거래지원자금, 유망품목시 장개척지원자금
- 산지유통전문조직 : 산지유통전문조직유통활성화사업자금

□ 추진효과

○ 산지에서 생산자조직이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을 실시므로서 파급효과를 증대

3

의사결정체계와 관리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여 백

지 표 명

1.3 의사결정체계와 관리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가 중 치

20%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790-8015)

명 가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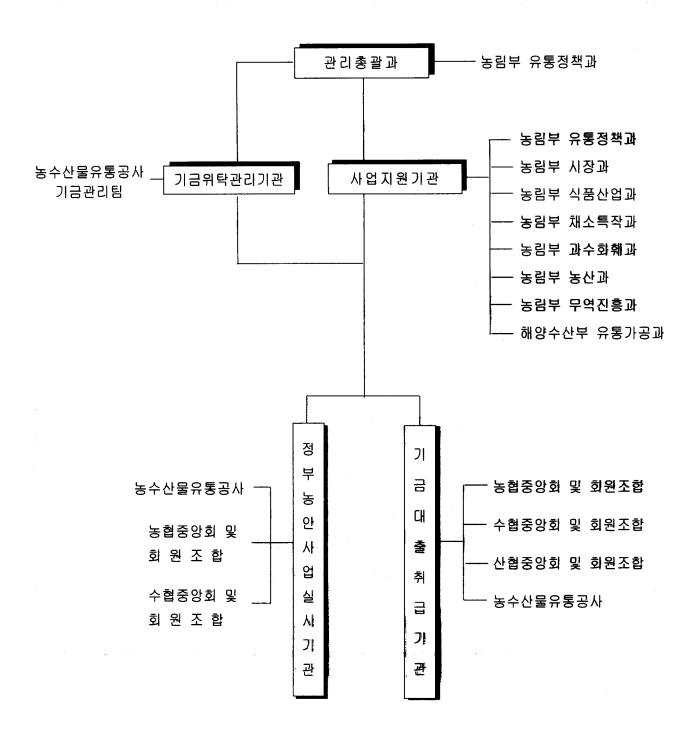
1.3.1 의사결정체계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

- 기금운용심의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
-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
-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관련정보의 공개 정도

1.3.2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위탁관리의 필요성 및 효율성
- ㅇ 관리조직의 규모와 구조
- 관리인력의 전문성 및 인사관리의 유연성과 공정성
- 관리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부평가·보상시스템의 합리성

Ⅰ. 농안기금 관리조직 체계도



Ⅱ. 2001 주요지표별 실적 요약

1. 의사결정 체계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

가. 기금관리주체 및 의사결정 체계

□ 관리총괄: 농림부장관(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 관리위탁 : 자금 · 회계관리위탁과 사업관리위탁으로 이원화

○ 자금·회계관리위탁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관리위탁 : 기금대출취급기관(농·수협, 산조 및 농유공) 및 정부비축사업실시기관(농유공)

□ 의사결정체계 : ① 사업지원기관 요구(안) 수렴 ② 실무협의회 개최 쟁점 토의

③ 우선순위 결정→ 시안확정→ 예산조정심의회 심의→ 기금운용심의회 상정

나. 기금관리주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 기금관리위탁기관

- 기금 여유자금의 연중 수시운용권 부여(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15조)
- ☞ 무수익 국고대기자금의 여유자금화로 운용수익률 제고
- 기금 수탁관리 조직을 독립된 팀제로 전환(2001. 6 유통공사 조직개편 시)

□ 기금대출취급기관

-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실행, 사업실적확인·사후관리 및 융자에 따른 대손부담 등 사업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농안사업실시규정 제 17조~21조 및 제31조)
- 실적평가에 의한 금리차등적용, 상환연기, 제재경감 등 융자조건 적용의 탄력성 부여(농안사업실시규정 제 24조~제30조)

□ 정부비축사업실시기관

- 정부수매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권 부여(농안사업실시규정 제32조)
- 정부비축농수산물 수입규모 및 수입시기 결정권 부여(농안사업실시규정 제39조)
- 가격안정용 비축농수산물의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 결정권 부여(규정 제46조, 제47조)
- 정부가격안정사업 자금 및 재산관리권 부여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의 변상책임 부여 (농안사업실시규정 제56~제59조)

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보고제도 및 운영실적

□ 기금운용관리자의 정보공개

- 결산보고 : 회계년도 종료후 익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감사제도에 의한 공개 : 매년 감사원 정기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수감
- 농안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afmc.co.kr/fund)를 통한 정보 공시 등

□ 사업실시기관에 의한 정보공개

-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www.nacf.co.kr) 및 농민신문 : 수매자금 등 지원안내
- 유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fmc.co.kr/-게시판-입찰 및 판매공고)와 중앙일간경제지 : 비축농수산물 판매입찰 및 외자구매입찰 정보제공
- 농수산물수출컨설팅(유통공사)을 통한 무역정보의 제공

2.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가. 내부관리와 위탁관리의 선택기준

- □ 선택기준 :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정책기획 기능은 내부관리, 정책실행 기능은 위탁관리
 - 내부관리 :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예산 및 지출한도액 배정, 실적확인 · 평가를 통한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농림부 유통정책과 및 각 사업별 품목 담당과)

□ 위탁관리

- 기금관리위탁 : 배정된 예산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국고수표 발행, 수입금 징수 및 결산업무 수행(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관리위탁 : 수매비축 등 정부직접사업(농수산물유통공사)과 융자성 사업의 기금대출 업무(농·수협, 산림조합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성과평가·보상시스템 및 운영실적

- □ 기금관리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 □ 정부비축사업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 평가지표에 의거 농림부가 유통공사의 사업실적을 평가후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01평가결과 인센티브지급 : 231백만원(비축사업당기순이익의 0.15%×평가득점별 지급율)

다. 기금관리 인력의 전문성제고 노력 및 성과

□ 기금관리위탁기관

- 기금사업실시기관 실무담당자 집합교육 실시(2001.12.6~12.7, 유통공사 유통교육위)
- 기금관리팀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이수 : 기업결산대책(생산성본부) 등 5회

□ 버축사업실시기관

- 정부비축사업 실무 및 고객서비스 교육 (2001. 11)
- 정부비축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 : '마늘재배면적 예측모형 개발' 등 4건

라. 인사관리(유통공사)의 공정성 및 유연성 제고 노력

□ 능력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 강화

- 연공성 제도 폐지 및 축소 : **승진소요 최저년수 폐지**, 인사고과 중 경력평정 비중 축소
- O 업무관련성을 중심으로 상사, 동료,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정제도** 도입
- 투자기관 최초로 개인별 가치제고를 위한 **우수인재발굴평정제도**를 도입 운영
- 인사고과결과 공개(홈페이지 인사정보란)로 피평가자의 개선노력 유도

□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으로 공정성 제고

- 3급 승진자 결정 시 인사고과 개선분야의 반영비중을 확대
- 5급 승진시험 대상과목을 실무능력과 자질검증이 가능토록 개선
-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대기제도 개선 : 종전 1.2급에 한정 → 전직급에 적용
- 군복무 가산점제 폐지로 여성고용안력에 대한 문호 확대

마. 내부평가 및 보상시스템(유통공사)과 운영실적

- □ 내부평가 체계 : 이사평가, 1-2급평가 및 3급이하평가로 구분하여 평가군별로 평가
- □ 가결과 보상 : 실질적인 차등성과급이 이루어지도록 차등지급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성과급 차등폭 : ('99) 60% ⇒ ('00) 129-155% ⇒ ('01) 192%
 - 하위직의 성과급 차등폭 완화(개선) : 위화감 확대 등 부작용이 있어 80% 수준으로 완화
 - 내부평가제도와 타 경영관리제도와 연계 : 인사제도, 보수관리, 감사제도 등

평가내용

1.3.1 의사결정체계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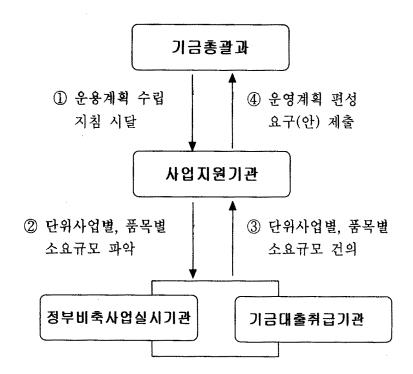
-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790-8015)
- 1. 기금의 관리주체 및 의사결정체계 등 지배구조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체계
 - 가. 관리주체
 - □ 기금관리 총괄 : 농림부장관(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 법적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 □ 관리위탁 : 자금·회계관리위탁(위임)과 사업관리위탁으로 이원화
 - 자금·회계관리 위탁(위임)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국립종자관리소)
 - 종자관리기금과 인삼산업진홍기금을 농안기금으로 흡수 통합하여 2000. 6. 1부터 위탁(위임) 시행
 -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 제3항
 - 사업관리위탁 : 기금대출취급기관과 정부비축사업실시기관으로 대별
 -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 기금대출취급기관 : 농·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 ㅇ기능 : 융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실적확인 및 사후관리를 담당
 - ◇ 정부비축사업실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ㅇ기능 : 가격안정용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수입비축 및 방출관리

나. 의사결정체계

□ 대상년도별 농안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 설정

- 사업지원과 및 기금사업실시(대출취급)기관의 제도개선 요구내역 수렴
- 과제별 주요쟁점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 기금운용심의회에 기금운용 기본방향(안) 상정·보고 및 확정

□ 대상년도 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및 편성요구(안) 접수



- □ 사업지원기관(농림부,해수부의 각사업 및 품목 담당과)의 예산편성 요구(안) 수렴
 - 중장기 비젼과의 연계성 여부 검토
 - 정책기여도 및 WTO 관련 투명성 여부 검토
 - 예산, 농특회계 등 타 농업관련 재정과의 중복여부 검토
- □ 실무협의회 개최 예산(안) 수림과정의 주요 쟁점별 토의
- □ 주요 정책별·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시안확정(농림예산조정심의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다. 기금관리 사무분장 내역

7 1	사무분장내역
1. 사업자금 총괄기관	
ㅇ 농림부 유통정책과	- 기금운용계획 수립, 예산변경 및 제도개선
	- 기금예산 및 지출 한도액 배정
2. 사업자금 관리기관	
ㅇ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 배정된 예산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국고수표 발행)
(국립종자관리소)	- 각종 기금수입금의 징수 및 여유자금 관리
	- 기금결산 및 회계관리
3. 사업지원기관	
ㅇ 농림부 채소특작과 등 7개과	- 사업별・품목(분야)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건의
및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 기금운용계획상의 사업별・품목(분야)별 예산배정 요구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 기금사업실시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을 지도·감독
4. 정부비축사업실시기관	
o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처	- 비축농수산물 수매, 수입, 보관 및 방출관리
및 국영무역처)	- 비축농수산물 품목별 수급 및 가격관리
	- 수입추천, 수입권공매
5. 기금대출취급기관	
○ 농·수협중앙회, 산림조합	- 배정된 융자한도에 의거 기금으로부터 융자금 대여(차입)
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금대출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별 대출한도 배정
	- 기금의 대출, 사후관리 및 사업정산

라. 위임전결 체계

□ 기금관리위탁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기금관리팀)

월 무 내 용	사 장	전 결	권 자
	^T 8	이사	팀 장
1. 농안기금 관리			
가. 농안기금 납입고지		0	
나. 농안기금 지출원인행위		0	
다. 지출원인행위가 확정된 지출			0
라. 농안기금 운영실적 보고		:	0
마. 자금운용계획 수립		0	
2. 농안기금 결산	0		
3. 농안기금 평가보고서 작성		0	
5. 농안기금 제도개선 및 계약			0

□ 정부비축사업실시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비축관리처 및 국영무역처)

-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구 분	업 무 내 용	사장	이사	처장	부장
비축관리처	1. 정부비축사업 관리				
	가. 비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0			
	나. 비축사업 연도말 결산	0			
	다. 비축사업 실적분석 및 보고		0		
	라. 비축사업자금 운용관리			0	
	마. 수입 및 대체결의		:	0	
	바. 현금, 유가증권 관리 및 당좌수표 발행				0
	사. 전표, 일계표 발행				0
	아. 비축사업관련 자금의 수납				0
	자. 비축물자 보관·판매 등 제도개선 사항		0		
	차. 예정가격 결정(농안기금)		0		
	카. 방침이 확정된 지출, 수입, 대체결의			0	

-, u	V	al zl	전 결 권 자		
구 분	업 무 내 용	사장	이사	처장	부장
	2. 종합 수급관리				
	가. 비축물자 종합 수급계획 수립	0			
	나. 품목별 수급 및 가격관리				
	ㅇ 중요한 사항		0		
	ㅇ 경미한 사항	TOTAL CONTRACTOR OF THE CONTRA		0	
				Tagana and a salah da	
	3. 비축물자 판매				
	가. 품목별 판매관리				
	○ 판매 기본방침 및 판매방법 변경		0		
	ㅇ 직배 및 직판에 관한 계약		0		
	ㅇ 방침이 결정된 판매시행(지사간 판매	-		0	
	물량 조정 및 연계판매 등)				
	ㅇ 판매실적 관리 및 정산				0
	나. 판매대상업체 선정 및 정비			0	
	다. 비축물자 판매사고 처리			0	
	4. 비축물자 운송 총괄관리			0	
	5. 비축물자 보관				
	가. 보관방침 및 주요관리계획 결정		0		-
	나. 비축창고 증설 및 용도폐지 결정	0			
	다. 시설 및 부대장비 운용방침 결정			0	
	라. 비축물자 인수도계획 수립	·		0	
	마. 비축창고내 비축물자 하역조작비		0		
	지급기준 설정				
	 6. 품질 및 가공 관리			T 1	
	 가. 품질 및 가공관리 방침결정		0		
	나. 비축물자 품위실태점검조사 및 조치	The state of the s		0	
	다. 비축물자의 보관중 폐기, 감량처리 결정		0		
	라. 정선 및 가공업체 선정			0	
	마. 비축물자 저장시험에 관한 사항			0	

구 분	업 무 내 용		전	전 결 권 자		
구 분	विकास स	사장	이사	처장	부장	
국영무역처	1. 수입추천					
	가. 기본방침 결정		0			
	나. 외화획득용 양허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0		
	다. 일반내수용 및 외회획득용제품 양허관세추천				0	
	라. 수입추천 및 수입실적 보고		·	0		
	2. 수입권공매	,				
	가. 공매방침 결정 및 낙찰자 결정	,	0			
	나. 기타 공매에 관한 사항			0		
	3. 비축물자 수매					
	가. 비축물자 수매계획 수립	!	0			
	나. 품목별 수매방안 사전검토 및 대정부 건의			0		
	다. 수매농산물 위격품 재결의뢰			0		
	라. 수매자금 전도		0			
	마. 수매관리 및 지도감독			0		
	바. 수매사업 정산		0		1	
	4. 비축물자 수입					
	가. 구매방침 결정		0			
	나. 입찰					
	ㅇ 입찰참가업체 등록 및 견품심사			0		
	o 입찰참 가업체 자격제한 및 낙찰자 결정		0			
	ㅇ 입찰시행			0		
	다. 수입계약					
	ㅇ 수입용역계약 방침결정		0			
	ㅇ 수입용역계약, L/C개설, 해상보험 부보			0		
	및 수입소요자금 신청					
	o 선적서류 인수 및 L/G신청 등 지출원인행위			0		
	라. 도입예정사항 통보				0	
	마. 네고동의서 발행 및 통지				0	
	바. 물품대 잔액 결제, 구상처리 및 계약		0			
	완료 보고					

2. 기금 관리주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 기금관리위탁기관

-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권 부여(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15조)
 - ☞ 자금의 연중 운용을 통한 무수익 국고대기자금의 여유자금화로 운용수익률 제고
- 기금 수탁관리 조직을 독립된 팀제로 전환(2001. 6 유통공사 조직개편 시)

나.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융자사업 관련

-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실행, 사업실적확인·사후관리 및 융자에 따른 대손부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농안사업실시규정 제 17조~21조 및 제31조)
- 기금은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융자대상자별 대손위험도를 감안 0.5%~2.0%의 융자취 급수수료를 지급
- 융자조건 적용의 탄력성 부여(농안사업실시규정 제 24조~제30조)
- 금리차등적용 : 사업실적 평가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1% 이내로 차등적용
- 상환연기 : 자연재해 또는 가격하락에 의한 수매저장품 판매부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 제재경감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무 미달시 또는 제재로 인하여 농수산 물가격안정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 등

다. 사업실시기관의 정부비축사업 관련

- 정부수매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권 부여(농안사업실시규정 제32조)
- 사업지원기관으로부터 시달된 수매지침(수매대상품목, 물량, 가격 또는 가격결정기준, 시기)에 의거 ①지역별 수매물량 배정 ②수매품 보관관리계획 ③수매사업 홍보 및 수매요원 교육 ④수매자금 전도 및 정산 등을 포함한 자체수매사업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비축농수산물 수입규모 및 수입시기 결정권 부여(농안사업실시규정 제39조)

- 당해 품목의 수급, 국내외가격동향, 보유재고, 판매전망 및 수입소요기간 등을 실시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입
- 가격안정용 비축농수산물의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 결정권 부여 (농안사업실 시규정 제46조 및 제47조)
- 정부가격안정사업 자금 및 재산의 관리권 부여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기금에 손해 를 끼친 경우에의 변상책임 부여 (농안사업실시규정 제56~제59조)

3.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 및 약력

	찬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경 력	출신지
	농림부	차 관	서규용	'48.1.9	고려대 농학	식량생산국장 차관보 농촌진흥청장	충북 청주
	농림부	농산물 유통국장	김재수	' 57.2.20	경북대 경제	농업정책과장 국립종자관리소장 농업정보통계관	경북 영양
당	재정경제부	국민생활 국 장	윤대희	·49.10.24	서울대 경영	총무과장 주제네바대표부참사관 공보관	충북 괴산
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 국 장	박덕배	'53.2.3	서울대 해양	수산청 어장보전과장 국제협력담당관 어업자원국장	충남 서천
직	국 립 종자관리소	소 장	안병규	50.9.6	서울대 농학	대관령지소장 품종심사과장 종자유통과장	충북 청주
	농수산물 유통공사	관리이사	김용한	' 48.7.25	서울시립대 원예학과	산림청 자원조성국장 산림청 시유림지원국장 산림청 차장	전북 군산
	농협중앙회	유통담당 상 무	김용택	'46.8.19	서울대 농학	양곡·자재담당 상무 유통지원상무	경기 양주
위	농수축산 신 문	발행인	전정희	'61.1.15	이화여대 체육학과	농축산물공급센터 홍보실장	강원 동해
T 촉 직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수 석 연구위원	허길행	'45.9.8	서울대 농경제	동국대,서울대 강사 한국식품유통학회 부회장	경기 광주
	참 다 래 영농조합	회 장	정운천	'54.4.10	고려대 농경제	한국신지식인농업인 회장	전북 고창

4.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실적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실적

□ 2002년도 농안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회 심의결과

○ 일시 : 2001. 7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이해관계자의 참여실적

	위 원 별	김 토 의 건, , , ,	조 치 결 과 (제 휙)
		 유통구조개선사업 비중 확대 직접적인 가격지지 정책보다는 유통 구조 개선사업을 통한 간접적 방식이 바람직 	- 일반회계에 2000억원 출연 요구
ł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수산분야 지원확대(4,000억원 이상) 농업관측사업 예산 미확보시 수정운용 계획에 반영 검토 	- 20억원 증액 : 3,984억원→4,004억원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관련 특별법에 근거가 있긴 하나 추후 농안법령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농안법령 개정시 출자 지원규정 명문화할 예정
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규격출하 촉진 및 상장경매 원활화 를 위해 수산분야 지원 확대 (현재안)3,984억원→(요구)4,080(증96) 	- 20억원 중액 : 3,984억원→4,004억원
0	국립종자관리소장	 전체 종자수급관리 운용규모 내에서 농특에 반영되지 않은 벼 생산보상금 등을 종자매입비에서 일부 조정 벼 종자 매입비 : 279억원→266(감13) 감자 종자 매입비 : 83억원→85(증2) 벼 생산보상ㅂ금 : 0억원→11(증11) 	- 종자수급관리 사업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의견 수용
0	유통공사관리이사	의견없음	
0	농협중앙회 유통상무	의견없음	
0	전정희 위원	• 직거래매취사업은 축소 조정하고 농민조합을 대상으로한 농산물 마 케팅교육 및 훈련 등의 강화 요망	- 전년실적 부진으로 축소조정 및 유통 교육원 교육과정에 마케팅교육 반영
0	허길행 위원	의견없음	
0	정운천 위원	• 생산자의 안정된 시장공급 방안 강구 - 금리인하(5%→3%),인센티브제도입 등	- 금리인하 문제는 전체 농업정책자금 금 리조정 차원에서 별도검토하되, 인센티브제는 사업별 확대시행을 유도

5.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보고제도 및 운영실적

가. 기금운용 관리자의 정보공개

□ 농안기금 결산보고제도에 의한 공개

- 보고채계 : 농림부장관이 회계연도별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재경부장관 → 국무회의심의 및 대통령승인 → 감사원 결산검사 → 국회제출
- 보고내용 : 농안기금의 운용계획 대 실적, 재산상태, 손익상황, 재원조성 현황, 사업성과 및 전망 등

□ 감사제도와 관련한 정보공개

- 감사주체 : 감사원(매년 정기감사 실시), 국회(국정감사)
- 감사대상자 : 기금운용관리자(농림부), 기금관리위탁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비축사업실시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 감사결과 feed-back
- 감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사업실시규정, 지침 등을 정비하여 정보수요자에게 제공
- 정보수요자 : 농안사업실시기관, 생산자조직 및 단체, 농수산물의 저장ㆍ가공ㆍ수출업체 등

□ 농안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afmc.co.kr/fund)를 통한 정보 공시

- O 주요 제공정보 내용
 - 결산내역 공시 : 기금의 운용계획 대 실적, 재산상태, 손익상황, 재원조성 현황 등
 - 농안기금사업 소개 : 사업별 지원체계와 절차, 지원대상자, 지원기관, 지원조건 등
 - 게시판 기능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융자실행 내역, 기금소식 등
- 총 조회건수 : 8.163회 (2002년 4월말 기준)

나. 사업실시기관의 정보공개

□ 생산자단체 및 조직, 농업인 등에 대한 농안사업 정보공개

- 정보제공 방법 : 농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acf.co.kr) 및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일간지(농민신문)를 활용
- 주요 제공정보 내역
- 생산자조직 및 단체, 농산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수매자금 지원안내
- 산지유통개선사업 지원자금 안내 등

□ 가격안정용 비축농수산물의 판매입찰 및 외자구매입찰 정보제공

- 제공방법 : 유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fmc.co.kr/-게시판-입찰 및 판매공고)와 중앙일간경제지를 활용 수시 제공
- 정보내역 : 입찰실시품목, 입찰일시, 참가자격 및 참가신청서류 등

□ 농수산물 수출컨설팅을 통한 무역정보의 재공

- 정보제공 방법
- 수출개발, 무역정보, 수출자금지원, 시장개척 및 박람회사업 등 5개 분야별로 유통공사 내전당직원 20인으로 수출컨설팅팀 구성
- 컨설팅 내실화를 위하여 외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10개분야 60인) 운영
- 수출현장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이동컨설팅 실시
- 추진실적
- 파종에서 최종 수출단계까지 현장밀착형 컨설팅 실시 : ('00) 76회 → ('01) 82회
- 수출애로 상담 전용전화 설치 운영 : ☎ 02-7960-119(무역정보,수출실무 등 187건 상담)
 - ☞ 컨설팅을 통한 수출알선 실적 : 10,029천불

평가내용

1.3.2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790-8015)

1. 내부관리와 위탁관리의 선택기준

□ 선택기준 :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정책기획 기능은 내부관리, 정책실행 기능은 위탁관리

○ 내부관리 :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예산 및 지출한도액 배정, 실적확인·평가를 통한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농림부 유통정책과 및 각 사업별 품목 담당과)

○ 위탁관리

- 기금관리위탁 : 배정된 예산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국고수표 발행, 수입금 징수 및 결산업무 수행(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관리위탁 : 수매비축 등 정부직접사업(농수산물유통공사)과 융자성 사업의 기금대출 업무(농·수협, 산림조합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2. 수탁관리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구 분	기관명	선 정 기 준
ㅇ기금관리위탁	농수산물유통공사	- 설립목적 및 공사법 상의 목적사업이 본 기금의 정책
		목적과 일치
		- 기금의 직접사업 대행, 기금대출취관으로서의 기능 등
		기금사업 전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축적
ㅇ사업관리 위탁		
- 대출취급기관	농·수협, 산림조합	- 융자사업의 전문성 확보 차원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금의 수요자별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조직 소요
		자금은 농·수협, 산림조합이, 일반 저장·가공업체 및
		수출업체 소요자금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담당
- 정부비축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 설립목적 및 공사법 상의 목적사업이 본 기금의 정책
실시기관		목적과 일치
- 정부수매사업	농·수협	- 산지 수매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력 확보
실시기관		

○ 선정절차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 동법시행령 제12~14조 및 농수산물가격 안정사업실시규정(농림부훈령) 제 5조로 명문화 됨

3. 위탁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子、是	위탁관리비	산 청 기 준
o 자금·회계관리	- 기금관리비	- 종사인원(7인)에 대한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위탁		-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기획예산처 시달) 적용
ㅇ 사업관리 위탁		
-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수수료	- 대하·대출 금리차
		- 대출자금의 대손 발생은 대출취급기관이 부담
- 정부비축사업	- 비축사업위탁료	- 사업규모별로 적용되는 위탁요율
실시기관		- 인건비, 경비, 유통공사일반관리비 분담액 및 기회비용
		의 합리적 수준을 산정, 사업규모별로 요율화
- 정부수매사업	- 수매수수료	- 수매물품대의 0.3%를 수매사업 정산시 지급
실시기관		
	revianta de la constanta de la	·

□ 적정성 입증의 근거

- 기금관리비 :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 및 **동 지침에 의거한 인건비 및 경비의 과목** 별 예산편성 내역 (입증자료집에 별도 수록)
- 대출취급수수료 : 기금운용계획서의 운용총칙 상에서 기준을 명시(입증자료집에 별도 수록)
- 비축사업위탁료 : 비축사업위탁료산정을위한연구보고서(삼일회계법인, 1999) 및 동 보고서에 의거한 위탁요율확정방침문서사본, 년도별 위탁료정산내역 (입증자료집에 별도 수록)
- 수매수수료 : 농안사업실시규정(농림부훈령)상의 정부비축사업경비 적용기준 (입증자료집에 별도 수록)

4. 관리주체의 수탁관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보상 시스템 및 운영실적

가. 기금관리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 별도의 성과평가·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

나. 비축사업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 평가목적

- 양질의 농산물 확보 및 적기도입, 고객서비스 제고 등 정부비축사업의 다양한 사업 추진 노력을 평가하여 정부비축사업 활성화 도모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동기유발

□ 평가절차

- 평가지침 시달 및 평가 : 농림부(유통정책과)
 - 사업별평가(농림부·해양수산부 사업지원기관) 및 종합평가(유통정책과)로 실시
- 사업실적 제출 :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사업부서)

□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지 표 명	평가방법
▷ 양질의 농산물 확보율	○ 산식 : (도입 합격규격 항목수/총 검사규격 항목수)×100
▷ 농산물 적기도입율	○ 산식 : (도착일 지연모선수 / 총 도입 모선수)×100
▷ 보관감량 발생율	목 표: 최근 3개년 최저치 (하향목표)평점산식: (보관감량 발생량/년간 입고량)×100
▷ 정부비축사업 제도 개선 노력 및 성과	 전년도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시장접근물량의 효율적 관리 및 농가피해 최소화와 가격안정 도모 노력 등 평가득점 산정기준 : 6등급 평가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의 효율적 추진	ㅇ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의 평가내용 적용
▷ 가격안정기여도	
▷ 사업운영 적정성 및 사업목적의 달성도	ㅇ 기금운용평가단 평가내용을 토대로 비축사업 재평가

□ 평가결과(2001실적) 및 조치

▶ 평가결과

7 3 9	기중치	두점
ㅇ 양질의 농산물 확보율	15.00	14.7
ㅇ 농산물 적기도입율	10.00	10.0
ㅇ 보관감량 발생율	10.00	10.0
o 정부비축사업의 제도개선 노력 및 성과	40.00	26.3
ㅇ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14.00	8.7
ㅇ 가격안정기여도	6.00	5.1
ㅇ 사업운영의 적정성 및 사업목적 달성도	5.00	3.0
계	100.00	77.8

▶ 평가결과 조치

○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기준금액	: 두 점	지급율(%)
	90점이상	100%
정부비축사업 당기순이익금액의	90점미만 ~ 80점이상	80%
0.15%	80점미만 ~ 70점이상	60%
	70점미만 ~ 60점이상	40%
	60점미만 ~ 50점이상	20%
	50점미만	_

○ 2001년도 비축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급내역

- 기준금액: 384,394천원 / 지급율: 60%(70점이상 ~ 80점미만) / 지급액: 230,636천원

5. 기금관리 인력의 전문성제고 노력 및 성과

가. 기금관리위탁기관

□ 농안기금사업실시기관 실무담당자 집합교육 실시

○ 교육목적 : 기금운용규모의 확대 및 사업방식 다양화에 대응한 기금관리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교육기간 및 장소 : 2001. 12. 6 ~ 12. 7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1박2일, 합숙)

○ 교육참석인원 : 53명(농협 24명, 수협 11명, 산림조합 2, 유통공사 18)

○ 교육내용

구분	型 条 川 8	시간	강사
정책	ㅇ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유통정책의 방향	2	박 현 출 (농림부 유통정책과장)
	ㅇ 기금제도의 개요, 운용현황 및 개혁추진과제	2	방 기 선 (기획예산처 서기관)
전문 실무	ㅇ 회계와 구조조정	2	서 윤 석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o 농안기금의 2001년도 주요추진상황 및 2002년도 운용방향	2	박 상 윤 (농림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ㅇ 농안기금사업 실시규정	2	전 원 수 (유통공사 기금관리팀장)
	농안기금사업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우수 및 부진사례	2	김 진 곤 (유통공사 사업평가팀 과장)
토의	o 기금사업 발전방안 및 사업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2	박 상 윤 (농림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 기금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 실무교육 이수

소속	직급	편 정	교육과정	교육실시기관	이수기간
기금관리팀	3	강경중	• 기업결산대책과 결산실무	한국생산성본부	2000.11.20-11.23
기금관리팀	3	최근원	• 자금담당자 양성과성	흑자경영연구소	2000.11.15-11.17
기금관리팀	3	정성남	• 기업회계과정	재정경제부	2001.11.12-11.23
기금관리팀	4	박제형	• 경리실무 기초 • 계정과목 실무	한국능률협회 삼일회계법인	2000.12. 4-12. 7 2001. 6.19- 6.22

나. 비축사업실시기관

◇ 정부비축사업 종사직원의 직무능력 배양과 대 고객서비스 교육실시('01.11)

□ 교육목적

- 비축사업 종사직원의 직무능력 배양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 고객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본·지사 직원간에 사업추진 공감대 형성 도모

□ 교육내용

- 수매·수입실무 및 제도, 품질·입출고관리 실무 및 판매관리
- 고객만족경영 (한국생산성본부, CS경영센터 팀장)
- 비축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분임토의·종합토론 및 현장업무 우수사례발표 등
- □ 교육대상 : 본·지사(소) 정부비축사업 종사직원 60명



※ 고객의 접접인 현장부서 직원등을 중신으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라정

☐ 교육결과 : 각 지사·지소 발표내용 중 7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조치

NO	对	추진기한
1	마늘 장기보관기법 설정	'02. 12
2	방열창고를 저온창고로 변경·운용 검토	66
3	기간단위로 운송업체 선정	' 02. 4
4	두부용콩 직배신청 처리방법개선	' 01. 11
5	원거리 출고에 따른 업체불편 해소방안 연구	' 02. 6
6	비축물자 운송거리표 개선	'02. 12
7	판매관련 전자상거래 세부방안 검토	' 02. 12

□ 교육효과 : 비축사업 종사직원의 대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 제도개선 조치를통하여 업무효율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 유도

◇ 정부비축사업의 미래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

□ 연구목적

- 사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연구풍토조성 및 지식경영기반 구축
- 과제별 발표회 및 세미나 강화로 업무간 연계성 제고 및 업무지식 공유

□ 연구내용(총 4건)

- ○「비축물자 전자상거래 System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배경 : 비축사업의 저비용·고효율 도모와 판매입찰의 투명성·정확성 제고
- 운영체계 판매내용 및 견본은 화상으로 처리하여 "사이버몰"에 공고
 - 입찰은 장소에 제한 없이 PC를 이용하여 전자입찰
 - 인터넷망을 이용한 금융거래 및 입금확인 자동검색
- 가동시기 : 공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2003. 3월 가동예정
- ○「마늘 재배면적 예측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배경 :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수급예측 및 판매관리에 활용
- 예측모형 : N년도 재배면적 = 기본면적 + [(N-2 년 가격 기본가격) × 가격탄성치]
- 모형검증 결과 평균오차 1.9%정도로 예측모형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
- 연구결과 전문지 게재 (농어면신문 및 농정신문(1월 24일), 농면신문 (1월 25일))
- WTO회원국의 관세쿼타(TRQ) 운영사례 분석을 통한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개선방안 연구
- 뉴라운드 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양념류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 추진효과

- 단위업무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발전을 도모
-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비축사업 종사직원의 자질 향상 및 업무전문화 능력 배양

6. 인사관리(유통공사)의 공정성 · 유연성 제고 노력

◇ 능력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 강화

- 가. 현 경영추세에 배치되는 연공성 제도 폐지 및 축소
 - □ 투자기관 최초로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 설정운영제도 폐지(신규)
 - 현황 및 문제점
 - 조직 및 인원 축소(948 → 500명)
 - 숭진적체 심화
 - 대부분이 승진소요년수 경과자 (2급:64%, 3급:77%, 4급:75%)
 - ㅇ 신규인력 증가('99:19명, '00:34, '01:10)
 - 일한만큼에 대한 보상욕구 강함

 능력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에 정면 배치되는 대표적 연공제도
 하급직원의 희망 및 사기 저하만 초래

○ 추진실적

직급별 숭진소요	최저년수
2급 → 1급((4년)
3급 → 2급((4년)
4급 → 3급((3년)



폐지('01. 10)

□ 인사고과중 과다한 경력평정 점수비중 대폭 축소(개선)

30~40점

(8년 6개월 소요)



20점

(5년 소요)

⇒ 실질적 능력 및 성과위주의 발탁인사 기반 마련

나. 평가결과의 수용도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 □ 보다 진전된 다면평정제도의 도입 시행(개선)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평가자와 피평가자간 업무관련성이 미흡하고 평가가 중복
 - 상사평가, 집단평가, 숭진심사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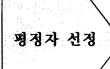
개 선 방 敬

 업무관련성을 중심으로 상사, 동료, 하급자로 구성된 보다 발전된 다면평정제도로 흡수하고 폐지

O 다면평정제도의 도입 운영

평정자 예정자 풀(pool) 구성

ㅇ 업무관련 직원, 소속부서 직원, 직전부서 근무직원으로 구성



- o 평정자는 평정예정자 풀(pool)중에서 무작위 추출
- ㅇ 평정자는 상사, 동료, 하급자로 직급별 기준 10명으로 구성

피평가자	평 가 자
1급	이사(1명), 1급(1명), 2급(3명), 3급이하(5명)
2급	이사(1명), 1급(2명), 2급(1명) 3급(1명), 4급이하(5명)
3급	1급(1명), 2급(3명), 3급(1명), 4급이하(5명)
4 · 5급	1급(1명), 2급(2명), 3급(3명), 4·5급(3명), 6급(1명)
6급	1급(1명), 2급(2명), 3급(3명), 4·5급(3명), 6급(1명)

평가방법

- ㅇ 인사관리시스템 「나의공간」에서 온라인 평가실시
- ㅇ 절대평가에 의한 5등급 평가
- o 특이성향의 응답인 최고·최저점수 제외하고 반영
- 실시결과('01, 11)
 - (운영 성과) 계층간 다각적 평가에 따른 객관적 분별력 제고
 - (미흡한 점) 점수의 상위분포 등 관대화 경향 발생
- 개선 계획('02)
 - 평정종류간 상관관계 등 유효성 분석
 - 올바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별 점수부여 기준 설정 등 제도적 보완

□ 투자기관 최초로 개인별 가치재고를 위한 우수인재발굴평정제도 도입 운영 (신규)

O 도입 필요성

ㅇ 감독자평정 : 하급자에 대한 일방향 평가로 편향적 평가가능성 상존

ㅇ 다면평정 : 업무관련성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평가자 선정

⇒ 공사 전체 직원이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 도입운영 필요

ㅇ 개인별 가치향상 유도를 위한 우수인재발굴평정제도 도입 운영

평가방식

 공사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직원을 아래기준에 의거 추천하고 추천인원수를 집계 하여 점수화

추천자	피추천자 및 추천인원 수
이사	1 · 2급 3명 이내
1급	2 · 3급 관리자 3명 이내, 3급과장 5명 이내
2·3급관리자	1급 3명 이내, 3급 과장이하 직급별로 5명 이내
3급 과장이하	1 · 2 · 3급 관리자 직급별로 3명 이내

추천사유

- ① 업적성과가 매우 뛰어나 회사에 공헌도가 큰 직원
- ② 직원·부서간의 원활한 업무협조 등 직원관계 및 관리 능력이 탁월하여 일의 성취를 촉진하는 직원
- ③ 강한 도전력과 개혁적 정신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직원
- ④ 자기계발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직원
- ⑤ 성실한 자세와 책임감으로 업무에 열의가 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점수적용

- 인사관리시스템 「**나의공간」**에서 온라인 추천
- 소속부서 직원 추천은 제외하고 소속부서 직원수 차에 따른 조정계수 사용
 - 최 종신청인원 = 신청인 수 × 전체인원/소속부서인원을 제외한 인원
- 직급별로 30%이내 해당자에 대해 0.5 ~ 3점 차등점수 부여
- 운영성과 : 능력과 성과가 있는 직원 분별력 제고
- 추진효과 및 기대: 개인별 가치제고를 위한 능력과 태도 개선노력 경주

□ 인사고과결과 공개로 피평가자의 개선노력 유도(신규)

O 공개내용

다면평정 및 우수인재발굴평정결과를 인사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란인 나의공간을 통하여 공개

O 다면평정결과 공개화면

다면팽정 결과 조회

평정년활 2001/11 @검색

명정요: 대문류	평정요소	TO BANK O (MANA)		평가결과	
	答世界	주요짱가내용(착안점)	배점	결과	
Ħ	직무수행능력	이해,판단학	담당작무의 문제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결론을 내리는 능 력은 어떠한가?	10	8.50
	직무수행능력	자기개발	자기발전을 위하여 계속 탐구하고 능력향상에 힘쓰는가?	10	8.75
	직무수행능력	전문지식,기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수준은 어떠한가?	20	17.90
	직무수행능력	창의,용용력	담당직무에 대한 창의력과 전문지식의 용용력은 어떠한가?	10	9.00
	직무수행태도	적극성	자신의 직무를 적극적이고 의목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행하는가?	10	9.75
	직무수행태도	백임감	자신의 일을 책임있게 처리하며, 부하직원에게 전가하지 않으며, 결과에 책 임물 지는가?	20	19,00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부정과 불의에 아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하며 도의적 윤리 적으로 청렴한가?	10	10.00
	직무수행태도	혈조성	상하관계 및 타부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10	10.00

ㅇ 우수인재발굴평정 공개화면

우수인재발굴팽정 결과 조회

평정년활 2001/11 🙋검색)

추천번호	추 천 사 유	추천인수
1	업적성과가 매우 뛰어나 회사에 공헌도가 큰 사람	0
2	직원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동 직원 관계 및 관리능력이 탁활하여 일의 성취를 촉진하는 작원	0
3	강한 도전력과 개혁적 정신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지합적인 직원	3
4	자기계발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직원	0
5	성실한 자세와 책임감으로 업무에 열의가 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장원	3

◇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으로 공정성 제고

□ 3급 승진자 결정에 개선된 인사고과결과 반영비중 제고(개선)

- 문제점
 - 다단계평가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평가 기대 곤란
 - 평가의 중복이 오히려 인사고과의 안정성 저해
- 추진실적



3급 승진자 결정 = 인사고과 + 승진심사위원회심사평가 + 인사위원회 심사평가



개선된 인사고과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 심의로 승진자 결정

- 승진심사평가는 인사고과의 다면평정 및 우수인재발굴평정으로 흡수하고 폐지

□ 5급 숭진시험과목을 개선하여 실무능력과 자질을 검증(개선)

- O 현황 및 문제점
 - 신입사원 채용과목(50점)+인사고과(50점) 합산으로 승진자 결정
 - 승진제도의 불확실성으로 근로의욕 및 사기저하 초래
- 추진실적

[종 전]

- 5급 승진자 결정 =신입사원채용시험과목(50점) +인사고과(50점)
 - 신입사원 채용시기 불명확
 - 시험과목의 실무적용 곤란



5급 승진자 결정 =실무시험(50점)+인사고과(50점)+외국어공인시험성적(10점)

(개선

- 승진시험시기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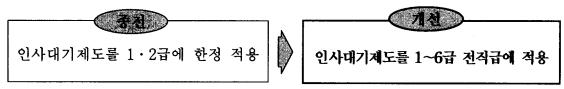
☞ 개선된 제도 적용으로 5급 승진자 2명 선발 ('01. 12)

□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대기제도 개선(개선)

- 운영실태
 - 인사대기제도를 1급과 2급 직원에게만 적용하여 운영
 - * 인사대기제도 : 근무능력 부족, 직장윤리 문란, 인화단결 저해 등 물의 야기자에 대해 일정기간 인사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신분상 불이익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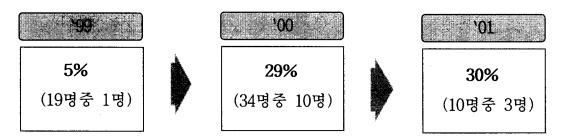
ㅇ 문제점

- 특정직급(1급 및 2급) 직원에 대해서만 한정 적용은 형평성 및 공정성 결여
- ㅇ 추진실적



□ 군복무 가산점제 폐지로 여성 고용인력 지속 증가

- 군복무 가산점제 폐지('00)
 - 신규채용시 군복무 자에 대해 필기시험 과목 만점의 3~5% 가점 부여로 여성 인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연도별 여성고용비율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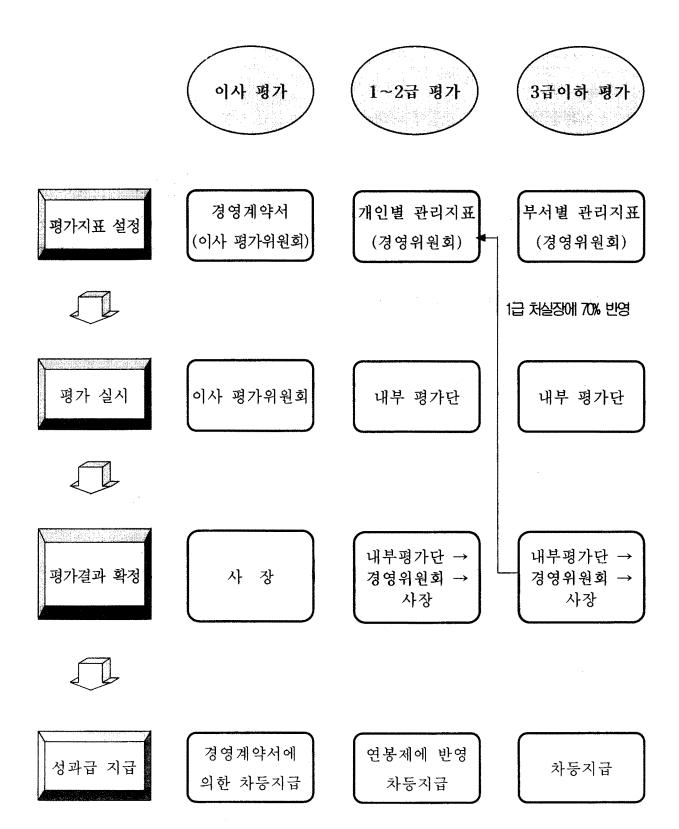
☞ 채용후 관리 : 직무만족 및 직무희망 조사를 통해 고충 해소 등 적합직무 부여로 조기 적응 유도

□ 새로 개정된 노동관련법령 등을 인트라넷에 즉시 게시하여 알권리 충족

○ 산전후휴가(60일 → 90일), 육아휴직(무급 → 고용보험지원)관련 모성보호 3법 개정내용 등

7. 관리조직 및 인력에 대한 내부평가 보상시스템과 운영실적

가. 내부평가 체계도(농수산물유통공사)



나. 내부평가단 구성·운영방법 개선

□ 개선방향

- 평가단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관리이사로 상향 조정
- 내부평가단 POOL 구성 및 평가단은 평가단 POOL에서 사장이 임명
- 평가단 전원 합숙평가 실시 및 서약서 징구, 실명제 평가 실시
- O 정부평가결과 반영지표도 내부평가단 평가결과 50% 반영

□ 내부평가단 구성 및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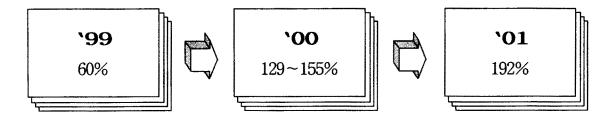
(B)	日체계	日本は出	(* 기가 임무 및 역 함	
이사평가 위원회		각이사 주무처부장, 감사실장, 노조사무처장(8명)	- 세부적인 평가기준, 평가 방법 설정 및 평가실시	
경영위원회		사장 및 이사(4명)	-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확정 - 평가단구성 및 지표수정	
평가단 P00L		3급이상 추천직원(94명)	부서별 실적 상시점검	
평	평가단장	관리이사	내부평가 총괄	
6	종합경영	사장 및 이사(4명)	종합경영지표 평가	
가	총 괄 반	기획실장, 내부평가부장 계량·비계량반장(4명)	이견조정, 평가과정의 문제점 에 대한 조정 등 평가총괄	
(29명)	계 량 반	평가단 POOL에서 임명(12명)	계량지표 평가	
	비계량반	평가단 POOL에서 임명(11명)	비계량지표 평가	

- 외부고객만족도 평가는 외부기관(생산성본부)결과 반영으로 평가결과 신뢰도 증대

다. 평가결과 보상시스템

(1) 실질적인 차등성과급이 이루어 지도록 차등지급율 지속 확대

□ 최근 3년간 성과급 차등폭 확대 추이



□ '00 평가결과 직급별 차등지급('01년 지급기준)

	분	키드 [®] 키크오	차등 지급액(천원)			
구	正	차등 지급율	최고	최저	차등액	
1	급	월 기본연봉의 192%	14,316(417%)	7,724(225%)	6,592	
2	☐ ☐	월 기본연봉의 192%	12,106(417%)	6,532(225%)	5,574	
3급	이하	월 기본급의 192%	4,970(417%)	2,681(225%)	2,289	

(2) 하위직의 성과급 차등방법 개선(`02년부터 적용)

□ 추진배경

- 차등폭 과다에(321%중 192%) 따른 직원간 위화감 조성
- 직원 의견조사결과 차등폭 개선 필요 : 50% 미만(46%), 50%~99%(27%)
 - 성과급 차등기준의 점수제 전환은 직원 62.5%가 찬성

□ 성과급 차등방법 개선

- 종전 : 평가등급에 의한 5등급 강제차등
- 개선 : 성과급 지급율 산정방식을 정부평가방식의 점수제로 전환하여 적정 수준의 차등폭 유지
 - 2000 평가점수의 시물레이션 결과 차등폭이 80%정도 수준으로 완화

□ 개선효과

○ 하위직은 차등폭 완화로 팀웍을 다지고, 상위직은 차등폭을 크게하여 내부경쟁 활성화 및 책임경영의식 고취

(3) 우수부서·직원 포상 및 표창(개선)

구분	해 당 부 서	포 상 내 용
우수처실 포상금 지급	ㅇ 본사군 / 지사군	▶ 포상금 100만원
0 , 45	1, 2, 3군 1위부서(최우수부팀)	▶ 포상금 104만원
우수부팀 포상금 지급	ㅇ 1, 2, 3군 2위부서(우수부팀)	▶ 포상금 60만원
	ㅇ 지사별 1위부팀	▶ 포상금 132만원
우수직원 포상	ㅇ 군별 1위부서 유공직원	▶ 사장표창 및 포상휴가 5일 (휴양소 이용권 부여)
우수직원 해외 연수 및 특별 승급(신규)	o 정부 비계량지표 A [∪] 이상 획득 유공직원	▶ 해외연수 및 특별 호봉 승급 (2명)

(4) 우수부서 및 하위부서 직원 인사고과 반영(지속)

인 사 고 과 가 점 부 여	인 사 고 과 감 점 부 여
군별 1위부서 전직원 : 인사고과 0.5점 가점	군별 최하위부서 전직원 : 인사고과 0.5점 감점
- 본 사 : 총무관리처 총무부	- 본 사 : 국영무역처 수산사업부
- 지 사 : 중부지사 관리부	- 지 사 : 충청지사 수출유통부
- 무역관 : 싱가폴 농업무역관	- 무역관 : 북경 농업무역관

(5) 내부평가제도와 타 경영관리제도와의 연계(개선)

7 E	내부평가와의 연계 내용
인사제도	- 군별 1위부서 및 최하위부서 전직원 인사고과 가감점(±0.5점) 시행 - 숭진후보자 서열명부에 최근 4개년 내부평가성적 반영 - 2년연속 최하위 부서장 인사위원회 부의 - 군별 1위부서장 이동 희망지 보직 가능
조직관리	- 업무특성에 따른 평가군 재분류 - 팀제 운영 및 조직개편에 따른 평가군 재분류
보수관리	- 경영성과 향상 유도를 위한 특별성과급 지급(4개부서) <자회사 민영화 완료한 민영화 추진반, 지방세 절감한(11.9억원) 센터 운영팀, 수익증대한(5천만원) 양곡수산부, 경비절감한(1.1억원) 박람회사업팀> - 평가결과는 성과급 차등지급 - 1·2급은 연봉제 성과급과 연계 반영
감사제도	 내부평가편람 및 평가결과 확정전 일상감사 실시 □ 평가제도의 투명성 및 평가결과의 공정성 확보 감사결과 모범사례는 평가점수에 가점부여 계량평가시 평가자료 검증
연구개발	- 연구실적 평가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
제안제도	- 제안심사결과를 평가점수에 가점부여
심사분석	- 경영목표달성 및 심사분석결과는 종합경영지표 평가시 반영
고객관리	- 내·외부 및 고객친절 점수를 평가점수에 반영
지식경영	- 지식마일리지 점수를 평가점수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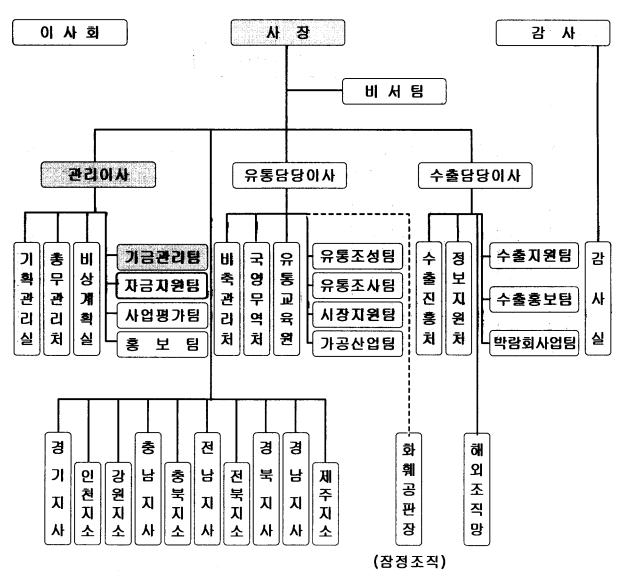
8. 기금관리조직의 직제와 기구도표, 조직규모

가. 기금관리위탁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 인원현황

직 제 별		인	원 현 황	(정원/현	원)	
역 세 별	1급	2급	3급	4 · 5급	6급	계
기금관리팀	_	1/1	2/2	3/1	1/1	7/5

□ 기 구 : 관리이사 직속의 독립기관



나. 정부비축사업실시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1) 직 제

□ 비축관리처 ○ 사업관리부 : 정부비축사업 총괄, 비축사업 회계·자금·시설관리

○ 보관판매부 : 정부비축물자 방출관리 및 보관·품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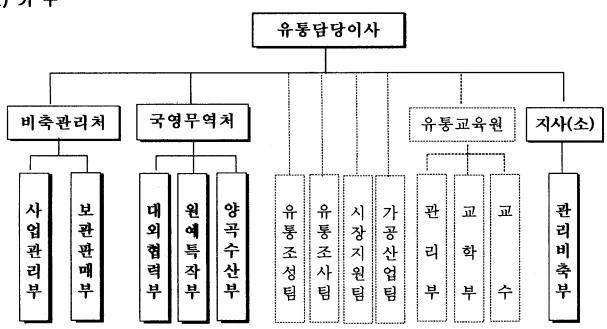
□ 국영무역처 ○ 대외협력부 :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및 통상협력·대북지원

○ 원예특작부 : 채소류, 특작류, 과실류의 수매·수입 및 수입권 공매

○ 양곡수산부 : 양곡류, 수산류 수매·수입 및 수입권 공매

□ 지사·소(관리비축부): 수매·수입·보관·판매 등 현장업무 수행

(2) 기구



(3) 인원현황

20 A) N		Ç	<u> 1</u> 원 현 황	(정원/현원)	
직 제 별	1급	2급	3音	4⋅5급	6급	계
비축관리처	1/1	2/2	5/5	9/8	2/2	19/18
국 영 무 역 처	1/1	3/3	8/6	9/11	1/1	22/22
지사(관리비축부)	5/5	11/11	12/12	46/44	28/26	102/98
계	7/7	16/16	25/23	64/63	31/29	143/138



사업운영

- 1. 기금운용계획 대비 집행실적 / 115
- 2. 주요사업별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 121
- 3.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 341

여 백

기금운용계획 대비 집행실적

여 백

지표명

2.1 기금운용계획 대비 집행실적

가 중 치

10%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790-8015)

명 가 내 용

○ 사업비의 최초 지출계획 대비 집행실적

평가내용

2.1.1 사업비의 최초 지출계획 대비 집행실적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1. 1999~2001년 기간 중 사업별 사업비의 최초 지출계획 대비 집행실적

가. 사업별 계획대비 집행실적의 차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사 업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정부가격안정사업	503,307	266,313	47.10	430,236	302,905	29.60	404,070	334,401	17.24
민간가격안정사업	508,276	573,957	12.92	645,331	590,271	8.53	719,337	824,047	14.56
산지및소비지유통개선	624,764	614,969	1.57	772,336	715,146	7.40	738,747	589,267	20.23
유통조성사업	115,268	178,394	54.76	171,639	221,427	29.01	183,339	221,738	20.94
기 타	120,295	114,041	5.20	111,458	192,213	72.45	134,507	154,939	15.19
총 사 업 비	1,872,000	1.747,674	6.64	2,131,000	2,021,962	5.12	2,180,000	2,124,392	2.55

[※] 비율(계획대비 집행실적의 차이) = (집행실적-최초계획)의 절대값/최초계획

나. 각 연도의 계획대비 집행실적의 차이(사업별 가중평균)

구 · 분	1990년도	2000년도	2001년도	4
사업별 가중평균 실적 비율	17.90	19.61	17.27	
가 중 치	0.2	0.3	0.5	·
가 중 비 율	3.58	5.88	8.64	18.10

2. 기금운용 계획서(최초 및 수정계획서 각 3부) : 별도제출

3. 사업별 지출계획 수정일자 및 사업비 수정금액

가. 1999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최초계획(A)	수정계획(B)	차 액(B-A)
정부가격안정사업	503,307	423,612	△79,785
민간가격안정사업	508,276	580,248	71,972
산지및소비지유통개선	624,764	622,138	△2,626
유통조성사업	115,268	178,584	63,316
기 타	120,295	119,418	△877
총 사 업 비	1,872,000	1,924,000	52,000
수 정 일 자	-	1999.9.17	

나. 2000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최초계획(A)	수정계획(B)	추가변정(C)	차 액(C-A)
정부가격안정사업	430,236	449,595	좌동	19,359
민간가격안정사업	645,331	605,825	좌동	△39,506
산지및소비지유통개선	772,336	807,752	763,471	△8,865
유통조성사업	171,639	222,525	좌동	50,886
기 타	111,458	154,303	198,584	87,126
총 사 업 비	2,131,000	2,240,000	2,240,000	109,000
수 정 일 자	_	2000.5.27	2000.12.13	-

※ 기타의 추가변경내역('00.12.13) : 재특차입금상환 계획금액 44,281백만원 증액

다. 2001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최초계획	최초계획(A) (분류조정)	수정계획(B)	추가변경(C)	차 액(C-A)
정부가격안정사업	404,070	404,070	404,070	388,270	△15,800
민간가격안정사업	719,337	880,810	1,078,050	1,062,792	181,982
산지및소비지유통개선	738,747	738,747	629,347	610,405	△128,342
유통조성사업	183,339	1 - 1	: :: - :	· .	
기 타	134,507	156,373	138,533	188,533	32,160
총 사 업 비	2,180,000	2,180,000	2,250,000	2,250,000	70,000
수 정 일 자			2001.5.15	2001.11.30	-

- ※ 유통조성사업은 2001년 수정운용계획부터 민간가격안정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통합지원됨
- 최초계획(분류조정)은 수정계획시 조정된 사업분류기준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유통조성사업중 우수농수 산물지원은 민간가격안정으로, 조사연구홍보및교육훈련은 기타(사업조성)로 조정
- ※ 민간가격안정사업의 주요 계획수정 내역('01.5.15) : 채소수급안정사업 88,000백만원, 과실수급안정(신규) 80,000백만원 증액
- ※ 산지및소비지유통개선사업의 수정내역('01.5.15): 생산자조직유통활성화자금 100,000백만원 감액

4. 1999~2001년 결산보고서(각 3부) : 별도제출

2

주요 사업별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 (1) 정부가격안정사업 / 123
- (2) 가공용수매지원사업 / 165
- (3) 채소수급안정사업 / 187
- (4) 과실수급안정사업 / 221
- (5)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 / 245
- (6) 생산자조직육성지원사업 / 263
- (7) 소비자유룡개선사업 / 293
- (8) 종자수급사업 / 321

여 백

(1) 정부가격안정사업

I. 사업현황125
 사업개요 / 2. 사업여건 / 3. 사업정책방향 2000까지 주요실적 / 5. 2001 주요실적 요약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130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 131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33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142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143 2.3.2 사업별 운영성과153

사업자금총괄기관	농림부 유	유통정책과(悉500-1825)	
사 업 실 시 기 관		사 -3594) 국영무역처(☎796-4043)	

여 백

I. 사 업 현 황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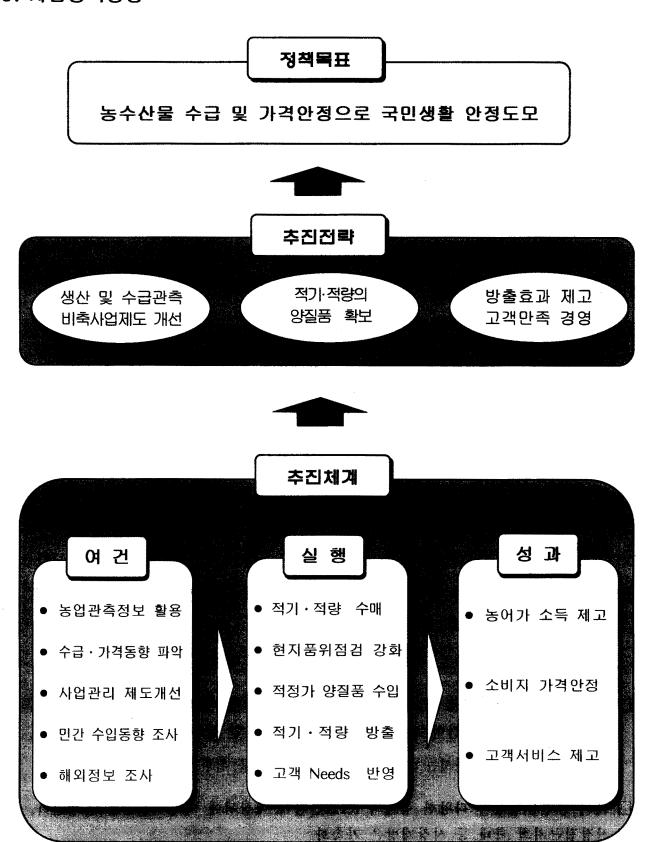
□ 사업목적

- 저장성이 있는 농수산물을 성 출하기에 수매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는 한편, 수급상 부족 농 산물은 수입비축후 가격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 저장성이 없는 무, 배추 등 채소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 판매 · 수출·기증·폐기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 □ 사업구분 : 수매비축사업, 수입비축사업, 출하조절사업
- □ 대상품목 (품목별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양념류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특작류 (참깨, 땅콩) 두 류 (대두, 팥)
 - 과실류 (사과, 배, 감귤) 채소류 (무, 배추) 수산물류(김,간미역,오징어,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조기, 냉동갈치 등)
- □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농산과,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 □ 사업실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업여건

- □ 수메를 통한 가격지지 등 정부주도의 수급조절정책에서 생산자조직 자율 참여에의한 수급안정정책으로 전환
 - 수급이 불안정한 양념류·과실류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 필요
- □ 농산물시장 개방확대로 국내농산물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작목 위주로 생산이 집중되어 수급 및 가격불안 심화
 - 생산과잉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가공 등 시장격리를 위한 처분대책 강구
- □ 차기 농산물협상과 다양한 형태의 FTA진전이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 관세인하, 시장접근기회 확대 등 시장개방은 가속화
 - 농업보호를 위해 국영무역을 통한 정책적 수입관리 필요성은 더욱 증대

3. 사업정책방향



4. 2000까지 주요실적

가. 시장접근물량의 효율적인 관리

- 품목별·용도별 수요조사를 통한 시장접근물량 관리(1999)
-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제도 홍보 및 추천업무 전산화 실시
- 연차별 품목별 수입권 공매제도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1999)
- 2004년 까지의 참깨. 생강. 메밀. 땅콩 등 4개품목의 수입권공매 실행계획
- 소비자보호를 위한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대책 마련(2000)
-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 대비 Non-GM콩 사전확보로 국민 식품안전성 우려해소
- 국영무역품목 수입개방 영향분석 및 중국산 저가 농산물 수입관리대책 마련(2000)
- 국영무역 수입관리상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책 마련과 차기협상에 대비

나. 정부비축사업 제도개선 실시

- 수입관리 및 수입추천제도 개선을 통한 국영무역의 효율화 추진(2000)
- 수입관리 투명성. 제고 및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수입추천제도 개선
- 소비자의 고품질 요구와 국제무역 관례에 부응한 수입입찰제도 개선(2000)
- 양질품 도입을 위한 구매규격 및 외자 구매입찰제 개선 등
- 비축 농수산물 방출 및 수입관리제도 개선(1999, 2000)
- 공매업체 정비, 수입규격 강화, 해외모니터 운영 등

다. 고객만족 경영관리 노력

- 고객설문조사 실시 및 고객의 Needs 반영하여 서비스개선(2000)
- 서류심사 등 등록절차 간소화, 고객보상제 실시 및 포장재, 포장단위 개선 등
- 정부비축사업 고객서비스 평가 : (1999) 71.7점 → (2000) 75.1 (4.7% 향상)

5. 2001 주요실적 요약

가. 수매사업 효율화를 통한 성출하기 산지가격 지지로 농가 소득제고

- 재배면적 증가로 과잉 생산되어 출하기 가격이 하락한 마늘·양파는 조기 수매착수로 농가희망전량 수매하여 농가소득 지지 (마늘 16.046톤. 조생양파 10.412톤)
- ☞ 마늘 : (수매전) 1,100원/kg → (수매후) 1,525 (39% ↑)
- ☞ 양파: (") 170원/kg → (") 185 (9% ↑)
- 오렌지 등 수입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과일류는 수매즉시 가공 및 대북지원
- ☞ 배 : (수매전) 12,000원/15kg → (수매후) 20,000 (67% ↑)
- ☞ 감귤: (") 8,000원/15kg → (") 9,500 (19% ↑)
- 두류는 파종기 수매가격 예시로 생산유도를 통한 국산콩 자급율 제고
- ☞ 콩 수매규격을 세분화하여 품질 향상유도 : 중·소립종 → 대·중·소립종
- ☞ 콩나물콩을 최초로 구분 수매 : 2,000톤

나. 국영무역품목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철저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국내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 양념류는 도입물량 축소 및 단경기 수입
- 고추 : 계획량 4,827톤중 44%(2,100톤) 수입
- 양파 : " 17.816톤중 4%(640톤) 수입
- 마늘 : 국내 단경기에 12,533톤 수입('O1. 11~12월)으로 농가피해 최소화
- 국내 수급상 절대 부족품목인 콩, 참깨 등은 시장접근물량 증량 수입
- 콩 : (기본 C/S량) 150,450톤 → 178,044
- 참깨 : (") 6,731톤 → 57,377

다. 가격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출관리

- 양념류와 과실류는 공급과잉이 예상되어 수출 등을 통하여 국내시장과 격리함으로서 안정적인 수급균형 유지
- 마늘은 수출(11,483톤) 및 건조가공(3,000) 등을 통하여 14,483톤을 시장격리
- ☞ 안정적인 가격유지 : (8월) 1,745원/kg → (11월) 1,831
- 양파는 수출(1,106톤) 및 건조가공(9,466) 등을 통하여 10,572톤을 시장격리
- ☞ 안정적인 가격유지 : (8월) 373원/kg → (11월) 358
- 사과·배·감귤은 수출(560톤), 가공용판매(6,130), 대북지원(10,734), 복지법인기증 등 (43)을 통하여 17,467톤 시장격리
- ☞ 농가 소득지지(격리전·후 비교): (사과) 25천원/15kg → 30, (배) 31 → 38
- 수급상 절대부족한 특작류 및 두류는 상시 적정재고 유지 및 연중 안정적 방출
- 3개월 수준의 소비물량을 재고물량으로 지속유지 (대두 50천톤, 참깨 12, 팥 5)

라. 비축사업 고객서비스 제공 노력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정부 및 자체 고객서비스 조사결과 고객만족도 대폭 향상
- 공사 자체 설문조사결과 고객만족도 12% 향상 : (00) 75점 → (01) 84
- 정부의 직배업체 고객만족 평가결과 17% 향상 : ('00) 58점 → ('01) 68
- 간담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고객 Needs 수렴 및 반영
- 입찰절차 및 보증금 환불제도 개선으로 공사방문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
- 참깨는 "희망산지", 콩은 "희망품위"에 따라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업체편의 제고
- 판매계획의 인터넷 게시로 고객의 정보접근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
- 판매관련 민원사례 D/B관리로 고객 불만 및 애로 선행관리체계 확보 등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표명 2.2 사업선정 및 내용의 적정성 가중치 40%

평 가...... 비용

2.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ㅇ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o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ㅇ 사업활동과 사업목적의 연계성
- o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o 융자/보증 대상 선정기준 및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ㅇ 융자/보증 조건 산정의 합리성

평가내용

2.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신규사업 추가여부 및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

□ 신규사업추가 : 해당사항 없음

2. 유사사업 수행 예산, 타 기금 또는 타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목록

	구 분	쌀 정부수매	한우 정부수매
0	목 적	쌀 가격지지 및 수급조절	한우 사육기반 유지 및 가격안정
0	관리운용주체	정 부	농림부 (농협중앙회 위탁관리)
Þ	예산・기금명	ㅇ 양곡관리특별회계	ㅇ 축산발전기금(공공기금)
D	설치근거	ㅇ 기업예산회계법 제 3조	ㅇ 축산법 제 35조

3. 본 사업의 차별성과 상대적 우위에 대한 논거

- 정부수매를 통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사업기능 및 활동 상으로는 유사성이 있으나,
- 사업별 소요재원은 WTO 의 감축대상보조(쌀)와 최소허용보조(보조규모가 총생산액의 10% 이 내일 경우 감축대상에서 제외, De-minis) 규정에 의거 엄격히 차별화하여 투입되고 있음
- 본 기금에서는 양념류(고추·마늘 등), 특작류(참깨 · 땅콩), 두류(콩·팥) 및 수산부류를 담당하고 있음

4.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기금설치 목적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개선 촉진



가격안정사업 목표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국민생활 안정



사업 내용

수매비축사업

농산물 성출하기 수매 실시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수매비축품 은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인 방출로 소비자 가격안정 도모

수입비축사업

WTO 협상결과에 따른 국영무역품목의 시장 접근물량을 효율적으 로 수입관리하여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수급안정 도모

출하조절사업

저장성이 없는 무, 배추 등 채소류를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 판매·수출·기증·폐기하여 채소류 수급및 가격안정 도모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 활동과 사업 목적의 연계성

가. 사업목적

- O 저장성이 있는 농수산물을 성출하기에 수매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는 한편, 부족농수산물은 수입비축 후 가격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 저장성이 없는 무, 배추 등 채소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 판매·수출· 기증·폐기함으로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나. 사업선정의 정책적 타당성

○ 농수산물은 생산의 계절과, 수급불안정성 등의 특성이 있어 사전적 농업관측을 통한 생산 및 출하조절과 병행하여 사후조정 수단으로써의 수매비축사업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수매비축사업의 필요성】

子是	个 音	가 격	정책수단	直斗
성출하기	공급과잉	하 락	수 매	가격지지 (생산자보호)
단경기	공급부족	상 숭	방 출	가격안정 (소비자 가계안정)

○ WTO 농산물 협상결과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로 전환하여 수입을 개방함에 따라 농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낮아지고 농업부문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농업보호를 위한 정책수단 강구

【UR농업협상의 관세인하분야 주요 합의사항】

주 요 항 목	वे भ भ क
. 11 7 11 7 21	ㅇ 모든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 비관세 조치	○ 기준연도('86-'88) 평균 국내외가격차를 이용한 관세상당치 계산후 전품목 관세양허
▷ 관세 인하	○ 모든 농산물 평균감축률 : (선진국) 36%, (개도국) 24
V 선세 인야	o 개별 농산물 최소감축률 : 15%, 10
▷ 시장접근량 보장	ㅇ 최소시장접근 : 기준연도 평균소비량의 3%부터 5%까지 매년 균등증량
	ㅇ 현행시장접근 : 기준연도의 현행 시장접근량 보장 및 확대유지

- UR에서 합의된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감축의무 면제조항을 최대한 활용한 가격 안정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국내농업 보호
- 특정품목의 지원이 해당품목 총생산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품목 특정적 보조

다. 사업활동과의 연계성

(1) 국내 수급 및 가격여건을 감안한 탄력적 수메로 산지가격 지지

□ 수행환경 및 대응조치

- 마늘, 양파 등 양념류 과잉생산 및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 증가로 국내산 과실류 가격하락
-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해 품목 수매사업비에 신규 또는 확대 반영하여 과잉 생산 및 가격하락 농산물 적극적으로 수매실시

□ 사업활동

【농수산물 수매실적】 ('99) 6,195톤 → ('00) 25,521 → ('01) 54,145(전년대비 112% ↑)

(단위 : 톤, 백만원)

בר זכ	2001		2000		1999	
품 목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54,145	52,290	25,521	34,350	6,195	10,206
양념류	26,458	24,511	16,722	22,329	_	
과실류	17,510	11,090	4,415	3,851	1,885	2,647
특작류	424	953	271	557	1,277	2,274
두류등	9,753	15,736	4,113	7,613	3,033	5,285
수산물류	18,988	38,309	18,188	41,522	24,090	45,978

- 출하기가격이 하락한 마늘, 양파는 조기수매를 착수하여 농가희망량 전량 수매
 -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산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형성되어 기금운용계획을 수 정하여 수매실시 (마늘 16,046톤, 양파 10,412)
- 적정량으로 생산된 고추는 수확기 산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상으로 형성되어 수매계
 획 전면취소(최저보장가 : 2,200원/600g, 산지가격 : (10월) 3.898 → (11) 3.703)
- 과실류는 산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되어 시세를 감안하여 수매실시
 - 오렌지 등 수입증가로 출하기가격이 하락한 감귤은 신규로 수매계획 반영(20천톤, 39억원)하여 농가희망량 전량 수매('01:6,309톤, '02:1,864)
- 콩, 땅콩 등 두류 및 특작류의 수매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 및 자급율 제고 유도

□ 사업목적과의 부합논거

ㅇ 품목별 생산 및 가격동향에 따른 농수산물 수매의 탄력적 대응으로 산지가격 지지

(2) 시장접근물량의 탄력적 관리로 국내 수급안정 및 농가피해 최소화

□ 수행환경 및 대응조치

- 마늘·양파 등 양념류는 생산과잉 및 가격하락 등 국내상황을 감안하여 단경기 수입 및 도입물량 축소
- 국내 수급상 절대 부족한 대두, 팥, 참깨 등 양곡·특작류는 상시 비축량 유지 및 시중가격과 국내 가공용수요 등을 감안 수입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

□ 사업활동

【농산물 수입실적】 ('99) 299천톤 → ('00) 343 → ('01) 272 (전년대비 21% ↓)

(단위 : 톤, 백만원)

м п	2001		2000		1999	
품목	물 량	금 엑	물 량	급 액	물 량	금 액
계	272,093	97,704	342,524	119,944	298,609	110,417
양념류	16,065	11,894	9,152	10,415	18,853	13,779
특작류	59,284	34,941	58,500	42,488	51,345	42,947
두류둥	196,744	50,869	274,872	67,041	228,411	53,691

- 국내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 양념류는 도입물량 축소 및 단경기 수입
 - 고 추 : 생산량은 적정하나, 소비둔화로 인한 산지가격의 약세 지속에 따라 계획량 4,827톤중 44%(2,100톤) 도입
 - 마 늘 : 과잉생산에 따라 산지가격이 하락하여 단경기(11~12월)에 12,533톤 수입
 - 양 파 : 과잉생산 및 소비둔화로 계획량 17,816톤중 4%(640톤) 수입
- 국내 수급상 절대 부족품목인 콩. 참깨 등은 시장접근물량 증량 수입
 - 콩 : (기본 C/S량) 150,450톤 → 178,044
 - 참깨:(") 6,731톤 → 57,377

□ 사업목적과의 부합논거

○ 부족농산물 적기 수입 및 WTO협정 이행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농가 피해 최소화

(3) 효율적 방출관리로 소비지 가격안정

□ 수행환경 및 대응조치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수급 및 가격의 변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비축농수산물을 국내 수급 및 가격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
- 공급과잉 품목은 최대한 수출 및 가공 등을 통하여 국내시장과 격리

□ 사업활동

- 마늘, 양파 등 양념류는 생산 및 공급과잉이 예상되어 국내시장과 격리함으로써 안정 적인 수급균형 유지
- 마늘은 수급판단결과 15천톤 정도 공급과잉이 예상되어 수출(11,483톤) 및 건조가공 (3.000톤) 실시 ☞ 안정적인 가격유지: (8월) 1,745원/kg → (11월) 1,831
- 양파는 수급판단결과 156천톤 생산과잉이 예상되어 조생종 양파 수출(1,106톤) 및 건조 가공(9,466톤) 실시 ☞ 안정적인 가격유지 : (8월) 373원/kg → (11월) 358
- 고추는 공급과 소비가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어 시장상황에 맡겨두어 가격안정실시 (연중 4,565~5,260원/kg)
- 사과, 배, 감귤 등 과실류는 생산과잉 및 외국산 과일수입 증가 등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수출, 가공용 판매 및 대북지원 등의 방법으로 시장격리

- 시장격리 : 17,467톤

수 🏕	대북자원	가공용 판매	복지법인 기중 등
560	10,734	6,130	43

- 수급상 절대 부족한 특작류 및 두류는 상시 적정 재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연중 안정적으로 방출
- 3개월 수준의 소비물량을 재고물량으로 지속유지 (대두 50천톤, 참깨 12, 팥 5)
- GM농산물 표시제시행('01.3)에 대비 수요자가 원하는 Non-GM콩 차질 없이 공급

□ 사업목적과의 부합논거

○ 품목별 과잉 생산물량의 수출, 가공용판매 등 효율적으로 처분하고, 부족 농산물은 연중 안정적 방출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2.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가. 수매비축사업

- 성출하기에 수매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함으로써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매 비축물량은 시장가격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소비자가격안정 도모
- 비축용 농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률 제 13조, 2항)
 - 수매는 전국 산지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농·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대행하여 수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농가 수매물량 배정 및 수매, 수매대금 지급, 수매품 인도 등)
 - ※ 수매품 검사는 정부검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수행

나. 수입비축사업(시장접근물량의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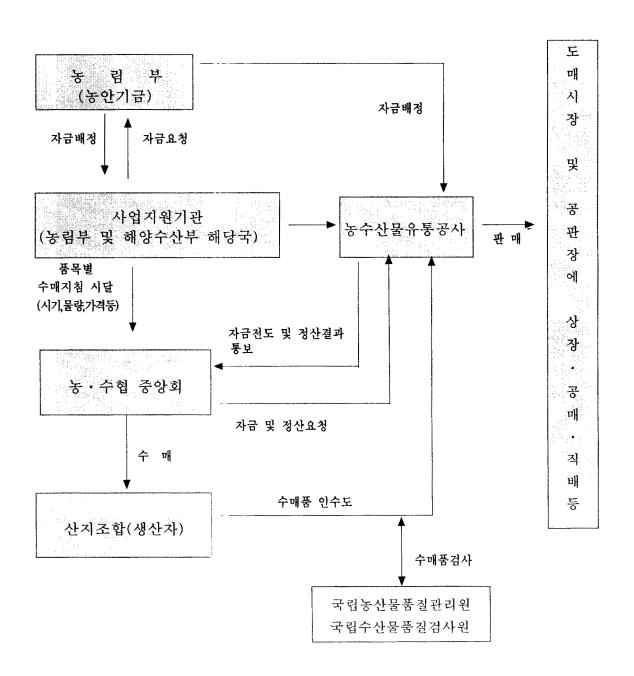
- O WTO 협상결과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은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을 보장함에 따라 국내수급 및 가격과 연계한 효율적으로 관리
- 시장접근물량의 운용에 있어서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상의 품목별 시장접근물량을 대상으로 운용하되, 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수급상 절대 부족하여 증량이 불가피한 품목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거쳐 시장접근물량의 증량을 결정하여 운용
- 사업대상자는 WTO협정상의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므로 "구매활동상의 무차별원칙" 과 "상업적 조건 준수의원칙"등에 의거한 불특정 다수의 국가로 하고 있음
 - 국영무역기업의 수출입과 관련된 구매 및 구매활동에서 무차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타 회원국의 기업에 대하여 통상적인 상관습에 따라서 구매 또는 판매에 경쟁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

- 국영무역기업이 GATT협정의 타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격, 품질, 수량, 시장성, 수 송 및 기타 매매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구매 또는 판매를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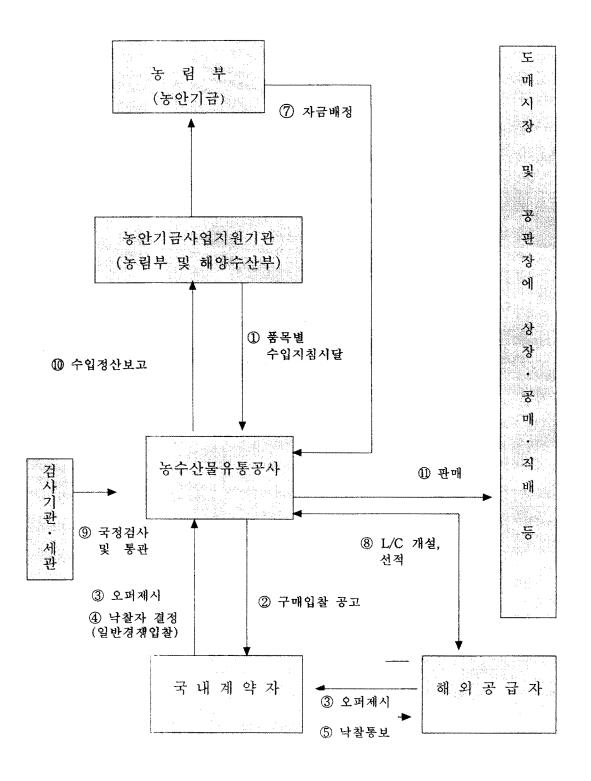
다. 비축농수산물 방출(국내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농수산물 판매)

- 출하기 가격지지를 위해 수매비축한 농산물과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여 비축한 물량을 국내 수급 및 가격 동향에 따라 시중에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가격안정 도모
- 판매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 공 매 : 농수산물 도 · 소매상 및 실수요업체 대상
 - · 희망수량에 대한 단가입찰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자중 최고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당일 판매 한도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대상자(낙찰자)로 함
 - · 전형적인 판매방법으로 전국적인 판매망 운용이 가능하여 신속하게 가격안정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상 장 : 상장판매약정을 체결한 법정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 대상자 선정은 공매방법과 동일
 - 가격안정용 물량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판매하여 분산하기에 용이함
- 직 배 : 농수산물 대량실수요업체, 실수요 공공기관 및 공익단체 등
 - · 해당 품목의 수급상황, 가격동향, 재고량, 공매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기·물량·대 상자를 결정하여 시달하며, 공매·상장 평균가격으로 공급
 - · 실수요자에게 직공급 함으로써 시중가격 또는 산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면 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직 판 : 일반소비자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사 및 지소 조직을 통하여 대면 판매

【수매비축사업 추진체계】



【수입비축사업 추진체계】



3. 융자/보증 조건 선정기준의 논거

□ **융자/보증 조건** : 정부에서 직접 수매·판매로 해당사항 없음

4. 융자/보증 조건 산정절차

□ **융자/보증 조건 산정 절차** : 정부에서 직접 수매·판매로 해당사항 없음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지표명 2.3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u>가 중 지</u> 40%

평 가 내 용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ㅇ 사업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노력
- ㅇ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 ㅇ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ㅇ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조정

2.3.2 사업별 운영성과

- o 목표설정의 합리성
- o 사업별 목표달성 정도
- ㅇ 사업운영 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및 전년대비 개선 실적
- ㅇ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 정도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1. 사업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노력

가. 사업운영상 문제점

- '98년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비축사업 수행조직과 인원의 대폭적인 감축운영
- 농산물 수매사업시 수매시기, 수매규격, 수매가격 등 문제점에 대한 해소책 마련필요

나. 개선노력

□ 인력은 정예화하고 사업조직은 효율석으로 운영

- ('00) 1처(4부), 5지사·5지소(148명) → ('01) 2처(5부), 5지사·5지소(143명)
- 사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구축
 - 본사의 수행조직을 기존의 수매, 수입, 판매 등 기능별에서 업무효율과 농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품목별 전담체제로 조직운영

□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두 수매사업 평가회를 통한 수매제도개선 추진

-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산지(제주, 전남)농협 등 참가
- 토론 및 주제발표 : 효율적 수매추진방안, 고품질 유지 및 시장성 제고방안 등
- 수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구 분	문제점	개선과제
수매시기	농관원 추곡수매검사로 콩 검사 지연	성출하기에 수매
수매규격	1	고품질 생산 유도를 위해 규격을 강화하되,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저급품은 낮은 가격에 수매
	시중유통품 가격에 비해 저가	품위규격 상향에 따른 수매가 현실화
정책방향	수매가격이 낮아 증산유도 효과 적음	시중유통가격 수준의 수매가 현실화 등외품은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양질품 생산유도

○ 추진성과 : 수매사업시 발생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모색을 통해 발전방안 마련

2.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가. 평가목적

○ 양질의 농산물 확보 및 적기도입, 고객서비스 제고 등 정부비축사업의 다양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하여 정부비축사업 활성화 도모

나. 평가절차

- 평가지침 시달 및 평가 : 농림부(유통정책과)
- 사업별평가(농림부·해양수산부 사업지원기관) 및 종합평가(유통정책과)로 실시
- 사업실적 제출 :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사업부서)

다. 평가지표 및 선정사유

为五角 。	对证 社省林帝	"一",身外的身体。
▷ 양질 농산물 확보 율	도입 농산물 규격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식품안전성 제고	합격항목수/총 검사항목수 (목 표 : 최근 3개년 최고치)
> 농산물 적기도입율	적기에 농산물을 확보하여 수급차질을 억제하고 가격안정 도모	도착지연모선수/총 도입모선수 (목 표 : 최근 3개년 최저치)
▷ 보관감량 발생율	이 비축농산물 보관과정중 부패, 변질 등사고예방 및 입고품위 유지	보관감량 발생량/년간 입고량 (목 표 : 최근 3개년 최저치)
▷ 정부비축사업 제도 개선 노력 및 성과	 전년 지적사항, 시장접근물량의 효율 적관리, 농가피해 최소화와 가격안정 도모 등 사업발전 노력을 평가하여 사업목적 유도 및 사업활성화 도모 	
▷ 농수산물 가격안정 사업의 효율적추진	정부가 실시하는 투자기관 평가 및기금운용실적 평가 관련 지표를 포함	정부투자기관 평가내용 적용
▷ 가격안정기여도	시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평가간	
▷ 사업운영 적정성, 사업목적 달성도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업성과 제고	기금운용평가단 평가내용 감안

3.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지적사항	조치 및 개선 실적
□ 마늘·고추 등 가격진폭이 큰 품목에 대한 체계적이	▶ 한·중마늘교역 합의결과에 따른 T/Q 미소진물량 10,300톤 수입 및 제3국 수출완료로 국제분쟁 예방
고 집중적인 관리로 국제 분쟁 없이 국내시장 안정 도모 필요	
·	▶ 고추·양파·마늘 등은 국내수급 감안 도입물량 축소및 단경기 수입 등 효율적인 수입방안 강구
	 고추: 계획 4,827톤중 44%(2,100톤)만 수입 양파: 계획 17,816톤중 4%(640톤)만 수입 마늘: 한·중 마늘협상결과에 따라 MMA 전량을 성출하기를 피해 수입하여 국내영향 최소화 및 정부간 합의사항 이행 완료
	▼국내 과잉 생산으로 출하기가격이 하락한 마늘・양파 등은 조기수매로 산지가격 상승
□ 고객과 접점에 있는 종사 직원의 참여식 방식으로 교육 전환	 마늘: 16,046톤 수매 ('01. 6.1~8.10) (수매전) 1,100원/kg → (수매후) 1,525원/kg, 양파: 10,412톤 수매 ('01. 4.1~5.31) (수매전) 170원/kg → (수매후) 185원/kg 실무능력 배양과 고객서비스 향상교육실시('01. 11) 기존의 강의식 실무교육에서 분임토의, 종합토론, 사례발표 등 참여식 교육 병행 (본·지사 직원 60명) 교육결과 각 지사(소)의 발표내용 중 7개의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조치
	ㅇ 마늘 장기보관기법, 전자상거래 세부추진방안 등

지적사항	本对 实 "孙孙仙者" ()" " " " " " " " " " " " " " " " " " " "
	 ▶ 비축창고 시설(냉동·전기) 업무 외부위탁 관리 ○ '99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축창고 냉동·전 기설비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
	▶ 외부위탁 성과 : 3개년 동안 1,149백만원 절감 ○ 아웃소싱을 통하여 1차년도 347백만원, 2차년도 382, 3차년도 420 절감효과 거양
이 더욱더 필요함	 ▶ 전년대비 고객만족도 대폭 향상 ○ 정부의 고객만족 평가 : ('00) 58점 → ('01) 68 ○ 자체 설문조사 결과 : ('00) 75점 → ('01) 84
	▶ 주요 추진내용
	ㅇ 현장 간담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고객 Needs 수렴 및 반영
	○ 비축물자 판매계획 인터넷(공사 홈페이지)게시로 고 객의 정보접근 신속성·투명성 제고
	○ 비축물자 방출관련 민원사례 D/B화 관리로 고객 불 만・애로 선행관리체계 확보
	○ "참깨는 희망산지", "콩은 희망품위"별로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구매업체 편의제공

4. 사업운영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효과

- 양질의 농산물 확보 및 적기도입, 고객서비스 제고 등 정부비축사업의 다양한 사업추진 노력을 평가하여 보상함으로써 종사직원의 동기유발 창출 및 정부비축사업 활성화 도모
-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용평가단」에 의한 기금운용 평가지표 내용 을 반영하여 기금운용평가와 최대한 연계함으로써 농안기금 사업의 성과제고

- 5. 부실채권 관리체계 설명 및 합리성에 대한 논거
- □ 부실채권 관리체계
 - 직접 사업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 6. 과거 3년의 부실채권 규모, 비율 및 회수실적의 추이
- □ 부실채권 규모
 - 직접 사업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및 조치 노력

가. 품목별 사업추진 여건

- 마늘・양파 등 양념류 및 사과・배・감귤 등 과실류는 생산과잉 및 외국산과일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출하기가격이 하락되어 적기에 농가희망량을 수매하여 국내시장 격 리를 통한 수급 및 가격조절 필요
- 국영무역품목중 국내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 고추·마늘·양파 등은 도입물량 축소 또는 단경기 수입을 통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콩·참깨 등 국내 수급상 부 족 농산물은 시장접근물량을 증량 수입하여 국내 수급부족 해소

나. 대응 및 조치노력

(1) 수매사업 효율화를 통한 성출하기 산지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지지

	마늘	<u>.</u>	양	파는	: 3	크기	수메착수로	きプ	}희·	강량	수	-메(마	늘 16	,046톤,	조생	양파	10,412)
0	마	늘	:	(수	- 메 ?	전)	1,100원/kg	→	(수	매후	.)	1,525	(39%	(1			
0	양	파	:	(")	170원/kg	\rightarrow	(#)	185	(9%	(†)			
_	-111	71		=	 1	റി ല	나 스레즈기	ור ו	77. r	2) ri	11	-7) O)					

□ 배·감귤 등 과일류는 수매즉시 가공 및 대북지원

```
    ○ 배 : (수매전) 12,000원/15kg → (수매후) 20,000 (67% ↑)
    ○ 감 귤 : ( " ) 8,000원/15kg → ( " ) 9,500 (19% ↑)
```

- □ 두류는 파종기 수매가격 예시로 생산유도를 통한 국산콩 자급율 제고
 - 콩 수매규격을 세분화하여 품질 향상유도 : 중・소립종 → 대・중・소립종
 - 콩나물콩을 최초로 구분 수매 : 2,000톤
- (2) 시장접근물량의 국내수급과 연계관리로 농가피해 최소화 및 가격안정 도모

- □ 고추, 양파는 일부물량 도입유보
 - 고추는 계획량 4,827톤중 44%(2,100톤), 양파는 계획량 17,816톤중 4%(640톤) 수입
- □ 마늘은 한·중 마늘협상 결과에 따라 MMA물량 전량을 국내농가 성출하기를 피해 수입하여 국내영향 최소화 및 정부간 합의사항 이행 완료
- □ 두류 및 특작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 수입으로 공급부족 해소
 - 콩 : (기본 C/S량) 150,450톤 → 178,044, 참깨 : 6,731톤 → 57,377

(3) 가격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출관리

- □ 양념류는 국내시장과 격리함으로서 안정적 수급균형 유지
 - 마늘은 수급판단 결과 15천톤 정도 공급과잉이 예상되어 수출(11,483톤) 및 건조가공
 (3,000톤) 실시 ☞ 안정적인 가격유지 : (8월) 1,745원/kg → (11월) 1,831
 - 양파는 수급판단결과 156천톤 생산과잉이 예상되어 조생종 양파 수출 (1,106톤) 및 건조가공(9,466톤) 실시
 ☞ 안정적인 가격유지 : (8월) 373원/kg → (11월) 358
 - 고추는 공급과 소비가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어 시장상황에 맡겨두어 가격안정실 시 (연중 4,565~5,260원/kg)
- □ 과실류는 수출, 가공용 판매 및 대북지원 등의 방법으로 시장격리
 - 시장격리 내역

계	수출	대북지원	가공용 판매	복지법인기중등
17,467톤	560	10,734	6,130	43

☞ 과실류 장기보유 농가에 대한 소득지지 효과

- 사과 : (격리전) 24,640 ~ 24,963원/15kg → (격리후) 29,442 ~ 29,846

- 배 : 30,463 ~ 32,340원/15kg →

35,808 ~ 41,654

□ 수급상 절대 부족한 특작류·두류는 상시 적정재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연중 안정적으로 방출

(4) 비축사업 미래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비축물자 전자상거래 System 구축·운영

□ 추진배경

- 정부비축물자 판매업무를 인터넷 전자상거래(e-Business) 환경으로 변화시켜
- 정부비축사업의 저비용·고효율을 도모하고 판매입찰 공정성·투명성·정확성을 제고 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업무처리로 대 고객서비스 향상

□ 추진경과

- 비축물자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00.12)
- 비축물자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및 운영방안 수립 ('01.4)
- 비축물자 전자상거래 구축·운영 기본계획(안) 수립 ('01.7)
- 정보통신 및 보안 관련 7개업체와 운영방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01.6)
- □ 운영체계 : 인터넷상에서 비축물자의 판매입찰, 대금결제, 출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① 판매내용 및 견본은 화상으로 처리하여 "사이버몰"에 공고
 - 산지, 모선 구분 및 수분, 색택, 규격 등 품위상태 기재
 - ② 입찰은 장소에 제한 없이 PC를 이용하여 전자입찰
 - 고객의 "등록번호", "비밀번호", "희망물량", "희망단가" 입력
 - ③ 입찰내역 자동집계 및 "사이버몰"에 낙찰자 게시
 - 입찰조서 및 낙찰자 결정 등은 전자결재를 통해 처리
 - ④ 인터넷망을 이용한 금융거래 및 입금확인 자동검색
 - 사이버뱅킹, 폰뱅킹을 통해 공사 지정계좌에 입금처리
 - ⑤ "사이버몰"에서 출고내역 확인 후 출고
 - 출고일, 인수자, 품목, 수량 등 확인출고 및 인수증 상호확인
- □ 가동시기 : 공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2003. 3월 가동예정
 - 비축물자 전자상거래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 개발 (2002)

마늘 재배면적 예측모형 개발

□ 개발배경 : 타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수급모형은 지나치게 난해하고, 예측정확성이 결여되어 정부의 수급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수급예측 및 판매관리에 활용

□ 추진경과

○ 2001. 9월까지 : 타 기관의 수급예측모형 개발사례 수집·분석

○ 2001. 10~12월 : 마늘재배면적 예측모형 개발(11월) 및 검증 실시(12월)

□ 예측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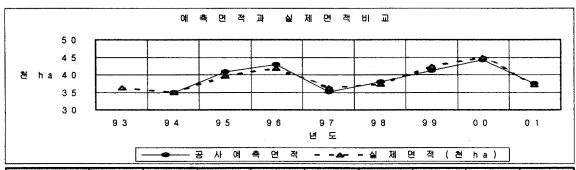
N년도 재배면적 = 기본면적 + [(N-2 년 가격 - 기본가격) × 가격탄성치]

○ 기 본 면 적 : 39,334ha ('94~'01까지 평균 재배면적)

○ 기 본 가 격 : 2,107원/kg ('92~'99까지 평균 가격)

ㅇ 가격 탄성치 : 4.64 (가격변화에 대한 재배면적의 변화)

□ 모형검증 결과 ☞ 평균오차 1.9%정도로 예측모형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



子 是	평균	'94	'95	'96	'97	'98	'99	'00	'01
실제면적(ha)	-	34,959	39,636	41,973	36,262	37,337	42,416	44,941	37,118
예측면적(ha)	-	34,995	40,902	42,786	35,097	37,863	41,180	44,359	37,478
오 차 율(%)	1.9	0.1	3.2	1.9	3.3	1.4	2.9	1.3	1.0

□ 연구결과 전문지 계재(농어먼신문 및 농정신문(1월 24억), 농면신문 (1월 25억))

마늘 재배면적 예측 더 정확해진다

유통공사 모형 개발

마늘 재배면적을 간단한 산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 개 발됐다. 농수산물유통공시는 16 일 마늘 재배면적 중감이 전년도 의 가격에 따라 주산지를 중심으 로 이뤄지는 점에 확안해 재배면

편집 신태관 / 교정 유호심

최 에축모형을 개발했다고 발표 했다. 유통공사가 개발한 예측모 형에 따르면 특정연도의 마늘 제 배면적은 예측 당시까지의 평균 재배면적에다 2년 전 가격과 현 재까지의 평균가격과의 차이에 가격탄성치를 꼽한 값을 더해 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모형으로 2001년도 마늘 재배면적을 구한 결과, 3만 7,478ha로 실제 재배면적 3만 7,118ha와 1%의 오차물을 나타 냈다고 유통공사는 밝혔다. 또 1994~2001년 8년 동안의 실제 마늘 재배면적과 예측모형에 따라 구한 예측면적을 비교한 결과, 오차율이 1.9%에 불과하다 고 덧붙였다.

유통공사는 이 예측모형으로 올해 마늘 재배면적을 3만7,148ha 로, 2003년 재배면적을 3만8,401ha 로 예측했다. 〈최상구〉

sgchoi@nongmin.com

국영무역사업 미래발전 연구

□ WTO회원국의 관세쿼타(TRQ) 운영사례분석을 통한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개선방안

연구목적	o 세계각국의 관세쿼타(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국영무역등 시장접근물량 관리에 대한 WTO협상에 대응								
	○ WTO회원국의 시장접근물량 관리유형별 장·단점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수입관리방식 개선방안 강구								
	ㅇ 세계각국의 관세할당 제도의 개념 및 유형								
	o OECD 국가들의 관세쿼타제 운영 현황								
	① 실행관세로 조건 없이 수입 (Applied Tariff)								
	② 선착순 (First-come First-serve)								
	③ 수입승인제 또는 허가제 (Licenced & Demand)								
연구내용	④ 수입권공매 (Auction, Auctioning)								
1 1 1 1 0	⑤ 과거의 수입실적에 따른 할당 (Historical Allocation)								
	⑥ 국영무역 (State Trading)								
	⑦ 생산자단체 (Producer Group)								
	⑧ 혼합방식, 기타 (Mixed, Other, Not specified)								
,	○ 개도국(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등)의 관세쿼타제 운영현황								

□ 뉴라운드 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양념류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연구목적	ㅇ 뉴라운드협상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념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중국의 WTO 영향분석을 통한 대비 철저
	ㅇ 개방후 고추, 마늘, 양파의 수입 및 수입관리상 문제점 검토
	- 혼합조미료,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등 유사대체품 수입증가
연구내용	- 양념류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감 분석 등
	○ 중국의 WTO 가입이 양념류 수입에 미치는 영향
	- 고추, 마늘, 양파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비교분석

2.3.2. 사업별 운영성과

1. 목표설정의 합리성

가. 사업목표

- □ 출하기 가격지지를 위한 비축농산물 수때(60천톤)
- □ 시장접근물량의 효율적 수입(371천톤) 관리를 통한 농가피해 최소화와 수급안정 도모
- □ 수급 및 가격동향을 고려한 비축농산물의 탄력적 방출(374천톤) 관리

나. 목표설정 논거

□ 비축 농수산물 수매

- 마늘, 양파 등 채소류는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 및 출하조절, 민간저장·가공업체의 수매자금 지원 등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하되 출하기 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시에 정부수매를 통한 가격보장
- 콩, 땅콩 등 국내 수급상 절대 부족품목은 파종기 이전에 수매물량 및 가격을 예시하고 농가 약정물량 전량을 수매함으로써 적정가격 유지 및 안정적 생산여건 조성
- 사과, 배등 과실류는 출하기에 직접생산비 수준으로 수매하여 가격을 지지하고, 수산물은 출하기 가격지지 및 성수기 방출물량 확보를 위해 산지 위판가격으로 수매실시

□ 시장점근물량 수입

- WTO협정에 따라 설정한 시장접근물량과 국내 수급상 절대 부족한 경우에 최소한의 물량을 증량하여 탄력적으로 수입관리
- 양념류는 농가 성출하기를 피하여 수입하고 국내 재고과잉 우려시는 건조가공품으로 대체 수입하고 수출 등을 통해 국내시장과 격리하는 등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콩, 참깨 등 수급상 절대 부족한 품목은 적정재고를 상시 비축 관리하여 수급균형 유지

□ 가격안정용 방출

○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는 단경기 방출을 원칙으로 하고 콩, 참깨 등 국내 수급상 절대부족 품목은 시중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 방출실시

2. 사업별 목표달성 정도

□ 수매사업을 통한 성출하기 산지가격 지지

-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기가격이 하락한 마늘·양파는 조기 수매착수로 농가희망 전량을 수매하여 농가소득 지지 (마늘 16,046톤, 조생양파 10,412톤)
- ☞ 마 늘 : (수매전) 1,100원/kg → (수매후) 1,525 (39% 상승)
- ☞ 양 파 : (〃) 170원/kg → (〃) 185 (9% 상승)
- 오렌지 등 수입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과일류는 수매즉시 가공 및 대북지원
- ☞ 배 : (수매전) 12,000원/15kg → (수매후) 20,000 (67% 상승)
- ☞ 감귤: (") 8,000원/15kg → (") 9,500 (19% 상승)

□ 국영무역품목의 탄력적 관리로 수입영향 최소화

- 국내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 양념류는 도입물량 축소 및 단경기 수입으로 매년 국내수급 불안 양념류의 수급안정 달성
- ☞ 계획량 대비 고추는 44%(2,100톤), 양파는 4%(640톤)만 수입
- ☞ 마늘은 국내 단경기에 12,533톤 수입('01.11~12월)으로 농가피해 최소화
- 콩, 참깨 등 국내 수급상 절대부족 품목인 특작·양곡류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 수입하여 국내 수급부족 해소
- 콩 : (기본 C/S량) 150,450톤 → 178,044 / 참깨 : 6,731톤 → 57,377

□ 효율적인 방출관리로 가격안정 도모

- 양념류는 생산과 공급과잉 예상되어 국내시장과 격리함으로서 수급 및 가격균형 유지
- 마늘은 수급판단결과 15천톤정도 공급과잉 예상되어 수출(11,483톤) 및 가공(3,000)
- ☞ 안정적인 가격유지 : (8월) 1,745원/kg → (11월) 1,831
- 양파는 수급판단결과 156천톤 공급과잉 예상되어 수출(1,106톤) 및 건조가공(9,466)
- ☞ 안정적인 가격유지 : (8월) 373원/kg → (11월) 358
- 고추는 공급과 소비가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어 시장상황에 맡겨 가격안정실시
- 과실류는 생산과잉 및 외국산과일 수입 등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시장격리(17.467톤)

3. 사업운영 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및 전년대비 개선실적

가. 국내 농수산물 수매를 통한 생산자 소득효과

- □ 수매비축사업 실시에 따른 생산자 가격지지 및 소득안정효과는 수매에 응하므로써 소득이 향상되는 직접효과와 수매진행에 따라 산지가격이 상승하는 파급효과로 구분
 - '01년도 직접효과는 66억원, 파급효과는 281억원
- □ 전년대비 수메소득효과 : ('00) 284억원 → ('01) 347(22.2% 증)

【'01년도】

				수매	로인한 가격	상승	-	누매소득효과	}
품 목	유통당 (A)	수매량 (B)	수매가격 (C)	산지가격 (D)	미수매시 추정산지 가격(E)	인상효과 (F)	직접효과 (C-E)XB	파급효과 FX(A-B)	계
계	천톤	톤	원/kg	원/kg	원/kg	원/kg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11	3,228.9	69,849					6,626.7	28,116.0	34,742.7
깍지땅콩	8.9	424	1,884	1,884	1,848	36	15.3	305.9	321.2
콩	104.1	5,498	2,270	2,270	2,222	48	264.5	4,744.0	5,008.5
마 늘	325.1	16,046	1,250	939	928	11	5,169.0	3,441.1	8,610.1
양파	1,019.7	10,412	200	159	159	0	430.2	320.3	750.5
Hя	370.0	4,853	1,056	1,056	1,052	4	20.4	1536.2	1,556.7
사 과	357 .2	6,348	1,093	1,093	1,088	5	34.5	1,907.9	1,942.4
감 귤	545.4	6,309	465	465	464	1	8.8	749.8	758.6
감 자	28.9	4,255	478	478	451	27	115.1	666.8	781.9
김	20.4	806	14,935	14,935	14,528	407	327.8	7,968.6	8,296.4
미역류	55.6	2,667	1,000	1,000	988	12	30.8	610.6	641.4
마른오징어	35.3	6	9,743	9,743	9,742	1	0.0	23.4	23.4
냉동명태	137.2	3,685	1,370	1,370	1,355	15	53.7	1,944.3	1,997.9
원양오징어	221.1	8,540	1,205	1,205	1,187	18	156.6	3,897.1	4,053.7

주) 1. 유 통 량 : 2001년도 생산량 상품화율 적용

2. 산지가격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조사월보" 참조 3. 미수매시 추정산지가격 : 산지가격 ÷(1+가격상승률)

4. 가격상승률 : (수매량÷유통량) X 가격탄성치

5. 가격탄성치 : 땅콩0.4100, 콩0.4100, 마늘0.2544, 양파 0.2357, 사과·배·감귤 0.2981

김 0.7085, 미역류0.2433, 마른오징어 0.40, 냉동명태 0.40, 원양오징어 0.40

【'00년도】

			수매가	宁 明5	트인한 가	격상승	今	-매소득효?	
품 목	유통량 (A)	수매량 (B)	- ख()	산지가격 (D)	미수매시 추정산지 가격(E)	인상효과 (F)	직접효과 (C-E)×B	파급효과 F×(A-B)	계
	천톤	톤	원/kg	원/kg	원/kg	원/kg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계	1,566.3	42,552					6,701.3	21,677.9	28,379.2
깍지땅콩	8.2	271	1,881	1,881	1,856	25	6.8	199.4	206.2
콩	99.8	4,113	1,722	1,722	1,693	29	119.3	2,774.9	2,894.2
마 늘	365.8	16,722	1 ,27 2	948	937	11	5,601.9	3,839.9	9,441.8
배	291.8	2,975	806	806	803	3	8.9	866.5	875.4
사 과	439.1	1,440	773	773	772	1	1.4	437.7	439.1
김	12.1	800	14,669	14,669	14,013	656	525.1	7,417.2	7,942.3
미역류	55.6	3,281	544	544	536	8	25.3	402.8	428.1
마른오징어	35.3	80	9,743	9,743	9,743	9	0.7	310.8	311.5
냉동명태	84.3	7,870	1,245	1,245	1,200	45	352.7	3,425.5	3,778.2
원양오징어	174.3	5,000	1,043	1,043	1,031	12	. 59.2	2,003.2	2,062.3

주) 1. 유 통 량 : 2000년도 생산량중 상품화율 적용

2. 산지가격 : 농업협동조합증앙회 「농협조사월보」참조

3. 미수매시 추정산지가격 : 산지가격 ÷ (1+가격상승률)

4. 가격상승률 : (수매량÷유통량)×가격탄성치

5. 가격탄성치 : 땅콩 0.4100, 콩 0.4100, 마늘 0.2544, 양파 0.2357, 사과·배 0.2981, 김 0.7085

미역류 0.2433, 마른오징어 0.40, 냉동명태 0.40, 원양오징어 0.40

나, 비축 농수산물 방출에 따른 소비자 후생효과

- □ 가격등락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변화를 나타내는 가격탄성치에 의해 소비자 가계 부담 경감효과를 추산한 결과 2001년 8,091억원의 소비자 후생효과를 거둠
- □ 전년대비 방출효과 : ('00) 8,033억원 → ('01) 8,091(0.7% 증)

【'01년도】

	12.4			방출로	. 인한 가격	하락	71	계부담경감호	과
풍 목	충유통 량 (A)	방출량 (B)	방출가격	소비자가격 (C)	미방출시 추정소비 자가격(D)	인하 효과 (E=D-C)	직접효과 E×B	파급효과 E×(A-B)	계
계	천톤	톤	원/kg	원/kg	원/kg	સી∕kg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II	2,980.4	339,141					511,142.9	297,915.4	809,058.4
콩	109.3	5,490	1,486	4,424	4,517	93	510.7	9,656.7	10,167.4
콩나물콩	24.9	2,814	1,269	2,576	2,701	125	352.2	2,764.2	3,116.4
참 깨	61.7	46,217	3,493	6,021	8,690	2,669	123,341.6	41,320.2	164,661.8
땅 콩	10.4	1,491	1,427	2,541	2,700	159	236.6	1,413.7	1,650.3
사 과	412.1	4,186	180	3,622	3,633	11	46.0	4,487.4	4,533.4
마 늘	344.0	18,902	421	3,274	3,321	47	880. 8	15,149.6	16,030.4
양 파	1,024.0	3,995	105	683	684	1	2.5	641.2	643.7
생 강	20.3	784	1,887	2,206	2,226	20	15.9	395.5	411.4
고 추	164.1	2,001	7,078	11,110	11,144	34	67.9	5,500.2	5,568.1
수입콩	319.1	215,300	653	4,224	5,839	1,615	347,783.7	167,672.8	515,456.5
수입팥	28.4	19,051	1,016	5,017	6,920	1,903	36,259.9	17,794.0	54,053.9
깍지땅콩	9.2	271	1,176	2,749	2,783	34	9.1	300.1	309.2
김	21.7	1,287	8,139	14,577	15,216	639	822.9	13,052.0	13,874.9
미역류	59.4	3,817	623	1,351	1,372	21	81.9	1,192.7	1,274.6
냉동명태	144.8	7,649	1,386	3,360	3,433	73	554.8	9,947.4	10,502.2
냉동오징어	227.0	5,886	1,201	2,860	2,890	30	176.4	6,627.7	6,804.2

주) 1. 총유통량 : 2001년도 생산량중 상품화율 적용량 + 방출량

2. 방출량: 「2001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결산보고서」, 농림부

3. 소비자가격 :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 도소매가격동향) 조사자료

4. 미방출시 추정소비자가격 : 소비자가격÷(1-가격하락율)

5. 가격하락율 : (방출량÷총유통량)×가격탄성치

6. 가격탄성치 : 콩(콩나물콩,참깨,땅콩) 0.4100, 고추 0.2497, 마늘(생강) 0.2544, 양파 0.2357,사과 0.2981, 김 0.7085, 미역류 0.2433, 마른오징어(냉동명태, 원양오징어) 0.40

【'00년도】

14.75				小春草	인한 가격	하락		세부담경감	[과
普号、	종유통 량 .(A)	명출명 (B)	방출기격	소비자가격 (C)	미방출시 , 추정소비 , 차가격(D)	인하효과 (E*D*C)	직접효과 EXB	파급효과 EX(A-B)	. Д
계	천톤	톤	શ ે/kg	સી∕kg	શ ∕kg	원/kg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2,784.2	325,486					533,743.7	269,508.7	803,252.5
콩	80.8	5,882	875	4,080	4,206	126	738. 3	9,403.8	10,142.1
콩나물콩	27.9	2,966	1,188	2,774	2,900	126	375.0	3,152.1	3,527.1
참 깨	72.1	56,284	4,085	6,050	8,898	2,848	160,289.2	45,041.8	205,331.0
땅 콩	10.1	1,897	937	2,576	2,791	215	407.7	1,763.0	2,170.7
사 과	441.0	1,885	906	4,076	4,081	5	9.8	2,283.5	2,293.3
마 늘	365.8	_	İ						
양 파	867.9	_		-					
생 강	42.9	386	1,400	2,204	2,209	5	1.8	199.1	200.9
고 추	174.9	491	7,231	9,056	9,062	6	3.1	1,107.9	1,111.1
수입콩	315.0	215,116	628	4,080	5,667	1,587	341,304.3	158,476.5	499,780.8
수입팥	27.1	17,128	1,043	4,721	6,372	1,651	28,282.7	16,466.3	44,749.0
깍지땅콩	10.1	1,277	904	2,138	2,255	117	149.3	1,031.3	1,180.6
김	12.6	392	7,966	15,422	15,763	347	136.2	4,241.8	4,378.0
미역류	57.2	1,631	530	1,351	1,360	9	15.4	524.5	539.9
냉동명태	91.9	7,560	1,122	3,326	3,439	113	855.5	9,544.5	10,400.0
냉동오징어	186.9	12,591	833	3,376	3,464	93	1,175.4	16,272.5	17,447.9

주) 1. 총유통량 : 2000년도 생산량중 상품화율 적용량 + 방출량

2. 방출량: 「2000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결산보고서」, 농림부

3. 소비자가격 : 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 도소매가격동향) 조사자료

4. 미방출시 추정소비자가격 : 소비자가격 ÷(1-가격하락율)

5. 가격하락율 : (방출량÷총유통량)×가격탄성치

6. 가격탄성치 : 콩(콩나물콩,참깨,땅콩) 0.4100, 고추 0.2497, 마늘(생강) 0.2544, 양파 0.2357,

사과 0.2981, 김 0.7085, 미역류 0.2433, 마른오징어(냉동명태, 원양오징어) 0.40

다. 비축시설 관리 아웃소싱 성과 거양

□ 비축창고 시설(냉동·전기) 업무 외부위탁 관리

- 1999년부터 공사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축창고(10개소) 냉동·전기 설비 및 뷔타시설 유지관리, 비축농수산물 품질관리 지원업무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 '01년 위탁계약 갱신시 과거 2개년의 계약사항을 보완하여 재 계약 체결(4월)
- 계약서에 위탁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포함시켜 업무효율 증진
- □ 외부위탁(아웃소성)에 따른 성과분석 ☞ 위탁관리 이후 1,149백만원 비용절감
 - 비축시설 위탁관리로 인건비 부문은 위탁 전 대비 매년 점진적 경제효과 거양
 - 아웃소싱은 3차 년도까지 각각 16.7%(347백만원), 17.3(382), 18.0(420) 절감 효과

		Ł		위탁이후			
	구			'98(A)	'99	,00	'01(B)
	7 41 61	공	사	70	28	29	28
1	근무인원 (명)		탁 사	-	32	32	32
(8)		7	4)	70	60	61	60
	공사가 즈	접관리	시(A)	1,960	2,078	2,203	2,335
시키네		공	사		675	727	795
인건비 (백만원)	위탁시(B)	위	탁 사	week	1,056	1,094	1,120
		7	뷔	1,960	1,731	1,821	1,915
	절 감	액 (B-	-A)	-	△ 347	△ 382	△ 420

※ 공사 직접관리시 '99, '00, '01 인건비는 정부투자기관 평균 인상률(6%)을 적용

○ 위탁관리업무의 책임한계 설정 및 전문인력관리로 시설물 안전관리 효과 거양

4. 사업대상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가. 사업대상자 범위

子甚	대상자 범위	2 9	고객수
공매	농수산물 도·소매상 및 실수요업체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점포 를 보유하고 있는자	희망수량에 대한 단가입찰로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단가의 입찰자중 최고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당일 판매 한도량에 달할 때 까지 의 입찰자를 낙찰자 로 결정	공매등록업체 : 1,755개소
상장	상장판매약정을 체결한 법 정도매시장(농·수협공판 장포함)의 중도매인 및 매 매참가인		도매시장: 37개소 공판장 : 18개소
직배	농수산물대량실수요업체, 실수요 공공기관 또는 공 익단체,	·	19개 조합·단체 ·업체
직판	일반소비자	공사 지사에서 대면 판매	

나. 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

□목 적

- 고객만족경영 마인드 확산을 통한 고객중심의 서비스 구현
- 고객중심의 경영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공기업간 경쟁적 환경 조성

□ 조사대상 및 조사기관

- 정부비축사업을 통한 가격안정사업 대상자중 공매업체 및 직배업체를 대상 면담조사
- 주 관 : 기획예산처 (조사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실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 □ 조사결과 : ('00) 58점 → ('00) 68 (전년대비 17.2% 향상)

- 고객기대수준, 고객인지품질, 고객인지가치, 고객만족도, 고객불평률, 고객충성도 등 6개의 잠재 변수값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족도 산출
- 조사결과는 고객만족도 수준파악, 문제점 진단, 우선순위별 품질개선 영역 도출 등을 통한 고객만족 추진전략 수립에 활용

다. 자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 □ 목적 : 정부비축사업에 대한 고객의 평가와 Needs를 수렴하여 제도개선 및 종사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로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조사대상 및 방법 : 공매·직배업체 대상 표본(312개 업체)을 선정하여 우편설문조사
- □ 조사결과: ('99) 71.7점 → ('00) 75.1 → ('01) 84.4(전년대비 12.4% 향상)
 - O 서비스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문(순서별)
 - ① 비축품 인수시 ② 공사방문시 ③ 전화문의시
- O '01 제도개선 사항중 잘된 부문 (차례별)
 - ① 참깨 예정가격을 3,600원/kg에서 3,000원으로 인하
 - ② 고추 출고단량을 차량계근에서 표시단량 출고
 - ③ 참깨 1인당판매한도량을 3톤이하에서 10톤이하로 증량
 - ④ 공매업체 정기점검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 ⑤ 참깨 판매시 일별, 산지별 구분입찰에서 희망산지로
- O 제도개선이 더 필요한 부문

(단위 : 업체, %)

추가적 보완 개선 요망사항	응답자수	비율
계	89	100.0
① 참깨 예정가격을 좀 더 인하 요망	17	19.1
② 중국산, 양질품 공급 등 품질개선	11	12.4
③ 하역업체 직원서비스 교육 실시	10	11.2
④ 참깨 공매 한도량을 축소, 현행대로, 확대 요망	8	8.9
⑤ 직배를 폐지하고 공정한 공매제도로 개선 요망	7	7.9
⑥ 단량균일, 소포장, 20kg, 30kg 공급 등 포장개선	5	5.6
⑦ 고추 출고단량을 표시단량 출고로 개선	3	3.4
⑧ 기타 인터넷에 다양한 입찰 정보서비스 제공 등	28	31.5

라. 조사결과 개선조치

	구분		형		개 선 방 향	비 고
\triangleright	비축품 출고시 서비스제고	0	출고량이 집중 될 경우 신속한 출고를 위해 비축품 취급 부주의	0	하역업체 직원에 대한 서비스요령 교육 실시	2002. 1/4분기
\triangleright	양질품 공급노력	0	공매품목의 품위에 대한 업체의 요구지속	0	참깨분 반입억제 대책, 중국산 수입 등 흰씨눈 콩 도입 검토 (2002. 1/4분기)	연 중
\triangleright	참깨 포장재질 및 단량 개선	0	마대 50kg	0	수요조사를 통해 PP대 및 소포장, 20kg, 30kg로 개선 검토	2002. 상반기
\triangleright	인터넷에 다양한 입찰 정보 제공		품목별 입찰일시 및 물량 정보 제공	0	입찰결과 정보 제공	2002. 1/4분기
\triangle	직배공급 중단하고 모든품목 공매로 개선	0	품목별 탄력적으로 공매, 직배방법 수립 운영	0	향후 필요시 공매로 판매방법 개선 검토	연중
	입찰참가시 불편사항 개선	0	대기시간 김 입찰서 작성 불편 입찰환경 미흡 입찰설명 불충분 등 고객불만 상존	0	담당자 고객친절서비스 교육 등 각 지사(소)장이 자체세부계획 수립 시행	66
\triangle	비축품인수 관련 애로 사항 개선	0	출고대기시간 김 품질 확인절차 미흡 분할출고 안됨 등 고객불만 상존			и
\triangleright	참깨 공급 가격 인하	-	3,000원/kg	0	참깨 수급동향을 감안 필요시 검토	필요시
\Box	직배물량 확대	0	소요량의 60%내		C/S량 감안 상 향조 정 (현행) 55% → (개선) 60	2002. 2/4분기
\triangleright	전자상거래 도입검토	0	공매시 입찰 참가자가 직접 입찰장에 왕래하 여 입찰참여		장소 제한없는 전자상거 래 기본운영계획 수립 6 '03. 3월 도입예정	2001. 7

마. 2001년도 주요 고객만족 경영관리 노력

□ 간담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고객 Needs 수렴 및 반영

- 공매업체 정기점검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생략으로 공사방문 불편해소
- 입찰보증금 환불제도 간소화 : (기존) 공사 내방 환불신청 → (개선) 전화신청
- 식품가공용 콩・팥 사후관리 점검대상 간소화 : (기존) 전수점검 → (개선) 표본점검
- 장유용 콩 포장단위 변경, 메주용 콩 교환 등 직배공급제도 개선·조치(12건)

□ 비축물자 판매계획 인터넷게시로 고객의 정보접근 신속성·투명성 제고

- 공지방법 : (기존) 지사 자체적 게시 → (개선) 공사홈페이지에 일괄 판매공지
- 판매정보를 신속·정확히 전달하여 비축물자 판매촉진 및 고객의 정보습득 편의제공

□ 비축물자 방출관련 민원사례 D/B화 관리로 고객 불만·애로 선행관리체계 확보

- 지사(소)별·품목별·유형별로 처리결과를 DB화 (최근 2개년 88건)
- O 공사 ISP계획에 의한 지식경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식기반으로 활용
- 고객불만. 애로사항을 선행 관리하여 신속 일관된 민원처리

□ 참깨 전매행위를 방지하여 실수요업체 물량 확보 용이

- 1인당 한도량 확대 : (종전) 3톤이내 → (확대) 10톤이하
- 실수요업체 직배비율 확대 : (종전) 사용량 50% → (확대) 55
- 공매업체 정기점검(2월) : 1.794개소 → 1.528 (266개소 정비)

□ Non-GM 콩 사전 예비수율조사 및 두부제조시험 실시로 고객지향적 품질관리

- Non-GM 콩의 통관즉시 사전 예비수율 조사로 품질관리 정례화
- 사전에 예비수율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품위에 적합한 업체에 공급

□ "참깨는 희망산지", "콩은 희망품위"별로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구매업체 편의제공

○ (참깨) 특정산지 → 희망산지, (수매콩) 등급별 → 품위별

여 백

(2) 가공용수매지원사업

I. 사업현황167
 사업개요 2. 2001 지표별 주요실적 요약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170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171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173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178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179 2.3.2 사업별 운영성과 183

사업정책기관	농 림 부
	식품산업과(☎500-1850)
사업실시기관	농협중앙회 유통활성화사업단 가공산업팀(☎397-5867)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2240-2380)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790-8013)

여 백

I. 사업현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수산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료농산물 수매자금을 지원하여 출하기에

원료농산물을 수매토록 함으로서 산지가격을 지지

□ 사업대상 : 농수산식품 가공업체

□ 사업방식

○ 지원한도(기준사업비) : 업체당 15억원이내

- 경영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지원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수매의무액 : 지원금액의 125% 이상

○ 대출기간(금리): 2년이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5%, 기타 가공업체 5.5%)

□ 사업담당기관 : 농림부 식품산업과

□ 사업실시기관 : 농·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연도별 가공원료수매자금 지원추이

(단위: 백만원)

지원기관	子 是	'98년	'99년	'00년	비고
	농업인공동	45,920	30,326	37,488	금리 5%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41,524	29,196	29,615	금리 5%
	기타가공업체	7,641	6,019	4,767	금리 8%
수협중앙회	어업인공동 등	-	16,289	16,800	금리 5%
농수산물유통공사	일반가공업체	40,191	32,186	24,753	금리 8%
계		135,276	114,816	113,423	

○ 성출하기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는 한편, 가공식품 생산 및 판매 실적에 의한 차등 지원으로 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 산지가공업체의 경영안정으로 수급조절 효과 제고

- 농산물가공공장의 년간 총매출액 증가로 경영안정 및 원료농산물 구입액 증가
- '00년실적(운영업체, 747개소) : 총매출액 5,691억원, 원료구입액 3,115억원, 고용인원 8,500명
- 산물 위주로 유통되던 농산물을 가공처리 함에 따른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대량수요처 확보
- 품목별 주산지의 원료농산물을 사용하는 산지가공공장 정착으로 계약재배 및 직거래 활성화
 - 양파단지 → 양파가공공장. 매실단지 → 매실장아찌. 매실주가공공장 등

2. 2001 지표별 주요실적 요약

가. 사업 선정의 타당성

□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타 기금 또는 타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목록

2) 6d mi	೦೦ಸತಾ	ൂ ക എരി	시	원 규	모 (백만	원)
사업명	운용주체	소요재원	'98	199	'00	'01
• 농촌가공산업 육성	정 부	일반예산	28,773	13,188	9,800	8,036
• 가공산업경영지도	정 부	일반예산	-	1,092	1,092	714

□ 본 사업의 차별성과 상대적 우위성

- 기금 : 성출하기 가공용 원료농산물 수매를 통한 산지가격의 지지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 생산자 가격지지 등의 효과로 WTO 규범상의 감축대상 보조

□ 기금설치목적과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 기금설치 목적 :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
- 정책목표 : 성출하기 원료농산물 수매를 통한 산지가격의 지지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나. 사업 내용의 적합성

□ 사업활동내역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원료 농수산물 대량 구입을 통하여 수급안정에 기여

(단위:백만원)

년도별	원료수미 액 "	자금지원해	수매액 대비 기원액	지원에 대비 수배액
'99년	300,600	114,816	32.8%	305.1%
'00년	311,500	113,423	30.1%	323.8%

-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업체별 원료수매, 제품매출 및 수출실적 등으로 된 지원기준에 의거 선정
- □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의 특정사업대상자 또는 수혜자의 선정절차 및 논거
 - 농협중앙회 : 경영평가제에 의거 평가결과별로 차등지원
 - 유통공사 : 정책사업기여도 및 신용도 평가결과에 의거 등급별 차등지원

□ 융자조건 산정 기준

- 융자기간 : 1년 이내가 원칙이나, 가공제품은 외상매출의 회수를 감안하여 2년 이내로 산정
- 금리, 자부담율, 사업의무 미달시의 제재기준 등 : 농안사업 실시규정상의 기준을 준용

다.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노력

- 문제점 : 원료생산시기와 가공제품의 차이가 있어 수매자금의 유휴기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입산 가공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저위
 - ☞ 적정 소요예산 신청 유도 및 자금 불용화 방지노력 지속
 - 가공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등 노력 경주

□ 사업운영 성과평가지표 및 지표선정의 논거

- 성과평가지표 : 가공공장 운영 및 가동율, 매출액목표, 흑자업체율 및 산지가격지지효과
- 선정사유 : 정책적 기대효과 달성을 위하여 동 분야 업체들의 경영활성화가 필요

□ 부실채권 관리채계의 합리성

- O 부실채권 발생가능성 : 정부 관리감독 하의 금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인 농협과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부실채권의 발생가능성은 없음
- 관리체계 및 합리성
 - 사업대상자 선정, 융자실행 등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 0.5% : 지방자치단체 및 기금대출기관의 회원조합 지원자금(대손위험이 낮은 융자)
 - 2.0%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일반법인 등에 대한 지원자금(대손위험이 높은 융자)
- 과거 3년의 부실채권 규모, 회수실적 등 : 해당사항 없음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조치

- 시중 지원자금 금리인하에 따른 정책자금의 지원금리 인하
- 외국 농산물 가공제품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체의 경영활성화 차원의 지원 실시

라. 사업별 운영성과

- □ 사업운영의 양적 성과 : 사업의무량(지원금액의 125%)이상 사업추진
- ○ 지원액 : 2001년 962억원 ⇒ 사업실적 : 125%이상 달성(3,115억원)
- 생산농산물의 대량수요처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산지가격지지

□ 사업운영의 질적 성과

- 농산물의 성출하기 집중지원으로 가격안정 및 경쟁력 제고
-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의욕 고취
- 금리인하조치로 산지가공업체의 원료농산물 수매활성화를 유도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표명 2.2 사업 선정 및 내용의 적정성 가중치 40%

평 가 내 용

-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
 - ㅇ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ㅇ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ㅇ 사업활동과 사업목적의 연계성
 - o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o 융자/보증 대상 선정기준 및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ㅇ 융자/보증 조건 산정의 합리성

日入山号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

1. 신규사업 추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타 기금 또는 타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목록

	0024	& O all Ol	지	원 규	모 (백만	원)
사업명	운용주체	소요재원	'98	. 99	'00	'01
• 농촌가공산업 육성	정 부	일반예산	28,773	13,188	9,800	8,036
• 가공산업경영지도	정 부	일반예산		1,092	1,092	714

3. 본 사업의 차별성과 상대적 우위성

- 일반예산에 의한 지원은 공급과잉 기조 하에 있는 원예작물류의 안정적인 대량수요처 및 산지 유휴인력에 대한 농외소득원 등의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임
- 반면 본 기금은 일반예산에 의거 상기 목표로 조성된 산지가공업체의 **가동에 필요한** 원료농산물 수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성출하기 원료농산물 수메를 통한 산지가격의 지지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가격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WTO 규범 상 공공제정에 의한 하부 인프라 구축분야는 허용대상 보조인 반면, 생산자가격지지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는 감축대상 보조이므로 본 기금에 의거 예산 사업과의 차별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4. 본사업의 기금설치 목적과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가. 목적과 정책목적의 비교

기금 설치목적	三人 1 八 2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 	○ 성출하기 원료농산물 수매를 통한 산지가격의 지지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나. 정책목표와의 부합 논거

- 농산물은 풍흉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고 가격 상승시 구매기피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1~2회의 단기성 예산 지원으로는 산지가공업체를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으로 장기적·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지속적인 수매자금 지원 불가시 가공공장의 경영악화(가동중단, 부도 등)로 국산농산물 수급에 커다란 지장 초래 불가피
- 대부분의 업체들은 계절성 원료를 사용함에 따라 일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영세성 으로 인해 자금확보 면에서 아려운 실정임
- 따라서 산지 가공업체에 가공원료수매자금을 지원하여 업체의 수매활동이 안정적으로 원 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책적 기대효과를 제고

평가내용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활동 내역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 원료 농수산물의 대량 구입을 통하여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기여
 - 수매자금 지원액 대비 업체의 실수매액 : 지원액의 305~324% 달성

(단위:백만원)

년도별	원료수매액	자금지원액	수매액 대비 지원액	지원액 대비 수매액
'99년	300,600	114,816	32.8%	305.1%
'00년	311,500	113,423	30.1%	323.8%

2. 사업대상 선정기준 결정과정

가. 사업대상

- O 농·수협중앙회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및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 명인·신지식인· 주류제조면허추천·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로 지정된 업체
-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정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한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가공업체
- O **농수산물유통공사** : 정부 미지원 농산물가공업체(농업경영체, 기타가공업체)

나. 선정기준

- 적격대상자 선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자금지원을 게시하고 신청 접수
- 여신규정에 적합한 사업대상에게 자금지원기준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

3. 선정기준의 근거 및 선정결과의 부합성

가.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지원 기준

□ 농협중앙회 지원기준

기준항목	적용 비율	조선 전투 기계는 기계를 가장하다. 		
투자액 점유비	10%	○ 항목배정액에 대한 신청업체(조합)의 총 투자대비 업체별 투자액 점유비에 의거 배정 ○ 산식 : 항목배정액×[(개별업체투자액/신청업체투자액)×100]		
전년도 원료수매 실적	20%	 항목배정액에 대한 신청업체(조합)의 전년도 총 원료수매액 대비 업체별 원료수매실적 점유비에 의거 배정 가동 1년미만 업체(조합)는 '02년 원료수매 계획 소요액의 70%적용 산식 : 항목배정액×[(개별업체수매액/신청업체총수매액)×100] 		
전년도 제품매출 실적	15%	○ 항목배정액에 대한 신청업체(조합)의 전년도 총매출액 대비 업체별 매출액 점유비에 의거 배정 - 가동 1년미만 업체(조합)는 '02년 원료수매계획 소요액의 80%적용 ○ 산식 : 항목배정액×[(개별업체매출액/신청업체총매출액)×100]		
전년도 수출실적 (우대기준)	5%	○ 항목배정액에 대한 신청업체(조합)의 전년도 총수출액 대비 업체별 매출액 점유비에 의거 배정 ○ 산식 : 항목배정액×[(개별업체수출액/신청업체총수출액)×100]		
2001년 원료수매 소요액	30%	 ○ 업체별 원료수매자금 소요기준 금액(다음항목중 최소금액 적용) ① 전년도 원료구입 소요액 기준 : 전년도 소요액의 120% ② 원료수매계획 : 2001년 원료수매 계획량 ③ 자금신청액 기준 : 자금신청서상의 신청액 - 가동1년 미만업체에 대해서는 ②③항만 적용 산정 ○ 신청업체(조합) 총소요액(①②③항 중 최소금액합산분)에 대한 개별업체 소요액 점유비에 의거 배정 ○ 산식 : 항목배정액×[(개별업체소요액/신청업체총소요액)×100] 		
기타 반영사항	20%	 재무회계 관리 상황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한 업체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추진 노력도가 우수한 업체 2001년 상환자금 과다 도래업체 민원사항 검토결과 		
계	100%			

□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기준

- 업체의 지원한도 60%(업체 가공능력 및 융자신청 물량중 적은 물량기준)
- 전년도 수매실적 40%

나.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안내

- 4대 일간지, 농민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고 실시
- 인터넷 게시 및 전화, 우편을 통한 공지
- ※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의 정형화·공개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4. 선정결과의 부합성 검토 및 사업추진절차

- □ 현지실사 등을 통해 업체의 경영상황·지역사회 기여도 등 실태를 정밀히 조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및 대출 실행
- □ 가공공장의 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유 발생 시 선정보류 등 융자관리 강화
-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로 투명성 제고
 - 신용정보, 여신가능액 등 축적 정보에 의한 평가
 -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등 관련 사업실적 증빙자료 확인

< 사업추진절차 >

7 E	· 중·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भे उद
사업공고 또는 통지	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본사, 지사	
신 청	업 체 ↓ 시·군지부 ↓ 지역본부	업 체 ↓ 본사, 지사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중 앙 회	↓ 본 사	o 지원대상자 농림부 보고 및 시·도 통보
지원액 통보 및 대출	→ 지역본부 → 시·군지부 → 업 체	↓ 지 사 ↓ 업 체	

5. 특정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 절차 및 논거

가. 경영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차등지원

< 농협중앙회 >

□ 재무적 평가기준:500점

○ 성장성(매출액 성장율, 조수익 성장율): 150점 ○ 수익성(조수익율): 50점

○ 활동성(재고자산 회전율, 고정자산 회전율) 150점

○ 안전성(총 자본대비 자기자본 비율, 고정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150점

□ 비재무적 평가기준: 500점

○ 회계장부 관리적정성: 100점 ○ 수출실적 점유비: 100점 ○ 제품경쟁력: 100점

○ 지역경제기여도: 100점 ○ 제품판매전망: 100점

□ 차둥지원 기준

등급 구분	선정기준	지원기준	업체별 작용 산식
경영우수업체	경영평가결과 경영평점	자금배정기준에 의한	업체별 자금배정
	상위순위 20% 해당업체	산출금액에 하위등급	기준 산출액 + 추가
		업체의 차감지원액 추가	배정액
		(+20%)	
보통업체	경영평가결과 경영평점	자금배정기준에 의한	업체별 자금배정
(신규업체 포함)	상위순위 60% 해당업체	산출금액의 100%이내 지원	기준 산출액
경영미흡업체	경영평가결과 경영평점	자금배정기준에 의한	업체별 자금배정
	상위순위 20% 해당업체	산출금액의 80%이내 지원	기준 산출액 × 차등
		(산출금액의20%차감)	적용비율(80%)

く 농수산물유통공사 >

一 一世	평가내용	동급구분	우수업체 차등지원 내용
	- 정책사업참여도		- 자금배정 차등
정책사업 기여도 평가	-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	4등급	- 사후관리 서류 간소화
	- 수매효과 제고 노력		
	- 재무 및 영업 위험		- 부분 신용대출 등 담보 완화를
신용도 평가	- 경영 및 부실 징후	8등급	통한 업체 부담 경감
	- 거래 신용도		

□ 배정액 산출 공식

○ 추가배정액: [업체별 자금배정 비율(업체별 배정산출액/총배정금액)×

차등적용 배정액(차등적용비율에 의한 경영 미흡업체의 차감액)

○ 차등배정액 : 차등 적용비율에 의한 경영미흡업체의 차감액

6. 융자 조건 산정기준의 논거

가. 융자조건 산정시 고려사항

- □ 농수산물은 계절적 가격진폭이 심하여 타 산업보다 수익성 확보가 지난
- □ 가공업체의 대부분이 사업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경영 위험이 높음
- □ 자금지원 받은 업체가 사업의무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등 엄격한 책임을 부담
 - 정책자금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지원성과 제고

나. 융자조건

- □ 융자기간 : 2년 이내
 - 융자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나, 가공제품은 외상매출의 회수를 감안하여 2년 이내로 산정
- □ **융자금리** : 농업인·영농조합법인·생산자단체 연 5%, 일반사업자 연 5.5%
-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경제적 위치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 고려하여 금리 차등화
- □ 융자규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배정기준을 정하여 안분
 - 지원대상자의 사업규모, 사업실적, 정책사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규모 결정
- □ 자 부 담 : 농안기금 융자금의 25% 이상
 -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정책자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목적의 달성이 지난
- □ 사업의무 미달한 경우 : 융자금 회수, 지원 중단 및 연체금리 해당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달 정도에 따라 위약금 징수, 융자금 회수 및 융자지원 중단 등 조치

6. 융자조건 산정절차

□ 타사업과의 형평성, 동사업의 정책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조건 검토

- 기금총괄기관에서 사업주관기관이 검토한 지원조건을 고려하여 융자금리 담당기관과 협의
- 협의된 지원조건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로 확정
- □ **융자 조건의 적용** : 기금운용계획 및 관련 규정이 정한 조건으로 융자지원 다만, 사업여건 의 변화로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정

□ 융자 조건 이행여부의 확인

○ 사업이 종료한 경우 현지 실사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의무의 달성여부를 확인 하고 미이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 징수 등 제재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지표명

2.3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가 중 치

평 가 내 용

-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ㅇ 사업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노력
 - ㅇ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 ㅇ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ㅇ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및 조정
- 2.3.2 사업별 운영성과
 - ㅇ 목표설정의 합리성
 - ㅇ 사업별 목표 달성정도
 - ㅇ 사업운영 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및 전년 대비 개선 실적
 - ㅇ 사업대상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1. 사업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노력

가. 운영상의 문제점

- □ 원료농수산물의 생산시기가 가공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매자금의 유휴기간이 발생
- □ 수입농산물 가공제품에 비해 국내농산물 가공제품의 가격경쟁력 저위

나. 개선노력

□ 적정 소요예산 신청 유도 및 자금 불용화 방지노력 지속

- 과다한 신청을 지양하고 업체 실소요 예산만 신청 및 자금 미소진시 추가사업자 수시 선정 지원
- 자금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담실을 운영하여 사업자 확대노력 및 각종 정보제공
- O 사업실적이 양호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업체에 대하여 긴급자금 소요시 추가지원(5억원 이내)

□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 경주

- 언론매체를 통한 전통가공식품 홍보
- SBS-TV 고정프로그램을 통한 홍보(10회)
- 케이블TV 판매. 홍보(4회) : 12업체 참여 388백만원 매출
- TV 3사를 통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CF 홍보(68회): '00년 대비 13.6% 매출증가
- 대형유통업체와 합동으로 판매지도 상담회 실시(9회) :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등 입점알선(91업체)
- 전통가공식품 안내책자 발간·배부(5,000부) 및 사이버홍보관 운영(수록업체 353개소)

□ 주 원료의 성출하기별로 중점적으로 자금지원

- O 각 품목별 농산물 성출하기에 가공원료수매자금을 중점 지원
- 계약재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재배 업체는 예정금액의 30% 증액 배정

2. 사업운영 성과지표 및 지표선정의 논거

가. 사업성과 지표

□ 가공공장운영: ('01)846개소 → (2010년) 1,000개소

□ 가동율: ('01) 58.4% → (2010년) 77%(중소기업 평균가동율 수준)

□ 운영업체 년매출액 : ('01) 5,691억원 → (2010년) 1조원

□ 흑자업체율 : ('01) 88.6% → 2010년까지 운영업체의 95%

□ 산지가격 지지효과 : ('01) 3,115억원 → (2010년) 5,000억원

나. 지표설정의 논거

○ 정부지원가공업체의 현실적인 경영상황을 감안, 정책적 기대효과 달성을 위하여는 동 분 야 업체들의 경영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3. 사업운영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효과 분석

□ 성과지표 달성정도

- 년간 3,115억원의 국내산 농산물 구매로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처 확보
- 년간 8,500명의 인력고용하여 747억원의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정부지원업체 국산원료 가공비율 : 5,000억원 목표 대비 62.3% 달성
- ('98) 2,294억원 → ('99) 3,006 → ('01) 3,115
 - ※ 국산원료 가공비율 : ('85) 9.7% → ('90) 11.4% → ('95) 10.2%
- 정부지원업체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 : 1조원 목표대비 56.9%
- ('98) 4,269억원 → ('99) 5,304 → ('01) 5,691
- 정부지원 업체당 평균 매출 규모 : 10억원 목표대비 76.2%
- ('98) 588백만원 → ('99) 692 → ('01) 762
- 정부지원 운영수지 : 평균이익율 20% 목표대비 70.5%
- ('98) 3.1% \rightarrow ('99) 12.5 \rightarrow ('01) 14.1
- 업체평균 가동율 : 중소기업 평균가동율 77% 목표대비 75.8%
- ('98) 42.6% \rightarrow ('99) 54.9 \rightarrow ('01) 58.4

4. 부실채권 관리체계설명 및 합리성에 대한 논거

□ 부실채권 발생가능성

- 농안기금의 융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농협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기금 을 대여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기관이 융자대상자에게 대출
- 농안기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기금을 대여받은 농협 및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부담하고 있어 기금대출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 대손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기금대출기관이 금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은 기관일 뿐 아니라 신용이 양호하여 그 동안 상환을 연체하거나 불이행한 사례가 없어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 관리체계 및 합리성

- 농안기금의 융자에 따른 대손위험 및 사업대상자 선정·융자실행·사업실적 확인·사후 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집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 0.5% : 지방자치단체 및 기금대출기관의 회원조합 지원자금
- · 대손위험이 낮은 융자대상자로 사업실적 확인 및 사후관리 등 집행에 따른 살비 수준을 지급('99년도부터 1%에서 0.5%로 축소 조정)
- 2.0%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일반법인 등에 대한 지원자금
- · 대손위험이 높고 융자대상자가 많은 점을 고려
- · 농어업인의 경우 '99년도부터 2.5%에서 2.0%로 축소 조정

5. 과거 3년의 부실채권규모, 비율 및 회수실적의 추이

□ 해당사항 없음

6. 환경변화 및 이에 대응한 조치

가. 환경변화

- □ WTO출범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농산물의 가격경쟁력과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로 가공산업은 지속성장
 - 국산원료 가공비율 : ('85) 9.7% → ('90) 11.4% → ('95) 10.2%
- □ 환경농산물 가공식품 및 우리농산물을 원료로한 가공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 GMO 농산물로 가공한 외국산 가공식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안심리 증가
 - 국내산 가공원료를 사용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 건강·저칼로리·다이어트를 중심으로한 신개발 가공제품의 선호도 증가
- □ 시중 지원자금 금리인하에 따른 정책자금의 잇점 감소

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 □ 외국 농산물 가공제품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체의 경영활성화 지원 지속
 - 판로개척 및 홍보 능력 부족에 따른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
 - 수출 및 업체의 판로확대를 위한 판매·홍보 이벤트행사 지속 지원
 - 소비자(외국인)의 다양한 기호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세계적인 명품 개발)
- □ 시중 지원자금 금리인하에 따른 정책자금의 지원금리 인하를 위하여 지속 노력
- □ 경영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부실 사전예방
 - 신규사업자의 경우 경영컨설팅을 권유하여 사업시작 후 경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2.3.2 사업별 운영 성과

1. 사업목표 및 목표설정의 논거

가. 사업목표

- □ 농산물 출하기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메자금 지원(962억위)
- □ 농산물가공공장에서의 국산농산물 수메실적(3,000억원 이상)
- □ 경영흑자 업체수(85%이상)

나. 목표설정의 논거

- 업체들이 신청한 융자금액의 60% 수준 지원과 지원금액의 300% 이상의 농산물 가공실적 및 가동되는 업체중 경영흑자 업체수 85%(2010년 95%)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서
- 산지가공시설의 원료농산물 수매활동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수급 및 가격안정의 효과를 기대

2. 목표달성도와 그 논거

- □ 국산 농산물 원료수매 실적은 지원액 대비 300% 이상 달성
- 가공원료수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유지
- 자금불용화 방지 노력 및 기타가공업체 지원금리 인하로 자금소요액 증가 예상

(단위: 백만원)

년도별	원 료 수매액 (A)	자 금 신청액 (B)	자 금 지원액 (C)	धी। A/C	i)(%) C/B	비교
′99년	300,600	209,686	98,527	305.1	47.0	
′01년	311,500	174,514	96,189	323.8	55.1	·

□ **국산 농산물 수매액** : 3.115억원(농산물가공공장 경영실태조사결과 : 농유공)

☐ 경영흑자업체 : 운영업체 747개소중 662업체가 흑자 시현(")

3. 사업운영의 성과

가. 사업운영의 양적/질적 수준

□ 양적수준

- 가공원료수매자금의 지원조건인 사업의무량(지원금액의 125%)이상 사업추진
 - 지원액 : 2001년 962억원, 사업실적 : 125%이상 달성(3,115억원)
 - 생산농산물의 대량수요처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질적수준

- 농산물의 성출하기 집중지원으로 가격안정 및 경쟁력 제고
 - 사과, 배 가공공장의 낙과 수매로 산지가격을 지지
 - 생산제품에 대한 저장, 보관으로 생산원가 인하 요인 제공
-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의욕 고취
 -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 및 판매처 확보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 금리인하조치로 산지가공업체의 원료농산물 수매활성화를 유도
- 업체에 지원하는 금리는 5%~5.5%로서 시중자금과의 금리 차이가 2%~3% 수준
- 기타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금리를 8% → 5.5%로 인하하여 2.5% 금리인하
- 금리수혜익 : 약 20억~30억원 수준
- 원료의 공동구매 및 공동마케팅 추진으로 사업활성화 도모
- 가공원료의 공동구매 및 규모화로 가격경쟁력 제고
- 구입물량의 규모화로 운송비용 절감 및 가격인하 효과 제공
- 공동마케팅, 인터넷판매를 통한 판매확대 및 제품 수취가격 제고로 경영안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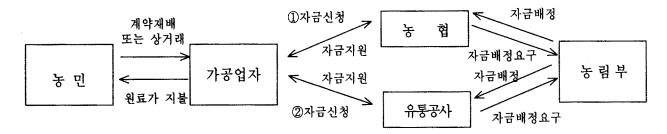
4.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범위,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및 결과 반영실적

가.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범위

- 농협중앙회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및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 명인· 신지식인·주류제조면허추천·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로 지정된 업체
 - *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 정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한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가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정부 미지원 농산물가공업체(농업경영체, 기타가공업체)

나.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및 결과 반영실적 : '02년도에 조사 반영 예정

5. 성과관리체계 및 그 운영



- ① 정부지위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가공업체, 명인·신지식인 지정,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 ② 정부미지원 가공업체
 - 농업경영체, 기타가공업체
- ※ 가공원료수매자금지원으로 발생하는 성과는 원료농산물 판매자인 농업인과 구매자인 가공공장 경영주에 발생되나, 그 과실은 최종 국가에 귀속되는 공공적인 성격을 내포한 사업임

여백

(3) 채소수급안정사업

I. 사업현황189
1. 사업개요 / 2. 사업여건 / 3. 사업정책방향 4. 주요 사업실적 요약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194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195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201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210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211
2.3.2 사업별 운영성과218

사업정책기관	농 림 부
パロるベバモ	채소특작과(☎500-1857)
HOLL HOLD	농협중앙회
사업실시기관	채소부 채소수급팀 (☎397-5734)

여백

I. 사 업 현 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산자단체(조직)가 주산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사업대상 : 회원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생산자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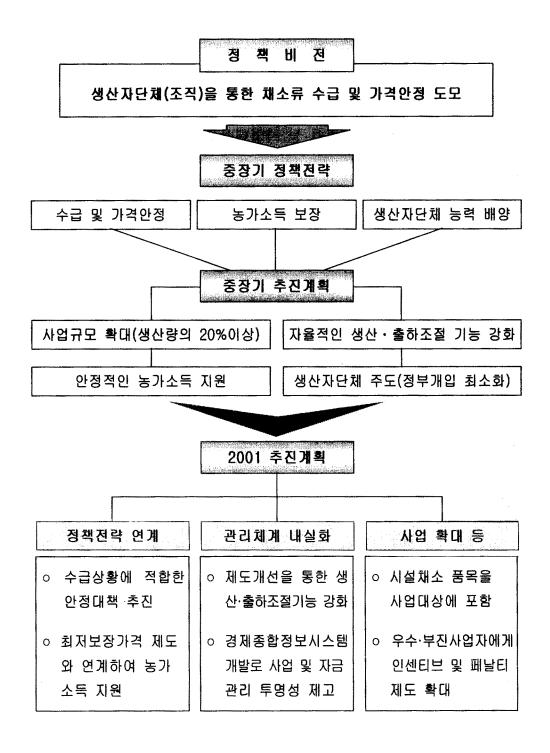
□ 사업대상품목

- 노지채소(7품목):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 시설채소(5품목) :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
- □ 사업방식 : 농안기금 융자사업
 - 민간가격안정사업으로 생산자단체에 자금을 지원
 - 생산자단체는 재배농가간 파종기(정식기)에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
 - 출하기에 소비지의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추진
- □ 사업담당기관 : 농립부 채소특작과
- □ 사업실시기관 : 농협중앙회 채소부

2. 사업여건

- □ 쌀 공급과잉 등으로 논에 채소류 등 타작물 재배가 증가됨에 따라 수급 불안정으로 수시 가격폭등락이 발생
 - 수급불안의 악순환은 재배농가의 영농의욕을 상실케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위축시키고, 탈농 가속화로 사회문제화 초래
- □ 채소류가 생산기술 향상 및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공급과잉 기조가 구조화되어 있으며 WTO 뉴라운드 협상, FTA 협정 등으로 수급조절의 어려움이 확대
- WTO 차기협상이 본격화되고, FTA 협정 등 개방화 시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은 축소
-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조직) 중심의 수급안정사업 중요성이 확대 되어 사업품목의 확대가 필요

3. 사업정책방향



4. 2000년까지 주윤실적

□ 최저가격보장제 확대

- 대상품목 : 8품목 → 10품목
- 도매시장 또는 산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수준이하로 하락될 것이 예상되어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장가격으로 수매실시
- 추진실적 : 88톤(무·배추 71, 마늘 17)
- ⇒ 계약재배 참여농가에만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가격하락시 무조건 정부에 해결을 요 구하는 관행 타파하고 Free-ride 문제 해소

□ 출하전 정산제 도입

- 가격 폭등시 품위가 양호한 계약물량은 출하전에 수매대금을 지급하여 정산을 실시
- 무,배추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폭등시 계약물량중 위약 발생을 해소

□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출하조정으로 수급안정 실시

- 무·배추 최저보장가격을 적용하여 수매 : 71톤 1,388백만원
- 마늘 한중협상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으로 수매 : 32톤 38,700백만원

□ 가격 폭등에 대응한 직거래사업실시 등 수급안정 실시

- 고랭지배추 예비묘 공급 및 공동판매사업 추진
- 예비묘 공급 : 1백만주, 24백만원
- 공동판매사업 : 2,792톤, 1,200백만원
- 고랭지배추 직거래사업실시 : 17,600톤, 4,000백만원

□ 우리농산물 애용 및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캠페인 전개

- 마늘 리후렛 및 요리책자(18만부), 양파 요리책자(1만부)
- 고추 홍보 포스터 제작(5천부)
- 지하철광고, 비디오제작 보급 및 소비촉진 신문광고 등

5. 2001 주요실적 요약

□ 신규사업 추가

기존	추가	추가 사유
○ 채소수급안정사업(7품목)	○ 채소수급안정사업(12품목)	ㅇ 시설채소 생산의 불안정으로
- 노지채소계약재배사업(7)	- 노지채소계약재배사업(7)	가격급등락이 심하여 수급
	-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5)	안정화가 필요

□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 확대

- ㅇ 재배농가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계약안정대 탄력 운영, 계약농가 정산시기 및 방법 변경,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 ㅇ 생산자단체의 수급안정사업 기능을 강화
- 핵심농협제, 출하전 정산제 및 생육단계별 생산조정제 도입
- 사업물량이 '95년~'01년까지 연평균 47.5% 증가

子是	'95	95	, 97	98	99	8	101-
물량	81천톤	232	247	357	408	498	565
자금	173억원	1,100	2,475	2,685	3,000	3,500	4,189
전년대비성장률 (물량)		186%	6%	44%	14%	22%	13%

□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ㅇ 계약물량 출하조절로 사업시행전 대비 가격폭등락 완화로 수급안정에 기여

《도메시장 가격진폭율 완화효과》							
		'95(사업시행전)	'01(사업시행후)	(완화효과)		
нJ	추	576%	\rightarrow	299%	277%		
마	늘	270%	\rightarrow	38%	232%		
양	파	374%	\rightarrow	220%	154%		

※ 가격진폭율 : (최고월평균가격-최저월평균가격)/최저월평균가격 ×100

- ㅇ 수급불안 채소류의 농가소득안정 시스템으로 정착
- 농가들이 공급과잉 구조하에서 계약재배사업의 장젂 인식
- 일부지역은 농가의 계약요구 물량을 전량 응하지 못하는 실정※ 소득지지효과 : 연평균 2.163억원
-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중심으로 여타 정책(정부수매비축, 출하조정사업, 유통협약등)과 연계된
 농가소득안정 체계 구축
- '01년 대파 : 산지폐기 등을 통한 농가수취가격 증가(121억원)
- '01년 양파 : 유통협약으로 농가소득지지 (183억원)

□ 최저보장가격 제도 확대

- ㅇ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8년에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품목 확대
 - 대상품목수 : ('98) 4개품목 → ('99) 8 → ('00) 10 → ('01) 12
- ㅇ 수급불안 조기해소를 위해 최저보장가격제도 운영방식 개선
 -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후 수매하던 것을 하락예상시 수매토록 개선
- ㅇ 생산과잉 등으로 가격하락시 단계별 수매실시로 최저가격 보장
 - 수매실적('99~'01): 149천톤(정부 104천톤, 농협 45)

□ 인센티브 및 페날티 제도 확대

- ㅇ 사업추진 우수농협 및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손실대비 운영자금 지원 확대, 조합상호지원기금 지원, 최저보장가격 우선 보장
- ㅇ 사업부진농협. 계약미이행 농업인에 대한 페날티 부과
 - 미집행자금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약금 부과 및 차년도 사업대상 배제

□ 경제종합시스템에 의한 전산관리체제 구축

- ㅇ 전산관리 개요
 - 농협 경제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자금과 물량을 연동하여 관리
 - 사업계약에서부터 수매. 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과정을 전산 관리
- ㅇ 전산관리 효과
 - 사업자금 조성·운용, 적립금관리 등 자금관리의 투명성 제고
 - 적립금자동계산, 사업실적 자동보고 등으로 신속·정확한 사업관리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표명 2.2 사업 선정 및 내용의 적정성 <mark>가 중 치</mark> 40%

명 가 내 용 등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

- ㅇ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ㅇ 사업 활동과 사업 목적의 연계성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융자/보증 대상 선정기준 및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ㅇ 융자/보증 조건 산정의 합리성

평가내용

2.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신규사업 추가 여부 및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

가. 시설채소의 생산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사업 추가

기 존	奉升	추가 사유
ㅇ 채소수급안정사업 :7품목	ㅇ 채소수급안정사업 : 12품목	ㅇ 시설채소 생산의 불안정으로
- 노지채소계약재배사업(7)	- 노지채소계약재배사업(7)	소비지가격의 급등락이 심
	-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5)	하여 수급안정화가 필요

□ 사업 개념

산지농협, 영농법인 등이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 및 출하 등을 조절함으로서 계약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가격 폭등락시 산지폐기, 비축수매등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여 가격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수급안정 측면
- 과잉공급시 계약물량 출하억제를 통한 산지가격 지지
- 과소공급시 계약물량 적기 출하확대로 소비지가격 안정 유도
- O 농가소득안정 측면
- 가격하락시 예시가격에 의한 최저가 보장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가격상승시 계약가격 이상의 소득 보장(추가이익 환원)
- 농가의 포전관리 강화로 농업생산력 증대
- 유통개선 측면
- 생산자단체가 산지시장을 주도하여 시장교섭력 배양
-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로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나.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신규 도입

□ 도입배경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증가함으로서 농가의 품목 선정 편중으로 수급불안정 내재를 해소하는 사업이 필요
- 시설채소 재배면적 : ('80) 18천ha → ('90) 40 → ('00) 91
- 출하시기에 따라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폭등락이 심하여 농가 소득을 저하
- 예) 애호박 : ('00.3월)22,077원/8kg →(5월)7,604 →(7월)4,971 →(9월)27,938
- □ 사업대상품목 :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 등
 - * 대상품목은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

□ 출하조절방법

- 평상시
- 약정물량을 농협에 위탁판매, 상품성 제고, 브랜드개발 및 판매처 발굴
- 과잉생산 예상시
- 회원조합간 유통협약을 통한 품질규제로 품위저하품 출하억제
- 출하량 할당, 일정물량 산지폐기 등 출하량 조절(산지폐기시 수확작업비 지원)
- 과소생산 예상시
- 재배면적 확보, 시기별 출하조절로 안정적인 공급

□ 추진효과

- 산지조합과 농가간 출하량과 시기를 미리 약정하여 소비자에 균형출하 도모
- 가격수준별 출하조절 방법을 차등화하여 자율 수급조절 능력 제고

2.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타기금 또는 타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목록

가,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은 없음

○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자단체, 일반업체에 예산으로 융자하는 사업 없음

나.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타기금 또는 타단채에서 수행하는 사업목록

□ 사업목록

기금명	赛 号	사업대상
양곡관리기금	쌀, 보리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축산발전기금	소, 돼지 등 축산물	축산물을 수매·가공하는 회원조합(축협)

□ 사업 기능 ·활동의 중복 여부

-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되고 민간에 자금을 지원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운용된다는 면에서 사업의 기능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에서 차이가 있고, 사업품목이 채소류로 중복되지 않음
- O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재배농가와 계약체결을 통하여 파종기에 물량을 확보한 후 수확 기에 수매를 실시하므로 활동에서 유사하지 않음

3. 본 사업의 차별성과 상대적 우위성

가.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시 계약가격 수준으로 수매하여 농가소득 보장

- 계약안정대(계약단가 ±20%)를 적용한 수매로 농가소득 보장체계 구축
- 품위 저하품에 대해 경영비 보상으로 농가소득 보장
- 기상재해, 병충해등으로 품위가 떨어질 경우와 가격폭락으로 출하실익이 없는 물량에 대해서 경영비 수준의 가격 보장

□ 계약계배 물량을 활용한 출하조절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자금지원를 통하여 확보한 물량을 활용하여 수급불안시 다양한 수급안정대책 추진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가격불안시 수급안정대책 >

7 8	계상성 없는 품목	저장성 있는 품목
가격폭락시	○ 자체폐기 ○ 저온저장	ㅇ 수매비축
가격폭등시	○ 저온저장물량 방출 ○ 예비묘공급 ○ 직거래 확대	수매물량 방출직거래 확대염가판매

□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한 채소류의 안정적인 공급

- 농업관측 정보 신속 전파 및 재배면적 조정 유도
- 유통협약 등에 의한 체계적인 생산·출하조정

나. 본 사업의 상대적 우위성

□ 사업목적 달성에 용이하도록 사업추진 체계가 시스템화되어 있음

○ 계약에서부터 수매, 판매, 출하조절대책, 손실보전대책 등 사업 흐름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출하조절

□ 사업대상인 생산농가와 회원농협의 사업 만족도가 대단히 높음

○ 설문조사 결과 사업목적인 수급안정 기여도, 재배농가 소득안정 기여도에서 90%이상이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 참고자료

< 일본의 야채수급안정기금 사업내역 >

□ 설립시기 : '79년

□ 설립목적 : 채소류에 있어서 산지의 생산 및 출하안정을 도모하고 채소농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소비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 우리의 채소수급안정사업과 유사한 4가지의 야채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정야채 가격안정사업
 -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정야채 14개 품목에 대해 산지농협을 통해 지정 소비지에 공동계산 방식으로 출하한 물량을 보증기준가격 이하로 판매시 차액보전을 해주는 사업
 - 특정야채 가격안정사업
 - 도도부현 주도하에 특정야채 39개 품목에 대해 산지농협을 통해 지정 소비지에 공동계산 방식으로 출하한 물량을 보증기준가격이하 판매시 차액보전을 해주는 사업
- O 중요야채 수급조정특별사업
 - 지정야채중 특히 수급안정이 필요한 4개 품목(양배추,양파,무,배추)에 대해 수급 조정(생산출하조절 + 긴급수급조절)을 실시하는 사업
- 야채매매 보관사업
- 채소가격의 현저한 가격상숭에 대처하기위해 야채공급 안정기금으로 매입, 보관하여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
- □ '02년부터 생산자가 계약거래를 실시할 경우 리스크를 경감하고 계약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야채가격안정제도 내에 신규로 "계약야채안정공급사업"을 도입함
- 대상사업: 지정야채 및 특정야채가격안정사업
 - ※ 일본의 계약야채안정공급사업은 우리나라의 채소수급안정제도를 일본실정에 맞게 변형한 형태로 도입한 제도임.

4. 본 사업의 기금설치 목적과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에 대한 분석

가. 채소수급안정사업의 목적은 농안기금 설치목적에 부합

농안기금 운용목적	채소수급안정사업 목적
◈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계약재배를 통한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 생산자단체를 통한 산지유통개선 촉진

나. 채소수급안정사업은 생산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업임

- □ 벼제배 논의 타작물 전환이 증가되면서 채소류 등 원예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 수급 여건이 불안정될 우려가 높음.
 - 지난해에도 수급상황이 불안하였으나,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중심으로 사전적·사후적 대책을 추진하여 가격을 비교적 안정시켰음
- □ WTO 차기협상이 본격화되고, FTA 등 개방화 시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채소류 등 원예작물의 가격안정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이 농업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채소수급안정사업을 통한 수급안정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적절히 추진할 경우 개방 확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음.

다. 동 사업은 농산물 수급정책의 기조가 정부 주도의 가격안정위주에서 생산자 단체(조직) 주도의 수급안정정책으로 개방화시대로의 변화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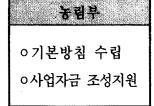
- □ WTO 채제하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되고 정부개입이 어려지고 있는 상황과 생산성 향상등에 의한 공급과잉으로 농산물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하기에는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 산지 유통단계에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산지유통센타에 의한 유통 단계 축소와 유통효율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 사업은 생산자단체(조직)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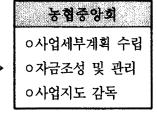
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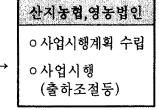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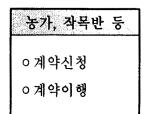
1. 사업활동 내역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 논거

가. 추진체계









나. 사업방식 개요

계약단계: 파종기,정식기

ㅇ 계약을 통한 출하조절물량 사전 확보(계약보증금 지급)

관리단계: 생육기

- ㅇ 계약물량은 출하시까지 계약농가가 책임관리
- ㅇ 필요시 한파대비 피복비 지원, 가뭄대책비 등 지원
- ㅇ 과잉생산 예상시 산지격리, 산지폐기 등을 실시하여 생산량 사전 조정

조절단계 : 출하기

- ㅇ 과잉생산시 : 자체폐기, 저온저장, 수매비축 등 실시
 - 예시가격에 의한 최저가격 보장
 -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추진
- ㅇ 과소생산시 : 예비묘공급, 저온저장물량 방출, 직거래 확대 등 실시
 - 계약물량 출하조절로 수급안정 도모

다. 계약재배 및 출하

○ 계약주체 : 산지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 계약대상 :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계약가격 : 사업농협이 최근 5개년 평균가격, 경영비 등을 감안하여 자율 결정

- 산지거래가격이 계약가격의 $\pm 20\%(\pm 10\%)$ 이상 등락시에는 계약가격을 농가와 협의 조정하고, 산지가격이 계약가격의 $\pm 50\%$ 이상 급등락시 계약단가 의무조정

- 계약가격은 품위별(특,상,중)로 세분화하여 단가 결정

◈ 계약가격 등 계약조건 결정

- 계약단가 등은 동 사업의 중요한 부문이므로 각종 협의회 등을 통해 신중 결정
- 주산지 조합별 시군협의회나 조합 자체이사회,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추진위원회>
- 조합장, 전무, 이사, 행정·지도기관 관련자, 영농회장, 작목반장 등 <전담추진팀>
- 담당이사, 상무, 판매과장, 판매계장, 지역별 영농회장 등

○ 대금지급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20~50% 미만

- 중 도 금:계약금액의 80% 이내 (계약보증금 포함)

- 잔 금 : 판매(수매)완료 후

○ 물량관리 : 계약대상자가 출하시까지 책임관리

○ 출하 및 판매

-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자율 출하조절

- 가격폭등락시 정부 및 중앙회 수급안정대책에 의해 출하조절

라. 사업정산

□ 저장성이 약한 품목(무,배추,파 등) ☞ 판매완료 후 계약농가와 정산

계	,	순판매가격	← 농가와 협의 공동 배분 (농협 해당액은 채소수급조정자금에 적립)
^연 안	120%		← 계약가격으로 정산(일부 농가 환원 가능)
정 대	100% (계약가격) 80		← 계약가격으로 정산(채소수급조정자금에서 보전)
결	o↓ 글손발생	순판매가격	← 농가와 협의 공동 부담 (농협 해당액은 채소수급조정자금에서 보전)

□ 저장성이 강한 품목(고추,마늘,양파 등) ☞ 수매시점에 계약농가와 정산

이익발생 ↑	수매가격	← 농가와 약정한 배분비율로 정산
220,0		← 계약가격으로 정산(일부 농가 환원 가능)
(계약가격)		← 계약가격으로 정산(채소수급조정자금에서 보전)
↓ 결손발생	수매가격	← 손실분담 비율에 의한 가격으로 정산
	120% 120% 100% (계약가격) 80	120% 120% (利약가격) 80

* 계약안정대는 계약가격의 ±10%~±20%내에서 조합별, 품목별로 자율 결정

□ 출하실익이 없거나 출하불능분에 대한 경영비 지원

- 출하가 가능한 중품이상의 품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으로 출하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영비이내에서 계약농가 지원
- 병충해, 기상재해 등에 의한 출하불능분의 경우 경영비의 50%이내에서 계약농가 지원 ※ 계약재배에 3년이상 참여한 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

마. 가격폭등락시 수급안정대책 추진

가격폭락시

- ㅇ 자체폐기, 저온저장
- ㅇ 수매비축

가격폭등시

- ㅇ 저온저장물량 방출, 예비묘공급
- ㅇ 수매물량 방출, 직거래 확대

□ 무・배추 저온저장을 통한 출하조절

- 저온저장시기 : 소비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시
- 고랭지배추 출하기(7~9월), 김장배추(11월)
- 저장물량규모 : 시기별 저온저장 보관능력을 감안하여 추진

□ 가격폭락시 산지폐기

○ 요건 : 도매시장 또는 산지가격이 예시가격이하로 하락될 것이 예상되어 시장개입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

○ 물량 : 회원농협 및 중앙회 적립금의 20% 해당 물량

□ 예비묘 공급

○ 시기 : 재해 등으로 인한 절대면적 감소를 대비하여 사전에 묘를 확보하여 공급

○ 품목: 고랭지, 가을배추

□ 계약물량 생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 추진

- 0 목 적
- 계약재배 참여농가 수취가격 제고
-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로 소비자의 이익증대 및 소비촉진 도모
- 산지와 소비지사무소간 직거래로 생산농가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농협 역할 제고
- 물량:계약물량의 10% 수준
- 추진방법: 도시지역 구청, 동사무소, 부녀회, 종교단체 등과 연계 추진

□ 가격폭등시 염가판매 추진

○ 대상품목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 염가판매장소: 7대도시소재 회원농협판매장, 유통센타, 하나로마트

0 추진시기

- 태풍, 폭우 등으로 재해지역 주민에게 긴급 공급필요시
- 소비지 및 산지가격이 최근 3개년 평균가격보다 상당히 높은가격 형성시
- 가격불안이 예상되는 설날, 추석 등 성수기
- 판매가격 : 소비지 형성 판매가격보다 10%이상 인하판매

바.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

□ 목적 : 채소류 계약재배등 수급안정제도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 사전에 최저보장가격을 발표하고, 가격폭락시 최저보장가격에 수매를 실시하여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

□ 대상농가 : 계약재배 참여농가

□ 사업시기 : 도매시장 또는 산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수준이하로 하락될 것이 예상되어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최저보장가격 : 최저보장가격협의회에서 결정

○ 저장성이 없는 품목(무·배추등): 경영비 + 자가노력비의 30% 수준

○ 저장성이 있는 품목(고추,마늘,양파등) : 경영비 + 자가노력비의 100% 수준

(원/kg)

연도	가을무	가을 배추 (월동)	난지 마늘	양파	대파	書子	봄배추	교랭지 무	고랭지 배추	한지 마늘	五条
'01	85원/kg	65(75)	_	_	235	105	95	130	130	_	2,200원 /600g
,00	69	55	1,250	200	-	90	85	105	110	1,850	2,000
'99	65	50	1,200	180		90	85	95	100	_	-
'98	65	50	1,200	180	-	-	-	_	-	-	_

사. 교육 및 홍보

□ 산지 조합 임직원등 교육 강화

- 조합실무자 대상,집합교육실시로 교육 강화
- 재배농가(작목반) 교육 및 홍보 : 조합별 생육 단계별 2회이상 실시
- 사업 홍보전단 조제 공급(70,000매)

채소수급안정사업 『핵심농협제』도입

가. 목적 □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수급조절과 농가소득 안정기능 뿐만아니라 상품화·마케팅기능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나. 사업규모

□ 대상조합: 채소수급안정사업 추진농협 중 선도농협 10~20조합 선정

□ 자금지원 : 조합당 20~100억원 집중 지원

다. 사업방식

- □ 사업농협 실정을 감안하여 매취형·수탁형 동시 추진
- 매취형은 현행 계약안정대를 적용한 정산방식으로 손익이 농협에 귀속
- 수탁형은 손익이 농가에 귀속되고 최저가격 보장
- □ 생산기술,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이 높은 농가위주로 계약
 - 농가가 신청만하면 무조건 계약하던 관행에서 탈피

라. 수급조절 및 마케팅 기능 강화

- □ 핵심농협이 수급조절의 중심체적 역할 수행
 - 성출하기 출하, 수매비축 등을 통한 산지가격 선도
 - 가격하락시 산지폐기 등 출하조절 중점 추진으로 수급안정 도모
 - 연합판매 등을 통한 출하물량 공동 조절
- □ 중앙본부 등의 상품화, 마케팅 활성화 중점 지원
 - 무,배추 : 연합판매 등을 통한 산지 유통시장 지배력 강화
 - 고추,마늘,양파,당근 : 산지유통센타, 가공공장 등과 연계하여 소비자 요구에 맞는 상품개발 판매

마. 기대효과

- □ 사업농협의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으로 사업물량 확대
- 사업물량 확대로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안정 역할 강화
- □ 생산·출하조절(수급조절)에서 유통개선(상품화·마케팅)까지 일원화
- □ 품종통일, 작목반육성, 공동선별, 연합판매 등 마케팅 기능 강화로 상품화가 부진한 노지채소 농업의 산지유통활성화 도모

2. 사업대상 선정기준의 결정과정

□ 사업대상: 사업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주산지의 회원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 사업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주산지의 회원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채소수급안정사업 참여에 제한 없음

□ 선정기준 결정 과정이 없음

○ 선정기준인 주산지는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생산지역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지정

3. 선정기준 및 선정기준의 논리적 근거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주산지 관내 산지농협과 영농조합법인

○ 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등 수급불안 품목

O 주산지는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

< 대상품목의 주산지 지정기준>

苦 牛 。	지 역 : : : : : : : : : : : : : : : : : :	면적
가을무,배추	읍.면	50ha이상
고랭지무,배추	"	30 ″
고 추	, II	50 "
마 늘	II .	30 "
양 파	n,	30 "
파	시.군	100 "

□ 선정기준의 논리적 근거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의 관련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4조에 명시
 - 주산지는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생산지역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지정
- 주산지는 계약재배 및 가격 폭등락에 따른 조치가 용이하여 수급안정의 효과를 높임

- 4. 선정결과 및 선정결과의 기준과의 부합 논거
 - □ 선정결과
 - 주산지에 위치한 회원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실적이 높게 나타나 선정기준과 선정결과에 차이가 없음
 - □ 사업대상 품목의 선정기준이 주산지로 한정되어 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산지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은 사업 참여가 없음.
- 5.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 또는 수혜 대상이 다수인 경우, 특정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를 선정한 절차 및 논거
-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① 지침통보(농림부, 중앙회)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방식 등 사업추진 세부계획 설명

② 신 청 (회원농협)

- 사업대상자는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 홍보 후 농가로부터 사업참여 신청 접수, 농협 시군지부, 지역본부에 전산시스템(경제종합정보시스템) 에 의거 신청
 - ※ 사업농협별로 사업시기에 맞추어 "계약재배사업 추진대회" 개최
 - 조합별 사업추진팀 구성 : 전무, 상무, 판매과장 등으로 구성
- 농협시·군지부, 지역본부는 신청내역과 자체자금 조달 능력을 감안하여 중앙본부에 신청

③ 대상자 확정 (중앙회)

- 농협 중앙본부는 전년도 사업실적, 자체자금 조달능력, 융자금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규모 최종 확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사업자는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보다 실제 사업실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6. 융자조건 산정기준의 논거

□ 자금지원기간 : 품목별 정식기(파종기) ~ 판매기

O 무 ,배추, 파, 당근 : 11개월, 고추 : 15개월, 마늘,양파 : 19개월

□ 지원금 금리 : 무이자

<무이자 지위사유>

- 동 사업은 수급이 불안한 무,배추,마늘,양파,고추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손실위험이 상당히 높음.
-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도 계약주체인 생산자단체(농협, 영농법인)는 계약가 격으로 수매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임.
- O 가격폭등락시 수급안정을 위한 인위적인 출하조절로 생산자단체는 사업손실 가능성이 높음
- 무이자 자금의 운용수익은 계약주체인 생산자단체의 수익으로 처리 되지 않고 별도 계정에 적립한 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에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적립계정 : 채소수급조정자금

※ 채소수급조정자금 사용액

(단위:백만원)

97	'98	'99	'00	'01	계
3,951	5,539	8,547	13,790	9,587	41,414

7. 융자조건 산정절차

- □ 수요자 및 사업집행기관의 의견과 사업별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지원원조건 검토
- □ 기금총괄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이 검토한 지원조건을 타 사업과의 형평성 및 재정경제부등 타부처와 협의
- □ 협의된 지원조건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로 확정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지표명

2.3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가 중 치

40%

평 가 내 용

- (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ㅇ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노력
 - ㅇ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 체계의 합리성
 - ㅇ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ㅇ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및 조정
- (2) 사업별 운영성과
 - ㅇ 목표 설정의 합리성
 - ㅇ 사업별 목표달성 정도
 - ㅇ 사업운영 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및 전년대비 개선 실적
 - ㅇ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 정도

평가내용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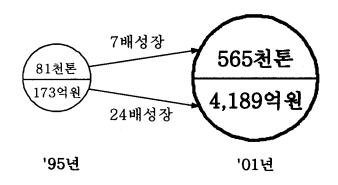
1. 사업실적 및 성과분석

가. 사업실적

子 분	'95	'96	'97	'98	99	'00	' 01
물량	81천톤	232	247	357	408	498	565
자금	173억원	1,100	2,475	2,685	3,000	3,500	4,189
전년대비성장률 (물량)		186%	6%	44%	14%	22%	13%

나. 성과 분석

□ 사업물량은 '95년대비 7배, 자금은 24배 성장으로 사업기반 구축



□ 계약물량 출하조절로 사업시행전 대비 가격폭등락 완화 (수급안정에 기여)

《도메시장 가격진폭율 완화효과》									
		'95(사업시행전)		'01(사업시행후)	(완화효과)				
배	추	576%	\rightarrow	299%	277%				
마	늘	270%	\rightarrow	38%	232%				
양	파	374%	\rightarrow	220%	154%				

※ 가격진폭율: (최고월평균가격-최저월평균가격)/최저월평균가격 ×100

□ 수급불안 채소류의 농가소득안정 시스템으로 정착

- 농가들이 공급과잉 구조하에서 계약재배사업의 장점 인식
- 농가의 계약재배 요구물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전량 응하지 못하는 실정

<소득지지효과: 연평균 2.163억원>

- 직접소득지지효과('95~'01) : 429억원(연평균 61억원)
 - 가격하락시 산지폐기 지원, 판매차액 보전 등
- 간접소득지지효과('95~'99): 1조 510억원(연평균 2,102억원)
 - 계약재배물량 수매 및 출하조절에 따른 소득효과

□ 과잉생산 및 축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가격 하락에 대응조치로 농가소득안정 체계 구축

<'01년 대파사례>

- 과잉생산과 수요 감소로 대파가격 하락과 약세가 지속
- 가격동향(도매) : ('00.10)927원/kg → ('00.12)596 → ('01.1상)464
- 계약물량 일부 산지폐기 및 농협 대파전국협의회 주관으로 유통협약을 통한 자율감축을 통한 산지가격 지지
- 계약물량 산지폐기 : 1.980톤
- 유통협약('01.1.10) 자율감축 : 449ha(19개 농협참여)
- ☞ 추진효과 : 농가 수취가격이 121억원 증가(자료 : KREI)

<'01년 양파사례>

-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3%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22% 증수
- 양파 생산량 : ('00) 878천톤 → ('01) 1,074(22% ↑)
- 계약물량 조기수매, 조생종양파 유통협약체결에 의한 산지폐기로 성출하기 가격지지
- 계약재배물량 100,688톤중 산지폐기 20,087톤(20%) 실시
- ☞ 추진효과 : 농가소득 지지효과 183억원(자료 : 농협 조사부)

2.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노력

	문 제 점	개선 사항	개선 효과
대농가 정산기준	대농가 정산시 차량단위, 등 명확한 기준 없음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계 약단위(농가단위)로 정산	명확한 정산처리로 계 약농가의 불만 해소
계약안정대 탄력 운영	계약안정대를 ±20%로 고정하여 사업시행함에 따라 사업손실부담 중대	사업이 품목 특성을 감 안하여 ±10%~±20%내 에서 자율 운용	가격하락시 사업농협 손 실부담 감소, 가격상승시 계약농가 이익 증대
계약농가 정산시기 및 정산방법 변경	고추, 마늘, 양파 품목의 경우 판매완료 후 정산함에 따라 계약농 가 불만 발생	고추, 마늘, 양파 품목의 경우 산지가격을 감안하여 수매시점 농가정산 방법으로 전환	사후정산에 따른 조합 위험 감소 및 농가불만 감소, 수매시 산지가격이 반영되므로 수매율 제고
생육단계별 생산조정제 도입	사전적 생산조정없이 사후적적 출하조절로만 수급안정을 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농업관측정보 신속전파 및 재배면적 조정 홍보, 재배면적 조정농가에게 계약재배 우선권 부여, 최저보장가격 수매물량 차등 배정, 계약단가 차 등 등 인센티브 제공	율적인 재배면적 조정 체계 구축, 사전적 생산
계약물량관리 세분화	계약시에 지원된 자금이 출하(수매), 병충해, 기상재해, 위약물량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종료시까지 자금을 지원함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낮아짐	계약물량을 출하(수매), 병충해, 기상재해물량, 위약물량, 자연생산감소 로 구분관리하고 위약, 자연생산감소에 해당하 는 자금은 조기 회수	사업자금 운용의 효율 성제고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 센티브제도 도입	사업결과 우수사업자에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활성화 유도가 지난	담당자 특별승진 도입, 사업수익의 5%내에서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	담당자 업무의욕 제고 로 사업 활성화 도모

《사업관리 및 자금운용의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가. 전산관리 개요

- 농협 경제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자금과 물량을 연동하여 관리
- 자금조성 및 운용, 적립금관리 등을 품목별, 사업농협별 구분관리
- 사업계약에서부터 수매, 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과정을 관리

나. 전산관리 효과

- 정확한 계약물량 관리로 적절한 수급안정대책 추진 용이
- 사업자금 조성·운용, 적립금관리 등 자금관리의 투명성 제고
- 적립금자동계산, 사업실적 자동보고 등으로 신속·정확한 사업관리

〈경제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경제종합 정보시스템이란 ?

농협의 금융업무를 제외한 농산물 판매업무 등을 통합, 연계 처리하여 농협의 업무 생산성과 운영 효율 및 표준업무 적용을 제공하고, 조합원에게는 통합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협의 판매사업을 선진화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 ㅇ 시스템 운영 목표
 - 조합원, 회원농협, 중앙회를 위한 농산물 판매업무 등의 통합 지원
 - 금융업무와 종합 연동하여 시스템 구축
 - 업무처리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 현장중심의 정보화 추진으로 사용자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

3. 효율성 평가지표와 관리체계의 합리성

가. 평가체계

| 사업대상자 자체평가 (1차) | (2차) | (2차) | (3차) | (3차) | (3차) | 우수 사업대상자 현지 평가하여 제출 | 확인 평가 | 확인 평가

나. 주요 평가 항목

- O 재배농가, 작목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O 사업자금 적기 차입 및 지원
- 계약실적(성장율, 관내 생산량대비 점유비, 신청대비 계약실적 등)
- 출하실적(출하계획 수립, 고정 대량거래처 확보, 계통출하비율, 계약실적대비 출하율 등)
- O 규격, 포장 출하비율

다. 인센티브 및 페날티 제도

□ 사업우수 농협, 농업인 인센티브 지원

- O 손실대비 운용자금 지원
- 조합수 : 참여조합수의 20%
- 금 액: 사업자금의 10~20%
- 방 법: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여 금년도 사업자금 지원시에 지원
- 조합상호지원기금 지원(무이자)
- 지원대상
- 계약 및 출하실적, 직거래 실적, 공동출하실적 등이 우수한 조합
- 불가피한 손실 과다 조합
- 생산조정 우수농협
- 지원금액: 60억원(조합당 100~200백만원), 재원은 농협중앙회 자체자금
- O 최저보장가격 우선 보장
- 계약재배 3년이상 참여농가는 예시가격(또는 경영비) 우선 지원

□ 사업부진 농협, 계약미이행 농업인에 대한 폐날티 부여

- 사업부진 농협
- 사업배제 및 사업물량 제한 : 위약물량 과다조합, 손실과다 조합 등
- 미집행자금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계약 미이행 농업인
- 계약보증금(중도금 포함) 회수 및 위약금 징수
- 계약물량의 10%이상 위약농가는 가격하락 또는 병충해 발생 등으로 경영비 보전시 배제하고, 차년도(1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
- 최저보장가격 수매물량 차등, 계약단가 및 물량 차등 등 사업농협 자체적으로 제재

4. 부실채권 관리체계 설명 및 합리성에 대한 논거

□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계통기관인	회원농협	위주로	지원되므로
부실채권 발생	생 위험도가 매우	낮음.				

- □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 사업 전반(금융업 포함)에 대해서 매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는 등 회원농협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평가
 - 경영개선 권고조합에 대해서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지사무소 운용의 효율화, 경비절감, 위험자산 감축 및 고정자산의 처분, 출자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경영개선 요구조합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조합에 대한 요구사항 뿐만아니라 합병권고,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고정투자, 신규사업진출 및 외부투자의 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5. 과거 3년의 부실채권 규모, 비율 및 회수실적의 추이

□ 부실채권 없음

6. 환경 변화 및 이에 대응한 조치

□ 유통환경의 변화

- WTO 차기 협상의 급진전, 중국의 WTO가입, FTA 진행 등으로 국내 채소류의 생산·유통·소비·수출입등 전 부문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개방화와 채소류의 생산성의 향상으로 농산물이 과잉공급 기조를 나타나면서 국내와 해외 또는 국내 농산물간의 경쟁이 치열
- 농산물의 경쟁 심화는 상품차별화 및 품목별 전문화 촉진
- 쌀 소비의 급감에 따른 논의 벼 재배면적 감소등에 따라 채소류등으로의 작목 전환 증가와 채소류 소비 정체등에 따라 공급과잉 기조 만성화
-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농산물 소비가 고급화하고 안전성에 대한 수요증가

□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년 사업 제도개선 실시

- O 재배농가, 사업참여자인 생산자단체로부터 수시 제도개선 의견 수렴
- 그동안의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고, 매년 제도개선 회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 후 확정 (매년 1월 중)

□ 그 동안의 제도개선 결과

구 분	99	(100	01
제도개선 건수	8건	5건	12건
주요 제도개선 내용	○출하불능분에 대한 경영비 지원 방법 ○출하전 정산제 도입 ○위약금 징수기준 조정	아사업대상자 관리 강화이계약단가 의무조정제이위약농가 제제 강화아자금관리 명확화	이대농가 정산단위 명확화이계약안정대 자율 운용이계약물량 관리 세분화이영농법인 관리 강화

평가내용 2.3.2. 사업별 운영성과

1. 사업목표 및 목표설정의 논거

□ 생산예상량, 전년도사업실적, 사업증감 추세, 예상 계약단가, 품목별 사업참여의향, 자금 증가율등을 종합 검토하여 품목별로 목표 설정

2. 목표대비 달성도와 그 논거

가. 2001년 사업실적

- □ 계획대비 101% 달성, 적정생산량 대비 10.6% 점유
- 적정생산량 대비 사업물량 점유비 증가 추세 ('98) $6.7\% \rightarrow$ ('99) $7.7\% \rightarrow$ ('00) $9.4\% \rightarrow$ ('01) 10.6%

(단위 : 천톤, 억원)

구 분	적정생산량	계	획	실	적	대비	(%)
TE	(A)	물량(B)	자금	물량(C)	자금	C/A	C/B
합 계	5,300	560	4,500	565	4,189	10.6	101
봄무배추	750	50	150	44	134	5.9	88
고랭지무배추	450	155	550	136	493	30.2	87
가을무배추	2,100	130	580	179	527	8.5	138
고추	190	10	800	7	633	3.7	72
마늘	420	45	1,370	47	1,405	11.2	104
양 파	890	140	780	123	788	13.8	89
파	350	15	130	12	86	3.4	80
당 근	150	15	140	17	123	11.3	115

< 연도별 사업실적 >

'96	⇒	' 97	⇒	'98	⇒	'99	⇒	,000	⇒	'01
물량:232천톤		247천톤		357천톤		408천톤		498천톤		565천톤
금액1,100억원		2,475억원		2,685억원		3,000억원		3,500억원		4,189억원
성장율(물량)		6%		44%		14%		22%		13%

3. 사업운영의 성과

□ 「사업효율성 제고노력」부문의 "1. 사업실적 및 성과분석" 참조

4.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조사 결과분석 및 결과반영 실적

《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

- □ 조사일자 : '01. 12월
- □ 조사대상 : 사업참여조합 330개 중 주요농협 70개 조사
- □ 조사결과
 - ㅇ 채소수급안정사업의 채소수급안정 기여도
 - 상당히 기여(39%), 기여도가 높음(54%), 기여도 미미(4%), 기여도 없음(3%)
 - ㅇ 계약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산지가격 기여도
 - 상당히 기여(33%), 기여가 높음(59%), 기여도 미미(6%), 기여도 없음(2%)
 - * '00년 조사결과에 비해 기여도가 높다고 조사됨.('00년 조사결과) 상당히 기여(31%), 기여도가 높음(55%)
 - ㅇ 생산자단체 판매사업 활성화 기여도
 - 상당히 기여(42%), 기여가 높음(50%), 기여도 미미(6%), 기여도 없음(3%)
 - ※ '00년 조사결과에 비해 기여도가 높다고 조사됨.
 ('00년 조사결과) 상당히 기여(30%), 기여도가 높음(56%)
 - ㅇ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의 사업참여 사유
 -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최저보장가격이 있기 때문(71%)
 - 산지수집상보다 가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7%)
 - 조합직원과의 유대관계 때문(6%)
 - 개별농가 판매가 어렵기 때문 등(16%)

□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거 매년 사업부문 제도개선 실시

ㅇ 제도개선 실적 : ('98년) 6건, ('99년) 8건, ('00년) 5건, ('01년) 12건

5. 성과관리체계 및 그 운영

□ 성과평가 관리 채계

사업 품목별 평가 (1차)	→	전 사업품목 평가 (2차)
품목별 사업종료시 평가		매년 1월 중 평가

ㅇ 「사업효율성 제고노력」부문의 "1. 사업실적 및 성과분석"참조

□ 평가결과 활용

- ㅇ 차년도 사업 제도개선사항에 반영 추진
 - 제도개선 내역: 「사업효율성 제고노력」부문의 "1.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노력"참조
- ㅇ 차년도 사업 제도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은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추진

(4) 과실수급안정사업

I. 사업현황22	23
 사업개요 / 2. 사업여건 / 3. 사업정책방향 2000까지 주요실적 / 5. 2001 주요실적 요약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2	26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2	35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2 2.3.2 사업별 운영성과2	

사업정책기관	농 림 부
	과수화훼과(☎500-1877)
사업실시기관	농협중앙회
	과수화훼부 과수팀(☎397-7236)

여 백

I.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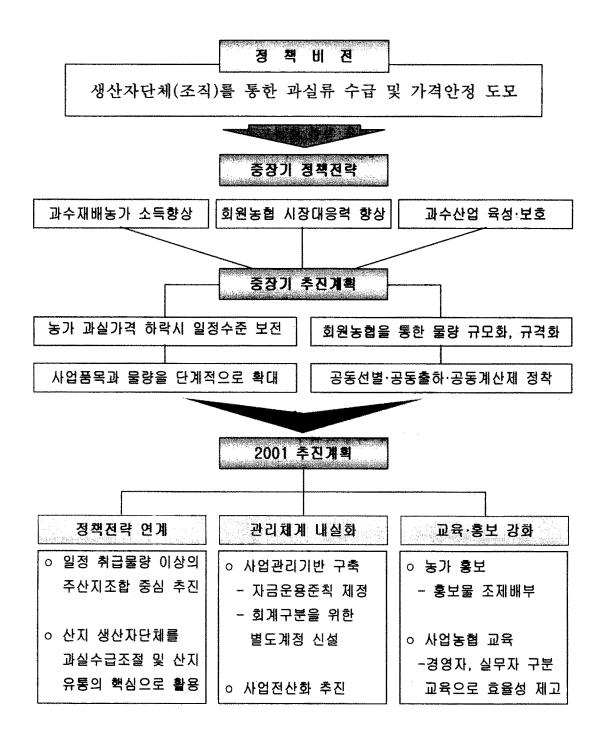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통한 출하조절능력 배양으로 과실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O 생산자단체가 산지시장을 주도하여 중간상인 견제 및 시장교섭력 제고로 과실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도모
- □ 사업대상 : 회원농협(사업대상품목 주산지 소재)
- □ 사업방식 : 농안기금 융자사업
 - 농협중앙회에서 회원농협에 자금을 지원하고
 - 회원농협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농가와 출하계약을 체결한 후 수확기이후에 계약물량을 수탁 또는 매취하고, 시중가격동향에 따라 판매후 정산기준가격에 따라 정산하고, 차액을 보전 또는 손익 배분
- □ 사업담당기관 : 농림부 과수화훼과
- □ 사업실시기관 : 농협중앙회 과수화훼부

2. 사업여건

- □ '90년대 하반기부터 과실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었으나 과실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
 - 개별농가 또는 산지조합 차원에서 과실 출하를 조절하기 위한 제도가 없어 수확기 홍수 출하와 가격하락 추세 심화
- □ 또한, 개별농가 차원에서는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증가와 고급화·다양화되는 소비자 기호 변화 등에 능동적인 대응이 곤란
 - 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선별·저장 등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은 확충되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금과 제도 미비
- □ 산지조합 주도로 공동 선별·출하를 통해 출하조절, 품질향상 및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3. 사업정책방향



4. 2000까지 주요실적

"2001년도에 신규 도입된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5. 2001 주요실적 요약

□ 여론수렴 및 도상연습을 거쳐 사업지침 확정

- 주산지 농협 실무책임자 협의회('00.10.27), 농림부와 기본방향 협의('00.12.9)
- 사전협의회 개최(1.4~1.5, 조합장 및 실무자), 산지조합 도상연습 실시('01.2.7)
- 세부시행지침 작성시달('01.3.15)
- 자금운용준칙 제정('01.3.31) 및 계정과목 신설('01.4.13)

□ 사업 조기정착과 농가 호응도 재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지도 실시

- 현장 순회교육(3.16~3.22) : 6회 418명
- 사업내용 매체홍보(3월~6월) : 신문, 하나로전자사무실, 인터넷 등
- 대농가 홍보자료 조제·배부(4.1): 50천부
- 사업조합 현지지도(4.8~6.29)

□ 사업자금 적기 확보, 배정 및 대농가 계약추진(5.18~7.10)

o 계약체결실적: 93%

구분	조합수	농가수	계약물량	자금지원
	개소	<u>\$</u>	천톤	억원
계	76	5,016	44	911
사과	32	2,074	21	405
明	44	2,942	23	506

※ 조합당 평균 계약규모 : 566톤, 6.4억원, 66농가

□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물량 판매상황 점검 및 지원

- 사업물량 판매계획 관계기관협의회 개최(9.18) : 정부, 농협중앙회, 회원농협
- 사업물량 마케팅활성화 토론회 개최(11.16)
 - 과실류 공동계산제와 연합사업 방안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표명

2.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가 중 치

40%

평 가 내 용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

- ㅇ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ㅇ 사업 활동과 사업 목적의 연계성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융자/보증 대상 선정기준 및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ㅇ 융자/보증 조건 산정의 합리성

평가내용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

1. 신규사업 추가 여부 및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

가. 신규사업 필요성

- □ '90년대 하반기부터 과실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었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
 - 과실류는 고소득작목으로 인정되어 재배면적 급증에 따라 수급 불안 초래
- □ 개별농가 출하는 물량이 적어 시장교섭력이 부족하여 제값을 받지 못함
 - 등급별 물량 및 맛에 차이가 심하여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규격으로 공급 지난

나. 신규사업 추진실적

- □ 여론수렴 및 도상연습을 거쳐 사업지침 확정
 - 주산지 농협 실무책임자 협의회('00.10.27). 농림부와 기본방향 협의('00.12.9)
 - 사전협의회 개최(1.4~1.5, 조합장 및 실무자), 산지조합 도상연습 실시('01.2.7)
 - 세부시행지침 작성시달('01.3.15)
 - 자금운용준칙 제정('01.3.31) 및 계정과목 신설('01.4.13)

□ 사업 조기정착과 농가 호응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지도 실시

- 현장 순회교육(3.16~3.22): 6회 418명
- 사업내용 매체홍보(3월~6월) : 신문, 하나로전자사무실, 인터넷 등
- 대농가 홍보자료 조제·배부(4.1): 50천부
- 사업조합 현지지도(4.8~6.29)
- □ 사업자금 적기 확보, 배정 및 대농가 계약추진(5.18~7.10) : 계약체결실적 : 93%
- □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물량 판매상황 점검 및 지원
- 사업물량 판매계획 관계기관협의회 개최(9.18) : 정부, 농협중앙회, 회원농협
- 사업물량 마케팅활성화 토론회 개최(11.16)
 - 과실류 공동계산제와 연합사업 방안

2.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및 타 기금 또는 타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목록

○ 해당없음 : 과실계약출하사업은 재배농가와 계약체결을 통하여 파종기에 물량을 확보한 후 수확기에 수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유사사업은 없음

3. 본 사업의 차별성과 상대적 우위성

가.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 □ 계약체결한 물량을 활용한 출하조절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자금지원를 통하여 확보한 물량을 활용하여 수급 불안시 다양한 수급안정대책 추진으로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 계약출하한 과실의 판매가격이 계약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농가에 가격차 보전
 - 과수농가는 판매가격 하락에 불구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가능
 - 가격차보전 재원 : 사업자금 운영수익
- □ 공동선별·공동출하를 통한 상품성 제고와 수취가 제고, 산지유통시설 활용율 제고
 - 회원농협은 계약출하된 과실을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가능케 하여 유통개선 촉진
 -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과정에서 고품질 물량비중이 높은 농가는 수취금액이 많아지고 그렇지 못한 농가는 적어져 농가의 상품성 제고 노력 촉진 가능
 -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따른 선별기, 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 가동율 제고 가능

나, 본 사업의 상대적 우위성

- □ 계약을 통한 출하의무 부여로 물량을 산지농협으로 집중하여 시장대응력 제고
 - 회원농협은 농가가 과실을 조합에 출하하는 조건으로 농가와 출하계약 체결
 - 계약보증금으로 품대의 30%를 농가에 무이자 지급하여 영농철 자금부담 경감
 - 농가는 계약물량의 과실을 생산하여 산지농협에 의무출하
 - 계약물량을 산지농협에 출하하지 않고 시장에 개별출하할 경우 위약처리
- □ 농가와 계약방식을 이원화하여 계약 참여율 제고
 - 회원농협과 농가간 계약을 수탁과 매취로 구분하여 농가의 희망에 따라 실시

4. 본 사업의 기금설치 목적과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에 대한 분석

가, 과실계약출하사업은 농안기금 설치목적에 부합

농안기금 운용목표	과실계약출하사업 목적
◈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가격안정 도모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통한 출하조절능력 배양으로 과실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 생산자단체가 산지시장을 주도하여 중간상인 견제 및 시장교섭력 제고로 과실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도모

□ 기금설치 관련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애관한법률』의 사업범위

-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간, 생산자와 수요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법 제6조①항)
- 기금은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장려 또는 조절, 보관, 상품성 제고 등을 위해 융자 또는 대출에 사용할 수 있음(법 제5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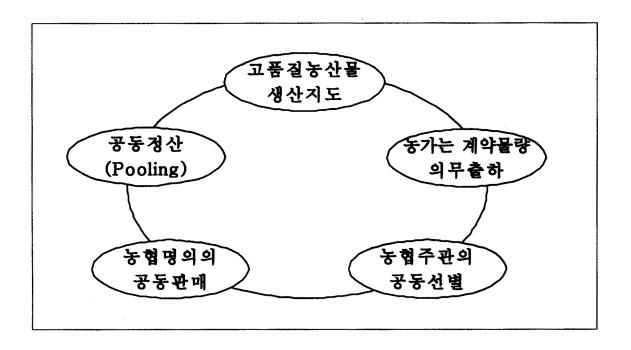
□ 과실계약출하사업 추진방향

- 정부와 농협이 공동출연으로 계약출하사업자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가와** 등급별로 출하계약을 체결
- 출하물량을 공동선별, 공동출하후 공동계산을 목표로 추진
- 일정물량을 보관, 단경기에 출하하고 기준가격에 따라 가격차보전 또는 기금 조성
- 나. 농산물 수급정책의 기조가 정부주도약 가격안정위주에서 생산자단체(조직) 주도의 수급안정정책으로 개방화시대로의 변화에 적합
- WTO 채제하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되고 정부개입이 어려지고 있는 상황과 생산성 향상등에 의한 공급과잉으로 농산물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 하기에는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 □ 산지 유통단계에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산지유통센타에 의한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효율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 사업은 생산자단체 (조직)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0

평가내용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내용



□ 판매를 전제로 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

○ 재배방법 등 생산관리와 더불어 수확후 관리기술을 통해 품질의 질을 높이는 상품화 노력 필수

□ 농가는 계약물량 농협에 의무출하

- 농가는 계약과실을 계약된 출하시기에 조합의 지정장소(조합APC, 선과장, 임차시설 등)에 나과(裸果)상태로 P박스 등에 담아 벌크출하
- 농가(또는 작목반)가 개별로 시장에 출하 금지

□ 농협 주관의 공동선별 / 상품성 제고(부가가치 창출)

- 출하된 농산물을 산지유통시설(임차시설포함)을 이용 공동선별・포장
 - 선별의 객관화로 속박이 근절 : 농협이 직접 또는 「선별작업단」을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실시
- O 소비자 Needs에 맞는 상품개발
 - 포장개선(소포장 ,기능성 포장재),브랜드화 등 상품 차별화로 경쟁력 제고
 - 표준규격화된 고품질 농산물로 소비자 신뢰구축
- 농산품의 규격화, 규모화, 조합 유통시설의 이용률 제고
- 수확후관리기술(PHT)적용

□ 농협 명의의 공동판매 / 농가수취가격 극대화

- 농협은 가격동향,시장동향,소비자 구매성향 등을 세심히 조사후 치밀한 판매계획을 세워 농가수취가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함
- 물류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지속적인 판로개척
- 물량의 규모화, 농협의 마케팅능력 제고, 대형 신유통업체 선점

□ 공동정산 (Pooling) / 사업손익 배분

- 판매가 완료되면 판매대금에서 기지급한 선급금(계약금), 출하 및 판매관련 제비용 조합취급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농가에 대금지급
- 농협은 노력에 상응하는 취급수수료 정당 징수 →농협수지 기여
- 같은 품목.등급은 원칙적으로 개별계산 아닌 공동계산 하여야 함
- 판매결과에 따라 계약농가와 수익배분 또는 손실분담

2. 사업대상 선정기준의 결정과정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품목 주산지 회원농협

○ 대상품목 : 사과, 배

○ 대상조합 : 해당품목 공동판매사업 실적이 아래 규모 이상인 회원농협

- 사과 : 사과 공동판매실적 500톤 이상인 조합

- 배 : 배 공동판매실적 500톤 이상인 조합

3. 선정기준 및 선정기준의 논리적 근거

□ 선정기준 우선순위

대 상 圣 養	대상농가
① 2000년도말 사과, 배 공동판매사업실적 규	① 정부의 생산조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농가
모가 큰 조합	
② 산지유통시설(APC, 선과장, 저온창고) 보	② 농협을 통한 출하량이 일정율 이상인 농가
유조합	
③ 사업신청물량 및 농가수 등이 많은 조합	③ 고품질 우수과실(특품, 상품) 생산농가

□ 선정기준의 논리적 근거

○ 대상조합

- 농가 계약출하물량을 산지농협에서 수탁 또는 매취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산지농협의 공동판매능력이 있어야 함
- 산지농협으로 사업물량을 집중하여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 시설 보유조합에 우선순위 부여함이 바람직

○ 대상농가

- 과잉생산 억제, 생산비 절감, 품종갱신을 통한 출하시기 안배 등 정부 생산조정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상품성이 없는 저급품 과실은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과실 품질의 상향평준화 유도

- 4. 선정결과 및 선정결과의 기준과의 부합 논거
- □ 기본적으로 사업대상품목을 일정물량 이상 취급하는 산지농협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산지농협은 사업참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함
- □ 따라서 선정기준과 선정결과와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 5.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 또는 수혜 대상이 다수인 경우, 특정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를 선정한 절차 및 논거
- □ 사업대상자 : 사과, 배 주산지 회원농협
-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O 사업대상조합을 중심으로 사업방식 등 사업추진 세부계획 설명('01. 3.16~ 3.22)
 - 사업대상자는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 후 농가로부터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01, 3.20~ 4.20)
 - 신청결과를 취합하여 농협 시군지부, 지역본부에 보고('01. 4.21)
 - 농가 신청물량이 조합의 사업취급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급능력 범위 내에서 사전 조정
 - 시·군지부는 관내 지역조합으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관할 지역본부로 제출('01. 4.23)
 - 지역본부는 관내 시군지부와 품목조합으로 부터 접수된 회원농협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신청물량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조정 후 중앙본부로 제출('01. 4.25)
 - 중앙본부는 지역본부로부터 접수된 회원농협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생산규모 대비 신청물량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 및 자금관리 능력 등을 재차 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조합 확정

6. 융자 조건 산정기준의 논거

□ 자금지원기간 : 품목별 개화기 ~ 판매기

○ 사과, 배 : 14개월(5월~익년 6월)

□ 지원금리 : 무이자

<무이자 지원 필요성>

- 국내 과실류 가격이 과잉생산, 수입물량 증가로 변동 폭이 커짐에 따라 가격하락시 농가에 대한 가격차 보전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서 추진과정에서 손실위험이 상당히 높음
 - 출하후 순판매가격(수탁형) 또는 매취시기 산지가격(매취형)이 계약가격에 미달할 경우 산지농협은 일정범위 내에서 농가에 가격차를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임
- 무이자 지원에 따른 자금운용수익은 계약주체인 생산자단체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계정에 적립한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에 사용하고 있음
 - 적립계정은 과실계약출하조정자금이며, '01년말 적립액은 1,868백만원임
- ※ 적립금(과실계약출하조정자금) 사용 용도
 - ① 과실계약출하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손실(가격차) 보전
 - ② 기타 과실계약출하사업에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등
 - 집행한도 : 연도말 기준 "과실계약출하조정자금" 잔액의 5%범위 이내

7. 융자 조건 산정절차

- □ 수요자 및 사업집행기관의 의견과 사업별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기관이지원조건 검토
- □ 기금총괄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이 검토한 지원조건을 타 사업과의 형평성 및 재정경제부 등 타 부처와 협의
- □ 협의된 지원조건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로 확정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双亚명

2.3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가 중 치

40%

병 가 네 용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ㅇ 사업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노력
- ㅇ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 ㅇ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조정 노력

2.3.2 사업별 운영성과

- ㅇ 목표 설정의 합리성
- ㅇ 사업별 목표 달성정도
- ㅇ 사업운영 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및 전년 대비 개선 실적
- ㅇ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 정도

평가내용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1. 사업실적 및 성과분석

가, 사업실적

□ 사업비 : 982억원

□ 사업량: 44천톤(계획 47천톤의 93%)

○ 계약물량 시장출하비중 : 전국 생산량의 6% 수준

	구 분		'01 계약측	주 진실적	
	1 ਦ	조합수	농가수	계약물량	자금지원
ĺ		개소	<u>ō</u>	천톤	억원
	계	76	5,016	44	911
	사과	32	2,074	21	405
	明	44	2,942	23	506

※ 조합당 평균 계약규모: 566톤, 6.4억원, 66농가

나. 성과분석

□ 계약출하물량에 대해 공동선별·공동계산제 도입

○ 천안배원협, 나주배원협, 상주외서농협, 울주서생농협, 울산원협 등

□ 전용 포장박스 신규개발 및 브랜드화로 계약출하물량의 유통 차별화

- 임금님표 배(나주배원협), 간절곶 꿀배(울주서생), 드림원 배(순천농협)
 - 중소형과를 이용한 "깍지않고 먹는 사과" 브랜드화, 소비자들로부터 호평

□ 사업참여농협의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가동율 제고

- 비파괴선별기 신규도입: 안성과수, 나주배, 나주세지, 나주금천, 울산원예
- 판매사업물량의 규모화, 공동선별, 저장출하를 통한 APC 가동율 제고

사례) 울주서생농협: ('00년산) 취급물량 100톤, 가동일수 20일

('01년산) 취급물량 400톤, 가동일수 90일

□ 무이자 계약금을 영농철에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자금부담 경감

- 계약물품대의 30%인 149억원 지급(농가당 평균 3백만원)
- ★ 조합별 '01사업추진실적 종합평가 계획 ('02. 8)

2.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와 방향

□ 사업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를 통해 과수농가 소득안정 및 수급안정의 기본제도로 정착

- 사업평가 제도화로 지원 차등화, 사업시행상 대두되는 문제점 개선보완
- 사업평가를 통해 단계적 사업확대방안 검토 추진
 - 감귤, 포도 등 저장성이 약한 과실에 대해서도 대상품목으로 추가방안 검토

□ 사업참여조합 및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사업 활성화 도모

- 매년 사업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 운용자금 추가 지원
- 정부수매시 물량 우선배정, 판촉홍보활동 강화

□ 사업추진과정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

- 계약문화 미성숙으로 계약위반 발생농가는 교육·홍보 강화
- 계약규격보다 낮은 품질의 과실 출하, 가격상승시 계약 미이행 등
- 사업초기단계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나, 사업확대에 장애요인
- 판매사업여건 미흡한 조합에 대해 유통시설 지원으로 물량 규모화
- 공동선별, 저장출하에 필요한 유통시설 부족으로 사업확대에 애로
- 조합당 사업물량 과소로 연중 지속적 공급을 통한 대형거래처 확보 어려움

<2002년 주요 제도개선사항>

7 8	¹ 가 (본)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대상품목 확대	사과, 배(2품목)	사과, 배, 단감(3품목)
사업자금 확대	1,000억원	2,160억원
사업실시 유형	수탁형, 매취형 중 택일	수탁형, 매취형 동시추진 가능
사업신청자격 (조합)	해당품목 공동판매실적 500톤 이상인 조합	산지유통시설(임차시설 포함)을 갖추었거나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시설 활용이 가능한 조합 (조합당 최소사업물량: 100톤)
사업선정 제외조합	경영지도대상조합, 판매·가공사업 사고조합, 회원지원부 통보 자금지원제한조합, 전년도 계약출하사업실적 부진조합	경영지도대상조합 (단, 자체경영정상화대상조합, 인수합병에 의한 경영지도 대상조합은 지원 가능), 전년도 계약출하사업실적 부진조합
사업자금 중 제비용 지원	수탁형: 품대의 26% 일괄지원 매취형: 품대의 33% 일괄지원	현행 지원율 한도내에서 조합 실제 신청금액
계약금 지급율	품대의 30%	품대의 10~50% 범위내
농가 출하실적 인정기준	계약된 규격별 물량 조합 의무출하	계약된 규격별 물량 조합 의무출하 단, 규격별 물량 구분 출하가 불가할 경우 계약금액(품대) 기준으로 출하 가능
사업위약농가 위약금 징수율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계약금 중 미출하계약금 해당액의 17%이상	사용일수에 따라 계약금 중 미출하계약금 해당액의 17%이상

3. 사업운영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효과 분석

가. 평가체제

 사업농협 자체평가
 농림부・농협중앙회

 (제1차, 7월)
 합동평가(제2차, 8월)

 품목별 사업종료시
 자체평가를 기초로

 자체평가하여 제출
 현지확인 평가

나. 주요 평가항목

- 재배농가, 작목반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O 사업자금 적기 차입 및 지원
- O 계약실적(성장율, 관내 생산량 대비 점유비, 신청 대비 계약실적 등)
- O 출하실적(출하계획 수립, 고정 대량거래처 확보, 계통출하율, 계약실적대비 출하율 등)
-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실시 여부
- O 가격차보전 실시 적정성, 사업자금운용수익 관리상태 등

다. 평가결과 활용

□ 사업 우수농협, 농업인 인센티브 지원

- 사업추진 운용자금 추가지원
- 조합수 : 참여조합수의 30%
- 금 액 : 총사업자금의 5%
- 방 법: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여 금년도 사업자금 지원시에 추가지원
- 정부비축수매 등에 우선순위 부여
- 사업담당자 표창, 연수, 특별승진 등
- 출하계약사업에 3년이상 참여농가는 가격폭락시 조합의 손실보전자금 범위내에서 경영비 수준 우선지원

□ 사업 부진농협, 계약미이행 농업인에 대한 패널티 부여

- 사업부진 농협
 - 사업배제 및 사업물량 제한 : 위약물량 과다조합, 손실과다 조합 등
 - 미집행자금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계약 미이행 농업인
 - 계약보증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 계약물량의 20%이상 위약농가는 차년도(1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
 - 최저보장가격 수매물량 차등, 계약단가 및 물량 차등 등 사업농협 자체적으로 제재

4. 부실채권 관리체계 설명 및 합리성에 대한 논거

- □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계통기관인 회원농협 위주로 지원 되므로 부실채권 발생 위험도가 매우 낮음.
- □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 사업 전반(금융업 포함)에 대해서 매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조치를 하는 등 회원농협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과실계약출하사업은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대상조합에 대하여 부실채권 발생을 우려 하여 사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평가
 - 경영개선 권고조합에 대해서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지사무소 운용의 효율화, 경비절감, 위험자산 감축 및 고정자산의 처분, 출자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경영개선 요구조합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조합에 대한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합병권고,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고정투자, 신규사업진출 및 외부투자 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5. 과거 3년의 부실채권 규모, 비율 및 회수실적의 추이

"해당사항 없음"

6. 환경 변화 및 이에 대응한 조치

□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 O WTO의 뉴라운드 출범, 중국의 WTO가입, FTA체결 협상 진행 등 대외적 유통 환경 변화로 외국 농산물의 수입증가 예상
- 단위당 소득이 높은 일부품목 재배 증가 ⇒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 현상 발생
-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식생활의 고급화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소비 증가
- 대형 유통업체 증가에 따라 규모화된 농산물을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지유통 기반 구축 필요
- 국내외 유통업체간 또는 국내 유통업체간 소비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가속화
 - 상품의 차별화, 고급화, 전문화 촉진

□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제도 개선

- 사업지침 수립시 일선 산지농협 판매담당자와 재배농가의 의견을 수렴
- 사업추진 현지지도 및 사업평가시 건의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반영
- "과실계약출하사업 마케팅활성화토론회" 개최를 통한 사업활성화 방안 강구
 - 일자 및 장소 : 2001.11.16, 성남농산물조합유통센터
 - 참석자 : 사과·배·단감전국협의회 임원조합장, 사업참여조합 실무책임자 등
 - 주요내용 : 특강,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요 제도개선사항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부문의 2.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와 방향 중 '2002과실계약출하사업 주요 제도개선사항'참조"

평가내용

2.3.2. 사업별 운영성과

1. 사업목표 및 목표 설정의 논거

□ 생산예상량, 예상 계약단가, 품목별 사업참여 의향, 자금증가율 등을 종합 검토 하여 품목별로 목표 설정

2. 목표 달성도와 그 논거

□ 2001년 사업실적

- 사업시행 첫해임에도 산지조합 및 농가의 호응도가 높아 목표 대비 93% 달성
- 사업량이 시장출하물량의 5%수준으로 미미하여 지속적인 사업물량 확대를 통한 실질적 수급안정제도 정착 필요

구 분	시장출하량	계획		실	적	대 비(%)		
	(A)	물량(B)	금액	물량(C)	자금	C/A	C/B	
계	727	47	1,000	44	911	6.0	93.6	
사과	357	22	439	21	405	5.9	95.4	
배	370	25	561	23	506	6.2	92.0	

※ 시장출하량: 생산량×상품화율(사과, 88.5%, 배 88.7%: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자료)

3. 사업운영의 성과

- ☐ 계약출하물량에 대해 공동선별·공동계산제 도입
 - 천안배원협, 나주배원협, 상주외서농협, 울주서생농협, 울산원협 등

□ 전용 포장박스 신규개발 및 브랜드화로 계약출하물량의 유통 차별화

- 임금님표 배(나주배원협), 간절곶 꿀배(울주서생), 드림원 배(순천농협)
- 중소형과를 이용한 "깍지 않고 먹는사과" 브랜드화, 소비자들로부터 호평

□ 사업참여농협의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가동율 제고

- O 비파괴선별기 신규도입: 안성과수, 나주배, 나주세지, 나주금천, 울산원예
- 판매사업물량의 규모화, 공동선별, 저장출하를 통한 APC 가동율 제고 사례) 울주서생농협 : ('00년산) 취급물량 100톤, 가동일수 20일

('01년산) 취급물량 400톤, 가동일수 90일

□ 무이자 계약금을 영농철에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자금부담 경감

○ 계약물품대의 30%인 149억원 지급(농가당 평균 3백만원)

4.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범위, 만족도 조사 결과분석 및 결과반영 실적 "조사사항 없음"

5. 성과관리체계 및 그 운영

□ 성과 관리체계

사업농협 자체평가 (제1차, 7월) 품목별 사업종료시 자체평가하여 제출

 \Rightarrow

농림부·농협중앙회 합동 평가(제2차, 8월) 자체평가를 기초로 현지확인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O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 차별지원
- 차년도 사업 운영자금 추가지원 : 평가결과 상위 30%이내 조합
- 판매담당자 우대 : 표창, 연수, 승진 등에 우선순위 부여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처리
- 자체 검토 또는 농림부와 협의 검토하여 필요시 즉시 또는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되, 단기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반영 추진

여 백

(5)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

I. 사업현황	•••••		247
	2. 사업여건 / 3. 사 ^스 요실적 / 5. 2001 주		
Ⅱ. 사업선정 및	! 사업내용의 적정	성	251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256
		¥	

사업정책기관	농 림 부
	무역진흥과(〒500-1738) 유통정책과(〒500-1825)
사업실시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팀(☎793-6597)

여 백

I. 사 업 현 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수매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성출하기전에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기여
- 개방화 시대에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국내 농림업과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
- □ 사업대상 :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자로서 지원 해당품목의 수출실적(운영활성화자금의 경우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우수농수산물을 저장·가공하는 업체 또는 생산자단체 포함)
- □ 사업방식 : 융자
- □ 사업담당기관 : 농림부 무역진홍과
- □ 사업실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팀

2. 사업여건

- □ 시중금리의 저금리 안정화 추세에 따라 수출지원자금 대출금리가 시중은행과 차이가 없어 수출사업자의 금리인하 요구가 점증
- □ 일반(저장·가공수매자금)업체 대출금리가 '01년도에 2차례 인하(8% → 6.5
 → 5.5)됨에 따라 수출자금과 차별성이 없어 수출자금 지원업체의 수출의무를
 감안할 때 인센티브 효과가 미약하여 수출사업자의 상대적 불만 제기

3. 사업정책방향

농수산물 수출환경

- WTO 출범이후 농수산업 분야도 국제경쟁시대 돌입
- 소규모 영농으로 경제규모의고품질 생산체제 미흡

수출농업육성 필요성

- 경쟁력 제고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유지
-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
- 국내농산물의 가격안정 기여
-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력 제고



수출자금 지원목적

수출 확대를 통한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



기본방향

수출자금지원의 효율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



수출자금지원 규모확대	수출자금지원 제도개선	수출업체 경쟁체제 유도			
● 수출유망품목 발굴 육성	◎ 신용대출 확대	◉ 인센티브 부여 확대 및			
● 신규업체 개발지원 ● 탄력적 지원체계 구축	● 수출업체 담보확충 지원● 고객지향적 제도개선 추진	불량업체 제재강화 ● 업체평가 지속 개선			

4. 2000까지 주요실적

□ 농수산물 수출자금 지원체계 구축

○ '80년 : 농안기금의 민간가격안정사업으로 수출용 원료구매자금 지원 개시

O '95년 : 수출비용 지원을 위한 우수농수산물 운영활성화자금을 신설

O '96년 : 시설현대화자금을 신설하여 수출금융의 종합지원체제 구축

○ '98년 : 유망품목시장개척자금을 연중 융자자금으로 전환하여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수출업체 종합평가제도 도입 시행

○ 목적 : 자금지원업체의 수출사업실적과 신용도를 평가하여 자금지원시 차등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를 유도하고 채권관리의 효율 제고

- 평가 주기 : 매년 ('98년부터 실시)
- 평가결과 활용
 - 사업평가결과 4등급으로 분류하여 자금배정, 금리 차등적용
 - 신용평가결과 8등급으로 분류하여 신용대출, 담보인정비율 차등적용
- 최우수, 우수업체에 대해 금리, 자금배정, 담보 및 신용대출 등 우대

□ 자금지원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사업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우수농산물 수매자금, 유통자금을 우수농수산물 지원자금으로 통합 지원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을 통한 농신보 담보부 대출취급 개시
 - 보증료 절감 : (종전) 1.0~3.0% ⇒ (개선) 0.2~0.3%
- 신용보증서, 기술신용보증서 부분보증 담보확대취급(30%신용)을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
- 외부신용평가기관(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투자적격업체에 대한 무보증 신용대출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지원
- 우수농산물 수매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업의무비율 완화

□ 자금배정기준 개선

- 수매지원용 자금의 수매사업비 책정기준 객관화
- 우수농산물 수매자금 대출포기금 신속 배정제도 도입

5. 2001 주요실적 요약

□ 연도별 자금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94	195	· '96	'97	'98	'99	2000	2001
우수농산물	58,691	73,872	83,808	92,475	125,026	121,514	100,406	98,582
원료구매지원	(124)	(146)	(138)	(123)	(187)	(134)	(120)	(96)
우수농수산물	_	28,000	35,000	68,101	81,0 1 5	89,085	115,000	83,709
운영활성화지원		(53)	(123)	(143)	(1 7 6)	(162)	(137)	(112)
우수농수산물 시설현대화지원	_	_	16,317 (36)	11,011 (22)	16,273 (25)	20,024	16,578 (20)	15,612 (10)
유망품목	10,000	12,000	12,000	12,000	15,226	32,383	21,000	29,903
시장개척지원		(1)	(1)	(1)	(31)	(54)	(47)	(55)
계	68,691	113,872	147,125	183,587	237,540	263,006	252,984	227,806
	(125)	(200)	(298)	(289)	(419)	(379)	(324)	(273)

주1) ()내는 지원 업체수임

주2) 2001 지원실적은 돈육수출업체 상환연기자금(438억원) 포함시 2,716억원

□ 민간수출업채 수출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노력 강화

- 돈육수출업체의 수출관련자금 상환기일 1년 연장으로 경영안정 도모 : 28업체, 438억원
- 농안기금 대출기간 연장을 통한 대환제도 도입으로 업체 자금애로 해소
- 수출지원자금 지원규모 확대 : (당초) 2,204억원 → (수정) 2,722 (518억원 증액)
- 신규 유망수출업체 34개소를 발굴 88억원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기반 구축

□ 제도개선을 통한 고객지향적 경영관리 강화

-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한 수출자금 지원대상 확대 : 출자금 1억원이하 농업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담보취득 추진으로 수출업체 담보조달창구 확대

□ 수출업체 종합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 정착

- 평가지표 이원화(사업실적, 신용도)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평가불응·부적합업체 최하등급 처리에 따라 우수등급이상 업체의 증가로 수혜 확대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표명 2.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40%

명하다 가 내가 용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

- ㅇ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ㅇ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ㅇ 사업 활동과 사업 목적의 연계성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융자/보증 대상 선정기준 및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융자/보증 조건 산정의 합리성

평가내용

2.2.1 사업선정의 타당성

1. 신규사업 추가 여부

: 농수산물 수출자금융자의 종합지원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신규사업추가는 해당사항 없음

2.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타 기금 또는 타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목록

: 국내산 농수산물의 수출자금지원은 농안기금의 민간가격안정사업으로서 예산 또는 타 기금에서는 수행하고 있지 않은 고유사업임

3. 본 사업의 차별성과 상대적 우위성

- □ 국내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가격안정정책으로서의 농산물 수출은 예전에는 단순히 과잉 생산된 품목의 사후 수급 조절기능으로 인식되어 정부가격안정사업으로 시장격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 현재는 고품질 농산물이 연중생산되어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급조절이 되지 않아 국내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되는 등 수출은 가격안정을 위한 필수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직접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을 통한 간접가격안정사업을 수행
- □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로 농업생산기반 유지

4. 본 사업의 기금설치 목적과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에 대한 분석

- □ 농안기금 설치목적
 -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개선을 촉진
- □ 수출지원자금 정책목표
 - 수출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에 기여
 -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인 수출농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제고로 농업생산기반을 유지

□ 농안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성

○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은 일반(저장·가공)수매자금과 마찬가지로 국내 가격안정을 위한 민간가격안정사업의 일환임

평과내용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 활동 내역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자금지원 개요

il of m	71 ol 11 71	지원조건		& F
사업명	지원시기	대출금리	대출기간	용 도
원료구매지원	성출하기	4~5%	1년	수출용 원료 수매비
운영활성화지원	연중	4~5%	1년	가공・운송등 수출경비
유망품목시장개척지원	연중	5%	1년	원료수매 및 수출경비
시설현대화지원	연중	5%	10년	증축, 증설, 개보수 비용

□ 사업 절차

○ 지원계획 공고(전년도 12월) → 사업지원 신청(1월, 시설자금 4월) → 업체별 자금배정
 (원료구매·운영활성화 3월, 시설 5월) → 대출실행(품목별 지원시기) → 사업실적 확인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추진

- 수출자금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여건 변동에 대응한 신속·적기 융자 등 탄력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지원제도를 개선
- 매년 수출업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해 담보우대, 신용대출 확대와 함께 대출금리를 차등지원하는 등 지원 효율성 제고노력을 추진

2. 사업대상 선정기준의 결정과정

□ 사업지원대상자

- 무역업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자로서 지원해당품목의 수출실적(운영활성화자금의 경우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우수농수산물을 저장·가공하는 업체 또는 생산자단체 포함)
- L/C, 수출계약서, Local L/C, 구매승인서,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중 어느 하나를 제시한 창업업체, 신규품목 개발업체, 우수경영체 및 생산자조직

□ 선정기준

-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수출업체의 소규모·영세성을 감안하고 중소수출업체 육성을 통한 수출기반 확대를 위하여 Negative System으로 운용
- 지원대상자 선정은 사업지원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시행지침, 동 세부시행계획"등에 의하여 구비서류 확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 업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단,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무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는 제외

□ 선정절차

- 농안기금운용계획 및 농림사업시행지침 수립
- 지원계획 공고 : 전년도 12월중 (일간신문에 공고)
 - 동 지원계획을 무역전문지, 농림수산 관계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
 - 지자체, 무역관련단체 및 관련협회 통보 및 미지원 수출업체에 개별 홍보
- 지원대상업체 사업지원신청서 접수 : 당해연도 1월중 (대출취급기관)
- 자금지원대상자 확정 및 배정 : 매년 3월말한

3. 융자/보증 조건 산정의 합리성

□ 융자조건

○ 대출 금리 : 연 5%

○ 대출 기간 : 12개월

○ 자부담비율 : 자금지원액의 10%이상

○ 용 도 : 각 품목별 국내 농산물 수매비 및 가공, 저장, 포장, 운송경비 등 수출비용

○ 사업의무 ..

- 수매의무액 : 대출액의 110% 이상

- 수출의무액 : 대출액의 55% 이상

○ 제재사항 : 자금의 부당사용, 관련법령 위반, 사업의무미달시 정도에 따라 위약금 징수

융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 융자조건 산정기준

○ 일반 고려사항

- 농수산물의 생산이 기후 등 자연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 계절적 가격진폭이 크고 수급이 불안정한 특성에 따른 수매여건의 불안정성과 수출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 애로 등 자금지원대상자의 경영위험을 고려
- 사업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위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및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 정책 자금의 지원을 통한 사업목적 달성과 효과 거양을 위한 측면을 고려

○ 대출금리

- 수출용 원료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출하는 용도이므로 민간가격안정사업인 저장·가공 수매자금의 수매의무이외에 수출의무가 더 있어 상관습이 다른 외국에 여러 과정을 거쳐 상품을 판매하는 수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정

O 자부담 비율

- 자부담이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업의무부담으로 이는 수출자금의 대출한도가 당해 사업소요액의 90%이므로 나머지 부분이 자부담으로 귀결됨
- 수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하고 합리적 의무 부과로 사업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금액의 10%로 정함

○ 사업의무

- 수매의무액은 지원금액에 자부담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의 110%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며
- 수출의무액은 수매 후 규격 등 조건이 까다로운 수출용 농산물의 선별율을 감안하여 수매액의 절반을 수출의무로 부과함

□ 융자조건 산정절차

- 사업지원기관이 수요자 및 기금대출기관의 의견과 사업의 정책추진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유자조건을 검토
- 기금총괄기관은 사업지원기관이 검토한 융자조건을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혐의
- 협의된 지원조건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로 확정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지표명 2.3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u>가 중 치</u> 40%

명 가 내 용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ㅇ 사업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노력
- ㅇ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 ㅇ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조정 노력

2.3.2 사업별 운영성과

- ㅇ 목표 설정의 합리성
- ㅇ 사업별 목표 달성정도
- ㅇ 사업운영 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및 전년 대비 개선 실적
- ㅇ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 정도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1. 사업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노력의 사례

가.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 시중금리가 저금리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출지원자금 대출금리는 5%이나 담보비용 (보증수수료, 근저당설정비)을 감안하면 실제부담금리는 6 ~ 7.5%가 되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와 차이가 없어 정책자금 지원효과 미약
- ⇒ 시중금융과 차별화가 미흡함에 따라 일부업체의 경우 사업의무가 부과되는 정책자금 사용기피 및 금리인하 요구
- O 일반사업자와의 차별성 상실
 - 일반(저장·가공)수매자금 대출금리가 '01년도에 2차례 인하(8% → 6.5 → 5.5)됨에 따라 수출자금과 차별성이 없어 수출사업자의 상대적 불만 제기
 - 수출자금 지원업체의 수출의무를 감안할 때 인센티브 효과 미약

나. 개선노력

- 정책자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출금리 인하 추진
- 제도개선을 통한 고객지향적 경영관리 강화
 - 농안기금 대출기간 연장을 통한 대환제도 도입으로 업체 자금애로 해소
 -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한 수출자금 지원대상 확대 : 출자금 1억원이하 농업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담보취득 추진으로 수출업체 담보조달창구 확대
 - 자금지원 신청서류 간소화(기존 6종류→4종) 및 작성이 쉽게 업체중심으로 단순화
- 수출업체 종합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
 - 평가지표 이원화(사업실적, 신용도)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평가불응·부적합업체 최하등급 처리에 따라 우수등급이상 업체의 증가로 수혜 확대

2. 사업운영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평가결과 활용
ㅇ수출실적 평가	○수출자금지원업체별, 품목별 수출실적 평가	○ 수출목표 관리(수출확대 대책추진)
ㅇ수출업체 종합평가	○수출업체 종합평가 관리방안을 수립 후 수출자금지원업체별 수출사업, 신용상태를 평가	○정책자금의 투명성, 객관성 제고 ○정책지원(자금배정, 금리)과 담보 인정비율 및 신용대출 차등 적용
ㅇ농림사업 심사평가	ㅇ농림사업별 사업추진실적, 문제점, 개선과제 등을 평가	ㅇ사업추진실적, 개선과제 점검
ㅇ정부경영실적 평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에서 투자기관별 경영실적 평가	ㅇ경영실적 평가하여 분석 및 개선
ㅇ고객만족도 평가	○기획예산처와 생산성본부에서 공기업 고객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	ㅇ고객만족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농안기금평가	○ 공공기금평가단에서 기금사업별 사업성과 등 평가	ㅇ평가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3. 부실채권 관리체계 및 부실채권

- □ 농안기금의 융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금대출기관(농·수협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기금을 대여하고 기금대출기관이 융자대상자에게 대출실행함
- □ 농안기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기금을 대여받은 농·수협 및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부담하고 있어 기금대출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나 대손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 그러나 기금대출기관이 금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은 기관이므로 그 동안 상환을 연체하거나 불이행한 사례가 한번도 없으며 향후에도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4. 환경 변화 및 이에 대응한 조치

가. 수출환경 변화

수출환경 변화

◇ 대외 여건

- WTO체제 이후 농산물의 무한경쟁시대 돌입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요구 증대
- ㅇ 주수출시장인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엔화 약세로 수출 감소 추세
- ㅇ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일본 등 제3국 진출 가속화에 따른 경쟁 심화

◇ 대내 여건

- WTO 도하개발아젠다 출범, FTA협상 진전 등 농업의 개방폭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 증폭 및 생산의욕 저하
- ㅇ 수출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향상과 생산자단체 · 지자체의 수출마인드 증대

나. 금융환경 변화 및 대응 노력

환경변화	위협 요인	대응 노력
금융기관 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	ㅇ정책자금의 지원목적으로 인해 금융수요자의 요구 수용 한계	o금융 이외 수출진홍사업과의 종합서비스제공으로 특화
시중 저금리 추세 및 신용대출확대	○저리정책자금의 메리트 미약 ○담보위주에서 신용위주로 변화	시중금리 상승시 이용요구 증가자금지원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강화로 대출취급기관의 부실을사전예방
금융기관의 대출경쟁 심화	ㅇ대기업 편중여신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확대	○시중자금사정과 관련없는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자금 공급자로의 역할 수행 ○특화된 정책자금의 역할 제고

평가내용

2.3.2 사업별 운영성과

1. 사업목표 및 목표 설정의 논거

농수산물 지원수출 목표 : 685백만\$

ㅇ 설정 사유 : 수출지원사업의 핵심성과인 지원수출금액의 목표대 실적 평가

ㅇ 설정 방법 : 5개년 회귀분석에 의한 추세치 목표 부여

연 도	′96	′97	′98	′99	′00	'01
금액(백만\$)	294	366	374	453	691	841

2. 목표 달성도와 그 논거

농수산물 지원수출 실적 : 841백만\$

- 농수산물지원수출액은 목표 685백만\$의 22.8%를 초과 달성한 841백만\$ 달성
- ㅇ 달성 사유
 - 품목별 수출확대 대책추진, 유망수출업체 신규발굴 및 자금지원 확대로 수출신장
 - 수출자금의 연중 상시지원체제 구축, 농신보 담보대출 확대, 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제 시행, 수출업체 종합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자금배정·금리·담보 등 인센티브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수출실적 증가에 기여

3. 사업운영의 성과

가. 지원업체 수출실적 증대를 통한 수출확대 기반 구축

- 지원업체 수출실적 : ('00) 691백만불 → ('01) 841 (23% 증가)
-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과 '00. 3월 발생한 구제역의 영향으로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중단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산물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나. 저리 정책자금지원으로 업체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단위: 억원)

一一一子是			금 용 비 용	
연도별	지원액	시중금리 차입시	수출금융 차입지	절감액
		(A)	(B)	(A-B)
'01	2,716	206	122	84

※ 수출금융은 연 4.5%, 시중금리는 연평균 7.6% 적용

다. 우수농산물 수매를 통한 국내가격 안정 및 생산기반 안정화

- O 수매자금 및 수매액 확대
 - 수매자금 : ('99년) 968백만원 → ('00년) 1,004 (4% 증가)
 - 수 매 액 : ('99년) 1,727백만원 → ('00년) 1,925 (11% 증가)
 - 자금지원액 증가율 대비 수매금액 증가율이 더 큼
- 수출용 원료 수매·가공 수출업체에게 품목별 성출하기 전에 수매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산지 가격지지를 통한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
- 수출업체와 생산농가간의 계약재배 유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공급기반 구축

4. 사업대상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정도

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O 주최: 기획예산처 (주관: 한국생산성본부)

○ 평가 실시 : 리서치 앤 리서치 ('01. 10월)

나. 조사 결과 : ('00) 69점 → ('01) 72점 (3점 향상)

다.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 주요 불만사항이 ①고금리 ②사후관리 복잡 ③대출절차 및 담보조건의 까다로움 순임
- 제도개선적 측면에서 인정을 받았으나 시중실세금리의 지속적 하향에 따라 정책자금의 메리트가 미약하여 금리부문(인하)이 해결과제로 대두
 - ⇒ 수출자금의 금리인하 추진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중
 - ⇒ 자금의 상환기간도 연차별 투자수익성을 감안하여 조정

여백

(6) 생산자조직육성지원사업

I. 사업현황
 사업개요 / 2. 사업여건 / 3. 사업정책방향 2000까지 주요실적 / 5. 2001 주요실적 요약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269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279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280 2.3.2 사업별 운영성과 287

사업정책기관	농 림 부
	유통정책과(☎500-1825) 채소특작과(☎500-1825)
사업실시기관	농업협동조합
	채소부(☎397-5726) 과수화훼부(☎397-7245)

여 백

I. 사 업 현 황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

사업별	지원 대상	사업목적
생산자단체유통 활성화사업	품목별전국협의회 가입 회원농협	품목별 주산지화, 전문화를 촉진하여 대량의 규격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조직의 계열 화를 통해 산지 생산·유통의 효율성 제고
공동규격출하 촉진사업	작목반	산지에서의 농산물 공동규격 출하로 상품성을 제고 하고, 물류이동의 규모화를 도모하여 유통비용 절감

나. 사업방식 : 농안기금 융자 사업

□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은 생산자조직(회원농협, 영농조합법인)에 자금지원

- 생산자조직은 전국협의회에 가입한 품목에 대해 매취사업, 계약재배사업, 및 규격출하선 도 등 사업을 실시하여 주산지에서 생산자조직으로서 전문화 추진
- 대상품목: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유자, 감귤, 약용, 단감, 참다래, 화훼, 밤, 버섯, 생강, 첨단원예(전국협의회 14개품목)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은 회원농협에 자금지원

- 작목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작목반 위주로 자금을 배정하고, 작목반은 생산 품목에 대해 공동규격출하하여 산지유통개선을 촉진
- 대상품목 : 무, 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참외, 호박, 수박, 딸기, 상추, 픗고추, 감자, 고구마, 가지(14개품목)

다. 사업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라. 사업실시기관 : 농협중앙회 채소부, 과수화훼부

2. 사업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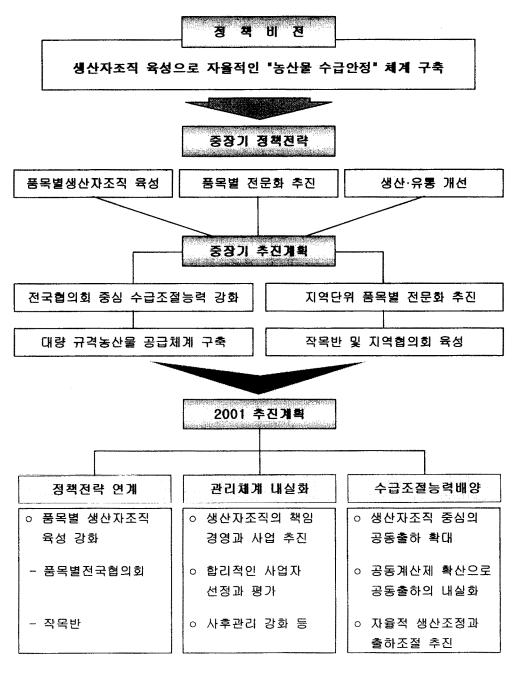
가. 농산물 유통의 시발점인 산지에서 유통개선의 중요성이 인식

- ㅇ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물류비용의 절감 필요
- ㅇ 소비지에서 우리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해 선별, 포장 등 상품성 향상 노력

나. 산지유통의 핵심 주체인 생산자조직의 육성으로 유통개혁을 조기 정착

ㅇ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생산자조직체 육성

3. 사업정책방향



4. 2000까지 주요실적

가. 생산자조직 육성 현황(2000.12)

□ 품목별전국협의회

子 是	과실류	채소류	화훼.특작	계
협의회수(개)	9	8	3	20
회 원 수(개소)	286	658	146	1,090

ㅇ 작목반 : 20,919개(선진 7,126, 일반 7,610, 기초 6,183)

子是	선진	일반	기초	Ä
작목반수(개소)	7,126	7,610	6,183	20,919
반 원 수 (명)	214,509	189,581	127,269	531,359

나. 사업실적

□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

(단위 : 개소, 백만원, 톤, %)

	7 ALA	베기그에	지원금액	사업실적		
子、慧	조합수	바정금액	(A)	물 량	금액(B)	(B/A)
매취사업	54	19,043	18,944	48,537	36,626	193
계약재배사업	1	145	105	13	131	125
유통설비·자재구입	21	11,866	11,773	1,657	19,151	163
규격출하선도금	399	110,186	108,528	161,112	201,280	185
합 계	475	141,240	139,350	211,319	257,188	185

- 지원시기 : '00.5월(상반기), '00.8월(하반기), '00.10월(낙과피해특별지원)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단위: 백만원, 톤, %)

지원금액	출하약	정 현황	구성비		지원대상	
(a)	물량	금액(b)	(b/a)	조합수	조직수	농가수
100,000	198,606	136,982	137.0	634	4,294	33,545

5. 2001 주요실적 요약

가. 생산자조직 육성 현황(2001.12)

□ 품목별전국협의회 : 24개(과실류 9개, 채소류 11, 특작 등 4)

○ 2001 신규결성 : 오이, 호박, 가지전국협의회

○ 참여회원 : 1,196개

□ 작목반: 17,747개(선진 6,114, 일반 5,975, 기초 5,658)

○ 전년대비 부실조직 3,172개 정비

나. 사업실적

□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

(단위: 개소, 백만원, 톤, %)

구분	차금용도	조합수	지원액	15 (B) (B)
농 업 인	규격출하선도금	158	81,707	
	매 취 사 업	29	4,942	
회원농협	계약 재배 사업	5	725	* * * * * * * * * * * * * * * * * * * *
·	유통설비·자재구입비	4	2,578	
	합 계	158	89,952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단위: 백만원, 톤, %)

· 지원금액 (a)	(含) (4)	경 현황 (공약(b)	子 付 申 (bya)	本 曾令	지원대상 조직수	농가수
77,000	122,705	107,685	139.9	579	3,697	25,024

다. 사업효과

- □ 생산자조직 중심의 공동출하로 사업물량의 규모화 및 공동사업 확대
- □ 농산물 규격과 포장출하를 유도하여 산지 유통개선에 기여
- □ 생산자조직의 품목별 전문성 제고와 조직활동의 활성화
- □ 농산물 수급안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표명 2.2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40%

명 가 내 용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

- ㅇ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ㅇ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ㅇ 사업 활동과 사업 목적의 연계성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융자/보증 대상 선정기준 및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ㅇ 융자/보증 조건 산정의 합리성

평가내용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

1. 신규사업 추가 여부

- □ 신규사업 추가 : 혜당없음
 -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해 규격농산물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계열화하여 시장교섭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2.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타 기금 또는 타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목록
 - □ 유사사업 수행: 해당없음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만 농산물 생산자조직의 육성, 규격출하 촉진을 지원
- 3. 본 사업의 차별성과 상대적 우위성
 - 가. 생산자조직에 의한 생산조절, 출하조절, 물류조절 등 일관적 기능을 수행
 - □ WTO체제하에서 정부 주도의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자 자율적 인 수급안정대책 추진과 실천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조직화가 필요
 - 다수의 영세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각종 수급안정대책의 효과와 효율이 낮음
 - 농산물 유통협약, 유통명령제 등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서도 운영이 활발한 생산자조직이 필요
 - □ 농업 영세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유통개선을 위해서도 생산자조직 육성이 필요
 - 농가단위로는 규격출하가 어렵고,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각종 유통문제가 발생
 - 간이집하장,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등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들시설 운영주체와 생산자 조직 육성을 통한 계열화가 필요

- 나. 산지의 기초조직인 작목반과 전국단위 생산자조직인 품목별 전국협의회 육성을 지원함으로서 신지유통의 효율화와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
-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은 산지의 생산자 기초조직인 작목반 단위로 자금이 지원되어 공동출하와 규격출하를 촉진
 - O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동 사업이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들어 소비지 유통환경변화와 더불어 공동계산 실천작목반 위주로 산지의 유통개선이 급진전
- □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은 전국단위의 생산자조직인 품목별전국협의회 단위로 자금이 지원되어 자율적인 농산물 수급안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 동 사업과 병행하여 농산물 자율감축, 간벌 등을 추진하여 수급안정에 대한 협의회의 역할을 제고

4. 본 사업의 기금설치 목적과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에 대한 분석

가. 생산자조직육성사업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

	농안기금 운용목적		생산자조직육성사업 목적
•	›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품목별 주산지화, 전문화를 촉진하여 대량의 규격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조절, 출하조절 등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수행
•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촉진	•	산지에서의 농산물 공동규격 출하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물류이동의 규모화를 도모하여 유통비용 절감

나.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 □ 농산물의 대량유통 및 상품성 제고 등 유통개선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산물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기초 또는 전국단위의 생산자조직 육성이 필요
 - O 자율적인 생산 및 출하조정, 소비촉진운동과 농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전국적 생산자 조직의 사업지원
 - 대량의 표준규격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의 기초 생산자조직인 작목반을 육성 지원하고, 유통개선을 실천토록 유도

평가내용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 활동 내역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기.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

□ 사업목적

- 품목별 주산지화·전문화를 촉진하여 대량의 규격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계열화를 통해 산지 생산·유통의 효율성 제고

□ 주요 사업 및 사업 의무량

○ 매취사업, 규격출하선도금, 유통설비 및 자재구입 등 지원자금 대비 125% 이상 사업추진 (단위: 개소, 백만원, 톤, %)

구 분	조합수	배정금액	지원금액)	나업실적	
J 2	一一 月 J		(A)	물 량	금액(B)	(B/A)
매취사업	54	19,043	18,944	48,537	36,626	193
계약재배사업	1	145	105	13	131	125
유통설비·자재구입	21	11,866	11,773	1,657	19,151	163
규격출하선도금	399	110,186	108,528	161,112	201,280	185
합계	475	141,240	139,350	211,319	257,188	185

□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조합당 지원가능 품목수의 제한은 없애는 대신. 품목별협의회 가입품목 위주로 지원
-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원농협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세부사업은 조합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하도록 하여 현실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효과를 높임
- 지역협의회 결성조직을 우대하여 지역단위 자율적인 수급조절능력과 시장 교섭력을 강 화하고, 공동선별ㆍ공동수송ㆍ공동판매 등으로 유통개선을 도모함
- 또한 품목별전국협의회 중심으로 생산 및 수급조절의 자율적 추진, 수요창출을 위한 소 비촉진홍보, 교육·홍보활동 및 농정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여 생산자조직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음

나.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 사업목적

○ 농산물 규격출하와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유통개선 도모

□ 주요 사업활동내역

○ 작목반 정비 : 작목반을 산지 공동출하의 기간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실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

- 작목반 : 17,747개(선진 6,114, 일반 5,975, 기초 5,658)

- 전년대비 부실조직 3,172개 정비

○ 작목반 평가와 우수조직 위주의 지원

- 매년 1회 작목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에 따라 우수조직 위주로 집중 지원하여 작목반의 상향조정을 유도

(단위: 백만원, 톤, %)

지원금액	출하약:	정 현황	구성비		지원대상	
(a)	물량	금액(b)	(b/a)	圣합수	조직수	농가수
77,000	122,705	107,685	139.9	579	3,697	25,024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자금 지원과 유통개선 도모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고, 작목반 단위 이상의 공동출하를 유도
- 사업 의무량 : 지원금액의 125% 이상 농산물을 규격화하여 공동으로 출하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도·지원을 병행하여 규격출하를 지도
-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작목반 전담 검사원을 지정하여 작목반 자율 검사를 지도하고, 출하품에 대해 점검 실시
- 농관원에서 소비자 품질평가 결과를 시군 및 출하조직에 수시 통보
- 농관원에서 작목반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 규격출하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조직의 활동상황은 차년도 대상자 선정 및 조직별 지원규모 책정시 반영

□ 소비자 기호변화에 맞는 고품질 안전 표준규격농산물 생산·유통지도

○ 속박이 배제, 공동선별,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 공동계산제 시범작목반 육성 등으로 공동선별·계산제 보급 확산

- 시범작목반 확대 선정 : ('00) 407개 ⇒ ('01) 500개소
- ○「공11운동」전개로 공동계산 추진 붐 조성
- 공동계산제, 1개 농협 1개 작목반 이상 보유 지도
- 각 지역본부별 공동계산제 추진 발대식 개최(2~3월)
- 농협직원 및 작목반원, 도매시장, 유통센터 바이어 초청 실시
- 농협 인터넷망을 통해 공동계산제 우수 추진사례 보급
- 공동선별용 P-Box 지원 : 93,500개, 210백만원

□ 우수 작목반 발굴 및 육성

- ○『이달의 작목반상(중앙회장상)』 대상조직 선발 및 시상
- 총 100개 조직(매월 10개 작목반), 50억원 지원(조직당 5천만원)
- 협동조직대상 선정 시상 : 총 9개 조직(유별 각 3개)
- 수상조직에 대한 해외연수('00, '01년 수상 15개 조직 279명)
- 지역본부별 선진작목반 모임결성으로 정보교류 촉진 : 경기 등 6개소
- 농협홈페이지(www.nonghyup.com)를 통해 우수 작목반 및 공동계산제 홍보

2.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가.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

□ 사업대상자 : 품목별 전국협의회 1개 품목이상 가입한 생산자조직 (지역농협, 전문농협, 영농조합법인)

□ 지원대상품목 : 품목별전국협의회 가입품목

- 미가입 품목은 지원액의 50%이내에서 사용가능
- 지원대상 제외품목
- 채소수급안정사업 대상품목(무,배추,마늘,양파,파,고추,당근)
- 시설채소 출하조절약정사업품목(오이,호박,가지,풋고추,토마토)
- 과실수급안정사업품목(사과,배,단감.)

□ 선정기준

- O 품목별 선정기준 및 배점
- 사업신청 품목에 대한 공동출하실적(30%)
- 품목별 전문화 : 원예특작품목 공동출하액에 대한 사업신청 품목의 공동출하액 비율(25%)
- 사업신청 품목에 대한 전국협의회 가입비율(20%)
- 공동계산제 실시작목반(15%), 산지유통시설 보유(10%)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시·도별 경작면적, 공동판매실적, 전국협의회 가입실적, 산지유통시설보유현황, 작목반수 등을 감안하여 농협 지역본부에 한도액 배정
- 지역본부에서 조합 및 영농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조합별 배점 결과에 자금지원 순위결정
- 농협중앙회장이 사업자 선정 및 조합별 자금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적격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체계도 >

농림부						농가
사업지원기관						규격출하 실시
⑦↓ ↑⑥						9↑
농협 중앙본부	1	농협 지역본부	24	농협 시군지부	24	회원조합
지역본부별 융자 한도액 배정, 사업총괄지도	→ (5) ↑ (8)	회원조합별 자금배정, 사업추진지도	← →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추진 지도		자체사업 추진, 농가선도금 지원 및 출하지도

나.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 사업대상자 : 작목반(회), 영농조합법인

□ 사업대상 품목

- 우선지원대상품목 : 14개
 - 무, 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참외, 호박, 수박, 딸기, 상추, 풋고추, 감자, 고구마, 가지
- 추가지원 대상품목 : 지역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군별 3개 이내
 - 대상품목 선정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시군지부에서 합의,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작목반 등 기초 생산자조직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협으로 사업신청
- 작목반 단위의 생산 및 출하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으로 자금 신청
- 농협에서 사업 신청내역 및 평가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농협에서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신청 및 평가결과를 보고
- 농림부와 농협이 협의하여 품목별 조직별 자금 배정
- 작목반 평가결과가 우수한 작목반 위주로 자금 배정
- 자금배정 결과에 따라 산지농협에서 사업자 선정 및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농협의 작목반 육성 및 지도·지원 준칙에 의해 평가하고, 우수조직 위주로 차등 지원

구분	평가점수	지 원 내 용
공동계산 실시조직		공동계산제 실시조직에 일정비율 이상 최우선 지원
선진조직	85점 이상	공동계산 실시조작에 지원 후 사업계획의 80% 이상 지원
일 반 조 직	70~84	선진조직 지원 후 사업계획의 50% 이상 반영 지원
기초조직	69점 이하	상위조직 지원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지원

3. 융자/보증 대상 선정기준 및 결정과정의 합리성 투명성

가.	샛	사	자	다	계	유	톳	활	성	항	Y	ŀ	엄

- □ 회원조합(영농조합법인)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일정한 "사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조직을 평가, 지원대상자 및 지원규모를 확정
-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에 의하여 지원시기, 대상품목, 사업용도 결정
- □ 품목별 사업규모와 대상조합을 선정한 후 조합별 평가순위에 따라 융자금액 조정
 - O 지역본부별 자금지원 한도배정
 - O 한도배정 금액내에서 조합별 평가순위에 따라 자금지원액 결정하고 중앙본부로 자금요청
 - 자금지원계획을 농림부로 보고하고, 자금대여 신청
 - 자금차입 이후 40일 이내 농가자금 지원 및 자체사업 시행

나, 공동규격출하 촉진사업

- □ 조합별 자금배정결과에 따라 지역농협에서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자금을 배정하여사업신청 작목반에 통보
 - 선진조직 : 농가당 3백만원 이상 지원
 - O 일반조직: 농가당 1백만원 이상 지원
- □ 작목반 등 사업 신청조직은 내부 협의를 거쳐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회원농협에 통보
 - 농가당 배분은 조직원이 자율 결정
 - 단, 농산물 자율 검사원에게는 3백만원 이상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 회원농협은 농가별로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 지원

4. 융자/보증 조건 산정의 합리성

□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의 융자 조건

- 자금지원조건
- 지원기준 : 사업금액의 80% 융자, 20% 자부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금리 : 5%
- 사업의무량
- 자금지원 금액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 실시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의 융자 조건

- 자금지원조건
- 지원기준 : 사업금액의 80% 융자, 20% 자부담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 지워금리 : 5%
- 사업의무량
- 자금지원 금액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물량의 공동규격출하

5. 융자 조건 산정절차

- □ 수요자 및 사업집행기관의 의견과 사업별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지원조건 검토
- □ 기금총괄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이 검토한 지원조건을 타 사업과의 형평성 및 재정경제부 등 타부처와 협의
- □ 혐의된 지원조건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지표명

2.3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가 중 치

40%

평 가 내 용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ㅇ 사업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노력
- ㅇ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 ㅇ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조정 노력

2.3.2 사업별 운영성과

- ㅇ 목표 설정의 합리성
- 사업별 목표 달성정도
- ㅇ 사업운영 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및 전년 대비 개선 실적
- ㅇ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 정도

평가내용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1. 사업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노력의 사례

가. 문제점

- □ 규격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등 사업성과는 있었으나, 생산자조직의 생산·출하 자율 조정을 통한 수급안정 역할이 다소 미흡
- 전반적인 과잉생산 기조와 조합의 자체사업 비중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
 - 농가로 지원되는 규격출하선도금 위주의 자금성격을 바꾸기는 어려움.

나. 개선노력 및 사례

- □ 품목별전국협의회 중심의 수급안정대책 추진과 새로운 제도 개발
 -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을 활용하여 자율감축 등 병행 추진
 - 감귤 산지폐기(10,615톤) 및 간벌(3,747ha) 등
 -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제도 도입의 기반 역할
 - 「과실계약출하사업」, 「시설채소출하조절사업」도입 및 확대의 기반역할
 - 유통명령 등 새로운 수급안정제도의 실천 가능성 제시
- □ 작목반 전산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작목반 관리를 효율화
 - 농협의 '경제사업종합시스템'에 의해 작목반을 타사업과 연계하여 관리
 - 작목반 평가, 발전단계별 조직관리, 자금지원 및 관리 등
- □ 공동브랜드로 출하할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지원근기 마련
 -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공동브랜드로 출하할 경우 우대 ·
- □ 대농가 지원완료기일 이후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 20일간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사업 불용금액을 최소화

2. 사업운영 성과지표 및 지표 선정의 논거

가. 사업운영 평가지표

□ 생산자단채유통활성화사업

○ 2001년도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	01계획(년간)		집	행실적('01말		진도(%)
합用(A)	용자	자부담	합계(C)	융자	자부담	C/A
112,500	90,000	22,500	112,440	89,952	22,488	99.9

ㅇ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 평가지표 및 논거

明가지표 ・・・・・・・・・・・・・・・・・・・・・・・・・・・・・・・・・・・・	본 · · · · · · · · · · · · · · · · · · ·
<공동규격출하선도금>-농업	ପ
1. 대농가자금지원 및 약정	자금지원액 중 농가지원액의 비율과 약정이행도
2. 지원품목의 출하실적	약정이행과 연관하여 품목별로 공동판매가 진행되는 실적 - 품목별 연도별 공동판매실적의 진도파악으로 자금지원 의 효과를 파악하고, 산지유통을 점진적 개선
<매취사업>-회원조합,영농조	할법인
3. 사업대상 품목과 지원액	산지조합의 수급조절기능 부여 및 품목의 주산지화 및 전문화 촉진
<계약재배사업>-회원조합,영	농조합법인
4. 품목선정 및 계약금액의 적정성	주산지화, 전문화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고, 계약농가와 의 적절한 계약금액과 계약이행을 통해 산지유통의 핵심체 로서의 조합에 대한 인식개선과 농가의 수익 보장
<유통설비 및 자재구입비>-	회원조합,영농조합법인
5. 산지유통시설의 확충	생산면적이나 출하량에 비례하는 산지유통시설의 확충

□ 작목반 육성과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 작목반 평가지표 및 논거

평가지표(청과)	병가내용	배점	논계:
조직 내실화	조직규모조직운영 및 관리생산 및 유통교육공동기금 조성	25	작목반 내실화 및 조직정비 유도
공동사업 활동	- 공동작업 - 공동구매 - 공동판매	35	협동에 의한 공동활동으로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하고 효율화
상품성 제고 활동	선별 및 품질관리공동계산 실시여부공동브랜드 사용규격출하비율	40	산지단계의 품질관리를 강조하여 유통개선 도모
계		100	

ㅇ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평가지표 및 논거

""""""""""""""""""""""""""""""""""""""	$\mathbf{E} = \mathbf{A}$
대농가 자금지원 및 약정액	사업자금의 불용액을 최소화
약정액 대비 출하량	지원금액 대비 농산물의 규격출하량을 높여 산지유통개선을 촉진

3. 사업운영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효과 분석

<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 >

가. 성과평가 결과보고

□ 보고시기: 12월경

□ 보고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안기금 주관기관

□ 보고내용: 사업내용, 사업성과, 개선사항, 평가자 의견

O 참석 : 농안기금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등

나. 사후조치체계

□ 성과평가결과 반영

- O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조직등급별로 차등지원
 - 우수조직 : 인센티브 지원(2억원씩 2년간 무이자 융자지원)
 - 일정기준 이상 사업의무 미이행 및 부진 조직 : 차년도 지원중단 등

□ 품목별 전국협의회 사업 자채 운영평가회 개최

- 시 기: 12월~ 1월 경
- 주요내용
 - 전년도 품목별전국협의회 각종 사업(농안사업 포함) 운영성과 평가
 - 차년도 운영방향 협의
 - 농산물 유통 우수추진사례 발표 및 정보교환 등

く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

가. 성과평가 결과 보고

□ 작목반 활동에 따른 평가 및 조직관리

- 작목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말 기준으로 전 작목반을 평가
 - 평가위원회: 시군지부 담당자 및 농관원관계관 등 3~5인이내
- 평가결과 작목반 발전단계 분류
- 발전단계 : 최우수조직 85점 이상, 우수조직 70~84점, 일반조직 69점 이하
- 평가내용 : 조직관리 및 내실화(25점), 공동사업활동(40점), 규격출하 및 품질관리 활동(35점)

< 발전단계별 작목반 현황 >

(단위: 개)

7	분	刘	일반	우수 ^{(1) ()}	、 事中
조직수	2001년(a)	17,747 (100%)	5,658(32)	5,975(34)	6,114(34)
	2000년(b)	20,919 (100%)	6,183(30)	7,610(36)	7,126(34)
	증감(a-b)	△3,172	△525	△1,635	△1,012

□ 사업대상자 및 사업실적 보고

- 조직별 사업신청현황 및 품목별 신청내역 보고 : 사업개시 30일 이내
- 자금지원후 지원 및 사업물량 약정현황 보고 : 지원완료후 30일 이내
- 사업종료후 품목별 사업실적 보고 : 사업완료후 30일 이내

□ 차년도 사업선업자 선정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농림사업세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사업과 이중지원을 배제
- 사업희망자에 한하여 최우수조직에 우선지원 및 우수조직에 지원
- 일반조직으로 분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제한

4. 무실재권 관리제계 설명 및 합리성에 내한 논거
□ 농안기금의 상환의무는 기금을 대여받은 기금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부담○ 농협에서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농협에서 기금을 대신 부담하게 되어있음
□ 그동안 농협(기금대출기관)에서 농안기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연체한 경우는 없음
※ 단,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의 경우 회원농협 측면에서 부실이 된 경우(부실채권)도 있으나, 실태파악은 되어 있지 않음
5. 과거 3년의 부실채권 규모, 비율 및 회수실적의 추이
□ 과거 3년간 부실채권 규모 : 해당사항 없음○ 회원농협 부실의 원인이 본 사업의 자금을 받아 운용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지 않음
□ 부실채권 회수실적 : 해당사항 없음○ 부실된 회원농협에 지원한 농안기금은 상환기한내 회수됨
6. 환경 변화 및 이에 대응한 조치
가.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영향
□ WTO체제 출범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어 외국농산물과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
□ 전자, 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농업과 유통분야의변화를 가속화

○ 시설원예의 증가와 농산물 주년생산, 생산의 기계화·자동화

O POS, EDI시스템의 도입과 도매시장외 유통경로의 발달

○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등

- □ 대형 신유통업태의 급증 등으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을 바탕으로 시장교섭력을 높여 생산자에게 농산물 납품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생산자간의 경쟁을 의도적으로 유발시킬 것임
-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납품가격 인하요구가 거세어지고 작목반간,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과 산지농협간의 경쟁생산자간의 경쟁 심화
- 업체가 대형화 될 수록 산지구매, 계약재배, 지정농장제 등 직거래 물량의 증가
- O 규격·표준화된 물량 공급 요구
- 대형 유통업체들의 구매력이 강화되면 定時・定量・定質・定價 구매와 공급 요구

□ 소비자들은 안전·고품질·편의 농산물을 선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강화

- 양, 가격 위주 → 안전성, 건강, 맛, 편의성, 브랜드 위주
- 농산물 리콜제 요구 확대와 품질관리기능이 중요시 됨

나. 환경변화에의 적응 및 조정

□ 생산자조직 육성으로 산지의 표준규격농산물 대량 공급체계 마련

- 산지의 기초 생산자조직인 작목반을 농산물 유통개선의 실천조직으로 육성
- 17.747개 작목반에 373,884명의 농업인들이 참여(총 농업인구의 16% 수준)
- 시설채소 중심으로 품목별전국협의회 추가 결성 : 오이, 호박, 가지전국협의회
- 산지농협의 농산물 판매사업 규모가 크게 신장 : ('00) 93.484억원 → ('01) 95.315

□ 품목별전국협의회 중심의 수급안정대책 추진과 새로운 제도 개발

-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을 활용하여 자율감축 등 병행 추진
- 감귤 산지폐기(10.615톤) 및 간벌(3.747ha) 등
-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제도 도입의 기반 역할
- -「과실계약출하사업」、「시설채소출하조절사업」도입 및 확대의 기반역할
- 유통명령 등 새로운 수급안정제도의 실천 가능성 제시

基对山용

2.3.2. 사업별 운영성과

1. 사업목표 및 목표 설정의 논거

□ 작목반 및 품목별전국협의회 육성목표

- 작목반 : 작목반을 농협 판매사업의 중심체로 육성
- 산지조합 주관하에 작목반에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고, 상품성 제고 위주로 활동
- 〇 품목별전국협의회: '農民本位'에 의한 품목별 생산・출하 자율조정의 실천조직으로 육성
- 품목별전국협의회 주도로 생산·출하조정을 추진하고, 과잉 생산시 소비촉진운동 및 공동마케팅 전개 등으로 수급안정 도모

□ 사업목표 : 농안사업실시요령상 지원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물량)을 약정, 추진

2. 목표 달성도와 그 논거

가. 생산자단체유통활상화사업

□ 사업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7 是		2001년도		2000년도	
사업주체	자금 용 도	조합수	지원액	조합수	지원액
농업인	규격출하선도금	158	81,707	302	108,528
회원농협	매취사업	29	4,942	54	18,944
	계약재배사업	5	725	1	105
	유통설비 및 자재구입비	4	2,578	21	11,773
계		158	89,952	302	139,350

○ 최근 3개년(2000/2001/2002)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톤)

지원시기	지원액	조합수	품목수	조합당 지원액	품목당 지원액
2000년	141,240	302	33	468	4,280
2001년	89,952	158	18	569	4,997
2002년	55,017	113	20	487	2,750
계	291,192	191	24	508(평균)	4,044(평균)

○ 과실계약출하사업, 시설채소출하조절사업, 채소수급안정사업,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등의 실시에 따라 채소와 과실류의 주요품목이 타자금으로 지원되어 지원액 및 지원조합수는 현저히 줄고 있으며, 상기한 사업을 제외한 품목 및 조합에 지원되고 있음

나.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 □ '00년 약정액 대비 공동으로 규격출하한 실적은 물량기준 214%, 금액기준 416% 달성
 - 총출하금액 중 농협계통출하 32.6%, 법정도매시장 44.5%, 직거래 및 기타 22.9%(금액기준임)
 - 품목별로는 우선지원품목중에서 딸기, 오이, 토마토 순으로 사업실적이 높음

□ '01년 출하실적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지원금액		출히	약정	사임	1 실적	달성실	子(%)
ਦ	지원금액	물량(b)	금액(c)	물량	금액	물량	급해
2001	77,000	122,705	107,685	245,410	430,740	200%	400%
2000	100,000	198,606	136,982	425,790	569,953	214.4	416.1

주) 2001년 사업실적은 추정치임

3. 사업운영의 성과

<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 >

- □ 생산자조직의 용도가 명확한 사업에 대해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 O 농가의 규격출하를 통해 농산물의 표준화, 규격화를 도모
 -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주산지의 대량규격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 O 회원농협에 매취사업, 계약재배사업, 유통설비 및 자재구입비를 지원함으로서 회원농협을 농산물 생산 및 유통조절 기능을 갖춘 핵심조직으로 육성이 용이

□ 품목별 전국협의회 가입조직에 대한 지원

- 주산지화가 진행된 품목 및 생산자조직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품목 전문화를 촉진
- 품목별 전국협의회 가입은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량과 생산농가, 생산면적에 대한 평가 후 가입

く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 >

- □ 딸기, 풋고추, 오이, 토마토 등 시설과채류 위주로 규격출하촉진자금이 지원 되고, 이들 품목 중심으로 규격출하가 촉진
 - 총사업자금의 59%인 45.812백만원이 시설과채류에 지원
 - 우선지원대상품목 중 시설과채류 : 딸기, 풋고추, 오이, 토마토, 참외, 호박, 수박, 가지
- □ 공동계산 실천작목반 등 우수작목반 위주로 자금이 지원되어 소비지에 대한 대량의 농산물 공급기반이 점진적으로 조성되고, 유통개선이 촉진
 - 2001년 자금지원 규모는 전년대비 23,000백만원 축소하였으나 우수조직 위주로 차등 지원하여 농가당 지원금액은 조금씩 증가
 - 농가당 지원금액: ('99) 2,960천원 → ('00) 2,980천원 → ('01) 3,077천원
- □ 작목반 평가 및 이에 따른 부실조직의 지속적인 정비로 유명무실한 작목반 대폭 감소
 - 작목반수 : ('00) 20,919개 → ('01) 17,747 (3,172개 정비)

4.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범위, 만족도조사 결과분석 및 결과반영 실적

< 생산자단채유통활성화사업 >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범위

- 지원대상 조직 : 품목별 전국협의회 1개품목 이상 가입한 생산자조직 (지역농협, 전문농협, 영농조합법인)
- 지원대상 품목: 품목별 전국협의회 품목으로 채소수급안정사업, 시설채소 출하조절사업, 과실계약출하사업 품목은 제외 (미가입품목은 총 지원액의 50%이내에서 지원가능)
- 지원용도별 구분
 - 농가(규격출하선도금): 81,707백만원
 - 농협(매취사업, 계약재배사업, 유통설비 및 자재구입비): 8,245백만원

□ 농가지원자금의 확대 및 품목별 지원시기의 구분 등으로 효율성 증대

- □ 주요 채소,과실류의 제외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대상조직 및 지원액의 감소
 - 지 원 액 : ('00) 141,240백만원 → ('01) 89,952백만원 → ('02) 55,017백만원
 - 지원조합 : ('00) 302개소 → ('01) 158개소 → ('02) 113개소

<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 >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범위

○ 작목반에 가입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단위: 개, 명, %)

전	체	사 3	참 역 반원수(D)	可	н)
작목반(A)	반원수(B)	작목반(C)		C/A	D/B
17,747	373,884	3,697	25,024	21%	6.7%

- □ 품목별 적기 자금지원, 농가별 지원자금의 규모 확대 등으로 사업효과 및 만족도 증대
- □ 단, 저금리 기조하에서 지원자금의 금리가 높아 사업신청금액은 감소
 - 신청금액: ('00) 605,722백만원 → ('01) 448,096백만원

5. 성과관리체계 및 그 운영

く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자금 >

□ 지원조합 순위 결정 및 자금배정

- 자금신청조합에 대하여 전년도사업 및 산지유통개선 진행도 평가 후 자금배정
- 지원조합 평가항목
 - 사업신청품목의 공동출하실적(30%)
 - 품목별 전문화(25%), 사업신청품목의 협의회 가입비율(20%)
 - 공동계산제 실시작목반(15%), 산지유통시설 보유현황(10%)

□ 사업 및 자금관리

- O 회원농협의 대농가 지도 등
- 약정이행여부 확인. 사업이행관련 보고 및 사후관리
- 자율검사원 지정 운용 등 조직운영 강화 지도
- 회원농협의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 자금 적정지원 여부, 지원기일내 자금지원 여부, 계통별 상환자금에 대한 적정 상환지도
- 회원조합 및 농가에 대하여 사업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く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 >

□ 작목반 관리 및 평가 : 중앙회 시군지부 및 회위조합

- 작목반 관리 :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작목반을 관리하나 작목반 신규 결성시에는 농협
 - 시 · 군지부에서 심사 후 승인
- 작목반 평가 : 시군지부 주관으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 사업 및 자금관리

- 사업물량 및 자금관리
- 회원농협 관리 : 농협시군지부(지역본부)에서 회원조합의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지도 · 감독 실시
- 농가 관리 : 회원조합에서 사업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사업 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 규격출하 여부
- 산지조합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출장소장과 협의하여 전담검사원을 지정한후 자율검사
- 지원대상 작목반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

여 백

(7) 소비지유통개선사업

I. 사업현황 20	95
 사업개요 / 2. 사업여건 / 3. 사업정책방향 2000까지 주요실적 / 5. 2001 주요실적 요약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29	99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30	08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3(2.3.2 사업별 운영성과3)	

사업담당기관	농 림 부 시장과(☎500-1833)				
	농수산물유통공사 시장지원팀(☎797-4023)				
사업실시기관	농협중앙회 판매장지원팀(☎397~5778)				
	공판장분사팀(☎397-7174) 과수화훼부(☎397-7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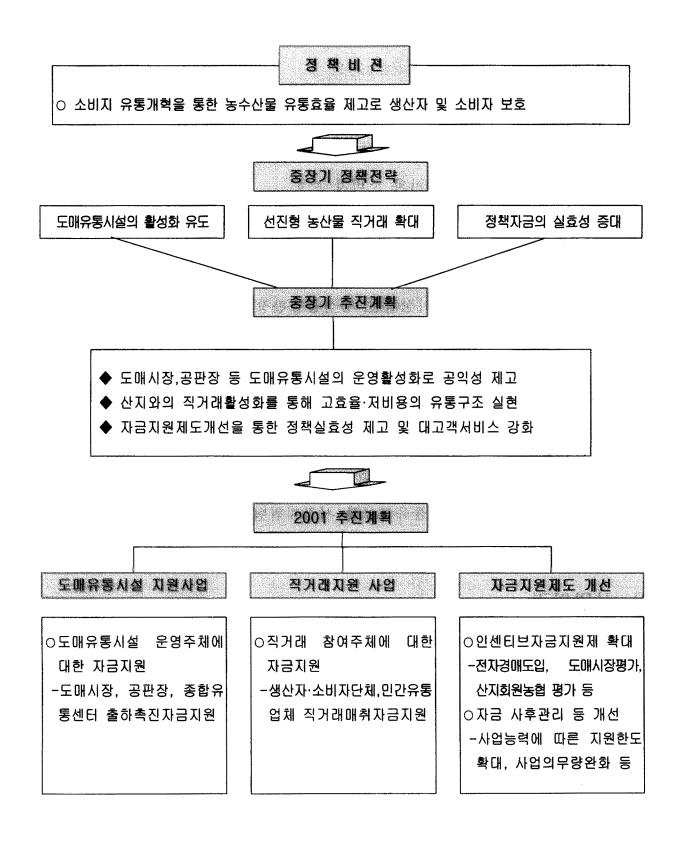
여 백

I . 사 업 현 황

1		Ļ	어	7	Ц	요
ı	/\			_	П	ш.

 □ 사업목적 ○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농산물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장거래 제를 정착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농산물 직거래를 농산물 유통체계의 장기·제도적인 사업으로 정착·발전시켜 고효율·저비용의 유통구조를 실현
□ 사업대상 : 농산물도매시장법인, 농산물공판장,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유통 업체, 소비자단체
□ 사업방식 : 농안기금 융자 사업
□ 사업담당기관 : 농림부 시장과
□ 사업실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시장지원팀, 농협중앙회 판매장지원팀, 공 판장분사팀, 과수화훼부
2. 사업여건
□ 농산물시장이 개방화되어 우리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과 무한 경쟁을 벌이게 됨□ 국내에 진출한 외국유통업체는 막대한 자본력과 구매교섭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 잠식

3. 사업정책방향



4. 2000년까지 주요실적

□ 다양한 유통채널 구축을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02년도까지 32개 건설 완료 목표중 23개소 개장 완료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 15개 목표중 9개장 완료

□ 출하촉진자금 지위을 통한 적극적인 출하유도로 거래물량증가 및 공정거래 선도

- 도매시장 거래물량: ('99) 4.867천톤 ⇒ ('00) 5.273천톤('99년도 대비 7.6% 증가)
- 도매시장경유율 : ('97) 49.4% → ('99) 47.5 → ('00) 47.9 →('02.P) 55
- 농협공판장 거래물량: ('99) 2,097천톤 ⇒ ('00) 2,171천톤('99년도 대비 3.5% 증가)
- 종합유통센터 도매거래금액: ('99) 6.871억원 ⇒ ('00) 8.300억원('99년도 대비 20.8% 증가)

□ 직거래자금 지원에 따른 판매처 제공으로 출하선택권 확대 및 농가수취가격제고

- 직거래 사업실적 : ('99) 40,317억원 ⇒ ('00) 44,830억원(전년대비 11.2% 증가)
- 종합유통센터 도매거래실적: ('99) 6.871억원 ⇒ ('00) 8.300억원(전년대비 20.8% 증가)
- 대형소매유통업체는 자금지원액의 355%이상 농수산물 직거래 유도
- 농산물유통량중 직거래 비중 : ('98) 12.3% → ('99) 15.4 → ('00) 18.1

□ 정책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패널티 부과제 도입으로 실효성 제고

- O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도매시장평가결과, 전자경매실적 : 지원자금의 20~30% 우선 배정 및 금리 우대
 - 농협 회원조합 평가결과 우수조합 : 2억원이내 무이자 지원
- 평가결과 부진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평가결과 부진업체 판정시 지원금액 감액 : 사업별 20~40%
 - 부진업체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지도 점검 실시

5. 2001 주요실적 요약

□ 자금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출하유도로 출하선택권 확대와 거래물량 증가

- 도매시장 거래물량 : ('00) 5.273천톤 ⇒ ('01) 5.551천톤('00년도 대비 5.3% 증가)
- 농협공판장 거래 금액: ('00) 17,870억원 ⇒ ('01) 18,868백만원('00년도 대비 5.6% 증가)
- 종합유통센터 도매거래금액: ('00) 8,300억원 ⇒ ('01) 10,632억원('00년도 대비 28.1% 증가)
- 직거래 사업실적 : ('00) 55,417억원 ⇒ ('01) 77,770억원(전년대비 40.3% 증가)
- 민간유통업체는 자금지원액의 369%이상 농수산물 직거래 유도
- □ 출하선도금 무이자 지원으로 농업인 6,553백만원 소득 보전효과 제고
 - 79,428백만원 × 연 8.25% = 6,553백만원
- □ 산지공판장 운영으로 소비지공판장 출하를 대체하여 농업인 운송비 160억원 절감
 - 산출근기 : 535,853톤/5톤 × 15천원/5톤당 = 160억원
- □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패널티 부과로 정책의 실효성 증대
 - 도매시장 평가결과 및 전자경매실적 반영 자금 증액 지원 : 4개법인, 1,015백만원
 - 도매시장평가결과 우수 법인에 금리 인하 : 3개법인 800백만원(1~0.5%P 인하)
 - 농협 회원조합 평가결과 우수조합 인센티브 지급 : 20개 조합 3,000백만원
 - 평가결과 부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 자금지원 중단 또는 지원규모 감액조회
- □ 직거래 확대를 통한 유통마진 축소로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편의 제공
 - 농산물 유통량증 직거래 비중 : ('99) 15.4% ⇒ ('00) 18.1 ⇒ ('01) 23.4
 - ⇒ 유통마진이 도매시장 경유시보다 평균 32.6% 축소되어 유통비용 1조4,420억원 절감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표명 2.2 사업 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가 중 치** 40%

평 가 내 용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

-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활동과 사업 목적의 연계성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융자/보증 대상 선정기준 및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융자/보증 조건 산정의 합리성

평가내용

2.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1. 신규사업 추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2.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타 기금 또는 타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목록
 - : 해당사항 없음
- 3. 본 사업의 기금설치 목적과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분석

< 기금설치목적 >

○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농안법 제54조)

□ 농산물출하촉진사업

○ 국고로 건설되어 운영중인 농산물 도매시장의 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에 출하촉진자금을 지원,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대금결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직거래매취사업

-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시 농산물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유통경로의 다원화, 유통마진 축소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사업 추진
- 종합유통센터를 통한 신물류체계의 성공적 구축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동시 보호
- 공동선별, 공동계산 체제 구축을 통한 농산물 유통개혁 조기 실현
- 농산물 직거래 매취는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을 매취하여 소비자(단체, 조직)에게 직거 래를 통해 판매함으로서 중간상인에 의한 다단계 유통구조 개선
 - 기존의 유통채널을 견제, 자극하여 유통효율을 증진시키고 가격 및 수급불안을 완화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 활동 내역 및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가. 사업목적

- 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출하를 유도하여 상장거래제 정착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 유통경로의 다원화에 따른 유통주체간 경쟁력 확보 및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제고
- O 농산물 유통환경에 부응한 직거래 확대 추진

나. 주요사업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금액 대비 농산물출하촉진자금 2,400%, 직거래매취자금 250% 이상의 사업 목표 부여 및 사업실적 관리 등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도모

다.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도매시장으로 물량 출하를 유도하여 도매시장 기능 정상화 및 농업인의 대량 분산처 확보
- 영세한 도매시장법인에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경락대금 결제로 출하주의 영농자금 부족 해소
- 직거래 사업 추진으로 생산자 수취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 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 증진과 농산물 유통 개혁추진
- 농산물 가격인상 억제와 규격화, 포장화, 브랜드화 등 산지 유통개선 촉진으로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제고

2. 사업대상 선정기준의 결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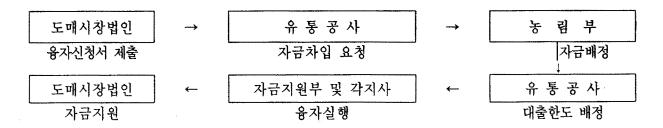
く 농산물 출하촉진자금 지원사업 >

□ 사업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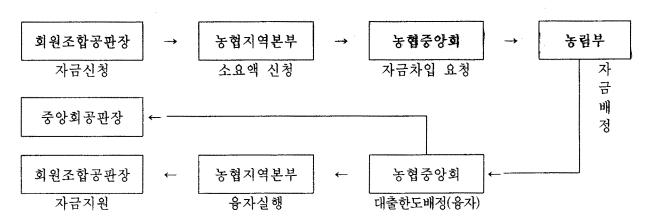
-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제외)의 도매시장법인(공공출하법인 포함)
 - 차등지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와 전자경매추진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법인,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 지원효과가 없는 법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지원중단기간에 해당되는 법인
- 농협중앙회 공판장 및 회원조합 공판장
 - 차등지원 : 농림부가 정한 "농산물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운영지침"에 의거 차등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공판장,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 지원효과가 없는 공판장

□ 사업대상 선정 절차

<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



< 농협공판장출하촉진자금 >



< 농산물 직거래자금 지원사업 >

□ 사업대상 선정

< 종합유통센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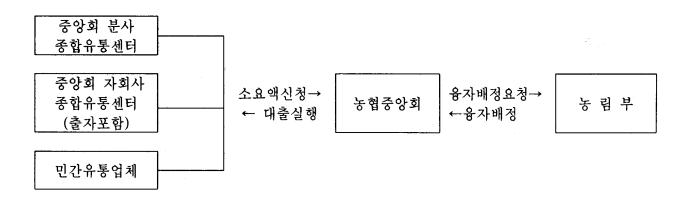
- 농안법 제57조의4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제외대상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침 등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종합유통센터 운영 주체

< 소비자단체, 민간유통업체 >

- 소비자단체 :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설립목적 또는 사 업이 농산물유통에 부합되고 무점포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 민간유통업체 : 산지유통센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종합유통센터, 산지조합 등과 의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백화점, 대형점, 직영점형 체인사업자

□ 사업대상 선정 절차

<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 >



< 소비자단체, 민간유통업체 >

소비자단체,	1	농협중앙회,	2	농협중앙회,	3	농림부
민간유통업체	\rightarrow	유통공사	\rightarrow	유통공사	\rightarrow	ОПІ
○ 자금신청 및 시행	6	○ 자금신청 접수	(5)	○ 사업계획공고	4	○ 사업시행지침 수립
	←	○ 융자실행 및 실적점검	←	○ 사업시행세부요령	←	○ 융자금 배정
				작성보고		
				○ 사업자 확정통보		
				○ 융자금 배정		
				○ 융자실행결과보고		

3. 선정기준 및 선정기준의 논리적 근거

가. 선정대상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포함)
- 농협중앙회 및 지역 회원조합 공판장
- 직거래자금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무점포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 민간유통업체 : 유통산업발전법상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나. 선정기준

- 산지집하능력 및 대금결제능력 강화를 통하여 유통개선에 기여코져 출하선도금 지원실적 상장거래 실적기준에 따라 출하촉진자금 지원
- 융자대상 공판장의 실제 산지선도금 및 대금결제자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별로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
- 소비자단체, 민간유통업체의 소요액 및 전년도 거래실적에 의해 산정

4. 선정결과 및 선정결과의 기준과의 부합 논거

□ 선정결과

(단위: 개소,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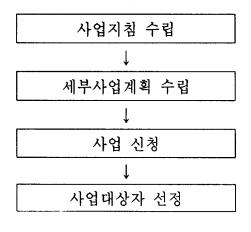
7	ł	'99	2000	2001
ר און און דו	업체수	27	21	21
도매시장	지원액	26,026	16,952	16,292
농협공판장	지원액	66,216	65,716	60,714
종합유통센터	업체수	6	7	8
	지원액	19,900	26,100	31,150
스비지다체	업체수	10	11	10
소비자단체	지원액	1,134	1,366	1,576
피기아트시케	업체수	5	6	7
민간유통업체	지원액	9,370	11,820	18,020

□ 선정결과의 기준과의 부합

○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3번 나항에 의거 선정

5.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이 다수인 경우, 특정 사업대상을 선정한 절차 및 논거

□ 사업대상 선정 절차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림부)

사업시행세부요령작성(사업실시기관)

사업대상자

지침 및 사업요령에 의거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 선정 기준

○ 도매시장법인

- 출하선도금 : 법인별 전년도 산지 선도금 운용실적을 기준으로 배정비율 산정

- 결제자금 : 상장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연소요액의 1/24)을 기준으로 배정

○ 농협공판장

- 농림부가 정한 "농산물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운영지침"과
- 융자대상 공판장의 실제 산지선도금 및 대금결제자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하여
- 생산농가에 대한 산지선도금 100%와 상장경매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연 소요액 의 1/24)의 100%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가 배정비율 산정

○ 종합유통센터

- 출하선도금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별로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산지선도금의 80%이내

- 대금결제자금 : 예약 수의조달 물량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의 80%이내

○ 소비자단체, 민간유통업체

- 소비자단체 : 전년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사업비의 80%이내에서 사업실 적이 많은자 순으로 선정

- 민간유통업체 : 전년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사업비의 40%이내에서 사업 실적이 많은자 순으로 선정

6. 융자 조건 산정기준의 논거

□ 융자 조건 산정 절차

- 농산물 생산의 작부 체계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융자기간 설정
- 농수산업 참여자의 경제적 위치, 정책적 지원 필요성 여부, 시중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금리 차등화
- 자금 지원의 정책적 목표 및 자금 사용자의 사업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및 사업 목표 부여

□ 융자 조건

8 도	용자기간	지원금리	사업의무
출하선도금	1146[1]	5.0%	지원금액의 125 % 이상
결제자금	1번역내	5.5%	지원금액의 143%(연24회전)
추하서도근 대근결제자근	1년이내	5.0%	지원금액의 50%이상 출하선
걸이건그룹, 네티크세시티	15.14	3.070	도금 운용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1년이내	1	지원금액의 125% 이상
출하선도자금	1년이내	53.0%	지원금액의 125% 이상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1년이내	2.5 %	지원금액의 250% 이상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출하선도자금	출하선도금 1년이내 결제자금 1년이내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1년이내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1년이내 출하선도자금 1년이내	출하선도금 1년이내 5.0% 5.5% 5.5% 5.5% 5.5% 5.5% 5.5% 5.5%

○ 지원대상자별 금리 적용기준 : 생산자 단체(농협) 4.5%, 기타 법인 및 개인 : 5.5%

7. 융자 조건 산정 절차

- □ 수요자 및 사업집행기관의 의견과 사업별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지원조건 검토
- □ 기금총괄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이 검토한 지원조건을 타 사업과의 형평성 및 재정경제 부 등 타부처와 협의
- □ 협의된 지원조건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로 확정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지 표 명

2.3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가 중 치

40%

평 가 내 용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사업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노력
-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및 조정 노력

2.3.2 사업별 운영 성과

- 목표 설정의 합리성
- 사업별 목표 달성도
- 사업운영 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및 전년대비 개선 실적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 정도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1. 사업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노력

□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

-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수요와 공급이 완전 경쟁체제 요인 내포
 -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수집과 분산과정이 길고 복잡
- O 상품의 특성상 부패·변질이 쉬워 유통과정상 손실이 많이 발생
-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워, 보관·하역·운송, 표준화·등급화·기계화 등에 어려움
- 생산은 연도별 ·계절별 진폭이 큰데 비해 소비는 연중 고르게 이루어져 수급 관리 어려움

□ 사업운영상의 문제점

-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유통업체의 자금 사용 기피
- 업체의 자금 미사용에 따라 민간 부문에 대한 농산물 유통정책 접목 어려움
- 일부 품목(채소류) 과잉 생산 및 소비 감소에 따른 대량 판매처 상실로 산지 폐기
- 직거래장터 운영조합에 지원된 자금은 장터 매출부진 및 비용과다 발생으로 대부분 하 나로 운영자금으로 활용

□ 업무개선 노력

-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로 농산물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출하촉진자금 : (당초) 8% → ('01. 3) 6.5% → ('01. 11) 5.5%
-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사업목표 확대로 생산자의 출하물량 증가
- 직거래실적에 따라 회원조합의 지원한도 제한을 완화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자금 지원 확대로 직거래 활성화 유도
-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매취 조합에 대하서도 사업의무량을 완화하여 산지조합의 직거래 사업 유도

2. 사업운영 성과지표와 성과관리 체계의 합리성

- □ 농안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실시로 효율적인 기금 운영관리 도모
- □ 농안기금 사업 평가
 - 대상사업 : 공판장출하촉진지원사업, 직거래매취지원사업, 종합유통센터자금
 - 평가지표
 - 공판장, 직거래사업 : 지원목적 달성도, 자금운용 적정성, 사업관리 적정성, 사업성장성 등
 - 종합유통센터 : 농안기금 운용의 적정성, 사업실적, 재무상황, 사업성과 등
- □ 도매시장법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대상기관 : 도매시장법인 및 도매시장공판장
 - 평가지표
 - 전자경매추진노력, 물류체계개선노력, 물량집하노력,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 등
- □ 산지공판장 농안기금 운용 지도·점검 실시
 - 대상기관 : 농협 소속 공판장
 - 점검내용 : 농안기금(공판장출하촉진자금)의 용도내 운용, 선도금 운용 관리 등
- □ 사업별 의무량 부여에 의한 사업목표 관리
 - 농산물출하촉진사업
 - 도매시장법인 : 출하선도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 결제자금 143% 이상(연24회전)
 - 농협공판장 : 지원금액의 50% 이상 출하선도금 운용
 - 직거래매취자금
 - 종합유통센터 : 지원금액의 125% 이상
 - 직거래자금 : 소비자단체 지원금액의 125% 이상, 민간유통업체 지원금액의 250% 이상

3. 사업운영 성과평가에 관리체계의 효과 분석

- □ 정책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도매시장 및 농협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 □ 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조치 실시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도매시장 평가결과 및 전자경매추진실적에 따라 출하촉진자금 우대 지원 확대
- 우대방법 : 도매시장평가결과 20~30%, 전자경매추진 20~30% 배정액 가산
- 지원실적 : 4개법인, 1,015백만원
- 도매시장평가결과 우수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지원금리 인하 : 3개법인 800백만원(1~0.5%P 인하)
- 농협 회원조합 평가결과 우수조합 인센티브 지급
- 우대방법 : 최상위 10개 조합 2억원 무이자 지원, 차상위 10개 조합 1억원 무이자 지원
- 지원실적 : 20개 조합 3,000백만원
- 평가 우수업체 포상추천 및 2년 연속 우수업체 차년도 평가 면제
- 대구중앙청과, 대전중앙청과 광주원협(공): '00~'01 평가 우수업체로 2002년도 평가 면제

□ 평가결과 부진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도매시장평가결과 및 전자경매 실적 부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 2년 연속 부진 법인 : 자금 지원 중단(1개업체, 600백만원)
- 전자경매 실적 부진업체 지원 금액 **감액(30%)** : 6개업체, 3,245백만원
- 도매시장평가결과부진업체 경영컨설팅 실시
- '01 운영개선지도 실적 : 5개소
- 농안기금 사업평가결과 부진 회원 조합 제재
-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이 없거나 50% 미만 운용시 : 자금 배정액의 10~30% 감액
- 출하선도금 이자 징수시 : 자금배정액의 20~40% 감액
- 법령위반, 정부시책, 지침위반, 허위보고 등 : 차등 배정, 자금회수, 지원중단 등

4. 부실채권 관리체계 설명 및 합리성

□ 부실채권 관리체계 및 합리성

- 농안기금의 융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농협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기금을 대여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기관이 융자대상자에 대출을 실행
- 농안기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기금을 대여받은 농협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있음
- 농안기금의 융자에 따른 대손위험과 사업대상자 선정·융자실행·사업실적확인·사후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실채권 발생시 사업실시기관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5. 과거 3년의 부실채권 규모, 비율 및 회수실적의 추이

□ 부실채권 발생 실적(최근 3년간) : 없음

6. 환경변화 및 이에 따른 대응

□ 유통여건의 변화

- 농산물시장이 개방화되어 우리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과 무한 경쟁시대 도래
- 국내에 진출한 외국유통업체는 막대한 자본력과 구매교섭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 잠식
- 소득향상에 따라 신선 청과물, 축산물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친환경 농산물 등 고품질 상품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선호 급증

□ 새로운 유통정책 방향

- 농산물 유통정책의 기본적 인식틀이 『생산자 지향성』에서 『유통지향성』위주로 전환
 - 농산물 유통후 시장반응과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차기 생산결정에 적극 반영하는 환류 체계 확립
- 협의의 직거래에서 『광의의 직거래』로 효율적인 직거래 체제를 다양하게 개발
 - 할인점 등 민간유통업체와 산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를 강화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다양화 및 전자경매 실시, 물류체계 개선 등으로 저비용·고효율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병가내용 2.3.2 사업별 운영 성과

1. 목표 설정기준 : 사업목표량 부과

○ 지원목적 및 지원대상에 따라 사업목표량 차등 부과

< 자금별 목표설정 내용 >

사 업	B	지원용도	사업목표	설정근기
출하촉진자금	도매시장법인	출하선도금	125%	○자부담 20%
		결제대금	143%	○자부담 30%(연 24회전)
	공판장	출하선도금		○총지원금액중 50%이상
		결제대금		출하선도금 운용
직거래 매취자금	소비기	사단체	125%	○자부담 20%
	민간유통업체		250%	○자부담 40%
	종합유	·통센터	125%	○자부담 20%

2. 사업별 목표 달성도('00 지원 자금 기준)

□ 농산물 출하촉진지원자금 목표달성율

- O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 출하선도금 : 당초 사업목표보다 69% 증가한 11,261백만원 출하자 지원
 - 결제자금 : 지원자금 11,154백만원의 당초 사업의무량보다 680% 초과한 91,743백만원 상장거래 실적 달성
 - O 공판장출하촉진자금
 - 총 지원금액의 50%이상을 출하선도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01년도 사업실적 결과 전체 지원금액의 71.2%를 출하선도금으로 운영하였음

□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자금 목표달성율

○ 소비자단체 : 사업목표 125%보다 64% 증가한 2,588백만원의 농산물 직거래 추진

○ 민간유통업체 : 사업목표 250%보다 119% 증가한 43,677백만원의 농산물 직거래 추진

○ 종합유통센터 : 사업목표 125%보다 3,341% 증가한 9,218억원의 농산물 거래

< 사업별 사업목표 및 달성 현황 >

(단위:백만원,%)

사 업	병	'00년도 지원급액	사업목표 (A)	사업실점	운용을 (B)	초파 운용을 (B-A)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출하선도금	5,798	125	11,261	194	69
	결제대금	11,154	143	91,743	823	680
공판장출하촉진자금	출하선도금	43,244	50%이상	선도금으로	71.2	21.2
	대금결제자금	17,470	운용			
	계	60,714				
직거래 매취자금	소비자단체	1,366	125%	2,588	189	64
	민간유통업체	11,820	250%	43,677	369	119
	종합유통센터	261억원	125%	9,281억원	3,556%	3,431

- ※ 주) 1. 2001년도 지원자금은 현재 사업 운용중으로 사업목표 달성도 측정 불가함.
 - 2. 공판장출하촉진자금실적은 2001년도임

□ 연도별 직거래 추진실적

(단위:천톤,억원,%)

구是 。。			'01
농산물유통량(A)	21,215	21 ,120	21,320
직거래물량(B)	3,280	3,822	4,980
(금액)	(51,150)	(55,417)	(77,770)
직거래비중(B/A)	15.4	18.1	23.4

3. 사업운영의 성과

- □ 출하촉진자금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출하유도로 거래물량 증가 및 공정거래 선도 ○ 도매시장 거래물량 : ('00) 5,273천톤 ⇒ ('01) 5,551천톤(5.3% 증가) ○ 농협공판장 거래 금액: ('00) 17,870억원 ⇒ ('01) 18,868백만원(5.6% 증가) ○ 종합유통센터 도매거래금액: ('00) 8,300억원 ⇒ ('01) 10,632억원(28.1% 증가) □ 출하선도금의 사업의무량 완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자부담금 감소에 의한 금융 비용 부담 경감으로 경영수지 개선 ○ 도매법인의 금융비용 경감액 : 연간 66백만원(1.326백만원×5%) □ 출하선도금의 사업적용기간 단축에 따라 출하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강화 ○ 출하주 지원효과 : 연간 3.115백만원 □ 출하선도금 무이자 지원으로 농업인 6,553백만원 소득 보전효과 쟤고 ○ 79,428백만원 × 연 8.25% = 6.553백만원 □ 산지공판장 운영 등을 통해 소비지공판장으로의 출하를 대체하여 농업인 운송비 160억원 절감 ○ 산출근기 : 535.853톤/5톤 × 15천원/5톤당 = 160억원 □ 출하주에게 새로운 판매처 제공으로 출하선택권 확대 및 농가수취 가격제고 ○ 직거래 사업실적 : ('00) 55,417억원 ⇒ ('01) 77,770억원(전년대비 40.3% 증가) ○ 종합유통센터 도매거래실적 : ('00) 8,300억원 ⇒ ('01) 10,632억원(전년대비 28.1% 증가)
- □ 연도별 직거래 추진 실적 향상
- 농산물 유통량중 직거래 비중 : ('99) 15.4% ⇒ ('00) 18.1 ⇒ ('01) 23.4

○ 민간유통업체는 자금지원액의 369%이상 농수산물 직거래 유도

☐ 유통마진 축소를 통해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편의 제공

- 농가수취가격이 도매시장 출하시보다 평균 11% 높아 유통비용 4,000억원이 농가소득으로 환원
 - * 농협중앙회 조사부의 직거래실태 조사('99. 7) 적용
- 소비자지불가격은 일반소매점에 비해 평균 11.7% 낮아 유통비용 10,300억원(소매점 기준) 소비자에게 이익 환원
- ⇒ 유통마진이 도매시장 경유시보다 평균 32.6% 축소되어 유통비용 1조4,400억원 절감

□ 직거래 사업 확대로 인한 부대 효과

- 농산물 유통경로가 다양화되어 유통주체간 경쟁촉진 및 생산자 시장교섭력 증대
- 전자경매제 도입 등 기존 도매시장의 거래형태 개선 촉진
- 대형유통업체와 생산자단체(조직)간 농산물 판매 제휴
-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산지거래 및 농산물 취급확대로 규격화·포장화·브랜드화 등 산지 유통개선 촉진
- 직거래 장터 주변 상권에 대한 견제로 물가안정에 기여
- 직거래장터 개장에 맞춰 주변상가에서 할인판매 등 가격인하
- 생산자 직접판매를 통한 상품화 마인드 제고 및 영농 안정 도모
- 최종 소비자의 선호 패턴 및 변화가 보다 바르게 생산에 반영

4. 사업대상의 만족도와 개선 정도

가. 자금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 강화

□ 추진배경

O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사업의무량, 지원금리, 사업 적용기간 등으로 자금 사용자 이용 불편

□ 추진실적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탄력적인 금리 조정으로 법인의 금융비용 절감
 - 출하촉진자금 : (당초) 8% ⇒ ('01. 3) 6.5% ⇒ ('01. 11) 5.5%
- 사후관리 제도개선을 통한 업무간소화 및 사용자 편의 도모
 - 사업 의무량 축소
 - · 대금결제자금 : (당초) 지원금액의 143% 운용 ⇒ (개선) 100%
 - · 출하선도금 : (당초) 지원금액의 110% 운용 ⇒ (개선) 100%
 - 사후관리 제출 서류 간소화 : (당초) 분기별 1회 ⇒ (개선) 반기별 1회
- 도매시장 출하선도금의 사업기간 적용기간 단축 : ('00) 3년 ⇒ ('00) 2년

□ 추진성과

- 도매시장 지원자금의 사후관리 완화로 대고객 서비스 강화
- 신속한 자금지원 및 금리인하로 법인의 이자 부담 경감 : 연간 350백만원
- 도매시장법인의 자부담금 감소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 경감 : 연간 66백만원
- 사업 적용기간(3년⇒2년) 축소에 따라 출하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강화 : 연간 1,023백 만원 지원 효과

나. 소비지유통개선사업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소비지유통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자금수요 업체에 대한 고객의 평가과 Needs를 수렴 하여 농안기금 운용제도 개선 및 서비스 마인드 제고로 사업효율성 제고 도모

□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 모집단의 성격 : 최근 1년간 자금지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업체에 근무하며 자금지원와 관련하여 업무적으로 접촉하는 담당자

○ 표본선정

대상사업	>: 24 他::::::::::::::::::::::::::::::::::::		4	1344	
자금지원	84 업체	43 업체	지역별 업 조사업체가	체수를 감인 모집단에서	하여 무작
			위 표본추출		

□ 조사방법

○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설문조사서를 작성 자금 사용 경험이 있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일 대일 면접 조사하여 NCSI모델을 사용 고객만족도 산출

(2) 고객만족도 평가

- 자금지원 업체 서비스 평가 : ('00) 63점 ⇒ (2001) 72점 (전년대비 + 9점 향상)
- 조사 주요 항목별 만족도

学庭 泰特 训8 11 (14) (2)	<u> </u>	만 하도 '01
◇ 자금지원 신청절차의 간편성	70 %	65%
◇ 업체당 자금지원규모의 적정성	69	74
◇ 지원자금 이자율의 적정성	46	61
◇ 각 업체당 자금지원의 공정성	68	75
◇ 자금지원 시기의 적절성	69	68
◇ 자금수령 절차의 간편성	78	80

(3) 조사결과 고객 Needs 등에 대한 조치 실적

업체 요구 사항	조치실적
◇ 지원금리가 일반 금융기관에	◇ 지원금리 인하 추진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당초) 8% ⇒ ('01. 3) 6.5% ⇒ ('01. 11) 5.5%
◇ 신용대출 범위확대	◇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신용대출 시행
	○ 4개업체, 2,650백만원

5. 성과관리체계 및 운영

< 유통계선을 적극 추진하는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자금제 지원 확대로 정책 실효성 증대 >

□ 추진배경

○ 정책사업 추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흡으로 정책사업 유인책 부족

□ 추진목적

○ 정책자금의 차등 지원을 통한 정책사업 조기 정착유도로 유통개선 촉진

□ 추진실적

<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 도매시장 평가결과 및 전자경매추진실적에 따라 출하촉진자금 우대 지원 확대
- 우대방법 : 도매시장평가결과 20~30%, 전자경매추진 20~30% 배정액 가산
- 지원실적 : 4개법인, 1.015백만원
- 지원금리 인하 : 3개법인 800백만원(1~0.5%P 인하)
- 농협 회원조합 평가결과 우수조합 인센티브 지급 : 20개 조합 3,000백만원
- 우대방법 : 최상위 10개 조합 2억원 무이자 지원. 차상위 10개 조합 1억원 무이자 지원
- 평가 우수업체 포상추천 및 2년 연속 우수업체 차년도 평가 면제
- 대구중앙청과, 대전중앙청과 광주원협(공): '00~'01 평가 우수업체로 2002년도 평가 면제

< 부진업체에 대한 패널티 부과 >

- 도매시장평가결과 및 전자경매 실적 부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 2년 연속 부진 법인 : 자금 지원 중단(1개업체, 600백만원)
- 전자경매 실적 부진업체 지원 금액 감액(30%) : 6개업체, 3.245백만원
- 농안기금 사업평가결과 부진 회원 조합 제재
-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이 없거나 50% 미만 운용시 : 자금 배정액의 10~30% 감액
- 출하선도금 이자 징수시 : 자금배정액의 20~40% 감액
- 법령위반, 정부시책, 지침위반, 허위보고 등 : 차등 배정, 자금회수, 지원중단 등

여 백

(8) 종자수급사업

I. 사업현황323			
1. 사업개요 / 2. 사업여건 / 3. 사업정책방향			
4. 2000까지 주요실적 / 5. 2001 주요실적 요약			
Ⅱ. 사업선경	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327		
2.2.1 사업 선정의 타당성328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329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331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332			
2.3.2 사업별 운영성과336			
사업정책기관	농림 부		
	유통정책과(☎500-1825)		
사업실시기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031-467-0143)		

여백

I. 사 업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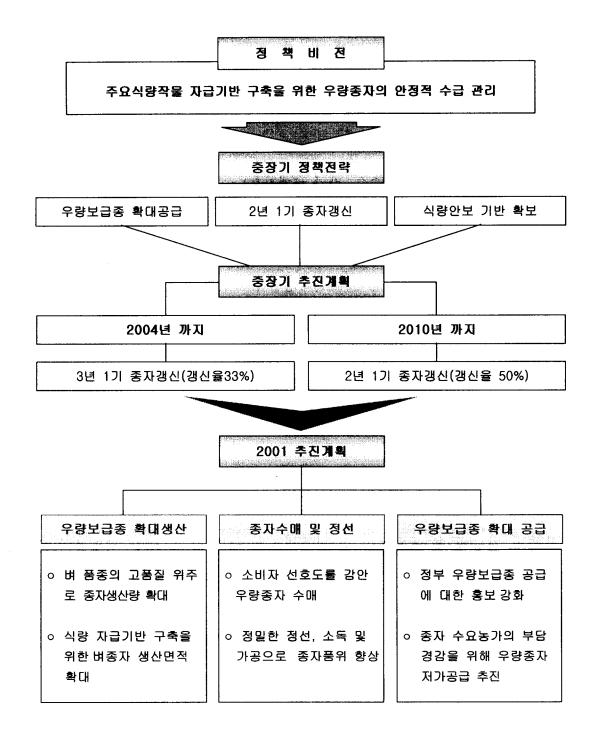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국민 기본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량 보급 종자를 생산하여 수요 농가에 공급
- □ 사업대상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5개작물)
- □ 사업방식 : 정부 직접사업
 - 사업대상 품목의 보급종을 농가에 위탁생산하여 농가에 보급
- □ 사업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 □ 사업실시기관 :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2. 사업여건

- □ 기상재해, 병충해 및 기후변동 등 환경변화를 극복 할 수 있는 식량종자 개발 필요
 - 지구온난화, 황사 등으로 식량작물 재배 여건이 과거와 달리 급변하여 수확량 감소시 농가 경제에 영향이 지대
 -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식량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보급이 요구
- □ 도시개발로 경작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우량종자 보급
 - 종자개발은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별 생산여건에 맞는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3. 사업정책 방향



4. 2000년까지 주요실적

□ 종자갱신사업 추진 현황

- 정부 "벼" 우량 보급종 공급 기준 「4년 1기」 종자갱신 체계 확립
- 우량 보급종 확대 생산·공급으로 식량생산기반 구축

(단위 : 톤, %)

	88.	갱신율	ğ	갱신율	.	갱신율	' 98	갱신율		갱신율	%	갱신율
계	4,056	3.9	15,200	13.3	18,665	16.9	24,830	23.1	23,302	23.0	24,397	24.1
버	2,035	3.3	8,265	13.3	9,021	17.1	12,620	23.9	12,623	23.8	12,982	24.6
보 리	275	0.6	2,140	12.4	1,584	23.1	1,849	25.9	1,477	21.5	2,524	42.5
콩	448	4.0	306	3.3	396	6.3	502	8.6	474	9.1	500	9.7
옥수수	412	50.7	442	73.9	188	46.9	194 (5)	40.9	249 (39)	45.4	215	33.0
감 자	886	1.5	4,047	12.0	7,476	18.8	9,665	27.1	8,479	20.4	8,176	17.3

□ 사업추진 성과

- 벼, 보리, 콩 등 주요 5개 식량작물에 대한 종자갱신사업의 연차적 확대 추진으로 식량 안보에 기여
 - 보급종 사용에 따른 수량증대 효과(추정)
 - ※ ('96) 141,386톤 → ('97) 169,648톤 → ('98) 171,407톤 → ('99) 167,896톤 → ('00) 168,089톤
- 우량종자 공급으로 수량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 보급종 사용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추정)
- ※ ('96) 1,328억원 → ('97) 1,575억원 → ('98) 1,841억원 → ('99) 1,739억원 → ('00) 1,844억원

5. 2001 주요실적 요약

□ 보급종 생산실적

- 보급종 수요를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으로 전환하여 보급종 생산을 '00년 28,802톤 보다 1,268톤 감소
 - '00년 보급종 생산실적 : 27,534톤(계획 27,435톤 대비 100.4%)
 - · 곡종별 내역 : 벼 14.883톤, 보리 2.403톤, 콩 847톤, 옥수수 68톤, 감자 9.333톤
- 벼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품종(17개 품종)생산으로 전환하고 장류콩은 증량 수매
 - 증량수매 : 장류콩 97톤
- 품질이 낮은 일반품종 및 재배 지양품종 벼는 생산 최소화 유도 (17개품종)
 - 인월벼, 농호벼, 호안벼, 남강벼 등

□ 보급종 공급실적

- 5개품목 보급종 공급실적 : 24,952톤(계획 26,872톤 대비 92.9%)
 - 보급종 기준 종자갱신율 : ('99) 23.0% → (2000) 24.1% → (2001) 23.8%

(범)

23.8 →

24.6 →

24.5

- 대북지원 옥수수 종자 공급확대로 남북기술 협력에 기여
 - 연도별 공급실적 : ('98) 5톤 → ('99) 39톤 → (2000) 95톤 → (2001) 71톤

< 작물별 공급실적('01년도) >

子世	게	# .	보기	₹	4 44	0강 : 자
계획량	26,872톤	14,816	2,177	702	190	8,987
공 급 량 (공급비율)	24,952톤 (92.9%)	12,952 (87.4)	2,177 (100)	668 (95.2)	168 (88.4)	8,987 (100)
갱 신 율	23.8%	24.5	23.5	14.2	29.6	22.7

ㅇ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 위주로 벼 보급종 확대

※ 벼 공급량 : ('99년) 12,623톤 → ('00) 12,982톤 → ('01) 12,952톤 → ('02계획) 13,990톤

Ⅱ.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为丑思

2. 2 사업선정 및 내용의 적정성

가 중 첫

40%

용 가 내 용

2.2.1 사업선정의 타당성

- ㅇ 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ㅇ 기금설치 목적 및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 ㅇ 사업 활동과 사업 목적의 연계성
- o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기준과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융자/보증 대상 선정기준 및 결정과정의 합리성·투명성
- ㅇ 융자/보증 조건 산정의 합리성

평가내용 2.2.1. 사업의 선정의 타당성

1. 신규사업 추가 여부

○ 식량작물 5개품목 위주로 종자 갱신 및 보급을 실시하여 신규사업 없음

2.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타기금 또는 타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목록

○ 식량작물의 우량종자 생산·공급은 종자수급 관리사업에서만 추진

3. 본 사업의 차별성과 상대적 우위성

- 식량작물의 종자개발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차원의 공익적 기능과 국가안보적 위치에 있어 민간업체에서 사업 곤란
- 정부 보급종자가 생산·공급되기 까지는 원원종, 원종, 보급종의 단계별 종자증식을 거쳐 최소한 3 ~ 4년 후에 수요농가에 공급되므로 지속적인 정부지원 및 관리 필요
- 수매된 종자는 현대화된 정선시설에서 전문적이고 복잡한 정선과정을 거쳐 소독 후 포장 하여 수요 농가에 최종적으로 공급되므로 우량종자 생산 · 공급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정부의 관리 필요

4. 본 사업의 기금설치 목적과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 기금설치 목적

○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57조에 의거한 종자산업진홍을 위한 사업으로서 우량종자 공급확대 및 종자갱신을 통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기능을 수행

□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 주요 5개 식량작물의 자급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가부담 완화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공급으로 국민 식량의 안정적 확보
- 고품질 우량종자 확대공급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수요 충족에 부응

평가내용

2.2.2. 사업내용의 적합성

1. 사업활동 내역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종자수급 관리사업 활동

- 국민 식량생산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공급
- 우량종자 공급확대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 및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

□ 종자 생산공급 목적에 따른 부합성

-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보급종자 생산 공급체계 확립
- 모든 농작물은 재배년수가 일정기간 경과함에 따라 종자 퇴화로 품종의 고유특성이 소멸 되어 병해충 등에 전염, 생산성이 저하되므로 일정 주기내에 종자를 갱신하여야 하나, 채산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고 있어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지원
 - 종자갱신주기 : 벼, 보리, 콩 : 4년, 감자, 옥수수 : 매년 갱신
- 기상변화에 따라 풍·흉이 연계되므로 안정적인 식량자급 기반을 위해 우량종자 생산 공급 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및 종자갱신을 통한 식량정책사업 추진 필요

2. 사업대상 선정기준의 결정과정

- O 우량보급종 확대 생산 ·공급으로 식량생산기반 구축
- 순도 높은 고품질 우수품종 확대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요식량의 안정적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3. 선정기준 및 선정기준의 논리적 근거

- 종자산업법 제121조 및 동법 제165조에 의거 국민 기본식량의 안정적확보를 위해 주요 5개작물(벼·보리·콩·옥수수·감자)에 대해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여 자급기반 확충 및 농작물 수급관리에 기여
- 종자산업 진흥을 통해 종자갱신율 제고 및 보급종자 수요농가에 부응

4. 선정기준 결과 및 선정결과 기준과의 부합 논거

- 주요 5개작물에 대한 우량종자 공급으로 국민식량 자급기반 조성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 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
- 5.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대상 또는 수혜대상이 다수인 경우, 특정 사업 대상 또는 수혜자를 선정한 절차 및 논거
 - 가. 선정기준 사업대상 : 주요농작물 공급종자 5개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 나. 사업대상에 따른 수혜대상 : 전국 종자수요농가(불특정 다수농가)
 - 다. 수해자 선정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대상농가 선정기준
 - 정부에서 각도별 지역종자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고품질 우량종자로 생산한 보급종을 각 시·도별로 최근 3년간 평균재배면적 및 종자공급량 구성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예시량을 결정 하고,
 -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자는 수요농가에 공급되기 이전에 비교전시포 관람회 개최, 성숙기농가 참여 평가회 실시, 대농민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 수요농가에서 적지 적품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 예시량에 대해서는 각 도농업기술원에서 시·군별로 공급계획량을 배정하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리·동장을 통해 소비자 다수의 개별 농가로부터 종자신청을 받아 공급
 - 특히 농가 선호도에 따라 공급가능량 보다 신청량이 많은 품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있음
 - ※ 종자공급 우선순위 (종자관리소 훈령 및 예규 :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 1순위 : 과거 단 한번도 종자를 공급받지 못한 농가
 - 2순위 : 종자를 공급받은지 4년이 경과된 농가
 - 3순위 : 종자를 공급받은지 3년이 경과된 농가
 - 4순위 : 종자를 공급받은지 2년이 경과된 농가
 - · 5순위 : 기타 농가
- 6. 융자조건 산정기준의 논거 : 정부 직접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 7. 융자조건 산정절차 : 정부 직접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Ⅲ.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双亚思

2. 3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가 중 치

40%

평 가 내 용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사업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노력
- 성과평가지표와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성
-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조정 노력

2.3.2 사업별 운영성과

- 목표 설정의 합리성
- 사업별 목표 달성정도
- 사업운영 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및 전년 대비 개선 실적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개선 정도

평가내용

2.3.1.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1. 사업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노력

- □ 종자 수요농가 종자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우량종자 저가공급 지속 추진
 - 벼의 경우 식량자급기반 확보 및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확대 추진 시책에 따라 정부 보급종의 공급원가의 84%수준으로 공급
 - 콩은 식용콩 자급대책 추진시책에 따라 종자공급가격을 시중가격의 50%선에서 공급 ※ 2001년산 공급가격 : 장류콩 16,450원(10kg), 나물콩 15,250원(10kg)

□ 정부 보급종 수급관리 사업의 안정적 추진

- 기존 종자기금의 운용규모가 적어 종자수급 관리사업의 확대 및 안정적 추진이 어려웠으나 종전 종자기금이 농안기금으로 흡수통합되어 원활한 종자수급 추진 가능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종자공급가격을 장기적으로 현실화 추진
- 종자사업 운용계획에 이원화된 운용자금을 일원화 추진 검토
 - 기금운용 규모

(단위: 백만원)

7 &	2001년	2002년	중 집
전체운용규모	2,250,000	2,280,000	30,000
- 종자수급관리	43,444	43,841	397

2. 사업운영 성과지표 및 지표선정의 논거

○ 우량종자 개발 및 생산·공급에 3~4년이 소요되어 성과측정이 지난하여 해당없음

3. 사업운영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효과 분석

○ 우량종자 개발 및 생산·공급에 3~4년이 소요되어 성과관리가 지난하여 해당없음

4. 부실채권 관리체계 설명 및 합리성에 대한 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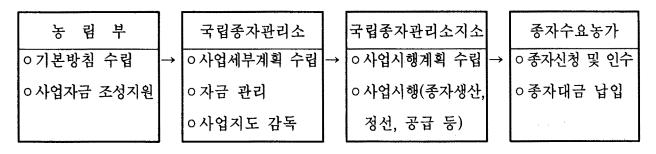
O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공급하므로 부실채권 미발생

5. 과거 3년의 부실채권 규모. 비율 및 회수실적의 추이

O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공급하므로 부실채권 없으

6. 환경 변화 및 이에 대응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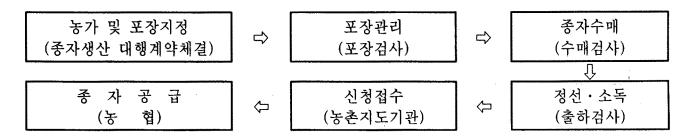
가. 사업추진체계



나. 사업추진 내용

□ 정부 보급종 생산

○ 엄격하고 체계적인 포장관리와 3회의 국정검사를 거쳐 무병 건전한 우량종자 생산



※ 종자검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지원에서 검사

□ 정부 보급종 공급

- 국립종자관리소(지소)에서는 정부 보급종 확보량, 시·도별 종자 신청량을 종합한 후 시·군별 품종별 공급계획량을 확정 시달하고.
- 정부 종자공급은 "종자 구·판매업무대행 및 보관수송 조작계약서"에 의해 농협을 통해 수요 농가에게 공급

- 시군별 종자공급 확정량에 대해 정선·소독후 수송 계획 수립
- 종자 공급량에 대한 판매대금 납입 고지
- 농협 시군지부에 종자수송량 확정
- 시 · 군별 종자 판매대금 납입고지
- 읍 면 회원농협에 신청물량 수송
- 읍 면별 종자 판매대금 납입고지
- 종자신청농가 및 RPC에 종자인도, 대금수납
- 종자인수 및 종자대금을 회원조합에 납입

* 작물별 종자 공급시기

	작 물 별	공급기간	明 立
	버	3. 1 ~ 4. 5	※ 단, 기상상황으로
	보 리	9. 11 ~ 10. 25	인한 수송여건 및
봄감자	조기육아재배용	10. 5 ~ 10. 25	정선여부에 따라
급심시	일반재배용	2. 15 ~ 4. 5	공급기간이 조정
	가 을 감 자	7. 11 ~ 8. 20	될 수 있음.
	옥 수 수	2. 10 ~ 4. 30	
	콩	4. 1 ~ 5. 10	

- 주) 1. 공급시기는 파종적기로부터 벼, 보리, 옥수수 종자는 20일전, 콩은 15일전, 감자는 10일전임
 - 2. 도 농업기술원장(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조기공급을 요청 하거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조기에 공급할 수 있음

다.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및 대응 조치

- 영농 환경의 변화
 - WTO출범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외국농산물의 무한경쟁 돌입
 - 최근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급격한 감소('90년 1,556천ha → '00년 1,234천ha(△21%)에 따라 고품질 우량 종자의 생산·공급 필요성 인식 확산
 - WTO체제하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기피로 고령화 부녀화 및 영농기계화 등 변화된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보급하는 종자는 철저한 채종관리 및 수매, 정밀한 정선 및 소독작업 등으로 농가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공급함므로써 노동절감 효과는 물론 단위 면적당 수량성이 높아 정부 보급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임
 - 종수요량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종자생산·공급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종 자수급 관리를 위해 종자관리 기금을 농안기금에 흡수 운용하면서 효율적인 종자산업 육성에 대처
 - 고객만족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우량종자로 육성 전환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홍보 강화로 소비자를 위한 브랜드화 정착

평가내용

2.3.2. 사업별 운영성과

1. 사업목표 및 목표설정의 논거

□ 정부 보급종자 갱신율 목표

○ 단기적으로 4년 1기(갱신율 25%)를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2004년까지는 3년 1기(갱신율 33%)를, 201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2년1기(갱신율 5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2. 목표 달성도와 그 논거

□ 벼 종자기준 정부 보급종4년 1기(종자갱신율 25%) 종자갱신

- 종자갱신율을 '95년 16.9% 에서 2001년 23.8%로 지속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식량자급 달성에 기여
 - 종자갱신율 목표 : 단기적으로 4년 1기(갱신율 25%)를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2004년 까지는 3년 1기(갱신율 33%)를, 201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갱신율 50%를 목표로 추진 < 연도별 종자갱신율 >

于 是	'95	'96	'97	'98	'99	'00	'01
종자공급량(톤)	18,665	21,147	24,611	24,830	23,302	24,397	24,952
재배면적(천ha)	1,249	1,247	1,231	1,245	1,239	1,253	1,234
종자갱신율(%)	16.9	18.4	22.5	23.1	23.0	24.1	23.8

^{※ &#}x27;75년 기금설치이후 지금까지 갱신율 25%를 목표로 추진해 왔음.

□ 우량종자 공급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구 분	계	単 (6%)	보리 (12%)	감 자 (50%)	옥 수수 (65%)	콩 (10%)
	종자공급량(톤)	21,147	10,094	1,548	9,041	142	322
'96	증 수 량 (톤)	141,386	74,736	534	64,361	1,673	83
	소득향상액 (억원)	1,328	929.2	4.0	383.6	8.7	2.2
	종자공급량(톤)	24,611	12,258	1,601	10,175	173	404
'97	증 수 량 (톤)	169,648	93,259	530	73,737	2,019	102
	소득향상액 (억원)	1,575	1,159.4	3.9	339.7	10.5	1.9
	종자공급량(톤)	24,830	12,620	1,849	9,665	194	502
'98	증 수 량 (톤)	171,407	97,224	601	71,219	2,237	126
	소득향상액 (억원)	1,841	1,275.3	4.7	545.5	12.3	2.9
	종자공급량(톤)	23,302	12,623	1,477	8,479	249	474
'99	증 수 량 (톤)	167,896	100,429	515	63,990	2,843	119
	소득향상액 (억원)	1,739	1,382.9	4.3	331.5	16.4	4.4
	종자공급량(톤)	24,397	12,928	2,524	8,176	-215	500
'00	증 수 량 (톤)	168,089	103,129	678	61,703	2,455	123
	소득향상액 (억원)	1,844	1,498.5	5.8	320.9	14.9	4.3
	종자공급량(톤)	24,952	12,952	2,177	8,987	168	668
'01	증 수 량 (톤)	175,021	104,911	406	67,264	2,294	146
	소득향상액 (억원)	2,041	1,585.2	3.6	435.9	11.9	4.2

* 증수량은 보급종 공급량을 기준으로 재배면적을 환산하여 작물별 증수비율을 감안 산출한 것이며, 소득액은 농가가 우량종자를 사용하여 얻는 증수량을 금액으로 환산(추정)한 것으로 단위면적당 수량이 높은 정부보급종을 사용하여 추가생산된 물량에 대한 소득향상효과임.

· 증 수 량 : 종자갱신면적 × 작물별 평균수량(평년단수) × 작물별 증수율

· 소득향상액 : 증수량 × 단가(정부수매1등품가격 수준 적용)

3. 사업운영의 성과

□ 사업실적 증가

○ 종자수급 안정을 위한 우량 정부 보급종의 공급량 확대(전년대비 1,108톤 증가)

< 연도별 정부보급 우량종자 공급실적 >

子是	'95	'96'	'97	'98 '	.	2000	2001
공급량(톤)	18,665	21,147	24,611	24,830	23,302	24,397	24,952

○ 종자 수요농가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수성에서 고품질 위주로 종자공급량 확대

4.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범위, 만족도조사 결과분석 및 결과반영

가. 사업대상 및 수혜자 범위

○ 사업대상: 벼·보리·콩·옥수수·감자

○ 수혜자 범위 : 전국 종자수요농가

나.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

- 종자 생산계획 수립시 농가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품종별 생산계획량 확정
- 종자 수매시기 이전 수요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위주로 수매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
- 보급종자 수매자금 적기 지급으로 영농자금 상환에 현실화

다. 조사결과 분석 및 반영

- 종자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확 재배 지양
- 무병건전 종자생산을 위해 병충해 방제작업 2~3회 추가실시
- 보급종 우선공급분 신청시기 변경으로 종자신청업무 효율성 제고
 - 미곡종합처리장 10.1~10.20, 일반농가 11.2~2.10⇒ 11.2~2.10로 일원화
- 우량종자 채종위탁농가 수매자금 적기 지급으로 영농자금 상환에 부응

<참고자료 1>

정부 보급종 공급량 및 갱신율

	7	95	'96	'97	'98	'99	'00	701	'02(P)
	전국재배면적(천ha)	1,248.5	1,245.1	1,230.2	1,244.2	1,237.4	1,225.9	1,234.7	1,234.7
	종자 소요량 (톤)	106,178	115,142	102,894	101,969	107,067	111,250	106,581	106,581
계	갱신면적(천ha)	210.5	229.5	276.5	287.3	284.6	295.0	294.4	271.2
	보급종공급량(톤)	18,665	21.147	24,611	24,830	23,302	24,397	24,952	26,250
	갱 신 율(%)	16.9	18.4	22.5	23.1	23.0	24.1	23.8	24.6
	전국재배면적(천ha)	1,055.3	1,049.0	1,052.0	1,056.5	1,058.6	1,055.0	1,055.8	1,055.8
	종자 소요량 (톤)	52,765	52,450	52,600	52,825	52,930	52,750	52,790	52,790
벼	갱신면적(천ha)	180.4	201.9	245.2	252.4	252.5	259.6	259.0	232.5
	보급종공급량(톤)	9,021	10,094	12,258	12,620	12,623	12,982	12,952	13,990
	갱 신 율(%)	17.1	19.2	23.3	23.9	23.8	24.6	24.5	26.5
	전국재배면적(천ha)	45.8	49.6	32.9	47.6	45.7	39.5	61.6	61.6
보	종자 소요량 (톤)	6,870	7,440	4,935	7,140	6,855	5,925	9,240	9,240
	갱신면적(천ha)	10.6	10.3	10.7	12.3	9.8	16.8	14.5	15.6
리	보급종공급량(톤)	1,584	1,548	1,601	1,849	1,477	2,524	2,177	2,345
	갱 신 율(%)	23.1	20.8	32.5	25.8	21.4	42.5	23.5	25.3
	전국재배면적(천ha)	105.0	98.0	99.9	97.7	87.0	86.2	78.4	78.4
	종자 소요량 (톤)	6,300	5,880	5,994	5,862	5,220	5,172	4,704	4,704
콩	갱신면적(천ha)	6.6	5.4	6.7	8.4	7.9	8.3	11.1	13.8
	보급종공급량(톤)	396	322	404	502	474	500	668	830
	갱 신 율(%)	6.3	5.5	6.7	8.6	9.1	9.7	14.2	17.6
	전국재배면적(천ha)	24.9	30.6	24.3	22.3	26.0	29.4	24.7	24.7
감	종자 소요량 (톤)	39,840	48,960	38,880	35,680	41,600	47,040		39,520
1 1	갱신면적(천ha)	4.7	5.7	6.4	6.0	5.3	5.1	5.6	5.6
자	보급종공급량(톤)	7,476	9,041	10,175	9,665		8,176	8,987	9,000
	갱 신 율(%)	18.8	18.5	26.2	27.1	20.4	17.3	22.7	22.8
	전국재배면적(천ha)	17.5	17.9	21.1	20.1	20.1	15.8	14.2	14.2
옥	종자 소요량 (톤)	403	412	485	462	462	363	327	327
수	갱신면적(천ha)	8.2	6.2	7.5	8.2	9.1	5.2	4.2	3.7
수	보급종공급량(톤)	188	142	173	194	249	215	168	85
	갱 신 율(%)	46.9	34.6	35.5	40.9	45.4	33.0	29.6	26.1

- 주) 1. 총 갱신율은 면적으로 산출하였음
 - 2. 2002 갱신율은 2001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3. 벼는 논벼, 보리는 겉보리와 쌀보리, 감자는 '00부터 시설재배면적 포함
 - 4. 옥수수 갱신율은 대북지원분('98:5톤, '99:39, '00:95, '01:71)제외 산출
 - 5. 공급량은 9. 30일 기준(감자는 2001년 가을감자 공급량 412톤 포함)

<참고자료 2>

정부 보급종 사용에 따른 증수효과

		'96	'97	198	1 99	2000	2001
	재 배 면 적 (ha)	1,246,489	1,231,041	1,245,146	1,239,055	1,253,110	1,233,512
	공 급 량(톤)	21,147	24,611	24,830	23,302	24,397	24,952
	갱 신 면 적 (ha)	229,391	276,448	287,569	286,332	299,258	298,277
계	평년단수(톤/ha)	-	-	-	_	_	***
	중 수 량(톤)	141,386	169,648	171,407	167,896	168,089	175,021
	단 가 (원/kg)	-	-	-	-	-	_
	중 수 액(억원)	1,328	1,575	1,841	1,739	1,844	2,041
	재 배 면 적 (ha)	1,048,987	1,051,659	1,056,483	1,058,555	1,055,034	1,055,750
	공 급 량(톤)	10,094	12,258	12,620	12,623	12,982	12,952
	갱 신 면 적 (ha)	201,880	245,160	252,400	252,460	259,640	259,040
眸	평년단수(톤/ha)	6.17	6.34	6.42	6.63	6.62	6.75
	중 수 량(톤)	74,736	93,259	97,224	100,429	103,129	104,911
	단 가 (원/kg)	1,243.25	1,243.25	1,311.75	1,377.00	1,453.00	1,511
	중 수 액(억원)	929.2	1,159.4	1,275.3	1,382.9	1,498.5	1,585.2
	재 배 면 적 (ha)	49,565	32,934	47,589	45,683	68,400	61,630
	공 급 량(톤)	1,548	1,601	1,849	1,477	2,524	2,177
	갱 신 면 적 (ha)	10,320	10,673	12,327	9,847	16,827	14,513
보리	평년단수(톤/ha)	0.431	0.414	0.406	0.436	0.336	0.233
	중 수 량(톤)	534	530	601	515	678	406
	단 가 (원/kg)	744.8	744.8	785.8	825.0	858.0	890
	중 수 액(억원)	4.0	3.9	4.7	4.3	5.8	3.6
	재 배 면 적 (ha)	97,989	99,862	97,682	87,026	86,176	78,415
	공 급 량(톤)	322	404	502	474	500	668
	갱 신 면 적 (ha)	5,367	6,733	8,367	7,900	8,333	11,133
콩	평년단수(톤/ha)	0.154	0.152	0.151	0.151	0.148	0.131
	중 수 량(톤)	83	102	126	119	123	146
	단 가 (원/kg)	2,718	1,856	2,325	3,657	3,500	2,860
	중 수 액(억원)	2.2	1.9	2.9	4.4	4.3	4.2
·	재 배 면 적 (ha)	32,040	25,489	23,252	27,657	27,700	23,059
	공 급 량(톤)	9,041	10,175	9,665	8,479	8,176	8,987
·	갱 신 면 적 (ha)	5,651	6,359	6,041	5,299	5,110	5,617
감자	평년단수(톤/ha)	22.78	23.19	23.58	24.15	24.15	23.95
	중 수 량(톤)	64,361	73,737	71,219	63,990	61,703	67,264
	단 가 (원/kg)	596	542	766	518	520	648
	중 수 액(억원)	383.6	399.7	545.5	331.5	320.9	435.9
	재 배 면 적 (ha)	17,908	21,097	20,140	20,134	15,800	14,208
	공 급 량(톤)	142	173	194	249	215	168
	갱 신 면 적 (ha)	6,174	7,522	8,435	10,826	9,348	7,304
옥수수	평년단수(톤/ha)	0.417	0.413	0.408	0.404	0.404	0.406
	증 수 량(톤)	1,673	2,019	2,237	2,843	2,455	2,294
	단 가 (원/kg)	520	520	549	576	605	632
	증 수 액(억원)	8.7	10.5	12.3	16.4	14.9	11.9

3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여 백

双표명

2.4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가 중 치

20%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790-8015)

명 가 내 용

2.4.1 우선순위 선정 기준의 합리성

- 수행하는 사업의 목록 및 사업분류의 근거
- 사업별 우선순위
- 우선순위 선정 기준 및 그 논거

2.4.2 우선순위 적용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 O 우선순위 적용절차
- 우선순위에 기초한 사업별 예산배분 내역
- O 우선순위 적용에 따라 예산배분이 조정된 사례

1. 2001년도 평가지표별 실적 요약

1.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합리성

□ 사업별 우선순위

- ① 가격안정 부문(i 민간가격안정사업, ii 정부가격안정사업)
- ② 유통개선 부분(i 산지유통개선사업, ii 소비지유통개선사업 iii 유통시설확충 및 개선)
- ③ 종자수급 부문(i종자생산 및 공급 ii생산보상금)

□ 우선순위 선정기준

- 기금설치 목적상의 정책목표인 가격안정·유통개선 부문에의 기대효과
- 농정환경 변화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과의 관련성 유무
- 일반예산·농특회계 등과의 중복투자 유무 및 WTO 규범과의 합치성 여부

□ 우선순위 선정의 논거

- 1) 가격안정분야의 사업비를 총 운용규모의 60% 이상으로 확대조정
 - WTO 차기협상의 본격적 진전 등 개방화 시책 가시화로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간접 지원과 민간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필요
- 2) 가격안정 기능강화를 위해 유통개선 분야의 예산을 일부 축소
 - 품목별생산자조직 육성 지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 측면의 투자비중은 점차 축소하고 생산자조직에 의한 유통 효율화와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유도 측면에서 투자
- 3) 종자수급사업은 기금통합의 취지를 감안, 안정적인 투자규모 유지

□ 우선순위 적용에 따라 예산배분이 조정된 사례

(단위:백만원)

사업별	'01당초(A)	수 정(B)	중감(B-A)	山
ㅇ가격안정사업	1,123,407	1,486,772	363,315	• 과실,채소류수급안정(168,000)
ㅇ유통개선사업	947,426	676,553	△270,873	• 시설채소,과일생산자조직(△100,000)

평가내용

2.4.1 우선순위 선정기준의 합리성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790-8015)

1. 수행하는 사업의 목록 및 사업분류의 근거

□ 사업목록

	사	입 분	튜	א א א
-, 2	관	항	세항	- 사 업 목
구분	410			◇ 농림수산개발사업
		1200		o 정부가격안정사업
			1211	- 비축사업
가			1212	- 출하조절사업
격		1300		o 민간가격안정사업
안	. •		1311	- 수매지원사업
정			1312	- 채소수급안정사업
			1313	- 과실수급안정사업
			1314	-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
종		1400		o 종자수급관리
종자수급			1411	- 종자생산 및 공급
급			1412	- 생산보상금
		2100		o 유통시설확충 및 개선
유			2111	- 농수산물유통시설
통		2200		o 산지 및 소비지유통개선사업
개			2211	- 산지유통개선사업
선			2212	- 소비지유통개선사업

□ 사업분류 근거 : 기금운용계획상의 사업분류 기준(관·항·목)에 의거 분류

2. 사업별 우선순위

	· 4	9 E	F		λú	خمت
子是	관	1	세향	사 입 목 목	千包	순위
		1200		ㅇ 정부가격안정사업	П	
가			1211	- 비축사업		0
격			1212	- 출하조절사업	Action (as a second sec	2
안 정		1300		o 민간가격안정사업	I	
8			1311	- 수매지원사업		1
부			1312	- 채소수급안정사업		3
문			1313	- 과실수급안정사업		4
亡			1314	-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		2
		1400		ㅇ 종자수급관리	V	
종 자		1100	1411	- 종자생산 및 공급	V	①
수			1412	- 생산보상금		2
급			1414	, ७.त.स.० ¤		\\\\\\\\\\\\\\\\\\\\\\\\\\\\\\\\\\\\\\
		2100		ㅇ 유통시설확충 및 개선	IV	
유			2111	- 농수산물유통시설		1
통개		2200		o 산지 및 소비지유통계선사업	Ш	
/개 선		***************************************	2211	- 산지유통개선사업		1
겐			2212	- 소비지유통개선사업	,	2
		·				

3.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그 논거

가. 우선순위 선정기준

- ◆ 기금설치 목적상의 정책목표인 가격안정・유통개선 부문에의 기대효과
- ◆ **농정환경 변화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과의 관련성 유무
- ◆ 일반예산·농특회계 등과의 중복투자 유무 및 WTO 규범과의 합치성 여부

나. 선정의 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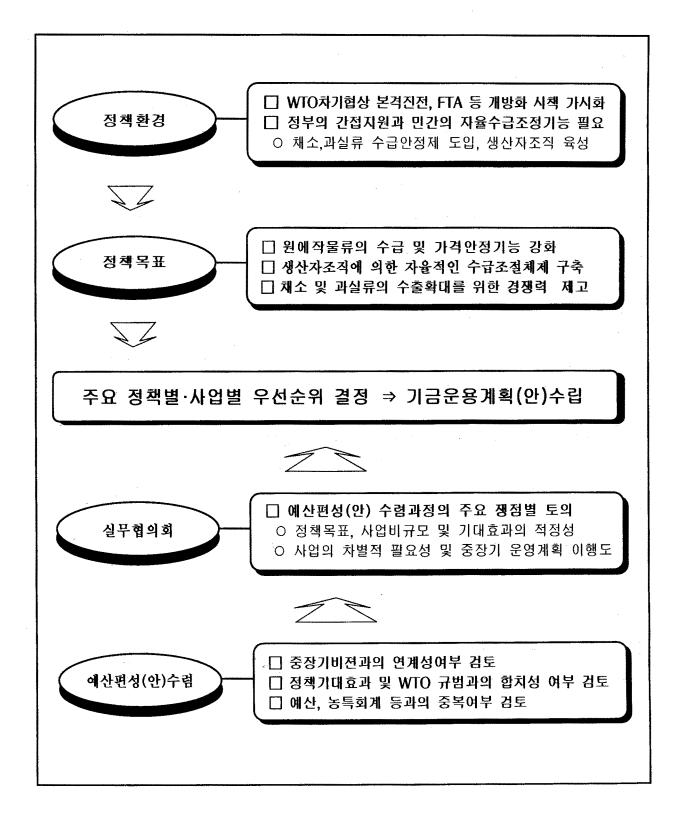
- 1) 가격안정 분야 사업비를 총 운용규모의 60% 이상으로 확대조정
 (당초) 1조 1,234억원(51.5%) ⇒ (수정) 1조 4,867억원(66.1%)
- WTO 차기협상의 본격적 진전과 FTA 등 개방화 시책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여지는 점진적으로 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원예작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간접지원과 생산자단체・조직 등 민간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필요
 - 시장개방 이전의 가격정책은 폐쇄경제를 가정하여 가격안정대사업, 정부수매 등과 같은 직접적인 물량조작으로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거양하였으나.
 - 채소, 과일 등 원예작물류의 시장개방화로 공급과잉에 의한 저가격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수급 및 가격안정정책은 특히 공급측면의 변수를 적절히 조절(재배면적조정, 출하량조절, 산지폐기, 품질규제 등)할 수 있어야만 일정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하여 적정한 재생산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
 - - ⇒ 과실수급안정사업 신규실시(800억원) 및 채소수급안정사업 지원확대(400억원→1,280억원)
 - ☞ 한중 마늘협상에 따른 국내 마늘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필요성
 - ⇒ 농가출하조절 540억원, 민간수매지원 250억원, 조합매취 120억원, 마늘생산유통센타 90억원, 정부수매 132억원, 정부수입 110억원 등 총 1,242억원 확대 반영

- 2) 가격안정 기능강화를 위해 유통개선 분야의 예산을 일부 축소 조정
 (당초) 9,693억원(44.5%) ⇒ (수정) 6,766억원(30.1%)
- □ 유통구조 개선분야에의 재원배분은 "원예작물류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함께 생산, 출하, 물류 및 수출입 등의 조절기능 확보로 수급안정의 간접효과 기대"라는 기본전략을 반영
- 산지유통개선분야 : 품목별생산자조직 육성 지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 측면의 투자비중은 점 차 축소하고 유통 효율화와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유도 측면에서 투자
 - ☞ 생산자조직육성사업비 1,000억원 감액(3,336억원→2,336억원)
- 소비지유통개선분야 : 도매시장, 공판장 등 유통시설로의 출하촉진, 직거래 지원 등 유통구조 개선 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의 파급효과 기대 측면에서 기존 투자수준 유지
- 농수산물유통시설분야 : 도매시장건설자금, 수출시설현대화자금 등 시설투자비는 투자비중 축소 및 2002년도 이후부터는 신규투자를 중단
 - □ 시설투자비 투자비중 축소: (2000) 682억원 → (2001) 472억원 → (2002) 271억원
- 3) 종자수급사업은 기금통합의 취지를 감안, 안정적인 투자규모 유지 ○ (2000) 392억원 → (2001) 434억원 → (2002) 438억원

평가내용 2.4.2 우선순위 적용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 담당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500-1825),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790-8015)

1. 우선순위 적용절차(도표로 예시)



2. 사업 우선순위별 예산배분 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분 류		幕	- 사업목록	년 또 별			우선순위	
구분	항	세항	M 9 7 7	1999	2000	20 01	Tu	亚州
	1200		o 정부가격안정사업	4,236	4,496	4,041	П	
가		1211	- 비축사업	4,136	4,396	3,941		1
격		1212	- 출하조절사업	100	100	100		2
안								
정	1300	,	0 민간가격안정사업	7,405	8,078	10,781	I	ļ
		1311	- 수매지원사업	5,650	5,658	6,767		1
		1312	- 채소수급안정사업	152	400	1,280		2
부	and the second s	1313	- 과실수급안정사업			800		
문		1314	-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	1,603	2,020	1,933		3
좋	1400	******************************	ㅇ 종자수급관리		392	434	V	<u> </u>
자		1411	- 종자생산 및 공급	-	378	416		1
수	.	1412	- 생산보상금		14	18		2
급								
	2100		ㅇ 유통시설확충 및 개선	671	682	472	IV	<u> </u>
유	No. of the latest of the lates	2111	- 농수산물유통시설	671	682	472		
통				40444				
개	2200	*************	ㅇ 산지및소비지유통 개선	6,221	8,078	6,293	Ш	
	VAN LANDON STATE OF THE STATE O	2211	- 산지유통개선사업	3,769	4,149	3,505		1
선		2212	- 소비지유통개선사업	2,452	3,929	2,788		2
1	3100	-	ㅇ 사업조성 등	707	674	479	M	
기			- 사업위탁료, 재특차입금	707	674	479	!	
			상환 등 관리성 베 용					
타								
· ·	,	The state of the s	계	10.240	22,400	22 500		
月 19,240 22,400 22,500							<u> </u>	<u> </u>

3. 우선순위 적용에 따라 예산배분이 조정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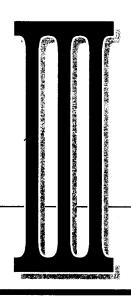
- ◇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여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중액시키고, 일부 유통개선사업비를 축소 조정
- 수급안정제도가 미흡한 과실 및 시설채소에 대한 수급안정제도 신규도입과 노지채소 수급 조절능력 제고를 위해 채소수급안정자금을 확대 지원
- 시설채소·과실수급안정제 도입에 대응하여 시설채소 및 과실류에 대한 생산자조직육성자 금을 감액하였고, 유통개선사업 중 도매시장 양곡부류 및 종합유통센타 지원자금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가격안정분야의 증액예산으로 활용

《사업별 증감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별	2001당초 (A)	수 정 (B)	중 감 (B-A)	주 요 층 감 내 역
ㅇ 가격안정사업	1,123,407	1,486,772	363,315	
- 정부가격안정	404,070	408,672	4,602	● 배 수매 3천톤(4,602)
- 민간가격안정	719,337	1,078,050	358,713	● 과실수급안정제 도입(80,000)
				● 시설채소수급안정제 도입(48,000)
				• 채소수급안정자금 증액(40,000)
				• 사업항목 조정으로 우수농수산물
	•			지원사업이 편입(193,317)
ㅇ 유통개선사업	947,426	676,553	△270,873	
- 유통시설확충	47,206	47,206		
- 산자유통개선	450,484	350,484	△100,000	 시설채소, 과일생산자조직(△100,000)
- 소비지유통개선	288,263	278,863	△9,400	● 화훼공판장(5,000)
				● 양곡도매법인출하촉진(△10,000)
				● 농협종합유통센타(△4,400)
- 우수농수산물지원	161,473	_	△161,473	• 민간가격안정사업으로 항목 조정

여백



까 안 운 용

٦.	TILLO	0	711 (/ 255
1.	人门介扎	* #	개유	/ 355

2. 자산운용 실적 / 363

3.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 369

4.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 383

5. 자산 관련 자료 / 393

자산정책기관	농 림 부 유통정책과(☎500-1825)
자산운용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790-8015)

여백

자산운용 개요

여백

1. 자산운용 개요

가. 주요 자산

- □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주요 종자의 수급관리사업과 민간이 수행하는 수매 지원사업 및 산지·소비지유통개선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성기금으로
- □ 이러한 사업특성으로 기금의 자산은 정부비축사업용 창고 시설·농수산물 및 민간에 대한 융자채권과 일시 예치금으로 구성
 - 사업별 자산규모는 정부가 농수산물 시장개입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지원을 강화 함에 따라 민간에 대한 융자채권이 전체 자산의 76.2% 수준에 달하고 있음
 - 자산규모에 비해 자산종류는 아래와 같이 단순하며 자산별 구성비는 매년 큰 변화없이 안정적임

(단위: 억원, %)

子是	1999년 말		2000년 말		2001년 발	
. T T	금액	구성비	급액	구성비	급액	구성비
o 민간융자금	18,623	76.4	21,404	75.8	22,872	76.2
- 단기자금	11,650	47.8	12,636	44.7	11,632	38.7
- 장기자금	6,973	28.6	8,768	31.1	11,240	37.4
o 비축사업자산	1,861	7.6	2,673	9.5	2,671	8.9
- 재고자산	806	3.3	1,621	5.7	1,628	5.4
- 창고시설	1,055	4.3	1,052	3.7	1,043	3.5
ㅇ 예 치 금	3,588	14.7	3,896	13.8	4,173	13.9
ㅇ 기 타 자 산	317	1.3	264	0.9	306	1.0
계	24,389	100.0	28,237	100.0	30,022	100.0

나. 주요 자산의 내용 및 관리

- □ 단 기 자 금 :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지출에 대비하여 일시 보유 하는 대기자금
 - 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기금위탁관리기관, 법 제56조 제3항)
 - 자금운용
 - 연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같은 금액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 기금법에서 정하는 여유자금(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이외 자금)이나 기타여유자금과 구분되는 일시 사업대기성 자금으로
 - 자금 수요가 **농수산물의 출하와 연계되어 계절적 진폭이 다소** 크고 사업자금이 1년 **단기 회전성 자금으로 수입과 지출시기 불일치 대비 등** 자금의 수요예측에 어려운 점이 있어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단기금융상품에 자금을 운용하고 가능한 장기상품의 운용은 제한하고 있음
- □ 비축사업자금 : 비축사업자금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에서 전도된 자금과 비축 농수산물 판매대금으로 기금 불입을 대기하고 있는 자금
 - 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처(비축사업실시기관, 법 제13조 제4항)
- □ 비축사업재산 : 농수산물 비축용 창고·설비 및 보관 농수산물·수매종자 등
 - 관리기관 : 비축사업실시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수협중앙회 법, 제13조 제4항)
 - 수매종자 관리기관 : 국립종자관리소(법 제56조 제3항)

다. 2000년까지 주요실적

- □ 농안법 시행령을 '97. 11. 29 개정하여 여유자금 운용근거 마련
- □ 일시대기성자금 운용규정을 마련하여 대기자금의 일부를 제1금융권의 금융상품에 연간 수회 예치하는 방식으로 1998년도부터 자금운용 시작
- □ 1998년도 자금운용 이후 운용효율 제고를 위한 주요조치
-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운용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2000.12.15)
- 기금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무수익 국고에 예치하던 사업대기자금을 상시 금융상품 예치로 자금운용방식을 전환(2000년 말)
-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요구불 예치대상의 지출대기자금과 기간예치대상의 일시여유 자금으로 구분관리 실시로 자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수익성 제고(2000년 말)

□ 자금운용 시작 이후 연도별 운용성과

연도별	운용회수	운용상품	운용기간	연운용액	이자수의
1998	2회	$ ext{CD} \cdot ext{RP}$	3개월 단위	연 800억원	2,849백만원
1999	3회	정기예금	3개월 단위	연 800억원	1,353백만원
2000	2회	정기예금	3개월 단위	연 1,800억원	3,148백만원

□ 매년 점진적으로 운용회수 및 운용규모의 증가를 통하여 자금운용 경험축적·전문성제고 및 기금증식 기여

라. 2001 주요실적 요약

3.1. 자산운용 실적(30%)

3.1.1 수 익 률(15%) : 5.444%

3.1.2 적정유동성(10%) : 1.787

3.1.3 집중예치정도(5%) : 9,702

3.2.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40%)

3.2.1 단기자금(사업대기성자금)과 기타여유자금 구분의 적정성

연간	조달	가능한	수입계획에	대응하여	지출계획을	편성함에	따라	1년	이상	운용하게
되는	여유기	사금이나	기타여유자	금이 발생	할 여지가 입					

□ 따라서 단기자금과 기타여유자금 구분기준 및 단기자금 적정규모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

3.2.2 단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사업대기자금의	운용에	적합한	제1금융권	단기금융상품	예치로	자금운용이	단순하여
기준수익률과 목	표수인된	루옥 간기	· 하나씬 벽	l도 식 정			

- 기준수익률은 월말 콜금리 및 3개월 CD 수익률의 연간 평균, 목표수익률은 3개월 CD 월말 수익률의 연간 평균을 적용
- 목표수익률은 요구불 상품보다 기간상품 비중을 높게 할 경우 달성 가능한 수준이며 한국은행이 공개하는 일일금리 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수익률 및 목표수익률을 산정
- □ 거래금융기관은 신용위험 및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제1금융권의 농림수산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농협중앙회와 투자풀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제2금융권의 삼성증권을 선정

□ 운용상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실세금리 상품으로 자금수지계획에 따라 요구불 기간상품에 예치하며 기금투자풀이 안정될 때까지 제1금융권에 우선 배분
□ 자금을 제1금융권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용관리가 필요한 기업어음 5 채권의 신용등급별 운용실적은 없음
3.2.3 기타여유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 3.2.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타여유자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기타여유자금의 운용정책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3.2.4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 및 전문성
□ 거래금융기관은 제1금융권의 경우 농림수산사업자금 지원기관으로 BIS 기준 자기자는 비율 등 신용위험이 최저인 농협중앙회이며, 제2금융권은 기획예산처 투자풀운영위역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우려가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
□ 운용대상상품은 원본 보전이 가능하고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농협중앙회의 경우 요구불상품은 기업자유예금, 기간상품은 자유로정기예금 및 큰만족실세정기예금 이며 기금투자풀은 단기운용에 적합한 MMF를 우선 선정
□ 일시대기성자금으로 채권·주식 등과 같이 위험이 높은 상품의 운용을 금지하고 있으자금운용의 위험관리 수준은 금융공학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시장 모니터링자료, 언론보도 및 거래금융기관 동향 등 금융정도 의 수집·분석을 통한 금융시장 및 수익성 변동위험 등에 대처
□ 자금운용인력은 기금관리위탁기관 직원 중 전공·자금관리 경험 또는 자금운용에 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소지하였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배치

3.3.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30%)

3.3.1 자금운용의 성과평가

	기준수익률	운용수익률	목표수익율	
	4.9%	5.4%	5.2%	
□ 기준			· 고려하여 금융시장 단기실세 월별 수익률의 연간 평균 4.9%	•
□ 목표			4 3 ~ 6개월 상품 비중을 확대할 별 수익률의 연간 평균 5.2%	경우
☐ 운용			연중 운용으로 변경한 초년도 을 상회하는 5.4% 로 운용성과 영	
□ 수익			요구불 예치규모를 최소화하고 H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금리
.3.2 자금	금운용채계의 합리성			

3.3

금융비용 절감 및 자금운용 효율 제고를 위하여 3년 만기 일시상환 장기차입금 1,000
억원 중 500억원을 만기 2년 앞서 조기상환
자금의 유동성·시장금리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의 예치기간을 3개월 단위에서 3 6개월 단위로 변경하여 자금운용 탄력성 도모
기금투자풀의 활용으로 농림사업자금 지원금융기관 집중예치 위험분산 및 수익성 제고
자금운용 성과 및 위험은 분기별 운용상품·기간 및 거래금융기관 등 운용실적을 제출받아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및 성과수준을 점검

□ 부실·계약만기 초과 자산·만기가 1년 이상인 CP는 자금운용방식상 해당사항이 없음

2

자산운용 실적

여 백

2. 자산운용 실적

지표명 3.1 자산운용 실적 <u>가 중 차</u> 30%

평 가 내 용

- (1) 수익률(15%): 단기자금 수익률과 기타 여유자금의 수익률 평점 의 가중평균점(각 자산비중을 가중치로 사용)
- (2) 적정유동성(10%) : 월 자금 지출액과 수입액 차이의 최대치 대비 월 단기 자금운용평잔 최저치의 3년 가중평균
- (3) 집중예치정도(5%) : 상위 3개 예치금융기관 집중도의 3년 가중평균

1. 수익률 : 5.444%

□ 계산내역 : 이자수입 일평잔 (=적수/365) = 11,835,634,798 = 11,835,634,798 = 11,835,634,798 = 0.05444

□ 운용수익 내역

(단위 : 원, 일, %)

							(단귀	· 전, 될, 70)
· 구 분	운 용 금액(A)	예치일	만기일	기간 (B)	이자수입	수의 률	적 수(A×B)	비고
정기예금	150,000,000,000	1.6	4.6	90	2,475,000,000	6.69	13,500,000,000,000	3개월만기
	170,000,000,000	4.6	7.6	91	2,465,000,000	5.82	15,470,000,000,000	3개월만기
	50,000,000,000	7.6	9.6	62	425,000,000	5.00	3,100,000,000,000	2개월만기
	100,000,000,000	7.6	10.6	92	1,450,000,000	5.75	9,200,000,000,000	3개월만기
	110,000,000,000	9.17	12.17	91	1,402,500,000	5.11	10,010,000,000,000	3개월만기
	10,000,000,000	10.31	11.30	30	33,333,330	4.06	300,000,000,000	1개월만기
	50,000,000,000	9.17	'02.3.17	106	755,068,493	5.20	5,300,000,000,000	6개월만기
	80,000,000,000	10.6	'02.1.6	87	877,150,684	4.60	6,960,000,000,000	3개월만기
	20,000,000,000	12.28	'02.3.28	4	9,863,014	4.50	80,000,000,000	3개월만기
MMDA	41,065,505,674	연중	요구불	365	1,889,650,588	4.60	14,988,909,570,910	기존
투자풀	30,000,000,000	12.17	요구불	15	53,068,689	4.30	450,000,000,000	신규(MMF)
계					11,835,634,798	5.44	79,358,909,570,910	

^{*} 요구불 상품인 MMDA 및 투자풀의 이자는 1. 1 ~ 12. 31까지 기간 계산함

2. 적정유동성 : 1.787

 기산내역 :
 4.39 × 0.2 + 2.18 × 0.3 + 0.51 × 0.5 = 1.787

 1999년도
 2000년도

□ 연도별 실적

계 산 식	1999	2000	2001
(월자금지출 - 월 자금수입)의 최대치	55,204 (9)	92,173 (9)	88,633 (5)
월 단기 자금운용 평잔의 최저치	12,572 (1)	42,362 (2)	172,252 (6)
	= 4.39	= 2.17	= 0.51

※ 금액단위는 백만원이며, ()는 해당 월을 표시

3. 집중에치정도 : 9,702

□ 연도별 집중도 내역

연도 별	干满。	연간	()派 お留言が利	- 净利量	기금투자품
	평 잔	20,027	20,027백만원		
1999	집중도	10,000	[20,027/20,027×100] ² = [100] ² =10,000		
2000	평 잔	45,917	45,862백만원	55백만원	
	집중도	9,976	[45,862/45,917×100] ² = [99.88] ² =9,976	[55/45,917×100] ² =0	
2001	평 잔	217,422	210,960백만원	5,229백만원	1,233백만원
	집중도	9,419	$[210,960/217,422\times100]^{-2}$ = $[97.02]^{-2}$ =9,413	[5,229/217,422×100] ² = [2.41] ² =6	[1,233/217,422×100] ² =0

3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여백

3.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双亚思

3.2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가 중 뒷

40%

용 가 내 용

3.2.1 단기자금(사업대기성자금)과 기타여유자금 구분의 적정성

- ㅇ 단기자금과 기타여유자금 구분 기준의 적정성
- ㅇ 단기자금 산정 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3.2.2 단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 단기자금 운용정책(목표수익률, 허용위험도, 기준수익률, 운용대상 자산에 대한 등)의 명문화 및 활용의 적정성
- 단기자금 운용자산(금융기관 예치, 단기금융상품, 채권 등) 선정 및 자산 배분의 적정성

3.2.3 기타여유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 기타여유자금 운용정책(목표수익률, 허용위험도, 기준수익률, 운용 대상자산에 대한 제한 등)의 명문화 및 활용의 적정성
- 기타여유자금 운용자산(단기금융상품, 채권, 주식, 부동산, 벤처캐 피탈 등) 선정 및 자산 배분의 적정성

3.2.4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 및 전문성

- 운용대상(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정의 투명성
- 운용상품의 수익률, 유동성 및 안전성 (운용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포함) 평가시스템의 적정성
- 자산운용인력 및 의사결정과정의 전문성 (외부자문 포함)

평가내용

3.2.1. 단기자금(사업대기성자금)과 기타여유자금 구분의 적정성

1. 단기자금과 기타여유자금 구분기준 : 기타여유자금으로 분류되는 자금	가금이 없	분류되는	기타여유자금으로 1	구문기순	겨유사금	기타(소기사금과	1.
--	-------	------	------------	------	------	-----	-------	----

- □ 본 기금은 연간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수입계획에 상응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고 있어 1년 이상 운용을 전제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의 역유자금이나 기타여유자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 □ 기금이 보유하게 되는 자금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 자금으로 중장기로 운용할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따라서 본 기금은 단기자금 이외의 자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단기자금과 기타여유자 금의 구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2. 단기자금 적정규모 산정방식 : 해당사항 없음

- □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정하는 여유자금이나 기타여유자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자금 분류에 따른 자금종류별 적정규모를 산정하지 않고 있음
- □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대기자금은 농수산물 출하의 계절적 요인과 연동되는 자금수요의 진폭을 고려하여 자금의 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3. 월별 (또는 일별) 단기자금 운용계획 : 붙임 참조

3.2.2. 단기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1. 단기자금 운용준거

- □ 관련규정 : 시행령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훈령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제16조(여유 자금의 금융기관예치)
- ☐ **운용대상** : 금융기관 예치 및 국채·공채·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 □ 예치기관 : 농림수산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우선예치
- □ 운용관리 : 기금위탁관리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기간, 금리 및 상품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로 자율적으로 관리
- □ 유용보고 : 운용관리기관은 자금운용규모 및 기간을 농림부에 보고
- □ **금지행위** : 예치이자율을 입찰하는 행위, 이면계약 행위,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배당률을 사전 약정하는 행위
- ☐ **준용사항**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획예 산처 기금여유자금 운용지침 중 단기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단기자금 운용기준

가. 자금운용의 일반기준

- □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의 자금운용으로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 □ 단기자금의 운용은 원본 손실의 우려가 없는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
- ☐ 유동성·안전성 및 공공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수익률 확보

나. 적정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의 운용구분

□ 유동성 수준 : 자금이 부족할 경우 조달방법이 재정융자특별회계·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차입(법 제55조)으로 한정되어 유동성을 보수적으로 운용

□ 자금운용 구분 : 사업자금의 지출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에 의거 자금의 운용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구분관리

○ 국고대기자금 : 지출이 예정된 자금 및 조만간 지출이 필요한 사업자금(한국은행 예치)

○ 지출대기자금 : 3개월 이내 지출 대비 자금(요구불 상품 운용)

○ 일시여유자금 : 지출대기자금을 제외한 자금(3 ~ 6개월 단위상품 운용)

다. 성과측정을 위한 수익률

기준수익률 = 월말 콜금리 및 3개월 CD 수익률 평균의 연간 평균

- 운용자금이 일시 대기성 자금인 점을 고려하여 운용구분에 따른 지출대기자금과 일시 여유자금에 대응하는 금융시장의 단기실세 대표금리의 평균을 적용
- 자금의 운용을 단기 금융상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식 및 채권 등과 같이 위험이 높은 유가증권 운용성과와 관련한 기준수익률 등은 설정하지 아니함

목표수익률 = 3개월 CD의 월말 수익률의 연간 평균

- 자금을 지출대기자금과 일시여유자금으로 구분운용하고 있으나 3개월 단위로 운용할 경우에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목표수익률로 설정
- 목표수익률은 3개월 미만 운용되는 지출대기자금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3 ~ 6개월 단위 상품 중심으로 운용할 경우 달성 가능한 수준

□ 적용금리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월말 단위 금리

□ 적용시기 : 2001년도부터(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자금운용업무를 2000. 12. 15 위탁)

□ 기타사항: 금리의 급격한 변동 또는 위험이 다른 상품으로 운용을 변경할 경우 조정

3. 단기자금의 운용관리

가. 거래기관의 선정

신용위험 및 농수산업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로 구분하여 선정	<u>•</u>
제1금융권은 농림수산사업자금 공급능력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사업자 지원금융기관에 우선 예치하고 운용규모에 따른 분산이 필요할 경우 BIS자기자본비 이 8% 이상인 기관 중 상위 3개 기관으로 한정	-
제2금융권은 기획예산처의 투자풀운영위원회가 기금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하	예

□ 거래금융권별 운용자금의 배분은 기금투자풀 운용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제1금융권에 우선 배분

도입한 기금투자풀을 판매하는 대행사로 한정하되 신용위험 및 투자수익율 변동 등

나. 운용규모 및 기간의 결정

자금운용위험이 감소할 경우 추가 여부를 검토

- □ 농수산물 출하의 계절적 요인에 의한 자금수요의 변동을 고려한 자금수지계획에 의거 자금운용규모 및 운용기간을 결정
- 연간자금계획 :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집행계획에 의거 연중 시기별 자금수요 및 조달 에 관한 연간 자금수지계획 수립
- 월간자금계획 : 전월의 자금수지 실적, 분기계획 및 다음 달의 자금수요 및 조달계획 을 수립하여 자금운용 규모 결정
- □ 일일자금운용상황을 점검하여 월간자금계획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자금 운용 의 효율 도모

다. 운용상품의 선정

□ 일반 기준

- 대기성 단기자금인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및 자금시장의 흐름 등 시장 위험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상품을 운용대상으로 선정
- 금융시장의 위험이 통상의 수준 이상일 경우 한국은행 국고계정으로 운용
- □ 상품선정 : 운용가능 기한 범위 내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실세금리 상품
 - 지출대기자금 :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요구불 예금 및 기금투자풀(MMF)
 - 일시여유자금 : 91일 기준으로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3 ~ 6개월 단위 의 예금상품 또는 **기금투자풀(채권형)**

□ 운용억제

- 단기 운용자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세변동성이 높아 원본 손실 위험관리가 어려운 주식 등 유가증권 운용 금지
- 국공채 및 회사채의 유통수익율 변동폭 확대 등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시가평가로 인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실적배당 상품 운용 억제
- 4. 단기자금 운용지침 및 단기자금 운용 관련 의사결정 관련자료 : 별도제출
- 5. 거래 및 위탁 금융기관별 운용내역 : 붙임 참조
- 6. 각 단기자금 운용 금융기관의 상품(또는 만기)별 운용내역 : 붙임 참조
- 7. 기업어음, 채권의 신용등급별 운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제1금융권의 금융상품 및 기금투자풀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어 관련사항 없음

평가내용

3.2.3. 기타여유자금 운용정책의 적정성

- □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연간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수입계획에 상용한 수준의 사업비 지출계획을 편성하고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정하는 여유자금이나 기타여유자금 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 □ 따라서 본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대기성자금으로 단기자금임

ᇹ평가내용

3.2.4.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 및 전문성

1. 자금운용규모 결정

- □ 자금운용계획을 연간계획, 분기계획, 월별계획 및 일일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 □ 3개월 단위의 운용대상인 일시여유자금의 운용규모는 분기별 자금수지계획에 의거 유 동성을 고려하여 결정
- □ 일시여유자금 이외의 지출대기자금은 월별 자금수지계획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용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

2. 거래 금융기관의 선정

- □ 제1금융권 : 농협중앙회(신용사업)
 -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농림사업분야의 자금 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림사업 자금 지원금융기관 중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으로 신용위험이 가장 낮고 자기 자본규모가 충실한 기관 선정
 - ※ 농림수산사업자금 지원금융기관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비교

(단위: 억원, %)

연도별	기관별	BIS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BIS자기자본비율
2000	농협신용사업	40,775	399,936	10.20
2000	수협신용사업	△9,887	24,298	△40.69
2001	농협신용사업	52,851	515,004	10.26
2001	수협신용사업	2,813 ^{주1}	26,403	10.65

※ 주1: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으로 전년보다 자기자본이 대폭 확충됨

- □ 제2금융권 : 삼성증권(기획예산처 투자풀운영위원회 선정 기금투자풀 판매사)
- □ 신용위험 관리 : 금융시장 및 거래금융기관의 안정성에 변동이 예상될 경우 신용위험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거래기관 조정
 -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신용위험이 최저 수준인 농협중앙회 및 기금투자풀 판매사와 거래하고 있어 신용위험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안정, 자금예치규모 및 거래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의 증가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신용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예치기관을 탄력적으로 조정

3. 운용대상 상품의 선정

□ 선정기준

- 원본 보전이 가능하고(**안전성**) 운용기간에 대응한 금리가 가장 유리한 상품(**수익성**)
- 예치시점의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단기 상품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운용가능한 최대 기간상품으로 운용(**수익률 변화 위험**)
- 시가평가, 금리변동 위험, 연계콜 및 운용상품자산의 임의 변경 등 운용기관의 낮은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실적배당상품 운용 억제. 다만, 정부가 검증한 경우는 예외

□ 운용상품 선정

- 제1금융권(농협중앙회): 기업자유예금, **자유로정기예금**, 큰만족실세정기예금
- 기업자유예금 : 7일 이후 금리손실이 없는 요구불예금으로 보통예금보다 유리
- 큰만족실세정기예금 :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는 단기 예치에 유리한 상품
- 자유로정기예금 : 만기 후 금리조정없이 당초 기간만큼 요구불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단기 금리변화 및 자금수요의 탄력적 대응에 유리한 신규상품

○ 제2금융권(기금투자풀): MMF

- 채권형 및 혼합형은 환매수수료 부담 등 6개월 이상 운용에 적합한 상품으로 단기로 유용되는 기금의 유용방식과 배치되어 우선 MMF를 운용상품으로 선정

4. 자금운용의 평가관리

가. 자금운용 평가 수준

- □ 운용대상 자금이 일시 대기성 사업자금인 점을 고려하여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1금융권의 단기실세금리상품을 운용하고
- □ 채권·주식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 및 신용위험이 높은 상품의 운용을 금지하고 있어 금융공학의 적용 등 고도의 전문적 평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평가관리 필요

나, 자금운용에 따른 위험의 평가관리

- ☐ 금융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자금운용 전반 및 제1금융권 운용위험 관리
- 일일·정기정보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시장 모니터링자료 및 통계자료 등
- 상품·금리정보 : 금리변경 및 상품약관 등 거래금융기관의 개별정보는 고시와 동시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언론보도·금융기관의 홍보자료 등으로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재확인
- 기관동향 정보 : 금융기관 동향 및 거래 금융기관 비공식 정보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수시 수집하고 금융기관별 금리수준 비교 등으로 사전 관리
- ☐ 기금투자풀의 경우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펀드평가사가 전문적인 평가를 맡고 있어 제1금융권의 유사 상품 수익률과 비교·검토하는 수준으로 점검

다. 자금운용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감독기관이 발표하는 공식자료 및 거래 금융기관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평가

5. 단기자금의 운용인력의 전문성 확보

가. 운용인력의 전문성 수준

- □ 단기 사업대기자금을 제1금융권의 상품에 운용함에 따라 금융상품의 특성·예금보호 대상여부 등 정확한 금융상품지식 및
- □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 시장위험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보다 시장의 변화를 적기에 인지하여 자금운용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정보수집 및 판단능력 필요

나. 자금운용 전문인력 배치운용

□ 인력배치 기준 : 기금관리위탁기관 직원 중 전공·자금관리 경험 또는 자금에 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소지하였다고 판단되는 직원

□ 운용인력 현황

직위	성명	천 공	자금 관련 주요경력	현업무 배치
팀장	전 원 수	회계학	'96.1 ~ '00.3 자금지원부(자금운용관리)	'00.3 ~ 현재
과 장	최근원	농업경제	'97.4 ~ '00.3 사업관리부(비축사업담당)	"
대리	정성남	독문학	'94.4 ~ '98.4 자금지원부(자금운용담당)	"

□ 전문위탁교육을 통한 인력의 전문성 제고

교육이수자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과장 최 근 원	흑자경영연구소	자금담당자 양성과정	`00.11.15 ~ 11.17
대리 정 성 남	재정경제부	기업회계과정	`01.11.12 ~ 11.23

여백

4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여 백

4.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지표명

3.3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가 중 치

30%

명 가 내 용

3.3.1 자금운용의 성과평가

- 수익률 측정방법의 적정성
- 운용수익률의 성과분석

3.3.2 자금운용체계의 합리성

- 자산운용의 체계화 수준
- 위험관리(신용위험/유동성위험)의 적정성
- 부실 또는 계약만기초과 운용자산 규모 및 회수노력의 적정성

평가내용

3.3.1. 자금운용의 성과평가

1. 자금 운용수익률 산출

가. 성과평가를 위한 수익률 산출

□ 기준수익률 : 4.9% (월별 콜금리 및 3개월 CD물 월별 수익률의 연간 평균)

- 운용자금이 일시 대기성 자금인 점을 고려하여 지출대기자금과 일시여유자금의 운용에 적합한 금융시장의 단기실세 대표금리 평균
- □ 목표수익률 : 5.2% (3개월 CD물 월별 수익률의 연간 평균)
- 지출대기자금과 일시여유자금으로 구분운용하고 있으나 3개월 단위로 운용할 경우에 달성 가능한 수익률
- 3개월 미만 운용되는 요구불 예치 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3 ~ 6개월 단위의 상품 비중을 확대하여 운용할 경우 달성 가능한 수준

※ 수익률 산출을 위한 2001년도 월별 금리

월 별	콜금리	CD91일물	월 별	콜금리	CD91일물	
1	5.27	5.94	7	4.76	5.14	
2	5.05	5.68	8	4.42	4.81	
3	4.94	5.70	9	3.89	4.41	
4	5.01	5.92	10	4.01	4.38	
5	5.00	5.77	11	3.92	4.76	
6	6 5.03 5.57		12	4.00	4.86	
			평 균	4.61	5.24	

※ 자료 : 한국은행 http://www.bok.or.kr/bokis/bokis/m_daily_search?i_lan=kor

나. 운용수익률 : 5.4% (붙임 운용실적 참조)

2. 운용수익률의 평가

기준수익률	운용수익률	목표수익율		
4.9%	5.4%	5.2%		

- □ 부정기 자금운용에서 자금을 연중 운용키로 운용방식을 변경한 초년도에 기준수익률 및 목표수익률을 상회하는 연간 5.4%의 운용수익률을 달성하여 운용성과가 양호
- □ 기준수익률 및 목표수익률을 상회하는 운용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은
 - 유동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요구불 예치규모를 최소화하고 금리가 유리한 기간 단위 상품예치를 확대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기간단위로 운용한 상품의 예치시점의 금리가 만기시점의 금리보다 높은 반면 기준(목표)수익률의 기초 금리는 월말 기준을 적용함 에 따라 금리 하락기의 시간차이에 의한 수익률 제고 영향도 일부 있음
- 3. 운용자산별(또는 운용상품별) 기준수익률 자료 : 해당사항 없음
 - □ 자금을 연중 운용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운용한 2000년도까지 운용수익률을 평가하지 않아 기준수익률을 설정하지 않았음
- 4. 운용자산별(또는 운용상품별) 운용수익률 자료 : 붙임 참조

평가내용

3.3.2. 자금운용체계의 합리성

1. 자금운용의 체계화를 위한 노력

가. 자금운용 체계화 개선 경과

- □ 농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여유자금 운용근거 마련('97. 11. 29)
- □ 일시대기성자금 운용규정을 마련하여 대기자금의 일부를 연간 수회 제1금융권의 금융 상품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자금운용을 시작(1998년도부터)
- □ 1998년도 자금운용 이후 운용효율 제고를 위한 주요조치
- 자금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자금운용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2000.12.15)
- 기금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무수익 국고에 예치하던 사업대기자금을 상시 금융상품 예치로 자금운용방식을 전환
-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요구불 예치대상의 지출대기자금과 기간예치대상의 일시여유 자금으로 구분관리 실시로 자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수익성 제고

□ 자금운용 시작 이후 연도별 운용성과

연도별	운용회수	운용상품	운용기간	연운용액	이자수익
1998	2회	$ ext{CD} \cdot ext{RP}$	3개월 단위	연 800억원	2,849백만원
1999	3회	정기예금	3개월 단위	연 800억원	1,353백만원
2000	2회	정기예금	3개월 단위	연 1,800억원	3,148백만원

□ 대년 점진적으로 운용회수 및 운용규모의 증가를 통하여 자금운용 경험축적·전문성제고 및 기금증식 기여

나. 자금운용 체계화를 위한 추진 노력

- □ 금융비용 절감 및 자금운용 효율 제고를 위한 장기차입금 일부 조기상환
 - 차입금 현황
 - 차입금액 및 재원 : 1,000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 차입금리 등 조건 : 3개월 단위 시장금리 연동, 3년(2000.12 ~ 2003.12) 만기 일시상환
 - O 검토배경
 -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향으로 자금운용수익률이 차입금리보다 낮아 역금리 부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자금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 매년 일정 수준의 순이익 발생에 의한 자금의 순유입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경우에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등 차입금 상환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
 - 조치사항 : **차입금 중 500억원을 2001. 11 조기상환**
 - □ 금융비용 절감 및 불필요한 기금사업 확대 억제
 - □ 기금수익 증대를 위한 금융상품 예치기간의 탄력적 운용
 - 검토배경 :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세에 대응하여 단기예치에 따른 금리상 불이익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동성을 고려한 예치기간의 확대 필요
 - 조치사항 : 일시 여유자금의 예치기간을 3개월 단위에서 3 ~ 6개월 단위로 변경하여 자금운용의 탄력성 도모

□ 기금투자풀제도 활용방안 검토

- 검토배경 : 자금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가 도입한 투자풀제도의 이용여부 및 운용상품의 선정
- 기금투자풀 운용 개요
 - 투자풀의 성격 : 일반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실적배당상품과 같은 상품으로 수익성 변동 및 운용자산에 따른 신용위험 등으로 예금보다 위험이 높음
 - 투자위험 수준 : 투자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기관 선정·감시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개별투자신탁회사보다 위험이 현저히 낮음
 - 투자풀의 펀드유형
 - · M M F : 단기자금 운용에 용이하도록 자산운용이 안정적이고(현금성자산, 한국증권금 융 발행 어음 10% 이상, 국채·통안채 50% 이하) 환매부담이 없음
 - ·채권형 : 70% 이상을 채권(A⁻이상)에 운용하여 금리에 민감하고 3일환매·수수료부담
 - · 혼합형 : 채권 및 주식을 운용함에 따라 위험이 높고 4일환매·수수료부담
 - 환매수수료 : 채권형 및 혼합형에 한해 이익금 기준 90일 이내 70%, 180일 이내 30%
- 투자풀 도입 : 기금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안전성·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금융상품의 선택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투자풀운용위원회 운영을 통한 투자풀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전문 투자기법 활용으로**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등 투자풀 펀드 활용이 모든 면에서 유리
- 운용대상 상품: MMF 우선 운용. 투자풀 운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채권형 운용 유보
-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는 시점에 투자풀의 운용이 시작(2001.12)되어 금리 인상에 의한 채권가격의 하락 우려 등을 고려하여 MMF 우선 운용
- □ 두자풀 활용으로 농림사업자금 지원금융기관 집중 예치에 의한 위험의 분산 및수익성 제고

2. 자금운용 성과 및 위험 평가보고

□ 자금운용 위험

- 일시 대기성자금을 제1금융권의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채권·수익증권 등 위험이 높은 상품의 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거래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은 일부 있음
- 그러나 거래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26%로 재무건전성 이 우수한 대형금융기관으로 신용위험이 매우 낮고
- O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전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본 기금의 자금운용위험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자금운용 성과

- 자금운용을 위탁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분기별 운용상품·기간 및 거래금융기관 등 운용실적을 제출받아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및 성과수준을 점검
- 자금운용 위탁 이후 현재까지 관련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양호한 수익률 등 자금운용 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런 수준임

3. 부실 또는 계약만기초과 운용자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자금운용을 제1금융권의 금융상품으로 한정하고 실적배당상품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직접투자를 억제함에 따라 부실이나 계약만기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음

4. **만기가 1년 이상인 CP 보유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대기성자금의 운용으로 1년 이상 장기 운용이 어렵고 유가증권 투자를 억제하고 있어 CP를 보유한 실적이 전혀 없음

여 백

5

자산관련 자료

여백

5. 자산 관련 자료

(1) 월별 단기자금관리계획

〈1999년도〉 (단위: 백만원)

							·		,,,,,,,,,,,,,,,,,,,,,,,,,,,,,,,,,,,,,,,				(1211	766/
예산	과목	19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기초현	금잔고		3,949	23,634	35,531	79,656	83,479	113,046	93,541	151,437	96,233	107,012	107,558	
수	계획	63,900	79,700	191,900	199,800	140,300	128,200	243,900	163,800	150,000	159,300	203,200	210,900	1,934,900
입	실적	63,949	79,685	191,897	234,125	133,823	170,567	131,295	218,896	150,496	164,279	165,546	227,534	1,932,092
지	계획	42,700	54,200	146,800	266,800	110,200	120,100	187,100	198,700	164,300	187,500	225,000	168,600	1,872,000
출	실적	60,000	60,000	180,000	190,000	130,000	141,000	150,800	161,000	205,700	153,500	165,000	150,674	1,747,674
순함금	准单	21,200	19,700	11,900	9,800	10,300	-12,800	93,100	2,800	-55,700	5,800	38,200	60,226	187,226
유 입	실적	3,949	19,685	11,897	44,125	3,823	29,567	-19,505	57,896	-55,204	10,779	546	76,860	184,418
ણ વ	계획	21,200	40,900	52,800	62,600	72,900	60,100	153,200	156,000	100,300	106,100	144,300	204,526	391,752
현 금	실적	3,949	23,634	35,531	79,656	83,479	113,046	93,541	151,437	96,233	107,012	107,558	184,418	1,079,494
조	계획		-	-	-		-	_	_		_		_	
달	실적	_	_	-	_	-	~				_	-	-	_
윤	계획	_		-	-		-	-	_	-	_	-	_	-
용	실적	-	_		-		-	_	-	-	_		_	-
기말현	금(계획)	21,200	40,900	52,800	62,600	72,900	60,100	153,200	156,000	100,300	106,100	144,300	204,526	
기말현	금(실적)	3,949	23,634	35,531	79,656	83,479	113,046	93,541	151,437	96,233	107,012	107,558	184,418	

(단위 : 백만원)

〈2000년도〉

예선	畔	19	2월	3월	4%	5 %	62	72	81	9월	104	11월	12월	계
기초현	금잔고	-	38,240	82,974	126,937	58,845	56,541	219,541	192,750	259,003	166,830	121,882	162,709	
수	계획	83,200	84,700	189,500	262,800	188,000	369,500	191,600	221,800	214,100	216,400	148,600	222,900	2,393,100
입	실적	83,240	84,734	200,963	207,908	273,632	303,837	154,587	296,259	115,488	174,712	132,286	218,693	2,246,339
지	계획	44,600	39,700	184,100	299,000	138,400	201,000	211,900	224,000	229,900	244,400	184,500	149,100	2,150,600
출	실적	45,000	40,000	157,000	276,000	275,936	140,837	181,378	230,006	207,661	219,660	91,459	157,025	2,021,962
순현금	계획	38,200	45,000	32,500	-13,200	-87,936	228,663	10,222	-8,206	6,439	-3,260	57,141	65,875	371,438
유 입	실적	38,240	44,734	43,963	-68,092	-2,304	163,000	-26,791	66,253	-92,173	-44,948	40,827	61,668	224,377
ણ લ	계획	38,200	83,200	115,700	102,500	14,564	243,227	253,449	245,243	251,682	248,422	305,563	371,438	2,273,188
현 금	실적	38,240	82,934	126,937	58,845	56,541	219,541	192,750	259,003	166,830	121,882	162,709	224,377	1,710,589
조	계획	-		_	-	-	_	-	_	-	_	_	-	
달	실적	-	-	-	_	-	_	-	-	-	_	-	-	-
순	계획	_	-	į		-	-	_	-	-	-	-	-	
용	실적	-	-	_	_	-	_	_	-	-	-	-	_	-
기말현	금(계획)	38,200	83,200	115,700	102,500	14,564	243,227	253,449	245,243	251,682	248,422	305,563	371,438	
기말현	금(실적)	38,240	82,934	126,937	58,845	56,541	219,541	192,750	259,003	166,830	121,882	162,709	224,377	

														,
예산	骅	1월	2월	3월	4월	5월	6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
기초현	금잔고	199,653	212,592	260,810	294,428	278,094	189,461	235,949	242,031	326,334	281,038	369,709	292,242	
수	계획	65,100	86,449	222,821	310,841	226,157	213,582	214,594	259,670	129,450	211,764	132,563	107,009	2,180,000
입	실적	46,296	92,443	176,885	317,743	235,039	232,131	205,981	270,778	136,905	191,644	153,442	101,683	2,160,970
지	계획	56,550	31,576	154,844	315,890	319,820	134,867	217,956	256,498	220,663	195,919	172,604	102,813	2,180,000
출	실적	33,357	44,225	143,267	334,077	323,672	185,643	199,899	186,475	182,201	102,973	230,909	157,694	2,124,392
순현금	계획	8,550	54,873	67,977	-5,049	-93,663	7 8,715	-3,362	3,172	-91,213	15,845	-40,041	4,196	
유 입	실적	12,939	48,218	33,618	-16,334	-88,633	46,488	6,082	84,303	-45,296	88,671	-77,467	-56,011	36,578
잉 여	계획	208,203	263,076	331,053	326,004	232,341	311,056	307,694	310,866	219,653	235,498	195,457	199,653	3,140,554
현 금	실적	212,592	260,810	294,428	278,094	189,461	235,949	242,031	326,334	281,038	369,709	292,242	236,231	3,218,919
조	계획		_		-	_	_				_			
달	실적	_			Made		_		-		_			~
순	계획	-	-	_	again	800	_	_	***		_	-		
슣	실적		_	-	-		_	_	***		_	· —		-
기말현	금(계획)	208,203	263,076	331,053	326,004	232,341	311,056	307,694	310,866	219,653	235,498	195,457	199,653	
기말현	금(실적)	212,592	260,810	294,428	278,094	189,461	235,949	242,031	326,334	281,038	369,709	292,242	236,231	

(2) 금융기관 상품별 운용내역

□ 1999년도

(단위: 천원, %)

#8	기관	分署場	운 용 개시일	287 4	이 자 수취일	이 자 수업 공에	만기일	방기당액	수익률 (연율)
농	협	정기예금	4.12	20,000,000	7. 12	355,000	7. 12	20,355,000	7.10
		정기예금	5.12	30,000,000	8. 12	503,000	8. 12	30,503,000	6.70
		정기예금	7.29	30,000,000	10.29	495,000	10.29	30,495,000	6.60
	합	계				1,353,000			6.73

※ 연 수익률은 적수계산에 의해 산출

□ 2000년도

(단위: 천원, %)

금융기관	상품명	운 용 개시일	. 운용 금에	이 자 수취일	이자수임예	만기일	만기금액	수익물 (연 율)
농 협	큰만족실세예금	6. 29	100,000,000	9.29	1,750,000	9.29	101,750,000	6.94
	큰만족실세예금	9. 29	80,000,000	12.29	1,360,000	12.29	81,360,000	6.82
	알짜배기기업예금	12. 29	80,000,000	월단위	21,918	요구불	_	5.00
	알짜배기기업예금	12. 30	99,652,648	월단위	13,651	요구불	-	5.00
	소 계				3,145,569	,		6.86
우체국	듬뿍우대저축	12. 30	20,000,000	월단위	2,740	요구불	-	5.00
	합계				3,148,309			6.86

- ※ 요구불 예치의 이자수입액은 예치부터 연말까지 기간계산한 금액
- ※ 연 수익률은 적수계산에 의해 산출

□ 2001년도

(단위 : 천원, %)

금융기관	상품명	운 용 개시일	운용금액	이 자 수취일	이자수입액	만기일	만기금액	수익률 (연 율)	비고
농 협	큰만족실세예금	1.6	150,000,000	4.6	2,475,000	4.6	152,475,000	6.69	
		4.6	170,000,000	7.6	2,465,000	7.6	172,465,000	5.82	
		7.6	50,000,000	9.6	425,000	9.6	50,425,000	5.00	
		7.6	100,000,000	10.6	1,450,000	10.6	101,450,000	5.75	
		9.17	110,000,000	12.17	1,402,500	12.17	111,402,500	5.11	
		9.17	50,000,000	'02.3.17	755,068	'02.3.17	51,300,000	5.20	미도래
		12.28	20,000,000	'02.3.28	9,863	'02.3.28	20,225,000	4.50	미도래
	자유로정기예금	10.31	10,000,000	11.30	33,333	11.30	10,033,333	4.06	
		10.6	80,000,000	'02.1.6	877,151	'02.1.6	80,920,000	4.60	미도래
	소계(정기예금)				9,892,915			5.65	
	알짜배기기업예금	'00.12.29	35,836,373	월단위	1,652,148	요구불		4.61	
	계				11,545,063			5.47	
우체국	듬뿍우대저축	'00.12.30	20,000,000	월단위	237,503	요구불	_	4.56	
삼성증권	기금투자풀 (MMF)	12.17	30,000,000	환매시	53,069	요구불	_	4.30	
	합 계				11,835,635		_	5.44	

[※] 만기 미도래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은 12.31까지 기간계산

[※] 연 수익률은 적수계산에 의해 산출

(3) 자산운용관련 설문지

I. 기금운용 일반

- I.1. 기금이 단기자금이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명문화된 기금자산운용정책(investment policy statement) 또는 투자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있는 경우, 이를 상술해 주시거나 말미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 I.2. 기금운용의 목표수익률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는 경우 2001년도의 목표수익률은 얼마입니까? 5.2%
 있는 경우 목표수익률을 결정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3개월 CD 월말 수익률 연간 평균
- I.3. 기금은 단기자금과 여유자금으로 구분하는 이외에 단기자금과 중·장기 자금을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기준이 있다면 단기자금의 최장 만기는 얼마입니까? ()개월
 만기이외 구분 기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I.4. 2001년도 단기자금과 여유자금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단기자금 일평잔 (<u>2,174</u>) 억원 여유자금 일평잔 (-) 억원 단기자금 2001년말 잔액 (<u>2,362</u>) 억원 여유자금 2001년말 잔액 (-) 억원

I.5. 기금 관련 법령과 주무부서 지침 이외의 기금자산 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은행, 종금사 등 제 1금융권 선정기준 예(●), 아니오 ()

투신사 선정기준

예(), 아니오 (●)

증권사 선정기준

예(), 아니오 (●)

기준이 있다면 각 기준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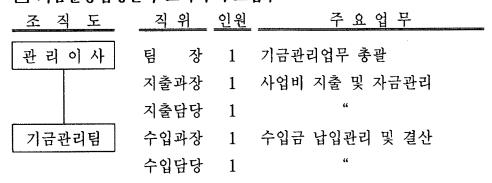
□ 제 1금융권 선정기준 : <u>농림수산사업자금 공급능력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u> 사업자금 지원금융기관에 우선 예치하고 운용규모에 따른 분산이 필요할 경우 BIS자 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기관 중 상위 3개 기관으로 한정 I.6. 기금운용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5)명 조직도와 각 조직(또는 구성원)의 주요 업무를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기금운용조직

ㅇ 기금운용계획수립 : 농림부 유통정책과

ㅇ 기금운용집행관리 :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 기금운용집행관리 조직의 주요업무



- 1.7.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사전에 보고가 됩니까? 예 (), 아니오 (●)
- I.8. 기금운용위원회에 자산운용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중은? 위원 총 인원 (10)명 중 자산운용전문가는 (1)명임.
- I.9. 자산운용과 관련된 위원회(단 기금운용위원회 제외)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위원회 명칭은?()
 있다면 위원회 총 인원()명 중 외부 전문가가()명 차지함
- I.10. 2001년 단기자금 또는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금운영비(인건비 포함)는 총 얼마입니까? (없음)억원

Ⅱ. 단기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Ⅱ.1. 단기자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연간: 예(●), 아니오()

월간: 예(●), 아니오()

일간: 예(●), 아니오()

- Ⅱ.2. 단기자금의 적정수준을 산정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산정하고 있다면 산정방식을 기술하십시오.
- II.3. 기금 관련 법령과 주무부서 지침 이외에 단기자금을 운용상품별로 배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간략히 기술하십시오.
- II.4. 기금 관련 법령과 주무부서 지침 이외의 단기자금을 운용을 위해 금융기관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II.5. 거래은행 선정기준에 BIS자기자본비율에 기초한 기준을 적용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II.6. 거래 금융기관 선정기준에 정책적인 배려를 하십니까? (예: 농업관련기금의 경우 농협을 우선 선정하는 것) 예 (●), 아니오 ()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경우 어느 금융기관이 우대를 받습니까? <u>농협중앙회</u>
- II.7. 거래은행 선정기준에 BIS자기자본비율에 기초한 기준이나 정책적인 배려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그 기준을 기술하십시오. 없음
- II.8. 단기자금을 제2금융권이 판매하는 상품에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있는 경우 그 상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MMF(기금투자풀) 있다면 그 유용규모가(일평잔 기준으로) 전체 단기자금 운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 II.9.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상품중 만기가 지난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는 경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Ⅲ. 수익률 계산과 성과평가/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III.1. 보유자산 평가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까? 예 (●), 아니오 () 아니면 보유자산 평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상술해 주십시오

Ⅲ.2. 보유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십니까? 해당사항 없음(아래의 상품은 운용대상이 아님)

상장 또는 등록 주식: 예(), 아니오()

채권

: 예 (), 아니오 ()

부동산 : 예(), 아니오()

Ⅲ.3. 운용수익률을 얼마나 자주 계산하고 있습니까?

매일 (), 월 1회 (), 분기별 1회 (●), 반기별 1회 (), 년 1회 (), 기타 ()

Ⅲ.4.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하십니까? 예 ().아니오 (●) 기타의 경우 수익률 산출방법을 상술해 주십시오. 적수에 의한 평잔으로 산출

Ⅲ.5.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평가 (단 감사원에 의한 감사 제외)하는 담당자가 운용담당자와 구분 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Ⅲ.6. (감사원을 제외한) 외부기관에 의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Ⅲ.7. 성과평가가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Ⅲ.8. 성과평가에 따라 운용담당자의 보수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달라지는 경우 그 내역을 상술해 주십시오.

Ⅲ.9. 위험관리에 Value-at-risk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Ⅲ.10. 기금의 자산운용이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를 감시하는 기능이 (감사원 감사이 외에)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IV. 자산운용 실적자료: 자산군별 자산배분 및 운용 실적자료 (과거 3년간)

IV.1. 내부운용 ☞ 본 설문지 앞페이지 실적참조

IV.2. 외부운용 (수익증권, 금전신탁, 위탁투자, 투자풀 예치 등)

Ⅴ.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만기를 1년 이상으로 운용하는 여유자금이 없는 기금은 아래 설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문 I.1. 관련 첨부자료: 기금자산운용정책

 □ 관련규정 : 시행령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훈령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 제16조(여유 자금의 금융기관예치)

 □ 운용대상 : 금융기관 예치 및 국채 · 공채 ·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 예치기관 : 농림수산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우선예치

 □ 운용관리 : 기금위탁관리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기간, 금리 및 상품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로 자율적으로 관리

 □ 운용보고 : 운용관리기관은 자금운용규모 및 기간을 농림부에 보고

 □ 금지행위 : 예치이자율을 입찰하는 행위, 이면계약 행위,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배당률을 사전 약정하는 행위

 □ 준용사항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획예산처

기금여유자금 운용지침 중 단기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참 고 자 료

여 백

<u>연도별·사업별 운용현황</u>

1. 연도별 조달 및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96	'97	'98	'99	'00	'01	'02계획
	1. 비축농수산물판매수입	599,631	399,885	456,252	438,053	464,795	398,279	501,195
조	2 . 종자판매수입	_	_	-	_	6,974	36,882	38,341
	3. 융자금 회수	910,762	1,120,525	1,241,423	1,354,818	1,312,076	1,515,197	1,566,465
	4. 융자금 이자수입	36,148	47,659	53,515	59,253	65,629	65,963	73,411
달	5. 재특차입금	-	-	_	-	100,000	-	-
	6. 전년도이월금	132,706	154,704	4,153	8,704	211,464	224,377	_
	7. 기 타	41,247	48,381	41,872	71,264	85,401	119,925	100,588
	Э	1,720,494	1,771,154	1,797,215	1,932,092	2,246,339	2,360,623	2,280,000
	1. 가격안정사업	756,947	854,077	881,953	840,270	893,176	1,360,015	1,443,703
	o 정부가격안정	324,487	301,424	331,186	266,313	302,905	334,401	413,298
	o 민간가격안정	432,460	552,653	550,767	573,957	590,271	1,025,614	1,030,405
	2. 종자수급사업	-	-	-	_	37,692	37,574	43,841
운	o 종자수매	-	-	_	-	36,465	36,502	41,894
	o 생산보상금	-		_	_	1,227	1,072	1.947
	3. 유통개선사업	763,648	862,797	849,791	858,174	1,002,018	636,473	737.899
	o 유통시설확충및개선	81,300	58,210	50,949	64,811	65,446	47,206	27,119
	o 산지및소비지유통개선	621,083	693,590	633,224	614,969	715,146	589,267	710,780
용	ο 유통조성	61,265	110,997	165,618	178,394	221,426		-
	4. 사업조성	17,080	17,200	16,390	15,822	14,082	34,795	42,357
	5. 차입금 상환	28,115	32,927	40,377	33,408	74,786	55,128	5,250
	6. 기금관리비	-	-		-	208	407	419
	7. 차년도이월(여유자금)	154,704	4.153	8,704	184,418	224,377	236,231	6,531

^{※ 2001}년 수정운용계획부터 유통조성사업중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은 민간가격안정사업으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사업은 사업조성으로 통합지원됨

2. 사업별 운용현황

□ 총 괄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Я	1,720,494	1,771,154	1,797,215	1,932,092	2,246,339	2,360,623	2,280,000
1. 가격안정사업	756,947	854,077	881,953	840,270	893,176	1,360,015	1,443,703
o 정부가격안정	324,487	301,424	331,186	266,313	302,905	334,401	413,298
- 비축사업	317,181	299,562	329,425	265,020	300,072	324,915	400,998
- 출하조절사업	7,306	1,862	1,761	1,293	2,833	9,486	12,300
o 민간가격안정	432,460	552,653	550,767	573,957	590,271	1,025,614	1,030,405
- 저장·가공수매지원	244,969	258,291	337,607	364,648	361,755	428,908	445,179
- 수출수매지원	112,329	132,571	186,360	194,109	188,516	187,139	-
- 생산자출하조절지원	37,162	51,791		-	-		_
- 채소수급안정지원	38,000	110,000	26,800	15,200	40,000	128,000	72,000
- 과실수급안정지원	-			-	-	80,000	92,800
- 우수농수산물지원	-		_	_	_	201,567	420,426
2. 종자수급사업	-	-	-	-	37,692	37,574	43,841
o 종자수매		_	-	-	36,465	36,502	41,894
o 생산보상금	-			_	1,227	1,072	1,947
3. 유통개선사업	763,648	862,797	849,791	858,174	1,002,018	636,473	737,899
o 유통시설확충및개선	81,300	58,210	50,949	64,811	65,446	47,206	27,119
o 산지및소비지유통개선	621,083	693,590	633,224	614,969	715,146	589,267	710,780
- 산지유통개선	407,983	451,690	384,352	370,700	434,200	341,599	464,570
- 소비지유통개선	213,100	241,900	248,872	244,269	280,946	247,668	246,210
o 유통조성	61,265	110,997	165,618	178,394	221,426	_	
- 우수농수산물지원	51,000	97,165	148,970	162,092	203,023	_	
- 조사·연구·홍보및교육훈련	10,265	13,832	16,648	16,302	18,403		····
4. 사업조성	17,080	17,200	16,390	15,822	14,082	34,795	42,357
o 비축사업위탁료	13,194	13,320	13,320	13,355	12,013	11,822	11,741
o 생산출하약정수수료	1,000	_	-	-	-	_	
o 비축사업설비비	2,886	3,880	3,070	2,467	2,069	1,152	3,999
o 조사·연구·홍보및교육훈련	-	-		_	_	20,171	21,617
o 농업투자조합출자			-			1,650	5,000
5. 차입금 상환	28,115	32.927	40,377	33,408	74,786	55,128	5,250
o 재특차입원금	19,000	25,000	34,000	28,800	71,400	50,000	-
o 재특차입이자	9,115	7,927	6,377	4,608	3,386	5,128	5,250
6. 기금관리비		PROMO	-	-	208	407	419
7. 차년도이월(여유자금)	154,704	4,153	8,704	184,418	224,377	236,231	6,531
	<u> </u>					<u></u>	

^{※ 2001}년도 수정운용계획부터 유통조성사업중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은 민간가격안정사업으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사업은 사업조성으로 통합지원됨

[※] 수출수매지원은 2002년부터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으로 지원됨

⁻ 우수농수산물지원 420,426백만원중 수출수매지원(원료구매지원)는 216.870백만원, 운영활성화지원은 203.556백만원임

□ 비축사업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Я	317,181	299,562	329,425	265,020	300,072	324,949	400,998
1. 농수산물 수매	84,993	100,443	69,608	74,115	114,130	134,264	137,163
가. 농산물	21,070	16,005	15,646	18,875	60,659	81,388	62,778
2	1,250	12,700	12,960	13,575	26,750	27,427	26,237
팥	180		•	-	-	•••	-
녹두	-	-	-	-	_		<u>.</u>
참깨	-	~	-	~	_		-
땅콩(피땅콩)	810	800	600	2,600	3,300	3,407	3,577
고추	-	-	-	-	-	_	4,474
아늘	17,000	-	-	_	23,010	32,654	13,750
양파	-	-	-	-	-	4,696	6,600
감자	-	-	-	-	-	2,550	
사과	1,830	2,505	2,086	2,700	3,019	4,832	3,911
AH	_	-	-		4,580	5,822	4,229
나. 수산물	63,923	84,438	53,962	55,240	53,471	52,876	74,385
김	13,279	13,279	13,476	13,430	14,070	13,243	13,238
간미역	5,192	5,173	5,117	3,800	4,033	3,457	3,236
마른멸치	-	10	-	442	-		-
마른오징어	2,393	2,416	1,933	603	1,370	605	938
냉동오징어	11,970	42,844	5,919	14,500	7,164	16,635	28,668
냉동고등어	8,452	10,205	7,085	6,180	7,079	4,808	8,157
냉동조기	12,097	3,878	6,910	3,795	4,858	2,500	4,423
냉동꽁치	-	-	2,000	1,000	_	_	_
냉동명태	6,800	6,133	4,212	9,290	11,870	7,953	12,989
냉동갈치	3.740	500	7,310	2,200	3,027	3,675	2.736

(단위:백만원)

11 OJ D	100	107	100	:00	100	101	100718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2. 농수산물 수입	232,188	199,119	259,817	190,905	185,942	190,685	233,835
가. 농산물	228,473	199,119	259,817	190,905	185,942	184,985	231,807
思	72,719	79,521	99,282	70,858	77,559	65,818	80,387
팥	10,641	7,486	12,953	14,235	14,681	16,397	16,301
녹두 .	83		_	_	_	_	_
참깨	83,848	68,230	89,315	80,498	71,596	70,690	79,560
땅콩(알땅콩)	3,715	6,593	5,416	_	1,766	1,689	998
고추	21,116	16,600	29,664	15,217	7,156	8,658	19,267
아늘	8,131	9,516	12,148	3,681	9,258	20,392	18,502
양파	27,676	9,409	10,048	6,416	3,638	667	16,243
산마		-	_	_	-	9	_
생강	544	1.764	991		288	665	549
나. 수산물	3,715		_	AMPLA	_	5,700	2,028
마른멸치	3,715	_	_	_	_		_
냉동고등어	_	_	_	_	_	3,100	2,028
냉동명태	_		_	_	_	2,600	_
3. 긴급가격안정		_	_	-	_	Anna	30,000

□ 출하조절사업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Э	7,306	1,862	1,761	1,293	2,833	9,486	12,300
무ㆍ배추 등 채소류	7,306	1,862	1,761	1,293	2,833	9,486	5,000
자조금 지원	_	_	_	_	_	_	2,300
유통협약 명령 지원	-		_		_	_	5,000

[※] 자조금지원은 2001년도에는 조사연구홍보및교육훈련지원사업으로 집행되었으나 2002년부터 출하조절사업으로 지원

^{- 2000}년도 지원실적 : 63백만원, 2001년도 : 178백만원

□ 융자사업 총괄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계	1,185,843	1,401,618	1,383,910	1,415,829	1,573,886	1,662,087	1,768,30
o 저장·가공용 수매지원	244,969	258,291	337,607	364,648	361,755	428,908	445,17
o 수출용 수매지원	112,329	132,571	186,360	194,109	188,516	187,139	-
o 생산자출하조절지원	37,162	51,791	-	_			-
o 채소수급안정지원	38,000	110,000	26,800	15,200	40,000	128,000	72,00
o 과실수급안정지원			-			80,000	92,80
0 우수농수산물지원	51,000	97,165	148,970	162,092	203,023	201,567	420,426
o 농수산물유통시설	81,300	58,210	50,949	64,811	65,446	47,206	27,119
o 산지유통개선	407,983	451,690	384,352	370,700	434,200	341,599	464,570
o 소비지유통개선	213,100	241,900	248,872	244,269	280,946	247,668	246,210

[※] 수출수매지원은 2002년부터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으로 지원됨

⁻ 우수농수산물지원 420,426백만원중 수출수매지원(원료구매지원)는 216,870백만원, 운영활성화지원은 203,556백만원은

□ 저장·가공용수매지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계	244,969	258,291	337,607	364,648	361,755	428,908	445,179
마늘	13,900	15,400	14,912	14,912	21,580	80,117	57,000
(농협)	-		-	-	3,600	62,117	32,000
(공사)	13,900	15,400	14,912	14,912	17,980	18,000	25,000
양 파	4,200	4,725	12,900	10,755	7,400	8,500	7,500
(농협)	-	-	4,000	3,000		-	-
(공사)	4,200	4,725	8,900	7,755	7,400	8,500	7,500
고 추	21,000	32,937	-	380	-	-	
(농협)	5,720	10,532	-	-		-	
(공사)	15,280	22,405	-	380			-
당 근	686	694	672	672	51	626	420
복숭아	1,456	1,456	-	_	-		
포도	4,400	3,100	-	-	-		-
(농협)	2,300	1,000	-	-	-	-	
(공사)	2,100	2,100	-	-	-	-	-
사과	10,802	10,154	5,089	5,250	2,070	1,713	
(농협)	2,500	1,000	- [-	-		-
(공사)	8,302	9,154	5,089	5,250	2,070	1,713	
ИH	1,575	1,744	1,686	1,686	1,430	590	
단 감	616	616	1,920	1,920	1,880	1,670	
과실류	-	-	_	-	-		9,280
감 자	5,644	6,300	882	882	1,124	80	1,800
감 귤	2,000	300	_	_	-		-
고구마	1,264	1,380	816	984	992	1,422	1,422
맥주보리	19,840	19,680	13,879	15,710	15,710	22,100	22,100
율 무	1,000	-	-		-	-	-
양잠산물	1,054	311	189	671	1,000	217	1,500

※ 과실류 : 사과, 배, 단감에 대한 수매지원으로 세 품목 전체의 '02 계획은 9,280백만원이나, 각 품목별 계획금액은 미정

사 업 명 유 채 밀 콩	'96 249 6,500	'97 872	'98	'99	'00	'01	'02계획
밀	1	872	0.50				T
	6,500		350	_	700	380	1,000
콩	ļ	6,500	3,386	4,128	2,700	2,825	2,825
1	4,500	4,000	10,000	20,500	25,295	40,000	40,000
잡곡류	-		-	-	3,500	3,260	3,900
땅 콩	90	90	-		_	-	_
종 자	1,500	1,500	1,080	456	-		1,266
김치원료	11,300	9,800	-		-	_	_
생 약	3,522	2,983	1,960	153	100		2.000
(농협)	-	-	-	_	-		-
(공사)	3,522	2,983	1,960	153	100	· 	2,000
인 삼	8.400	9,767	-	21,160	22,541	18,350	22,400
완 초	148	148			_		-
냉동보관	54,000	59,000	51,600	52,300	45,375	39,331	42,000
(수협)	44,000	48,000	41,600	42,300	35,375	27,331	30,000
(공사)	10,000	11,000	10,000	10,000	10,000	12,000	12,000
통조림가공	12,460	8,667	6,944	6,944	3,900	3,250	3,250
연제품가공	7,000	7,000	7,600	5,600	1,510	640	1,010
냉동품가공	2,500	4,200	3,760	4,370	3,540	4,370	4,370
조미·염장품가공	5,420	5,420	4,336	4,336	4,094	3,452	3,336
김가공	2,500	2,450	-	-	<u>-</u>		-
간미역가공	1,129	1,183	_		-		-
해조류가공	-	-	3,528	3,528	· _	-	-
사료용어류	756	1,050	1,070	900	6,900	200	_
수산물수매보관	33,558	34,000	40,800	49,776	52,337	76,528	76,000
환경농산물	-	864	3,223	4,094	-		-
(농협)	-	-	1,549	3,730	-		-
(공사)	-	864	1,674	364	-		
일반가공수매	-	-	45,000	39,991	34,920	20,491	40,000
산지가공수매	-		100,025	92,590	101,106	98,796	100,800
(농협)	-	-	100,025	76,301	84,306	85,996	88,000
(수협)	-	-	-	16,289	16,800	12,800	12,800

□ 수출용 수매지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계	112,329	132,571	186,360	194,109	188,516	187,139	_
과실류	13,679	13,740	17,784	16,910	16.055	16,875	-
채소류	20,926	24,072	24,884	27,500	32,250	37,369	_
버섯류	660	700	728	880	200	100	-
화훼류	1,000	910	1,256	1,540	1,850	2,030	_
인삼류	10,496	11,880	12,336	13,631	13,894	14,850	-
밤	25,500	29,100	28,220	27,075	28,000	30,300	***
표고버섯	4,800	5,046	4,864	5,250	5,220	4,460	-
송 이	5,600	6,600	7,004	7,810	9,000	8,550	-
기타 임산물	-		_	140	_	_	_
양 파	_		4,400	-	_	<u></u>	-
축산물	_	_	25,000	25,000	_	_	_
생 약	2,080	3,760	1,748	1,710	1,317	1,271	_
채소종자	_	_	1,136	1,006	980	-	_
냉동수산물	5,868	6,120	14,000	19,767	26,960	24,070	~~~
홡어·패류	5,873	9,453	18,000	19,900	.24,490	21,000	_ ′
통조림	7,467	8,050	9,348	10,000	11,400	12,550	_
해조류	8,380	13,140	15,652	15,990	16,900	13,714	-

^{※ 2002}년부터 수출용 수매지원사업은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으로 통합 지원

□ 채소수급안정지원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Э	38,000	110,000	26,800	15,200	40,000	128,000	72,000
노지채소 (무,배추 등)	38.000	110.000	26,800	15.200	40,000	80,000	
시설채소 (오이, 호박 등)	_	_	-	_		48,000	72,000

□ 과실수급안정지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사과, 배 등	_ `				_	80,000	92,800

^{※ 2001}년부터 신규 지원

□ 우수농수산물지원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계	51,000	97,165	148,970	162,092	203,023	201,567	420,426
o 운영활성화지원	51,000	97,165	148,970	162,092	203,023	201,567	203,556
우수농수산물지원	35,000	70,165	81,500	91,600	115,000	97,544	97,556
유망품목시장개척	16,000	27,000	53,000	56,000	70,000	86,000	94,000
(농 협)	4,000	11,000	28,000	30,000	49,000	56,000	58,000
(공 사)	12,000	12,000	20,000	26,000	21,000	30,000	36,000
(삼 협)	-	4,000	5,000		-	-	
신선채소류유류대	_	-500m	10,000	9,867	12,023	12,023	5,000
신선화훼류유류대	-	wage	4,470	4,625	6,000	6,000	7,000
o 원료구매지원		***			_		216,870
채소류	smar-				_	_	42.900
과실류	-		-		-	_	19,936
약용류	-				-	-	1,430
버섯류		agusar .		_	-		500
화훾류		***			-		2,200
인삼류	-					and the second s	21,000
임산물 (밤,표고,송이)	-				_	-	49,750
채소종자	-		<u></u>	-	-	-	980
냉동수산물	-	· 	-		_	-	30,274
활어 패류	_	****			-		21,000
통조림		***	_				11,900
해조류		***			_	حمدنيد	15,000

[※] 원료구매지원은 2001년까지 수매지원사업(수출용)으로 지원되었으나, 2002년부터 우수농수산물지원사업으로 분류

□ 종자수급관리

(단위:백만원)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Я	8449-	week	-		37,692	37,574	43,841
가. 종자생산·공급	_		_		36,465	36,502	41,894
벼					24,140	24,208	26,587
보리					1,973	2,418	2,686
감 자					7,151	6,889	8,523
옥수수					718	335	749
콩					2,483	2,652	3,349
나. 생산보상금			_	***	1,227	1,072	1,947
#		TANASA MARIANA			603	473	1,132
보리					276	307	341
콩					348	292	474

[※] 종자수급관리는 종자기금이 농안기금에 통합된 2000년도부터 농안기금사업에 포함됨

□ 농수산물유통시설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계	81,300	58,210	50,949	64,811	65,446	47,206	27,119
도매시장건설	61,300	46,540	21,935	34,282	40,976	25,601	3,530
도매시장시설개선			-	Mari	-	-	-
농수산물직판장	****		-	-	_	-	
수출용과실시설	_		-		_	-	
농수산물집배송	-			-		····	
농수산물공판장		****	-		_	_	***
우수농산물시설현대화	20,000	11,670	21,036	26,479	21,915	15,612	14,600
무역진흥센터건설			7,978	4,050	1,855	5,993	8,989
농산물야적장	·		-		700	-	***

□ 산지유통개선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Я	407,983	451,690	384,352	370,700	434,200	341,599	464,570
산지유통센터	_	_	22,120	36,000	41,807	43,337	40,000
산지가공산업	70,000	85,900	_	-	_	_	-
규격출하(수산물)	16,650	20,000	27,776	20,000	21,000	15,200	16,000
매취사업	40,330	47,000	-	_	-	-	- }
생산자조직육성	108,983	121,020	106,300	184,300	199,247	147,222	114,470
(농 협)	73,183	83,720	99,652	155,100	157,550	106,602	73,650
(산림조합)	5,300	6,300	_	26,200	37,840	36,820	36,820
(유통공사)	30,500	31,000	6,648	3,000	3,857	3,800	4,000
공동규격출하	159,500	165,250	138,168	121,600	100,000	77,000	83,900
산지유통전문조직육성	-	_	_	_	51,330	44,640	200,000
생산자단체회원조합	-	_	87,000	<u> </u>	_	-	-
(농 협)	_	-	42,400	-	_	_	-
(산림조합)	-	_	23,000	-	_	-	-
(삼 협)	-	_	21,600	_	_	_	-
인삼출하장려	-		2,088	7,200	6,500	7,200	7,200
과실봉지생산	2,520	2,520	_	800	-	-	-
산지유통인	10,000	10,000	_	_	-	_	. –
화훼신품종입식비	-	-	_	_	7,000	7,000	3,000
경매집하장	-	_	_	_	2,000	_	
홍삼포장재구입	_	-		_	1,143	_	-
인삼신산지개척		_	-	_	780	-	-
인삼선도농육성	-	_	_		1,493	-	
생산자조직육성인센티브	-	-	900	800	1,900	-	-

[※] 산지가공산업지원자금은 1998년부터 수매지원사업으로 지원됨

[※] 홍삼포장재구입, 인삼신산지개척, 인삼선도농육성지원은 2000년도 인삼진홍기금통합시 승계분임

[※] 산자유통전문조직육성은 2000년, 2001년도에 협동조합유통활성화 사업명으로 지원

□ 소비지유통개선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Э	213,100	241,900	248,872	244,269	280,946	247,668	246,210
농수산물도매시장 출 하	62,000	85,200	71,380	43,599	36,349	31,407	38,620
산지유통인	_		7,226	5,948	3,145	2,435	2,104
종합유통센터	-	6,200	15,900	21,600	26,100	25,152	25,000
공 판 장	151,100	150,500	143,366	136,800	154,150	139,990	127,095
(농 협)	71,100	70,500	76,866	68,566	68,916	66,714	51,095
(공 사)	1,500	1,500	1,500	1,500	18,500	4,500	8,000
(수 협)	78,500	78,500	65,000	66,734	66,734	68,776	68,000
직거래매취지원	_		11,000	36,322	55,265	48,684	50,391
(농 협)	_	4490	5,000	21,000	34,549	26,898	28,000
(공 사)		~	2,000	11,722	15,186	18,786	18,000
(수 협)	***		2,000	2,400	5,530	3,000	4,391
(산림조합)	_		1,000	600	-		****
(삼 협)	_		1,000	600			_
전자상거래활성화	_	-		_	5,937	-	3,000

[※] 직거래매취지원은 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및 대형소매유통업체 지원자금도 포함

□사업조성

(단위:백만원)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Эl	17,080	17,200	16,390	15,822	14,082	34,795	42,357
비축사업위탁료	13,194	13,320	13,320	13,355	12,013	11,822	11,741
생산.출하약정수수료	1,000		_	_	_	-	-
비축사업설비비	2,886	3,880	3,070	2,467	2,069	1,152	3,999
조사 연구 홍보 교육훈련	_	_	_		-	20,171	21,617
농업투자조합출자		-	_	-	_	1,650	5,000

[※]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사업은 2001년부터 사업조성에 포함(2000년까지는 유통조성사업으로 지원)

□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Э	10,265	13,832	16,648	16,302	18,403	20,171	21,617
유통정보조사및교육훈련등 위탁사업	9,091	13,372	15,219	13,264	15,519	16,728	18,432
연구개발비	100	49	210	60	228	230	200
농업관측조사	85	99	84	151	_	280	-
유통구조개선 홍보비	829	56	196	1,859	1,994	2,248	2,185
농산물 자조금지원	-	-	_	none .	63	178	-
농업인 정보화교육	-	-	240	380	_	_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	_	-	115		-	-
농수산식품대축제	-	-	475	102	_	-	-
농수산물유통조사지도	160	256	224	371	367	407	400
이화학검사기구 구입	-	_	-	_	232	_	_
유통협약명령제 지도홍보			-	_	-	-	300
농산물표준규격정비		-	-	-	-	100	100

[※] 농산물 자조금지원은 2002년부터 출하조절사업으로 지원됨

□ 차입금상환

(단위:백만원)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Л	28,115	32,927	40,377	33,408	74,786	55,128	5,250
재특차입원금상환	19,000	25,000	34,000	28,800	71,400	50,000	_
재특차입이자상환	9,115	7,927	6,377	4,608	3,386	5,128	5,250

□ 기금관리비

사 업 명	'96	'97	'98	'99	'00	'01	'02계획
기금위탁관리비	_		-	-	208	407	419

3. 대출기관별 융자현황

(단위 : 백만원)

<u> </u>	<u> </u>						271.722/
7	분	Я	유통공사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인 삼 협
'96	융 자	1,185,843	398,116	510,360	239,369	17,640	20,358
	회 수	910,762	309,491	364,326	209,522	11,128	16,295
	잔 액	1,377,742	512,417	577,253	247,665	20,049	20,358
'97	융 자	1,401,618	455,912	637,465	255,134	26,380	26,727
	회 수	1,120,525	376,071	457,058	250,455	16,583	20,358
	잔 액	1,658,835	592,258	757,660	252,344	29,846	26,727
'98	융 자	1,383,910	465,507	604,271	260,344	24,100	29,688
	회 수	1,241,423	411,485	521,844	255,294	26,073	26,727
	잔 액	1,801,322	646,280	840,087	257,394	27,873	29,688
'99	융 자	1,415,829	462,753	609,282	287,934	26,900	28,960
	회 수	1,354,818	457,686	573,771	276,954	24,505	21,902
	잔 액	1,862,333	651,347	875,598	268,374	30,268	36,746
'00	융 자	1,626,853	470,991	821,552	296,470	37,840	_
	회 수	1,312,076	380,079	638,722	266,182	27,093	_
	잔 액	2,140,364	742,259	1,058,428	298,662	41,015	_
'01	융 자	1,662,087	415,653	922,933	286,681	36,820	_
	회 수	1,515,197	443,094	737,945	295,242	38,916	
	잔 액	2,287,254	714.818	1,243,416	290,101	38,919	_

^{※ &#}x27;99년말 인삼협 융자금 잔액(36.746백만원)과 인삼기금 통합시 승계분(16,222백만원)은 2000년도 농협 융자금 실적에 포함